2023회계연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 기획재정부 소관 ····· 1
1. 결산 개요 ····· 3
2. 기획재정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 7
3. 기획재정부 소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126
4. 기획재정부 소관 기금 ····· 131
1) 공공자금관리기금 ····· 131
2) 국유재산관리기금 ····· 137
3) 대외경제협력기금 ····· 147
4) 복권기금 ····· 164
5) 외국환평형기금 ····· 178
6)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 192
7) 기후대응기금 ····· 194
○ 국세청 소관 ····· 245
○ 관세청 소관 ····· 303
○ 조달청 소관 ····· 357
○ 통계청 소관 ····· 399

2024. 8.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전 문 위 원 이정은

목 차

기획재정부 소관

1. 결산 개요 ····· 3
가. 세입세출 결산(일반회계·특별회계) ····· 3
(1) 세입 ····· 3
(2) 세출 ····· 4
나. 기금 결산 ····· 5
다. 예비비 ····· 6

2. 기획재정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 7
가. 개요 ····· 7
(1) 일반회계 세입 결산 ····· 7
(2) 일반회계 세출 결산 ····· 8
(3)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표 ····· 9
나. 세수보전대책 개요 ····· 21
다. 세입 결산 검토의견 ····· 25
(1) 국세 세입결산 총괄(국세수입, 세제실) ····· 25
(2) 국세수입 추계오차에 대한 대응 필요(국세수입, 세제실) ····· 32
(3) 조세지출 결산 사항 및 세법 심의에 따른 변동사항의 조세지출 기본계획 반영 필요(국세수입, 세제실) ····· 42
(4) 조세지출 예비타당성평가 제도의 합리적 운영 필요(국세수입, 세제실) ··· 44
(5) 미수납액 관리 강화 필요(국세수입, 세제실) ····· 47
(6) 존속기한 규정에 부합하는 지침의 개정 및 재발령 필요 (정부출자수입, 국고국) ····· 49

라. 세출 결산 검토의견 ····· 54
(1)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의 내실있는 운영 및 이월 관행 개선 필요
(국가경쟁력 분석 및 강화전략 수립, 경제정책국) ····· 54
(2) 물가감시센터 원가분석 등 용역보고서 공개 확대 필요
(소비자물가관리, 경제정책국) ····· 58
(3) 비목별 용도에 부합하는 예산 편성·집행 필요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운영,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 61
(4) 조세개혁추진단 운영 관련 예비비 불용과다 주의
(조세개혁추진단 운영, 세제실) ····· 65
(5) 시의적절한 정책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비 집행 필요
(국고업무관리, 국고국) ····· 70
(6) 고객만족도조사 기본설계 용역의 활용가능성 제고 노력 필요 등
(공공기관 평가 및 관리, 공공정책국) ····· 73
(7) 국가회계결산지원단 구성 개선 필요 (국가회계제도운영, 재정관리국) ····· 76
(8) 국외업무여비 집행 개선 필요 (국가회계제도운영, 재정관리국) ····· 81
(9) 민간투자제도 국제협력 사업의 연례적 집행 부진 개선 필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지원, 재정관리국) ····· 84
(10)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행사비 집행 시정 필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재정정책국) ····· 88
(11) 일반용역비 집행부진 개선 필요
(재정전략기획 및 협력강화, 재정정책국) ····· 92
(12) 한국재정정보원의 장애인 고용률 제고 필요
(한국재정정보원 운영, 재정정책국) ····· 95
(13) '자율기구' 취지에 부합하도록 국제투자협력단
(舊 금융투자지원단) 운영 필요 (금융투자지원단 운영(신규), 국제금융국(舊 대외경제국)) … 105
(14) 2023년도 분담금 불용하고 2024년 재편성·집행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필요
(국제금융기구 출연(ODA), 개발금융국) ····· 111
(15) 양자 정책자문 사업관리 개선 및 비ODA 국가에 대한 사업 분리 필요
(경제발전경험공유(ODA), 대외경제국) ····· 115
(16) 기본경비 적정 소요를 반영한 합리적인 예산 편성 필요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예산실) ····· 120
(17)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상환 유예 재발 방지 필요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국고국) ····· 123

3. 기획재정부 소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126
가. 개요 ····· 126
나. 검토의견 ····· 128
(1) 교통·에너지·환경세 전입액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 정산 필요
(지특회계 지역자율계정 일반회계전입금, 예산실) ····· 128

4. 기획재정부 소관 기금 ····· 131

1) 공공자금관리기금 ····· 131
가. 개요 ····· 131
나. 검토의견 ····· 133
(1) 잔존만기가 긴 예탁금의 조기회수 지양 필요(기금예탁원금회수, 국고국) ····· 133

2) 국유재산관리기금 ····· 137
가. 개요 ····· 137
나. 검토의견 ····· 139
(1) 위탁개발임차료 조기 지급을 위한 대규모 기금운용계획변경 지양 필요
(총괄, 국고국) ····· 139
(2)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지급되는 인건비의 지급 비목 변경 필요(인건비, 국고국) ·· 144

3) 대외경제협력기금 ····· 147
가. 개요 ····· 147
나. 검토의견 ····· 149
(1) 향후 EDCF 출자 시 수익성 증대 위한 면밀한 사업관리 필요
(정부출자주식 매각대, 대외경제협력기금) ····· 149
(2) 연례적인 대규모 자체변경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제도개선 필요
(대개도국차관(단위사업), 대외경제협력기금) ····· 153
(3) 협조융자 사업 관리를 별도 세부사업으로 분리 필요
(사업심사평가연구(ODA), 대외경제협력기금) ····· 161

4) 복권기금 ····· 164
가. 개요 ····· 164
나. 검토의견 ····· 166
(1) 투명한 운영을 통한 안정적인 복권사업 추진 필요(총괄, 복권위원회) ···· 166
(2) 복권기금 지원사업 불용액 반납 관리 강화 필요
(기타경상이전수입, 복권위원회) ····· 171
(3)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연례적 집행부진 관리 강화 필요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복권위원회) ····· 174

5) 외국환평형기금 ····· 178
가. 개요 ····· 178
나. 엔화표시 외평채 발행 분석 ····· 180
다. 검토의견 ····· 182
(1) 한국투자공사 해외지사 운영규정에 샌프란시스코·뭄바이 사무소 반영되도록 개정 필요(총괄, 외국환평형기금) ····· 182
(2) 기금운용계획변경 관련 제도 개선 필요 등 (외국환평형기금에서 공자기금으로 예수원금상환, 외국환평형기금) ····· 185

6)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 192
가. 개요 ····· 192

7) 기후대응기금 ····· 194
가. 개요 ····· 194
나. 검토의견 ····· 196
(1) 안정적인 기금 수입 재원 확보방안 마련 필요 (기후대응기금 수입, 미래전략국) ····· 196
(2) 국제감축사업 면밀한 사업관리, 온실가스 국제감축 실적인정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 마련 및 실질적 평가지표 정비 필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기재부)(신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산업부)(신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환경부)(신규), 기후대응기금) ····· 203
(3) 지자체 보조 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 필요(탄소중립도시숲 조성, 산림청) ···· 213
(4)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사업 추가지연 방지를 위하여 사업관리 철저 필요 (그린창업생태계기반구축 사업, 중소벤처기업부) ····· 218
(5)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보조금의 단계적 교부 등 사업관리 철저 필요 (습지보전관리, 환경부) ····· 223
(6)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 사업의 실집행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 환경부) ····· 228
(7) 탄소중립 체험관 개선 사업 보조금의 단계적 교부 및 보조금 관리 개선 필요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 환경부) ····· 231
(8) 사업재편계획 승인시 탄소중립 분야에 대한 비중 확대 필요 (사업재편지원기반구축, 산업통상자원부) ····· 235

국세청 소관

가. 결산 개요 ····· 247

(1) 세입 결산 ····· 247

(2) 세출 결산 ····· 248

(3) 세입·세출 결산 총괄표 ····· 249

나. 검토 의견 ····· 259

(1) 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지원 사업의 연례적인 예산 이용 지양 필요
(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지원, 개인납세국) ····· 259

(2) 대형집단상가등 기준시가 고시 업무의 원활한 이관 필요
(대형집단상가등 기준시가 고시, 자산과세국) ····· 264

(3)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강구 필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운영, 개인납세국) ····· 267

(4) 국내 출장여비의 적정 규모 편성 필요(부과·징수지원, 기획조정관실) ····· 271

(5) 승소장려금 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소송수행비용, 징세법무국) ····· 274

(6) 은닉재산신고포상금의 적정 예산 반영 및 지급기준 완화 방안 검토 필요
(압류재산공매, 징세법무국) ····· 276

(7)「국고금 관리법」에 따른 자금지출 규정 준수 필요
(납세고지서 등 발송, 정보화관리관실) ····· 280

(8) 세금포인트 사용처의 지속적인 발굴·확대 필요
(납세자 권익보호 및 성실납세지원, 납세자보호관실) ····· 283

(9)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 사업의 개선방안 마련 필요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 개인납세국) ····· 288

(10) 근로·자녀장려세제 관련 홍보예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 필요
(근로·자녀장려세제 운영, 복지세정관리단) ····· 293

(11)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의 연례적 불용 개선 필요
(국제조세관리관실 기본경비, 국제조세관리실) ····· 296

(12) 국외위탁사업에 필요한 국외교육여비의 집행관리 철저 필요
(조사활동지원, 조사국/국제조세관리관실 기본경비, 국제조세관리관실) · 299

관세청 소관

가. 결산 개요 ····· 305

(1) 세입 결산 ····· 305

(2) 세출 결산 ····· 306

(3) 세입·세출 결산 총괄표 ····· 307

나. 검토 의견 ····· 312

(1) 일반사업에 편성된 정보화 사업 예산의 체계적 관리 필요(총괄) ····· 312

(2) 과태료 및 과징금 수납률 제고 필요(과태료·과징금, 심사국) ····· 316

(3)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과태료 감경제도 폐지 검토 필요
(과태료, 심사국) ····· 320

(4) 해외직구 증가에 따른 통관 전담인력 확보 필요 등
(특송화물 통관지원, 통관국) ····· 324

(5) 수출입화물 검사 적극적 실시 필요(수출입화물 검사지원, 통관국) ····· 331

(6) 납세심사 기간 단축 및 납세신고오류 보완 방안 마련 필요
(관세탈루심사, 심사국) ····· 335

(7) 체납자 은닉재산 포상금 제도 활성화 방안 모색 필요 (관세탈루심사, 심사국) ··· 341

(8) 압수물품 보관창고 관리위탁 개선 필요(밀수단속, 조사국) ····· 345

(9) K-customs week 사업 성과 제고 필요
(전자통관시스템 수출지원, 정보데이터정책관·국제관세협력국) ····· 350

(10) 불필요한 예산의 관례적 편성 및 불용 지양 필요
(국제관세협력국 기본경비, 국제관세협력국) ····· 353

조달청 소관

가. 결산 개요 ····· 359

(1) 세입 결산 ····· 359

(2) 세출 결산 ····· 360

(3) 세입·세출 결산 총괄표 ····· 361

나. 검토의견 ····· 367

(1)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희소금속 이관 및 비축공간 활용에 대한 구체적·중장기적인 계획 수립 필요(총괄, 공공물자국) ····· 367

(2)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지원 사업의 개선 필요 (정부조달 국제협력체제 구축, 기획조정관) ····· 375

(3) 조달청 사용 전산소모품에 대한 경쟁입찰 실시 및 수요기관 편의 증진을 위한 전산소모품 다수공급자계약 등 방안 마련 필요 (기관운영 기본경비, 운영지원과·구매사업국) ····· 384

(4) 포상금 예산 관련 집행지침 준수 필요 (기관운영 기본경비·조달행정 역량강화·조달전문교육 운영, 기획조정관·운영지원과·공공조달역량개발원) ····· 393

통계청 소관

가. 결산 개요 ····· 401

(1) 세입 결산 ····· 401

(2) 세출 결산 ····· 402

(3) 세입·세출 결산 총괄표 ····· 403

나. 검토의견 ····· 409

(1) 통계품질 제고를 위한 통계품질개선 컨설팅 운영 개선 필요
(국가통계정책추진, 통계정책국) ····· 409

(2) 통계데이터센터 이용실적 제고 필요
(통계데이터 분석 및 활용 지원(정보화), 통계데이터허브국) ····· 413

(3) 사회통계의 응답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사회통계작성, 사회통계국) ····· 418

(4) 통계생산대행 수입대체경비 예산의 적정한 편성 필요
(통계생산대행 수입대체경비, 조사관리국) ····· 425

(5) 적정한 예산편성을 통한 연례적 세목조정 최소화 필요
(청사시설관리, 운영지원과) ····· 429

기획재정부 소관

1. 결산 개요

가. 세입세출 결산(일반회계 · 특별회계)

(1) 세입

2023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액은 449조 8,683억원, 징수결정액은 476조 1,012억원으로, 징수결정액 중 409조 8,382억원(86.1%)이 수납되고, 2조 2,835억원은 불납결손처리, 63조 9,795억원은 미수납됨.

불납결손 사유는 시효완성으로 인한 경우 2조 1,888억원(95.9%), 압류액이 집행비용보다 적어 불납결손 처리한 경우 927억원(4.1%), 채무면제로 인한 경우 등 기타 20억원(0.0%)임.

미수납액은 국세수입이 99.99%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세수입의 미수납 사유는 체납자 재력부족 및 거소불명으로 인한 경우 52조 3,445억원(81.8%), 납기미도래인 경우 5조 8,423억원(9.1%), 정리유예인 경우 2조 7,687억원(4.3%), 징수유예인 경우 1조 6,689억원(2.6%), 통관진행중 등 기타의 경우 1조 3,469억원(2.1%)임.

[2023회계연도 세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A)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불납 결손액(D)	미수납액 (E)	수납률 (C/B)	미수납률 (E/B)
일반회계	438,715,378	464,215,228	397,952,253	2,283,503	63,979,473	85.7	13.8
특별회계	11,152,951	11,885,978	11,885,978	-	-	100.0	-
계	449,868,329	476,101,206	409,838,230	2,283,503	63,979,473	86.1	13.4

(2) 세출

2023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액은 27조 370억원, 예산현액은 26조 3,211억원으로, 예산현액 중 13조 9,202억원(52.9%)이 집행되고, 39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12조 3,970억원은 불용되었음.

이월액은 연구용역 및 위탁사업 계약기간 미도래 등에 따른 연구용역비 17억원, 위탁사업비 등 22억원임.

불용액은 지출사유 미발생에 따른 예비비 불용 3조 2,588억원, 공자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등 회계간 및 회계기금간 거래 불용 9조 995억원, 자체 집행예산 불용 386억원임.

[2023회계연도 세출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A)	예산현액 (B)	지출액 (C)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C/B)
일반회계	26,852,966	26,137,071	13,736,195	3,864	12,397,010	52.6
특별회계	184,008	184,008	184,008	-	-	100.0
계	27,036,974	26,321,079	13,920,205	3,864	12,397,010	52.9

나. 기금 결산

기획재정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 국유재산관리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복권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외국환평형기금, 기후대응기금을 운용하고 있음.

2023`회계연도 기금별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공공자금관리기금은 계획액 299조 2,804억원, 결산액 285조 4,129억원으로 계획 대비 95.4% 수준,

국유재산관리기금은 계획액 2조 5,829억원, 결산액 2조 6,829억원으로 계획 대비 103.9% 수준,

대외경제협력기금은 계획액 1조 6,211억원, 결산액 1조 5,151억원으로 계획 대비 93.5% 수준,

복권기금은 계획액 7조 9,098억원, 결산액 7조 8,729억원으로 계획 대비 99.5% 수준,

외국환평형기금은 계획액 150조 6,200억원, 결산액 137조 3,194억원으로 계획 대비 91.2% 수준임.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계획액 7,701억원, 결산액 6,242억원으로 계획 대비 81.1% 수준,

기후대응기금은 계획액 2조 2,992억원, 결산액 2조 2,267억원으로 계획 대비 96.8% 수준임.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획액(A)	결산액(B)	집행률(B/A)
○ 공공자금관리기금	299,280,361	285,412,915	95.4
○ 국유재산관리기금	2,582,894	2,682,940	103.9
○ 대외경제협력기금	1,621,131	1,515,114	93.5
○ 복권기금	7,909,785	7,872,865	99.5
○ 외국환평형기금	150,620,021	137,319,387	91.2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770,138	624,164	81.1
○ 기후대응기금	2,299,158	2,226,698	96.8

* 기금 결산액은 자금 조달과 운용 측면에서 규모가 같음.

다. 예비비

2023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예비비는 4조 6천억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지출 소요에 필요한 관련 부처에 예비비를 배정하였고, 기획재정부는 6,087억원(13.2%)을 집행하였음.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		집행률(B/A)
	본예산(A) [배정액]	결산(B)	
○ 예비비	4,600,000	608,730	13.2
- 국가안전보장활동 지원	660,000	607,200	92.0
- 원스톱수출지원단 운영	781	715	91.5
-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 운영	377	257	68.2
- 조세개혁추진단 운영	1,387	119	8.6
- 금융투자지원단 운영	738	440	59.6

2. 기획재정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가. 개요

(1) 일반회계 세입 결산

2023년 기획재정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38조 7,154억원이며, 464조 2,152억원이 징수결정 되었음. 기획재정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 수납액은 397조 9,523억원으로 예산 대비 90.7%이며, 징수결정액 대비로는 85.7% 수준임. 징수결정액 중 2조 2,835억원이 불납결손 처리되었고, 63조 9,795억원이 미수납되었음.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		수납률(B/A)
	본예산(A)	결산(B)	
○ 국세수입	390,253,900	333,939,610	85.6
- 내국세계	357,967,600	306,059,472	85.5
· 소 득 세	131,863,200	115,833,024	87.8
· 법 인 세	104,996,900	80,419,515	76.6
· 상속증여세	17,127,400	14,634,054	85.4
· 부가가치세	83,203,500	73,774,862	88.7
· 개별소비세	10,194,300	8,820,924	86.5
· 증권거래세	4,973,900	6,080,262	122.2
· 인 지 세	815,800	796,932	97.7
· 기타내국세	4,792,600	5,699,899	118.9
- 관세	10,723,700	7,288,282	68.0
- 교통·에너지·환경세	11,147,100	10,843,590	97.3
- 방위세	0	137	순증
- 교육세	4,702,200	5,151,619	109.6
-종합부동산세	5,713,300	4,596,509	80.5
○ 세외수입	48,461,478	64,012,642	132.1
- 재산수입	2,352,627	2,700,731	114.8
· 정부출자기관 배당수입	1,078,749	941,196	87.2
· 기타 재산수입*	1,273,878	1,759,535	138.1
- 경상이전수입	12,913	33,422	258.8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2	8	400.0
- 관유물매각대**	47475	104,940	221.0
- 전년도이월금	0	2,793,277	순증
- 세계잉여금	0	2,751,088	순증
-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46048461	55,629,176	120.8
총 계	438,715,378	397,952,253	90.7

* 국고금 관리 이자수입, 국세물납주식 매각 이자수입, 한국은행 결산잉여금 등

** 국세물납주식매각대

*** 기타특별회계전입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2) 일반회계 세출 결산

2023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 집행액은 13조 7,362억원으로 전년 대비 29.6%(5조 7,822억원) 감소하였음.

자체 지출예산 집행액은 전년 대비 2.6% 감소한 5,455억원이며, 예비비는 6,072억원이 집행됨. 회계기금간 거래액 7조 9,344억원과 회계간거래액 4조 6,491억원을 포함한 내부거래는 12조 5,853억원으로 전년보다 31.2% 감소하였음.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		집행률(B/A)
	본예산(A)	결산(B)	
○ 자체 지출예산	569,894	545,460	95.7
○ 예비비	4,600,000	607,200	13.2
○ 회계기금간 거래	16,613,078	7,934,418	47.8
○ 회계간 거래	5,069,994	4,649,119	91.7
총 계	26,852,966	13,736,197	51.2

(3)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표

가) 2023회계연도 세입결산 총괄표

○ 국세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결산	2022결산	2023년			2024예산
			예산(A)	결산(B)	수납률 (B/A)	
총 계	332,504,797	385,159,576	390,253,900	333,939,610	85.6	356,118,200
11 소득세	114,112,339	128,748,596	131,863,200	115,833,024	87.8	125,760,500
신고분(11-111)	54,804,826	58,244,910	54,445,200	41,295,946	75.8	45,471,700
원천분(11-112)	59,307,513	70,503,686	77,418,000	74,537,078	96.3	80,288,800
12 법인세	70,396,282	103,570,360	104,996,900	80,419,515	76.6	77,664,900
법인세(12-121)	70,396,282	103,570,360	104,996,900	80,419,515	76.6	77,664,900
15 상속세	15,006,154	14,594,019	17,127,400	14,634,054	85.4	14,656,600
상속세(15-151)	6,944,742	7,611,302	8,954,600	8,544,421	95.4	8,594,700
증여세(15-152)	8,061,411	6,982,717	8,172,800	6,089,632	74.5	6,061,900
21 부가가치세	71,204,565	81,626,608	83,203,500	73,774,861	88.7	81,406,800
부가가치세(21-211)	71,204,565	81,626,608	83,203,500	73,774,861	88.7	81,406,800
22 개별소비세	9,363,810	9,318,244	10,194,300	8,820,924	86.5	10,194,500
개별소비세(22-221~222)	9,363,810	9,318,244	10,194,300	8,820,924	86.5	10,194,500
23 주세	-	-	-	-	-	-
주세(23-231)	-	-	-	-	-	-
25 증권거래세	10,255,631	6,302,867	4,973,900	6,080,262	122.2	5,382,900
증권거래세(25-251)	10,255,631	6,302,867	4,973,900	6,080,262	122.2	5,382,900
26 인지세	959,756	798,775	815,800	796,214	97.6	850,500
인지세(26-261)	959,756	798,775	815,800	796,214	97.6	850,500
27 기타내국세	5,146,496	7,315,527	4,792,600	5,699,899	118.9	5,696,900
과년도수입(27-271)	5,146,496	7,315,527	4,792,600	5,699,899	118.9	5,696,900
31 관세	8,227,000	10,324,118	10,723,700	7,288,282	68.0	8,906,500
관세(31-311~312)	8,227,000	10,324,118	10,723,700	7,288,282	68.0	8,906,500
32 방위세	287	898	0	137	순증	-
방위세(32-321~322)	287	898	0	137	순증	-
33 교통에너지환경세	16,598,390	11,116,375	11,147,100	10,843,590	97.3	15,325,800
교통에너지환경세 (33-331~333)	16,598,390	11,116,375	11,147,100	10,843,590	97.3	15,325,800
34 교육세	5,103,866	4,644,380	4,702,200	5,151,619	109.6	6,162,500
교육세(34-341,345)	5,103,866	4,644,380	4,702,200	5,151,619	109.6	6,162,500
37 농어촌특별세	-	-	-	-	-	-
농어촌특별세(37-371~372)	-	-	-	-	-	-
39 종합부동산세	6,130,222	6,798,810	5,713,300	4,596,509	80.5	4,109,800
종합부동산세(39-391~392)	6,130,222	6,798,810	5,713,300	4,596,509	80.5	4,109,800

○ 세외수입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결산	2022결산	2023년			2024예산
			예산(A)	결산(B)	수납률(B/A)	
총 계	97,565,452	99,507,620	48,461,478	64,012,642	132.1	84,692,032
52 정부출자수입	915,711	1,682,597	1,078,749	941,196	87.2	982,344
정부출자수입(52-521)	915,711	1,682,597	1,078,749	941,196	87.2	982,344
54 기타이자재산수입	5,124,245	5,480,737	1,273,878	1,759,534	138.1	1,632,251
기타재산수입(54-545)	2,258	2,660	-	-	-	-
기타재산이자수입(54-546)	-	-	1,441	4,910	340.7	2,251
한국은행잉여금(54-548)	5,121,987	5,478,077	1,272,464	1,754,625	137.9	1,630,000
56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120.5	148.6	171	119	69.6	171
벌금및과료(56-561)	-	-	1	-	-	1
과태료(56-563)	120.5	148.6	170	119	70.0	170
징계부과금(56-564)	-	-	-	-	-	0
57 변상금및위약금	-	-	3	2	66.7	2
위약금(57-572)	-	-	3	2	66.7	2
58 가산금	-	-	1	-	-	1
가산금(58-581)	-	-	1	-	-	1
59 기타경상이전수입	22,925	9,442	12,738	33,302	261.4	12,525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	22,925	9,442	12,738	33,302	261.4	12,525
69 기타잡수입	2	3	2	8	400.0	2
기타잡수입(69-691)	2	3	2	8	400.0	2
73 재고자산매각대 및 유동자산	58,661	57,635	47,475	104,940	221.0	53,354
국세물납주식매각대(73-733)	58,661	57,635	47,475	104,940	221.0	53,354
84 유가증권매각대	-	-	-	-	-	-
기타유가증권매각대(84-843)	-	-	-	-	-	-
88 전년도이월금	1,424,798	2,647,663	-	2,793,277	순증	-
전년도이월금(88-881)	1,424,798	2,647,663	-	2,793,277	순증	-
89 세계잉여금 이입액	1,692,427	3,261,812	-	2,751,088	순증	-
전년도세계잉여금(89-893)	1,692,427	3,261,812	-	2,751,088	순증	-
91 전입금	126,567	167,582	199,838	187,853	94.0	334,865
특별회계전입금(91-912)	126,567	167,582	199,838	187,853	94.0	334,865
94 예수금	88,200,000	86,200,000	45,848,623	55,441,323	120.9	81,676,517
기금예수금(94-943)	88,200,000	86,200,000	45,848,623	55,441,323	120.9	81,676,517

나)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구분	2021결산	2022결산	2023년			2024 예산
			예산(A)	결산(B)	집행률 (B/A)	
총 계	17,811,140	19,518,422	26,852,966	13,736,195	51.2	32,031,555
1100 경제정책	699,195	103,426	3,081	2,850	92.5	3,284
1131 소비자물가관리	822	764	1,035	971	93.8	812
소비자물가관리(302)	822	764	1,035	971	93.8	812
1132 중장기경제전략기획사업	773	822	1,085	1,032	95.1	920
중장기 경제전략기획사업(401)	773	822	1,085	1,032	95.1	920
1133 국가경쟁력 강화 지원	115	82	305	269	88.2	925
국가경쟁력분석및강화 전략수립(301)	115	82	305	269	88.2	925
1136 내수활력제고	697,130	101,360	-	-	-	-
상생소비지원금(301)	697,130	101,360	-	-	-	-
1141 경제구조개혁전략 기획 및 이행기반 구축	354	398	656	578	88.1	627
경제구조개혁전략 기획 및 이행기반 구축(301)	354	398	656	578	88.1	627
1200 정부위원회	1,634	704	-	-	-	-
1235 북방경제협력위원회운영	1,634	704	-	-	-	-
북방경제협력위원회운영(351)	1,634	704	-	-	-	-
1300 정책조정	10,371	8,574	8,923	9,514	106.6	4,561
1331 경제정책조정지원	10,371	8,574	8,923	9,514	106.6	4,561
경제정책조정지원활성화사업(301)	639	614	1,415	1,340	94.7	1,319
협동조합활성화사업(302)	7,069	7,208	7,508	7,202	95.9	1,580
혁신성장활성화사업(303)	1,002	358	-	-	-	-
한국판뉴딜실무지원단운영(304)	1,661	394	-	-	-	-

구분	2021결산	2022결산	2023년			2024 예산
			예산(A)	결산(B)	집행률 (B/A)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운영(305)	-	-	-	715	-	1,110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 운영(306)	-	-	-	257	-	552
1400 자문회의 지원	**3,475**	**2,433**	**3,562**	**3,159**	**88.7**	**3,304**
1431 국민경제자문회의지원단운영	3,475	2,433	3,562	3,159	88.7	3,304
국민경제자문회의지원단운영(301)	3,475	2,433	3,562	3,159	88.7	3,304
2100 조세정책	**4,657**	**4,663**	**4,873**	**4,748**	**97.4**	**6,235**
2131 조세정책지원	4,657	4,663	4,873	4,748	97.4	6,235
국제조세협력(301)	644	944	1,217	1,120	92.0	1,493
국제조세기구 등 분담금(303)	461	509	513	554	108.0	585
관세협력기구 출연(304)	926	967	961	995	103.5	996
조세지출성과관리및평가(306)	1,878	1,551	1,577	1,473	93.4	1,498
국내조세협력(308)	502	571	605	487	80.5	927
조세및고용보험소득정보연계추진(309)	246	121	-	-	-	-
조세개혁추진단 운영(310)	-	-	-	119	-	736
2200 국고관리	**9,630**	**3,747**	**3,301**	**2,916**	**88.3**	**103,934**
2233 국고업무관리지원	1,346	3,256	2,550	2,534	99.4	4,024
국고업무관리(302)	317	406	516	418	81.0	365
국채시장관리 및 국제화(304)	678	423	499	480	96.2	530
혁신조달지원(305)	352	323	352	292	83.0	352
국채관리시스템 구축(정보화)(307)	-	2,104	1,183	1,344	113.6	403
공공기관 결산 시스템 고도화(정보화)(308)	-	-	-	-	-	2,374
2234 국유재산관리	188	492	751	382	50.9	701
국유재산관리(302)	188	492	751	382	50.9	701

구분	2021결산	2022결산	2023년			2024 예산
			예산(A)	결산(B)	집행률 (B/A)	
2272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8,096	0	-	-	-	99,209
일시차입금이자상환(561)	8,096	0	-	-	-	99,209
2400 재정운용	**4,650**	**4,540**	**5,253**	**4,950**	**94.2**	**5,005**
2441 국고보조금관리및제도개선	53	69	72	60	83.3	7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관리 및 제도개선(300)	53	69	72	60	83.3	72
2444 국제재정협력강화	472	650	689	668	97.0	720
국제 재정협력 강화(301)	472	650	689	668	97.0	720
2445 재정운용협의기반구축·운영	2,124	2,383	3,061	2,746	89.7	2,732
재정운용협의기반구축·운영(401)	2,044	2,383	3,061	2,746	89.7	2,732
사회보험 재정건전추진(403)	80	-	-	-	-	-
2446 연구개발예산편성전략성 강화	650	650	618	618	100.0	618
연구개발예산의 전략적 편성에 관한 연구(R&D)(401)	650	650	618	618	100.0	618
2447 정보화투자관리효율화	1,350	788	813	813	100.0	863
정보화투자관리효율화(241)	1,350	788	813	813	100.0	863
2500 공공정책	**6,048**	**5,873**	**6,737**	**6,633**	**98.5**	**7,304**
2531 공공기관평가및관리	6,048	5,873	6,737	6,633	98.5	7,304
공공기관 평가 및 관리(300)	6,048	5,873	6,737	6,633	98.5	7,304
2600 재정관리	**10,825**	**11,385**	**12,688**	**12,227**	**96.4**	**13,878**
2631 국가회계운영	1,092	1,170	1,212	1,122	92.6	1,162
국가회계제도운영(301)	1,092	1,170	1,212	1,122	92.6	1,162
2642 국제기구공동연구자문	102	121	132	92	69.7	132
국제기구공동연구자문(300)	102	121	132	92	69.7	132
2643 재정집행관리	263	176	318	162	50.9	278
재정집행관리(300)	263	176	318	162	50.9	278

구분	2021결산	2022결산	2023년			2024 예산
			예산(A)	결산(B)	집행률 (B/A)	
2644 재정사업평가	1,851	2,000	2,399	2,368	98.7	3,257
재정사업평가(300)	1,851	2,000	2,399	2,368	98.7	3,257
2645 민간투자사업활성화지원	71	199	373	174	46.6	336
민간투자사업활성화지원(300)	71	199	373	174	46.6	336
2646 재정사업타당성조사	7,446	7,718	8,254	8,309	100.7	8,845
재정사업타당성조사(301)	7,134	7,422	7,973	8,254	103.5	8,571
국가연구개발사업타당성조사(402)	312	296	281	55	19.6	274
2700 재정기획	**113,553**	**88,910**	**80,674**	**79,813**	**98.9**	**84,498**
2711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918	1,040	932	1,038	111.4	932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300)	918	1,040	932	1,038	111.4	932
2712 중장기재정전략수립	4,193	4,237	4,556	3,742	82.1	2,441
재정전략기획및협력강화(301)	1,223	1,260	1,793	1,202	67.0	969
재정건전성관리강화(302)	51	108	161	162	100.6	161
재정교육(303)	729	713	740	724	97.8	695
국민참여예산제도 운영(304)	2,190	1,949	1,762	1,538	87.3	516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추진(305)	-	207	100	116	116.0	100
2713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	108,442	83,632	75,186	75,033	99.8	81,125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운영(500)	10,060	15,641	17,196	17,136	99.7	22,240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 구축운영(501)	20,101	18,259	20,832	20,739	99.6	17,964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전면재구축(정보화)(502)	48,410	14,768	-	-	-	-
한국재정정보원 운영(504)	29,331	34,399	36,593	36,593	100.0	40,356
재정정보분석(506)	539	565	565	565	100.0	565

구분	2021결산	2022결산	2023년			2024 예산
			예산(A)	결산(B)	집행률 (B/A)	
3000 예비비	**550,000**	**576,000**	**4,600,000**	**607,200**	**13.2**	**4,200,000**
3069 예비비	550,000	576,000	4,600,000	607,200	13.2	4,200,000
예비비(300)	550,000	576,000	4,600,000	607,200	13.2	4,200,000
3100 국제금융	**287,082**	**214,648**	**242,801**	**218,972**	**90.2**	**458,849**
3131 국제금융강화지원	33,583	6,527	16,566	14,827	89.5	9,161
국제금융협력강화(301)	550	855	958	1,000	104.4	1,100
CGIF 출자(302)	28,798	-	-	-	-	
ASEAN+3금융협력사업(304)	3,177	3,659	5,182	4,859	93.8	6,010
ADB연차총회 개최(307)	-	662	8,633	7,449	86.3	-
국제금융외교 및 G20협력(311)	1,058	1,350	1,793	1,519	84.7	2,051
3132 국제금융센터보조	2,100	2,100	2,000	2,000	100.0	2,000
국제금융센터보조(301)	2,100	2,100	2,000	2,000	100.0	2,000
3133 녹색기후기금협력지원	38,119	50,861	51,987	51,845	99.7	89,634
녹색기후기금 운영지원(ODA)(국고채무부담행위)(330)	12,418	10,160	-	-	-	35,293
녹색기후기금 운영지원(331)	24,961	33,069	42,905	42,846	99.9	45,500
기후행동강화지원(ODA)(332)	-	7,000	8,200	8,200	100.0	8,200
녹색기후기획사업(333)	740	632	882	799	90.6	641
3134 국제금융기구출연	213,280	155,160	172,248	150,300	87.3	358,054
국제금융기구 출연(301)	213,280	155,160	159,348	137,400	86.2	345,054
팬데믹 대응 기금 지원(302)	-	-	12,900	12,900	100.0	13,000
3200 경제협력	**309,830**	**65,613**	**43,191**	**39,963**	**92.5**	**148,789**
3231 경제협력강화지원	8,645	5,113	5,091	5,268	103.5	5,037
대외경제협력강화(301)	364	492	778	690	88.7	1,080
경제협력기구활동(303)	213	229	409	264	64.5	409
통일기반조성사업(304)	435	653	808	852	105.4	727
한-UNDP 신탁기금(GTI) 출연(306)	682	679	882	889	100.8	781
통상연계형경협사업(308)	433	538	525	446	85.0	499
금융투자지원단 운영(309)	-	-	-	440	-	120

구분	2021결산	2022결산	2023년			2024 예산
			예산(A)	결산(B)	집행률 (B/A)	
대외경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500)	6,516	2,495	1,689	1,687	99.9	1,421
3234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22,600	26,411	28,970	25,880	89.3	33,636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301)	16,010	18,890	19,017	17,018	89.5	23,683
경제혁신파트너쉽구축 (ODA)(303)	6,590	7,522	9,953	8,862	89.0	9,953
3236 한국수출입은행출자	270,000	25,000	-	-	-	100,000
한국수출입은행출자 (특별계정)(301)	110,000	25,000	-	-	-	100,000
한국수출입은행출자 (금융시장안정화)(302)	160,000	-	-	-	-	-
3239 지식협력단지 운영	8,586	8,584	8,574	8,472	98.8	9,583
지식협력단지운영(301)	8,586	8,584	8,574	8,472	98.8	9,583
3240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운영	-	-	556	343	61.7	533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운영 (301)	-	-	556	343	61.7	533
4100 사회기반시설 민자사업 지원	**14,000**	**15,000**	**10,000**	**10,000**	**100.0**	**10,000**
4110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출연	14,000	15,000	10,000	10,000	100.0	10,000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출연 (880)	14,000	15,000	10,000	10,000	100.0	10,000
7100 기획재정 행정지원	**128,821**	**129,668**	**144,810**	**149,758**	**103.4**	**149,817**
7101 본부인건비	94,797	94,968	102,181	95,373	93.3	104,175
인건비(101)	94,797	94,968	102,181	95,373	93.3	104,175
7111 본부기본경비	19,547	20,725	24,330	37,590	154.5	25,793
총액인건비대상기본경비 (기관운영)(201)	6,107	6,106	6,703	10,595	158.1	6,846
총액인건비대상기본경비 (기획조정실)(202)	369	371	439	394	89.7	499
총액인건비대상기본경비 (대변인)(205)	29	27	29	26	89.7	39
총액인건비대상기본경비 (세제실)(208)	521	533	670	512	76.4	670

구분	2021결산	2022결산	2023년			2024 예산
			예산(A)	결산(B)	집행률 (B/A)	
총액인건비대상기본경비 (경제정책국)(209)	120	110	122	113	92.6	133
총액인건비대상기본경비 (국고국)(210)	79	80	103	65	63.1	105
총액인건비대상기본경비 (국제금융국)(212)	58	55	65	43	66.2	54
총액인건비대상기본경비 (대외경제국)(213)	113	98	145	110	75.9	144
총액인건비대상기본경비 (정책조정국)(214)	51	45	72	42	58.3	63
총액인건비대상기본경비 (예산실)(216)	1,106	1,069	1,185	919	77.6	1,185
총액인건비대상기본경비 (공공정책국)(218)	64	68	94	55	58.5	136
총액인건비대상기본경비 (재정관리국)(219)	84	81	149	98	65.8	95
총액인건비대상기본경비 (장기전략국)(220)	32	30	42	29	69.0	86
총액인건비대상기본경비 (개발금융국)(221)	70	56	100	72	72.0	101
총액인건비대상기본경비 (재정혁신국)(222)	140	142	169	134	79.3	161
총액인건비대상기본경비 (보조망구축추진단)(223)	85	28	-	-		-
총액인건비대상기본경비 (경제구조개혁국)(224)	33	29	60	31	51.7	57
총액인건비 대상기본경비 (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227)	-	-	-	-	-	58
총액인건비비대상기본경비 (기관운영)(251)	1,679	2,534	2,936	14,140	481.6	2,996
총액인건비비대상기본경비 (기획조정실)(252)	1,496	1,669	2,139	1,857	86.8	2,301

구분	2021결산	2022결산	2023년			2024 예산
			예산(A)	결산(B)	집행률 (B/A)	
총액인건비비대상기본경비 (대변인)(255)	630	633	684	701	102.5	805
총액인건비비대상기본경비 (세제실)(258)	772	911	1,003	983	98.0	1,330
총액인건비비대상기본경비 (경제정책국)(259)	864	839	904	890	98.5	934
총액인건비비대상기본경비 (국고국)(260)	242	206	347	274	79.0	385
총액인건비비대상기본경비 (국제금융국)(262)	278	299	397	362	91.2	393
총액인건비비대상기본경비 (대외경제국)(263)	381	692	715	795	111.2	768
총액인건비비대상기본경비 (정책조정국)(264)	340	322	424	392	92.5	448
총액인건비비대상기본경비 (예산실)(266)	1,806	1,855	2,465	2,300	93.3	2,515
총액인건비비대상기본경비 (공공정책국)(268)	389	357	468	375	80.1	522
총액인건비비대상기본경비 (재정관리국)(269)	483	504	816	584	71.6	603
총액인건비비대상기본경비 (장기전략국)(270)	242	213	238	197	82.8	300
총액인건비비대상기본경비 (개발금융국)(271)	69	106	148	117	79.1	159
총액인건비비대상기본경비 (재정혁신국)(272)	230	262	294	251	85.4	317
총액인건비비대상기본경비 (보조망구축추진단)(273)	476	298	-	-	-	-
총액인건비비대상기본경비 (경제구조개혁국)(274)	109	98	205	134	65.4	183
총액인건비비대상기본경비 (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277)	-	-	-	-	-	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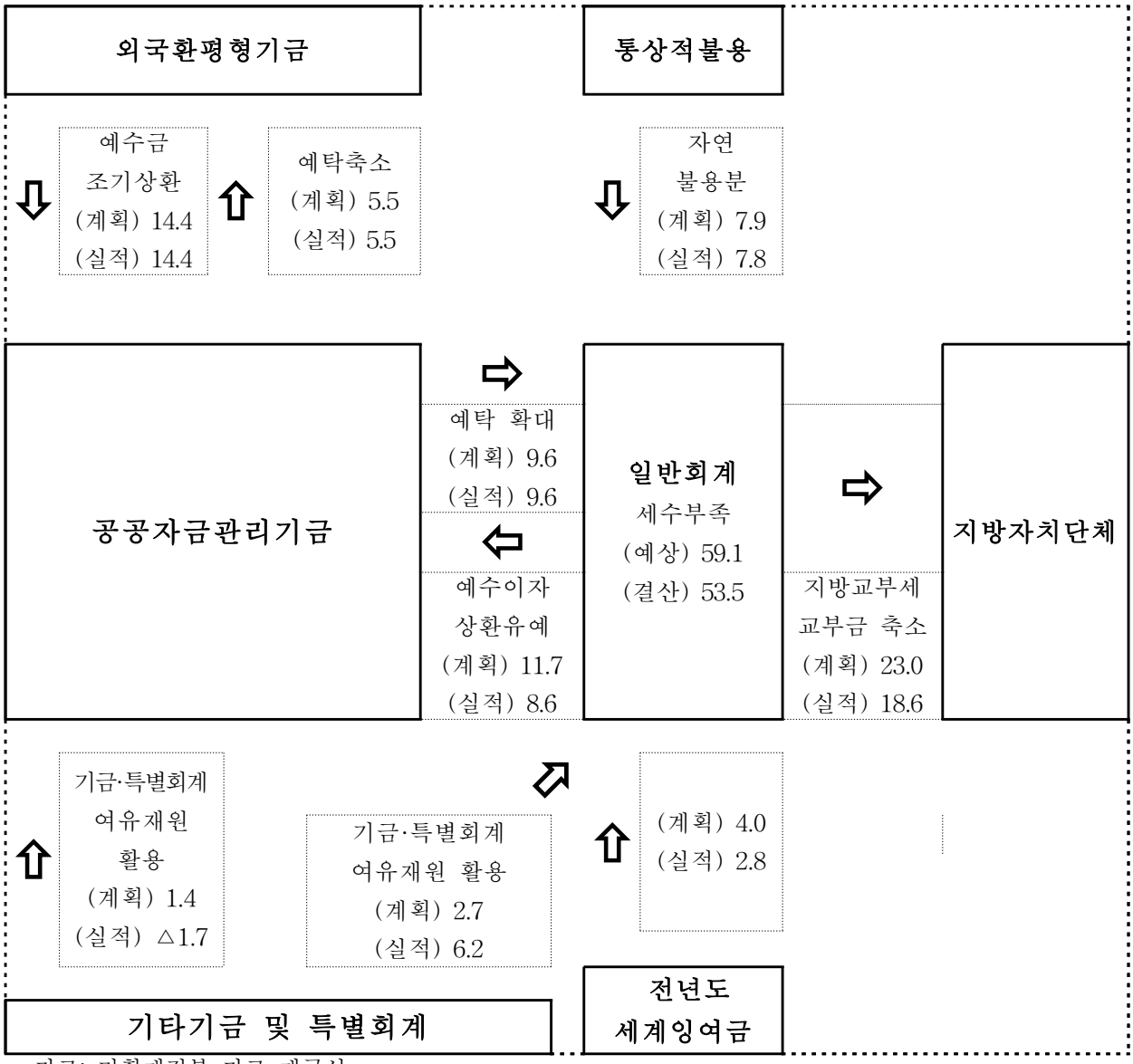
구분	2021결산	2022결산	2023년			2024 예산
			예산(A)	결산(B)	집행률 (B/A)	
7131 기획재정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632	767	1,200	898	74.8	2,523
기획재정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301)	632	767	1,200	898	74.8	2,523
7132 기획재정해외네트워크구축	621	577	716	657	91.8	745
기획재정해외네트워크구축(301)	621	577	716	657	91.8	745
해외훈련(302)	-	-	-	-	-	-
7134 기획재정정보화	5,464	5,141	5,844	5,689	97.3	5,740
기획재정정보화(500)	2,979	2,651	2,926	2,771	94.7	2,823
사이버안전센터구축운영(501)	2,486	2,490	2,918	2,918	100.0	2,917
7135 기획재정정책지원	7,759	7,490	10,539	9,551	90.6	10,841
정책품질관리(301)	194	194	214	191	89.3	253
정책연구개발(302)	1,229	1,204	1,525	1,434	94.0	1,525
경제교육지원(304)	3,739	3,632	6,177	5,546	89.8	6,368
정책홍보사업(306)	2,597	2,460	2,623	2,380	90.7	2,695
8000 회계간거래(전출금)	**3,930,394**	**4,193,902**	**5,069,994**	**4,649,119**	**91.7**	**6,197,012**
8010 회계간거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930,394	4,193,902	5,069,994	4,649,119	91.7	6,197,01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전출(802)	313,806	307,610	222,942	185,786	83.3	306,516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전출(803)	3,322,423	3,561,183	4,560,966	4,177,247	91.6	5,590,044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제주특별자치도계정)전출(804)	230,886	253,525	233,754	233,754	100.0	255,596

구분	2021결산	2022결산	2023년			2024 예산
			예산(A)	결산(B)	집행률 (B/A)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종특별자치시계정)전출 (805)	63,279	71,584	52,332	52,332	100.0	44,856
8400 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	**774,243**	**1,453,826**	**2,128,757**	**2,028,799**	**95.3**	**2,373,379**
8411 회계기금간전출(일반회계)	774,243	1,453,826	2,128,757	2,028,799	95.3	2,373,379
일반회계에서공자기금(총괄계정)으로전출금(대러차관보증채무이행)(881)	16,725	16,292	9,985	9,985	100.0	-
일반회계에서 대외기금으로 전출금(883)	752,918	662,268	887,257	787,299	88.7	1,218,749
일반회계에서공자기금(융자계정)으로전출금(이자보전)(884)	4,600	12,112	9,260	9,260	100.0	5,217
기후대응기금 전출(889)	-	763,154	1,222,255	1,222,255	100.0	1,149,413
8600 회계기금간거래(예수이자상환)	**1,947,863**	**2,179,751**	-	-	-	-
8601 일반회계 예수원금상환	1,947,863	2,179,751	-	-	-	-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원금상환(864)	1,947,863	2,179,751	-	-	-	-
8700 회계기금간거래(예수이자상환)	**9,004,870**	**10,455,761**	**14,484,321**	**5,905,619**	**40.8**	**18,262,006**
8711 회계기금간예수이자상환 (일반회계)	9,004,870	10,455,761	14,484,321	5,905,619	40.8	18,262,006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871)	9,004,870	10,455,761	14,484,321	5,905,619	40.8	18,262,006

나. 세수보전대책 개요

[세수보전 대책 구조도]

(단위: 조원)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 재구성

* 국세수입 부족분은 결산 기준 56.4조이나 일반회계 세외수입이 예상보다 2.9조 추가 수납되어 53.5조에 대해 세수보전 대책 실시

< 현 황 >

기획재정부는 2023년 국세수입이 예산대비 59.1조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여 가용재원을 활용한 세수 결손 보전 대책을 추진하였고, 연말 결산 기준 2023년 9월 예상액 대비 국세·세외 수입이 5.6조원 증가함에 따라 53.5조원 규모로 세수 결손 보전 대책을 추진하였음.

첫째로, 2022 회계연도의 세계잉여금 중 일부를 세입에 이입하여 총 2.8조원의 세수 보전을 추진하였음.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 제90조[1]에 따른 사용이 가능하며, 그 사용 순서는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등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채무 상환, 추경편성 및 다음연도 세입 이입 순임. 일반회계의 경우 2022 회계연도에 총 6조 248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고, 이 중 2조 7,511억원을 2023 회계연도 세입으로 이입하였음.

[연도별 세계잉여금(일반회계) 처리내역]

(단위: 억원)

회계연도	세계잉여금	처리내역			
		지방교부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채무상환	추경재원	세입이입
2019	619	619	-	-	-
2020	57,193	22,653	17,615	16,924	-
2021	179,949	113,382	33,949	32,618	-
2022	60,248	4,103	28,634	-	27,511

자료: 대한민국 정부,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또한 사업별 여건에 따라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불용분으로 약 7.8조원의 세수를 보전하였고, 기금· 특별회계의 여유 재원 조정을 통하여 24.4조원 가량의

---

1) **「국가재정법」 제90조(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및 사용계획)** ①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 부족을 보전(補塡)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연도에 이미 발행한 국채의 금액 범위에서는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초과 조세수입을 이용하여 국채를 우선 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입·세출 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②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 중 다른 법률에 따른 것과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이월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세계잉여금"이라 한다)은 「지방교부세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세의 정산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00분의 30 이상을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우선적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00분의 3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1. 국채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
2. 「국가배상법」에 따라 확정된 국가배상금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융자계정의 차입금(예수금을 포함한다)의 원리금. 다만, 200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입금(예수금을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정부가 부담하는 채무
⑤~⑨ 생략

세수를 보전하였음. 이는 일반회계의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공자 기금”)에 대한 8.6조원 가량의 예수이자 미상환, 공자기금으로부터 일반회계로의 9.6조원 가량의 예탁 확대, 3.5조원 가량의 기금 여유 재원 운용, 약 2.7조원 규모의 특별회계 여유 재원 운용으로 구분됨.

마지막으로 지역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지방교부세(금) 규모를 18.6조원 가량 감액하여 세수를 보전하였음. 현행 「지방교부세법」[2]은 해당 연도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해당 금액을 제외한 내국세의 19.24%와 종합부동산세, 담배 개별소비세의 45%등을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내국세 결산액을 기초로 해서 그 연도의 지방교부세 총액을 정하는 것이 예산 편성 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연도 내국세 수입 예정액 중 교부세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전년도 지방교부세의 정산액을 가감한 금액으로 지방교부세(금)를 교부·운영하고 있음. 또한 「지방교부세법」 제5조제2항[3]은 국세가 줄어드는 경우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다음 연도까지 교부세를 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기획재정부는 당초 예산 편성 당시 151조 489억원을 지방교부세(금)로 산정하였으나, 이 중 18조 6,000억원 가량의 교부세(금)를 감액하였음.

기금· 특별회계에서의 여유재원 조정 및 교부세(금)의 감액은 일반회계의 불용 형태 측면으로 나타나고 있음. 최근 5년간 세출결산 내역을 검토하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는 95% 이상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의 규모가 10조 내외이지만, 2023년은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90.4%로 불용액이 45조 6,874억원임.

---

2) **「지방교부세법」 제4조(교부세의 재원)** ① 교부세의 재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해당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
2.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총액
3.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
4.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의 차액을 정산한 금액
5.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의 차액을 정산한 금액
6.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제3호의 차액을 정산한 금액

3) **「지방교부세법」 제5조(예산 계상)** ②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교부세의 재원인 국세(國稅)가 늘거나 줄면 교부세도 함께 조절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다음 연도까지 교부세를 조절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총세출결산 내역]

(단위: 억원, %)

연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률(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19	4,077,873	3,972,622	97.4	26,156	79,096
2020	4,628,064	4,538,437	98.1	23,147	66,481
2021	5,092,014	4,968,692	97.6	39,823	83,499
2022	5,776,856	5,597,375	96.9	50,494	128,986
2023	5,399,636	4,904,145	90.4	38,617	456,874

자료: 대한민국 정부,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2023 회계연도 불용액은 45조 6,874억원으로 그 중 41조 1,753억원은 일반회계 불용액, 4조 5,121억원은 특별회계 불용액임. 실질적인 재정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기금을 포함하고 내부거래를 제거한 총지출 기준의 2023회계연도 불용액은 35.2조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26.3조원, 특별회계에서 3.0조원, 기금에서 5.8조원이 불용되었음. 이를 통해 세수 보전을 위한 세출 조정은 재정사업의 불용뿐만 아니라 정부 보전 거래 및 내부 거래의 불용 형태로도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일반회계에서의 불용액은 기획재정부(12.4조원)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교육부(10.7조원), 행정안전부(8.2조원) 등에서 크게 발생하였음. 이는 각 부처의 통상적인 재정사업 운영상의 불용액이 반영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의 경우 상기된 예수이자 상환에 대한 불용액등이, 행정안전부의 경우 지방교부세의 감액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다. 세입 결산 검토의견

(1) 국세 세입결산 총괄(국세수입, 세제실)

2023년도 국세수입 실적은 344조 711억원으로서 전년도 실적 395조 9,393억원 대비 13.1%인 51조 8,682억원이 감소하였고, 2023년도 예산 400조 4,570억원 대비 14.1%인 56조 3,859억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하였음.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12개 세목의 수납액은 333조 9,396억원으로서 본예산 390조 2,539억원 대비 14.4%인 56조 3,143억원이 과소수납되었고, 특별회계 2개 세목의 수납액은 10조 1,314억원으로서 본예산 10조 2,031억원 대비 0.7%인 717억원이 과소수납되었음[4].

[2023년도 결산 국세수입 세목별 실적]

(단위: 억원, %)

세 목	22년 실적	23년 예산	23년 실적	22년 실적대비		23년예산대비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국세수입	3,959,393	4,004,570	3,440,711	△ 518,682	-13.1	△ 563,859	-14.1
일반회계	3,851,596	3,902,539	3,339,396	△ 512,200	-13.3	△ 563,143	-14.4
소득세	1,287,486	1,318,632	1,158,330	△ 129,156	-10.0	△ 160,302	-12.2
법인세	1,035,704	1,049,969	804,195	△ 231,509	-22.4	△ 245,774	-23.4
상증세	145,940	171,274	146,341	401	0.3	△ 24,933	-14.6
부가가치세	816,266	832,035	737,749	△ 78,517	-9.6	△ 94,286	-11.3
개별소비세	93,182	101,943	88,209	△ 4,973	-5.3	△ 13,734	-13.5
증권거래세	63,029	49,739	60,803	△ 2,226	-3.5	11,064	22.2
인지세	7,988	8,158	7,969	△ 19	-0.2	△ 189	-2.3
과년도수입	73,155	47,926	56,999	△ 16,156	-22.1	9,073	18.9
교통세	111,164	111,471	108,436	△ 2,728	-2.5	△ 3,035	-2.7
관세	103,241	107,237	72,883	△ 30,358	-29.4	△ 34,354	-32.0
교육세	46,444	47,022	51,516	5,072	10.9	4,494	9.6
종합부동산세	67,988	57,133	45,965	△ 22,023	-32.4	△ 11,168	-19.5
특별회계	107,797	102,031	101,314	△ 6,483	-6.0	△ 717	-0.7
주세	37,665	32,151	35,686	△ 1,979	-5.3	3,535	11.0
농어촌특별세	70,132	69,880	65,628	△ 4,504	-6.4	△ 4,252	-6.1

자료: 기획재정부

4) 2023년도 국세수입 실적 344조 711억원은 기획재정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 333조 9,396억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주세) 3조 5,686억원 외에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입(농어촌특별세) 6조 5,628억원을 포함한 금액으로, 2023년도 국세 세입결산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특별회계 세입결산 규모를 포함한 전체 국세 세입결산 규모를 기재하였음.

2023년도 본예산 기준 세수결손은 56.4조원으로서 ① 기업 영업실적의 급격한 악화[5]로 인한 법인세 결손(△24.6조원), ②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자산시장 위축[6] 등에 기인한 소득세 결손(△16조원), ③ 민간소비 둔화[7]와 통관수입액 감소[8]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9.4조원) 및 관세(△3.4조원) 결손이 주요 원인임.

[2023년 세수 결손 주요 세목 현황]

(단위: 억원, %)

세 목	22년 실적	23년 본예산	23년 실적	22년 실적대비		23년 본예산대비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법인세	1,035,704	1,049,969	804,195	△231,509	-22.4	△245,774	-23.4
소득세	1,287,486	1,318,632	1,158,330	△129,156	-10.0	△160,302	-12.2
부가가치세	816,266	832,035	737,749	△78,517	-9.6	△94,286	-11.3
관세	103,241	107,237	72,883	△30,358	-29.4	△34,354	-32.0

세목별 초과세수·세수결손 현황을 살펴보면, 증권거래세, 교육세, 주세 등 4개 세목에서 본예산 대비 초과수납된 반면, 그 밖에 10개 세목에서는 본예산 대비 과소수납되었음.

[본예산 기준 2023년도 세목별 초과세수·세수결손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23년 본예산	2023년 실 적	본예산 대비 초과세수		구 분		2023년 본예산	2023년 실 적	본예산 대비 세수결손	
1	증권거래세	49,739	60,803	11,064	22.24	1	법인세	1,049,969	804,195	△245,774	-23.4
2	과년도수입	47,926	56,999	9,073	18.93	2	소득세	1,318,632	1,158,330	△160,302	-12.2
3	교육세	47,022	51,516	4,494	9.56	3	부가가치세	832,035	737,749	△94,286	-11.3
4	주세	32,151	35,686	3,535	10.99	4	관세	107,237	72,883	△34,354	-32.0
						5	상증세	171,274	146,341	△24,933	-14.6
						6	개별소비세	101,943	88,209	△13,734	-13.5
						7	종합부동산세	57,133	45,965	△11,168	-19.5
						8	농어촌특별세	69,880	65,628	△4,252	-6.1
						9	교통세	111,471	108,436	△3,035	-2.7
						10	인지세	8,158	7,969	△189	-2.3

5) 상장사 영업이익(개별기준, 조원) : ('21) 119.7 → ('22) 81.7 <△31.8%>,
6) 순수토지매매거래량(만필지): ('21.11~'22.10) 72.4 → ('22.11~'23.10) 48.9 <△32.4%>
주택매매거래량(만호): ('21.11~'22.10) 57.1 → ('22.11~'23.10) 53.0 <△7.1%>
7) 민간소비 증가율: ('22) 4.9% → ('23) 1.8%
8) 수입액: ('22) 7,312억불 → ('23) 6,426억불

최근 10년 간 3대 세목인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수납액이 국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74.5%에서 법인세 수납액이 대폭 감소한 2020년과 2021년을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서, 2023년에는 78.5%를 기록하였음.

① 소득세의 수납액 비중은 2014년 25.9%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23년에는 33.7%로, 최근 10년 중 국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고, 3대 세목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② 법인세의 수납액 비중은 2014년 20.8%에서 2019년 24.6%까지 증가하였으나, 2020년 19.4%로 감소한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23년도에는 23.4%를 기록하였고, 소득세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③ 2014년 27.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부가가치세는 최근 10년간 그 비중이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 속에서 2023년에는 21.4%를 기록하여 소득세와 법인세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최근 10년간 국세수입 중 3대 세목 수납액이 차지하는 비중]

(단위: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소득세 수납액 비중	25.9	27.9	28.2	28.3	28.8	28.5	32.6	33.2	32.5	33.7
법인세 수납액 비중	20.8	20.7	21.5	22.3	24.2	24.6	19.4	20.5	26.2	23.4
부가가치세 수납액 비중	27.8	24.9	25.5	25.3	23.8	24.1	22.7	20.7	20.6	21.4
3대 세목 수납액 비중	74.5	73.4	75.2	75.9	76.8	77.2	74.8	74.3	79.3	78.5

자료: 기획재정부

2023년도 국세수입 실적의 예산 대비 및 전년 대비 증감사유를 주요 세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소득세 징수액은 2023년 본예산(131조 8,632억원) 대비 12.2% 감소한 115조 8,330억원임. 이 중 종합소득세는 본예산(24조 7,255억원) 대비 13.3% 감소한 21조 4,368억원이 징수되었고, 양도소득세는 본예산(29조 7,197억원) 대비 40.9% 감소한 17조 5,560억원이 징수되었으며, 근로소득세는 본예산(60조 6,216억원) 대비 2.4% 감소한 59조 1,442억원이 징수되었음.

또한, 전년 대비로는 12조 9,156억원이 감소하여 10%의 감소율을 보이는데,
① 종합소득세는 전년도 세정지원의 기저효과[9] 등에 따라 2조 5,021억원이 감소(△10.5%)하였고, ② 양도소득세는 토지·주택 거래 감소[10]에 따라 14조 6,773억원이 감소(△45.5%)하였으며, ③ 이자소득세는 고금리[11] 영향으로 2조 5,791억원이 증가(98.2%)하였고, ④ 근로소득세는 취업자 수 및 임금 상승[12]으로 2022년 실적 대비 1조 7,024억원이 증가(3.0%)하였음.

[2023년 소득세 예산 및 징수액 현황]

(단위: 억원, %)

세 목	22년 실적	23년 본예산	23년 실적	22년 실적대비		23년 본예산대비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소 득 세	1,287,486	1,318,632	1,158,330	-129,156	-10.0	-160,302	-12.2
신 고 분	561,722	544,452	389,928	-171,794	-30.6	-154,524	-28.4
종합소득	239,389	247,255	214,368	-25,021	-10.5	-32,887	-13.3
양도소득	322,333	297,197	175,560	-146,773	-45.5	-121,637	-40.9
원 천 분	725,764	774,180	768,402	42,638	5.9	-5,778	-0.7
이자소득	26,277	26,934	52,068	25,791	98.2	25,134	93.3
배당소득	41,577	49,745	40,623	-954	-2.3	-9,122	-18.3
사업소득	40,962	45,490	43,665	2,703	6.6	-1,825	-4.0
근로소득	574,418	606,216	591,442	17,024	3.0	-14,774	-2.4
연금소득	3,656	4,903	4,562	906	24.8	-341	-7.0
기타소득	22,572	24,577	24,028	1,456	6.5	-549	-2.2
퇴직소득	16,301	16,315	12,014	-4,287	-26.3	-4,301	-26.4

9) 집합금지·영업 제한업종 등 종합소득세 중간예납(21년 11월) 납부기한을 22년으로 유예 2.5조원
10) 순수토지매매거래량(만필지): ('21.11~'22.10) 72.4 → ('22.11~'23.10) 48.9 <△32.4%>
주택매매거래량(만호): ('21.11~'22.10) 57.1 → ('22.11~'23.10) 53.0 <△7.1%>
11) 한국은행 기준금리: ('22.1) 1.25% → ('23.1) 3.5%
12) 상용근로자임금(월평균, 만원): ('22.1~'22.12) 410 → ('23.1~'23.10) 419 <+2.3%>
상용근로자수(만명): ('22) 1,569 → ('23) 1,617 <+3.0%>

법인세 징수액은 2023년 본예산(104조 9,969억원) 대비 23.4% 감소한 80조 4,159억원으로서 이 중 법인세 신고분은 본예산(87조 700억원) 대비 30.7% 감소한 60조 3,768억원이 징수되었고. 법인세 원천분은 본예산(17조 9,269억원) 대비 11.8% 증가한 20조 427억원이 징수되었음.

또한, 전년 대비로는 23조 1,509억원이 감소하여 22.4%의 감소율을 보이는데,
① 법인세 신고분은 2022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글로벌 경기둔화와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가격하락 등의 영향으로 상장사 법인영업이익이 감소[13]한 것에 기인하여 세수가 26조 6,076억원(△30.6%) 감소한 반면, ② 법인세 원천분은 법인 이자소득[14] 증가 등의 영향으로 3조 4,568억원(20.8%) 증가하였음.

[2023년 법인세 예산 및 징수액 현황]

(단위: 억원, %)

세 목	22년 실적	23년 본예산	23년 실적	22년 실적대비		23년 본예산대비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법 인 세	1,035,704	1,049,969	804,195	-231,509	-22.4	-245,774	-23.4
신 고 분	869,844	870,700	603,768	-266,076	-30.6	-266,932	-30.7
원 천 분	165,859	179,269	200,427	34,568	20.8	21,158	11.8

자료: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 징수액은 2023년 본예산(83조 2,035억원) 대비 11.3% 감소한 73조 7,749억원으로서 이 중 국내분 부가가치세는 본예산(27조 4,305억원) 대비 22.7% 감소한 21조 1,965억원이 징수되었고, 수입분 부가가치세는 본예산(55조 7,730억원) 대비 5.7% 감소한 52조 5,783억원이 징수되었음[15].

또한, 전년 대비로는 7조 8,517억원이 감소하여 △9.6%의 감소율을 보이는데,
부가가치세 국내분은 민간소비 증가, 소비자물가 상승 등에 따라 6,501억원(3.2%) 증가하였으나, 통관수입액의 감소[16] 등으로 수입분이 8조 5,091억원(△13.9%) 감소하여 전체 세수가 감소하게 되었고, 이외에 지방소비세율 인상(1.6%p)도 부가가치세 감소 요인으로 일부 작용함.

[2023년 부가가치세 예산 및 징수액 현황]

(단위: 억원, %)

세 목	22년 실적	23년 본예산	23년 실적	22년 실적대비		23년 본예산대비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부가가치세	816,266	832,035	737,749	-78,517	-9.6	-94,286	-11.3
국 내 분	205,464	274,305	211,965	6,501	3.2	-62,340	-22.7
수 입 분	610,802	557,730	525,783	-85,019	-13.9	-31,947	-5.7

자료: 기획재정부

13) 상장사 영업이익(개별기준, 조원) : ('21) 119.7 → ('22) 81.7 <△31.8%>,
('22上) 63.6 → ('23上) 18.8 <△70.4%>
14) 한국은행 기준금리: ('22.1) 1.25% → ('23.1) 3.5%
15) 2023년도 총 부가가치세 수납액은 98조 7,615억원으로서 이 중 25.3%인 24조 9,866억원은 지방으로 이양됨.
16) 수입액(억불) : ('22) 7,312 → ('23) 6,426

다음으로 이들 3대 세목 외에 자산 관련 주요 세목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징수실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상속세 및 증여세는 2023년 본예산(17조 1,274억원) 대비 14.6% 감소한 14조 6,341억원으로서 이 중 상속세는 8조 5,444억원이 징수되었고, 증여세는 6조 896억원이 징수되었음. 2022년 실적(14조 5,940억원) 대비로는 0.3% 증가하였음.

증권거래세는 2023년 본예산(4조 9,739억원) 대비 22.2% 증가한 6조 803억원이 징수되었음. 증권거래대금의 증가[17]에도 불구하고 증권거래세 인하[18] 효과의 영향으로 2022년 실적(6조 3,029억원) 대비로는 3.5% 감소하였음.

종합부동산세는 2023년 본예산(5조 7,133억원) 대비 19.5% 감소한 4조 5,965억원이 징수되었음. 2022년 실적(6조 7,988억원) 대비로는 32.4% 감소하였는데, 이는 2022년 하반기 부동산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2023년 공시가격이 하락한 점[19]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주택분 과세기준액이 상향 조정된 세수효과 등에 기인함.

농어촌특별세는 2023년 본예산(6조 9,880억원) 대비 6.1% 감소한 6조 5,628억원이 징수되었음. 2022년 실적(7조 132억원) 대비로는 6.4% 감소하였는데, 이는 본세(개별소비세, 종합부동산세 등)에 부가되는 부가세인 동 세목의 종합부동산세 부가분(종합부동산세의 20%)과 지방세 부가분(지방세의 10%)의 감소 등에 기인한 것임.

[2023년 자산 관련 세목 예산 및 징수액 현황]

(단위: 억원, %)

세 목	22년 실적	23년 본예산	23년 실적	22년 실적대비		23년 본예산대비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상속세 및 증여세	145,940	171,274	146,341	401	0.3	-24,933	-14.6
증권거래세	63,029	49,739	60,803	-2,226	-3.5	11,064	22.2
종합부동산세	67,988	57,133	45,965	-22,023	-32.4	-11,168	-19.5
농어촌특별세	70,132	69,880	65,628	-4,504	-6.4	-4,252	-6.1

자료: 기획재정부

17) 상장주식 거래대금(조원): ('21.12~'22.11) 4,132 → ('22.12~'23.11) 4,698 <+13.7%>
18) 코스피(0.08% → 0.05%), 코스닥(0.23% → 0.20%)
19) 공시가격증가율(%): (공동주택) △18.63, (표준지) △5.92, (표준주택) △5.95

다음으로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관세, 주세 및 교육세의 징수실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개별소비세는 2023년 본예산(10조 1,943억원) 대비 13.5% 감소한 8조 8,209억원이 징수되었음. 2022년 실적(9조 3,182억원) 대비로는 5.3% 감소하였는데, 이는 발전용 유연탄, 천연가스 등 발전연료에 대해 2022년 8월부터 인하(△15%)된 세율이 적용되었으나, 2023년도에는 연중 인하된 세율이 적용된 점 등에 기인함.

교통·에너지·환경세는 2023년 본예산(11조 1,471억원) 대비 2.7% 감소한 10조 8,436억원이 징수되었음. 2022년 실적(11조 1,164억원) 대비로는 2.5% 감소하였는데, 이는 2021년 11월부터 시행된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20]가 2023년에도 계속 적용된 점 등에 기인함.

관세는 2023년 본예산(10조 7,237억원) 대비 32.2% 감소한 7조 2,883억원이 징수되었음. 2022년 실적(10조 3,241억원) 대비로는 29.4% 감소하였는데, 이는 2023년 통관기준 원화수입액의 감소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액의 증가[21] 등에 기인함.

주세는 2023년 본예산(3조 2,151억원) 대비 11% 증가한 3조 5,686억원이 징수되었고, 2022년 실적(3조 7,665억원) 대비로는 5.3% 감소하였음.

교육세는 2023년 본예산(4조 7,022억원) 대비 9.6% 증가한 5조 1,516억원이 징수되었음. 전년 대비로는 교육세 세원 중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가분 실적이 감소[22]하였으나, 금융 및 보험업자 수익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23]하여 2022년 실적(4조 6,444억원) 대비 10.9% 증가하였음.

[2023년 간접세 관련 세목 예산 및 징수액 현황]

(단위: 억원, %)

세 목	22년 실적	23년 본예산	23년 실적	22년 실적대비		23년 본예산대비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개별소비세	93,182	101,943	88,209	-4,973	-5.3	-13,734	-13.5
교통에너지환경세	111,164	111,471	108,436	-2,728	-2.5	-3,035	-2.7
관 세	103,241	107,237	72,883	-30,358	-29.4	-34,354	-32.0
주 세	37,665	32,151	35,686	-1,979	-5.3	3,535	11.0
교 육 세	46,444	47,022	51,516	5,072	10.9	4,494	9.6

20) ('21.11.12~'22.4.30) △20% (22. 5.1~6.30) △30% (22.7.1~12.31) △37%, ('23.1.1~'23.12.31) △37%
21) 수입액(억불) : ('22) 7,312 → ('23) 6,426
환급액(억원) : ('22) 45,849 → ('23) 54,469
22) 주세 부가분: ('22) 8,649 → ('23) 8,218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가분: ('22) 16,692 → ('23) 16,272
23) 금융 및 보험업자 수익금액에 대한 징수액 ('22) 12,527억원 → ('23) 17,504억원

(2) 국세수입 추계오차에 대한 대응 필요(국세수입, 세제실)

최근 3년간 국세수입의 본예산 대비 세수전망 오차가 50조원대 이상이고, 2023년에는 최근 10년 중 가장 높은 56조원 규모의 세수결손이 발생한 점을 감안할 때, 국세수입 추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2023회계연도 국세수입은 본예산의 14.3%인 56.4조원이 과소수납되어 최근 10년 중 가장 큰 규모의 세수결손을 기록하였음. 특히 이러한 대규모의 세수결손이 2021회계연도 이후 매년 50조원대 이상의 세수전망 오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음. 이는 세수전망 오차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재정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저하시켜 재정건전성을 저해하고 재정성과를 약화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기 때문임.

먼저, 2023회계연도와 같이 당초 전망된 예산에 못미치는 국세수입은 대체재원의 마련이나 지출규모의 탄력적 조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재정적자를 확대시켜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위험성이 있음. 설사 재정적자의 확대 없이 지출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한다고 하더라도 당초 계획된 사업이 재원부족으로 당해연도에 수행되지 못하여 예산 편성 시 의도하였던 재정산출 및 재정성과를 달성하지 못할 수 있으며, 적자국채 외의 대체재원을 마련하는 경우에도 자산의 매각 및 기금 등의 용도외 활동 등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2023년의 경우도 정부는 세입과 세출의 불일치를 조정하기 위하여 외국환평형기금 재원의 활용, 지방교부세·지방교부금 감액조정 등의 조치를 취하였음.

둘째, 반대의 경우로서 2021회계연도와 2022회계연도와 같이 실제 국세수입이 당초 전망된 예산을 크게 상회하는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결과적으로 재정의 잠재적인 수입규모에 비하여 재정지출 규모를 과소하게 설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재정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극대화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다만, 이러한 한계를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한 지출확대로 보완할 수 있으나, 짧은 기간 내에 사업예산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추가경정예산의 특성상 재정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며, 세입 잉여재원의 추가경정예산 재원 활용이 반복될 경우 장기적으로 재정규모를 팽창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 특히 탄력적인 조정이 어려운 재정지출의 경직적 특성상 지금과 같이 국세수입의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일시적인 재정잉여를 통하여 재정규모를 팽창시키는 것은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음.

[최근 10년간 세수오차 현황]

(단위: 조원, %)

연도	세입예산(A)	세입실적	세수오차(B)	오차율(B/A)
2014	216.5	205.5	△11.0	△5.1
2015	221.1	217.9	△3.2	△1.4
2016	222.9	242.6	19.7	8.8
2017	242.3	265.4	23.1	9.5
2018	268.1	293.6	25.5	9.5
2019	294.8	293.5	△1.3	△0.4
2020	292.0	285.5	△6.5	△2.2
2021	282.7	344.1	61.3	21.7
2022	343.4	395.9	52.6	15.3
2023	400.5	344.1	△56.4	△14.1

이러한 대폭적인 세수오차의 발생은 우선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인한 급격한 경기변동의 여파가 일정한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됨. 국회예산정책처(2023)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경기순환국면이 급격히 전환되는 시점에 평균 수준을 상회하는 큰 세수오차가 발생하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세수오차가 당해연도뿐만 아니라 이후 2~3년 간 지속되는 특징이 있다고 함.[24)]

또한, 이러한 일시적인 경기변동 요인 외에도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의 확대도 세입추계의 전제가 되는 거시경제 전망의 정확도를 저하시켜 세수오차를 확대하는 원인이 될 수 있음. 실제로 2023회계연도의 경우 본예산 편성 당시 경상성장률 전망치는 4.5%이었으나 실적치는 3.4%로서 전망치를 1.1% 하회하였으며 그 밖의 거시경제 전망치도 실적치와 차이가 발생하여 세수추계의 정확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3회계연도의 경우 ① 종합소득세 등 대다수 세목에 활용되고 있는 경상성장률, 실질성장률 ② 부가가치세에 영향을 끼치는 민간소비증가율, 수입액 증가율 ③ 법인세와 관세 등에 영향을 끼치는 수출·수입액 증가율, ④ 양도소득세, 상증세 등에 영향을 끼치는 토지·주택 가격 증가율 등의 실적치가 전망치를 하회하였음.

24) 심혜정 외, 세수오차의 원인과 개선과제, 국회예산정책처, 2023, 43-46p.

[주요 경제지표 전망 및 오차(2023년)]

구 분	23년 본예산 전망(A)	23년 실적(B)	오차(B-A)	추계시 고려한 연구기관 등의 전망치
경 상 성 장 률 (%)	4.5	3.4	△1.1	
실 질 성 장 률 (%)	2.5	1.4	△1.1	한은:2.1%, KDI:2.3%
GDP Deflator (%)	2.0	2.1	0.1	
명목임금 상승률(%)	3.2	2.5	△0.7	노동연: 3.2
민간소비 증가율(%)	3.2	1.8	△1.4	한은: 2.6%, KDI:3.9%
소비자물가상승률(%)	3.0	3.6	0.6	한은: 3.7% KDI:2.2%
수 출 (억$)	7,224	6,324	△900	
수 출 증 가 율 (%)	1.0	△7.5	△8.5	
수 입 (억$)	7,186	6,426	△760	
수 입 증 가 율 (%)	△1.0	△12.1	△11.1	한은:△3.7%, KDI:△3.7%
환 율 (원/$)	1,290	1,305	15	
회 사 채 이 자 율(%)	4.86	4.39	△0.47	
토지가격 증가율(%)	3.2	1.1*	△2.1	국토연: 3.2
토지거래 증가율(%)	3.1	△17.4	△20.5	국토연: 3.1
주택가격 증가율(%)	△1.2	△7.3	△6.1	한은: 원만한 하락세
주택거래 증가율(%)	6.9	9.1	2.2	

* 본예산 전망 시 '20.9월 기준 값으로 추정하였으나, 실적치는 '23.12월 기준으로 변경
자료: 기획재정부

정부는 과거 세수추계의 전제가 되는 주요 거시경제지표의 전망오차에 따른 세수추계오차를 개선하기 위하여 2022년 2월 11일 「세수오차 원인분석 및 세제 업무 개선방안」을 통해 추계시 복수 연구기관의 전망치를 고려함으로써 경제지표 전망의 정확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으며, 2023년 예산안 편성 시 실질성장률, 수출증가율, 수입증가율, 민간소비증가율, 소비자물가상승률 등 거시경제지표에 대해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의 전망치를 고려하여 전망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내외 경제여건의 급격한 악화로 거시경제 전망치가 실적치와 괴리를 보임으로써 세수오차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임.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3년도 경제지표 실적치를 2023년도 세수추계모형에 대입할 경우 국세수입은 369조원 규모로 추산되고, 실제 수납액 344조원과의 차이는 25조원으로 줄어들게 됨. 즉, 2023년도 세수결손 56조원 중 31조원(55.4%)은 경제전망의 부정확성에 기인한 것이고, 나머지 25조원(44.6%)은 세수추계모형 등에 따른 오차분으로 볼 수 있음.

[2023년 경제지표 실적치를 세수추계모형에 대입할 때의 2023년 국세수입 전망치]

(단위: 억원)

세 목	2023년 본예산(A)	2023년 실적(B)	경제지표 실적치 대입 추산치(C)	경제전망 부정확 오차 (C-A)	추계모형 등 기타 오차 (B-C)
총 국 세	4,004,570	3,440,711	3,692,655	△311,915	△251,944

자료: 기획재정부

미래의 경제지표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겠으나, 세수오차를 줄이기 위한 필수 전제는 경제지표 전망의 정확한 예측에 있고, 부정확한 경제지표 전망이 2023년도 세수결손의 주요요인으로 작용한 점을 고려한다면 기획재정부는 경제지표 전망 시 자문 연구기관을 보다 다양화하고, 변동성 높은 지표에 대하여는 전문가 자문을 강화하는 등 경제지표 전망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이러한 거시경제 전망의 오차 외에도 조세구조의 변화도 세수오차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임. 특히, 경기후행성이 강한 법인세와 거시지표로 예측하기 어려운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등 자산관련 세수가 총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양극화에 따른 소득 및 자산분포의 불균형 심화에 따라 대기업 및 소득 상위구간에 대한 세수 의존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소득계층별, 산업별 임금 및 수익 양상이 다변화되면서 세수변동율이 확대되고 있는 양상임. 법인세가 총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이전 12.5%에서 2020년 이후 22%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증가하였고, 자산세의 비중도 2000년 이전 7.1%에서 2020년 이후 15.9%로 급증하였으며, 2021년 기준 소득 상위 1%의 소득세 부담비중이 42.0%로서 세부담의 상위계층 집중도가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가운데 과세표준 5,000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 총부담세액 비중도 2010년 31.9%에서 2021년 35.6%로 높아졌음.[25)]

이처럼 조세구조의 변화로 세수의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기존의 세추추계 모형이 이러한 구조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세수오차가 발생하는 측면 또한 있는 것으로 보임.

2023년도 경제지표 실적치를 2023년도 세수추계모형에 대입하였을 때 추산되는 국세수입은 369조 2,655억원으로서, 56조 3,859억원 규모의 세수결손 중 44.6%인 25조 1,944억원이 거시경제 전망 오차를 제외한 세수추계 모형 자체의 오차로 분석되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25) 심혜정 외, 세수오차의 원인과 개선과제, 국회예산정책처, 2023, 50-57p.

① 소득세의 경우 전체 세수오차 △16조 302억원 중 △10조 8,989억원이 경제전망 오차와 관계없는 모형 자체의 오차로 분석됨. 특히 양도소득세의 모형오차가 △6조 7,323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② 법인세는 전체 세수 오차 △24조 5,774억원 중 모형오차는 △9,268억원에 불과함. 이는 원천분의 모형오차(3조 836억원)가 신고분의 모형오차 △4조 104억원의 상당 부분을 상쇄하였기 때문임.

③ 부가가치세와 관세는 경제지표 실적치 대입 시 산출한 모형의 세수오차는 소폭 감소하여, 부가가치세의 경우 △8조 6,185억원, 관세의 경우 △2조 5,192억원 규모임.

[2023년 경제지표 실적치를 세수추계모형에 대입할 때의 2023년 국세수입 전망치]

(단위: 억원, %)

세 목	2023년 본예산	경제지표 실적치 대입 추산치	2023년 실적	본예산 대비		경제지표 실적치 대비	
				증감	증감율	증감	증감율
총국세	4,004,570	3,692,655	3,440,711	-563,859	-14.1	-251,944	-6.8
소 득 세	1,318,632	1,267,319	1,158,330	-160,302	-12.2	-108,989	-8.6
-양도소득세	297,197	242,883	175,560	-121,637	-40.9	-67,323	-27.7
-근로소득세	606,216	594,717	591,442	-14,774	-2.4	-3,275	-0.6
-그 외 소득세	45,795	45,795	40,604	-5,191	-11.3	-5,191	-11.3
법 인 세	1,049,969	813,463	804,195	-245,774	-23.4	-9,268	-1.1
-신고분	870,700	643,872	603,768	-266,932	-30.7	-40,104	-6.2
-원천분	179,269	169,591	200,427	21,158	11.8	30,836	18.2
부가가치세	832,035	823,934	737,749	-94,286	-11.3	-86,185	-10.5
관세	107,237	98,075	72,883	-34,354	-32.0	-25,192	-25.7
기타 세목	696,697	689,864	667,553	-29,144	-4.2	-22,311	-3.2

*자료: 기획재정부

이처럼 세수추계 모형에 기인한 세추오차가 발생하는 원인은 기존의 세수추계 모형이 대부분 평균이나 총량적 지표를 기반으로 세수를 추계하고 있으나, 앞서 언급한 세입기반 분포의 불균형 심화 등으로 세수추계 모형의 예측력이 저하되기 때문으로 보임. 또한 경제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기존의 시계열 모형의 설명력이 저하되는 것도 원인일 가능성이 있음.

주요 세목별로 세수추계 모형의 문제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면 다음과 같음.

양도소득세의 경우 정부는 2022년 예산안 추계시까지 사용된 '회귀모형'(과거 경제지표와 세수 간 관계로 전망)의 정합성이 저하되어, 2023년도 세입예산안 세수추계 시에는 2022년 7월까지의 세수실적, 진도비 등을 토대로 2022년 연간 세수를 재추계한 후 관련 경제지표(2023년 토지·건물가격 상승률 전망 등)의 증가율을 반영하는 '기준년 대비 증가율법' 방식으로 전환한 바 있음.

[2023년 자산세수 추계방식 개선사항[26]]

최근 급증한 세목은 회귀모형→기준년 대비 증가율법으로 전환

○ (**당초**) **자산세수**의 경우 **최근 세수급증**으로 **과거 경제지표**와 **세수 간 관계**로 전망하는 **회귀모형**의 **정합성**이 **저하**

○ (**개선**)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 일부 **자산세수**의 **추계방식**을 회귀모형에서 **기준년 대비 증가율법**으로 전환

■ **7월까지의 세수실적, 진도비** 등을 토대로 **금년 세수**를 **재추계**한 후 **자산유형별 증가율**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전망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자산시장이 급격히 위축[27]된 상황에서 '기준년 대비 증가율법' 역시 경제지표와 세수실적 간 관계를 체계적으로 반영하지 못하여, 2023년 대규모 세수오차(△12조1,637억원)가 발생하였고, 경제지표 실적치를 대입한 경우에도 적지 않은 규모의 오차(△6조 7,323억원)가 나타나 추계모형 개선의 필요성이 큰 실정임[28].

가격·거래량 증가율과 같은 거시변수에 의존하는 현행 거시적 추계모형의 경우 방법론적으로 간편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개인별 소득, 보유주택 수 및 보유기간에 따른 매매 행태, 대출 규제 등 정책변경에 따른 변수, 개인별로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 등을 반영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납세자의 개별 신고자료 등 미시자료를 활용한 추계모형을 구축하여 함께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29].

---

26) 2023년도 세입예산 추계분석 보고서

27) 순수토지매매거래량(만필지): ('21.11~'22.10) 72.4 → ('22.11~'23.10) 48.9 <△32.4%>
주택매매거래량(만호): ('21.11~'22.10) 57.1 → ('22.11~'23.10) 53.0 <△7.1%>

28) 이에 기획재정부는 2024년 예산안 세입 추계시에는 '기준년대비 증가율법'과 기존 '회귀모형'을 조합하여 추계한 바 있음.

29)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 2022년도 연구용역사업으로 수행된「양도소득세 세수추계 모형 설계에 관한 연구」 박상인. 2022.12.)에서는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추정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미시모형과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함께 활용할 것을 제안한 바 있음.

법인세의 경우 2021년 17조 909억원(24.3%), 2022년 28조 6,324억원(27.6%) 등 대규모 세수오차(초과세수)가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국세수입 세수오차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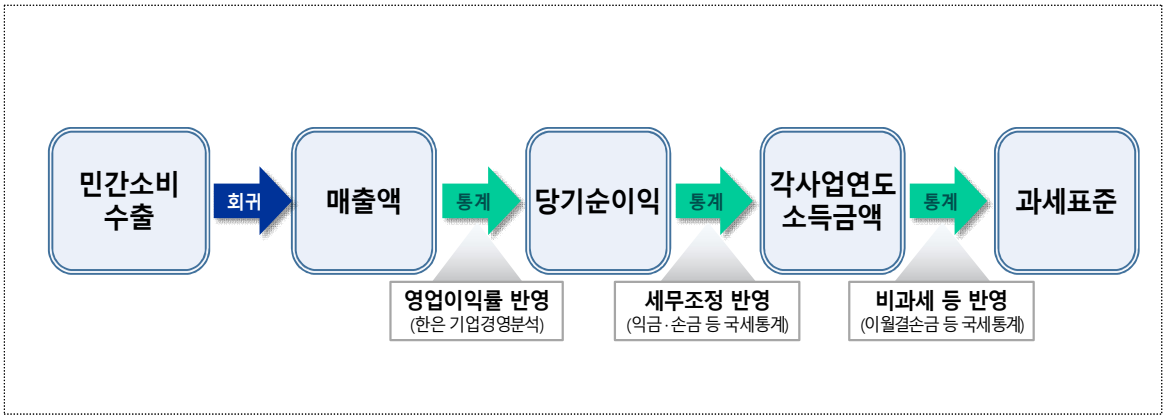
[최근 5년간 법인세 오차 현황]

(단위: 억원, %)

연도	본예산 (A)	징수실적 (B)	오차 (B-A)	오차율 (B-A)/B
2019년	792,501	721,743	△70,758	△9.8
2020년	644,190	555,132	△89,058	△16.0
2021년	533,054	703,963	170,909	24.3
2022년	749,380	1,035,704	286,324	27.6
2023년	1,049,969	804,195	△245,774	△23.4

기획재정부는 회귀모형(거시변수로부터 매출액을 회귀모형 사용을 통해 추정한 후, 국세통계 등 활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2023년도 법인세 신고분을 추계하였는데, 2022년 1분기 기업실적 속보치를 단순 연율화하는 방법으로 법인의 연간 이익을 추정하였고, 결과적으로 1분기 이후 발생한 경기 급변동에 따른 기업실적 감소사항[30]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법인세 신고분 추계모형('23년 예산안)[31]]



30) 코스피/코스닥 사장사 영업이익(조원, 한국거래소 12월 결산버빈 개별기준 집계치)
('22.1/4) 29.5 (2/4) 31.9 (3/4) 18.7 (4/4) 1.9 ('23.1/4) 8.1 (2/4) 1.9

31) 2023년도 세입예산 추계분석 보고서

이는 반도체 등 수출비중이 높은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의 영업이익이 글로벌 경제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커지는 점[32]과 법인세 납부 비중이 높은 대기업의 영업이익 악화가 법인세수에 끼치는 영향 등을 현행 세수추계모형이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법인세 추계 시 업종별 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매출액 규모별로 그룹을 구분하여 그룹별 특성에 맞게 추계모형을 정비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참고로, 근로소득세의 경우 종전까지는 소득계층 구분 없이 상용근로자 수 및 명목임금 상승률을 통해 근로소득세 전체 총급여를 추계하는 방식이었으나, 2023년 상하위 소득계층 간 실효세율 차이를 고려하여 총급여를 상위 10% 및 하위 90%로 구분하여 추계하였고, 이에 따라 추계 정확도의 개선[33]이 이루어진 바 있음.

[2023년 근로소득세 세수추계 개선사항[34]]

상 · 하위 소득계층의 실효세율 차이를 감안하여 추계

○ (**당초**) 소득계층 구분 없이 **상용근로자 수** 및 **명목임금 상승률**을 통해 **근로소득세 전체 총급여** 추계

○ (**개선**) **상 · 하위 소득계층 간 실효세율 차이**를 고려하여 **총급여**를 **상위 10%** 및 **하위 90%**로 구분하여 추계

(단위 : 억원, % / '20년 귀속 기준)

	전체	상위 10%	하위 90%
총급여(A)	7,463,094	2,336,397	5,126,697
결정세액(B)	441,641	322,706	118,935
실효세율(=B/A)	5.9%	13.8%	2.3%

32)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2022년 글로벌 경기둔화와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의 가격하락 등의 영향으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법인실적이 악화된 점을 법인세 신고분 세수 감소의 요인으로 전망한바 있음.(「2024년 및 중기 국세수입 전망」 5p. 국회예산정책처)

33) 2022년 근로소득세 세수오차: 97,478억원(20.4%), 2023년 근로소득세 세수오차: △14,774억원(△2.4%)

34) 2023년도 세입예산 추계분석 보고서

관세는 수입액 전망에 환율과 실효세율을 곱한 후 세법개정사항을 더하여 추계하고 있는데, 2023년도 수입액 실적이 수입액 전망에 비해 급격히 감소하였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액이 급격히 증가[35]함에 따라 세수오차(△3.4조원)가 발생하였음.

[2023년도 관세세입 추계식]

	수입액	× 환율	× 실효세율	+ 세법개정	
전망치	7,186억불	1,290원/$	1.04%	+10,847억원	본예산: 107,237억원
실적치	6,426억불	1,305원/$			실 적: 72,883억원

관세환급액의 경우 2021년 3.4조원 규모에서 2023년 5.4조원 규모로 최근 3년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관세 세입에 끼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현행 추계방식에서는 별도의 독립변수로 추계하지는 않고 최근 추세를 반영하여 정해지고 있는 실효세율[36]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고려되고 있는 실정임.

[최근 5년간 관세세입 및 관세환급금]

(단위: 억원,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징수총액(A)	122,478	107,227	117,050	149,090	127,352
관세환급액(B)	**43,657**	**36,642**	**34,780**	**45,849**	**54,469**
관세세입(A-B)	78,821	70,585	82,270	103,241	72,883
징수총액 대비 환급금 비율(B/A)	35.6	34.2	29.7	30.8	42.8

관세환급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 관세 환급대상, 요건, 환급신청 기간과 절차 등을 정하고 있고, 주요 환급금 발생 대상 업종의 최근 수출·수입액 등을 바탕으로 보다 정밀한 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바, 관세환급금을 실효세율과는 별도로 추계하여 관세 세입추계시 활용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35) 수입액(억불) : ('23 전망) 7,186 → ('23 실적) 6,426
환급액(억원) : ('22) 45,849 → ('23) 54,469
36) 각종 공제, 면세점제도, 감면혜택 등을 고려한 실제 세부담률

이처럼 세수오차의 상당 부분이 세수추계모형의 설명력 저하로 발생한 것인 만큼 세수추계모형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소득, 소비, 임금의 분포 특성을 고려한 미시적 정보를 세수추계에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그리고 세수추계 모형의 기계적 적용에만 머무르지 않고, 세입의 변동성 확대 추세를 감안하여 세수전망치를 전문가적 통찰력을 바탕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세수추계 전망의 정확도 제고 노력과 함께 세입의 변동성 확대에 따른 재정성과 및 재정건전성의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적인 세입변동과 구조적인 세입변동을 구분하고 이를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지출과 수입의 비대칭적 탄력성에 의한 재정구조의 안정성 저하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3) 조세지출 결산 사항 및 세법 심의에 따른 변동사항의 조세지출 기본계획 반영 필요(국세수입, 세제실)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수립하는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직전 연도 조세지출 결산 사항과 법률안 심의 결과에 따른 조세지출 변동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37]는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조세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각 부처가 신규 조세지출을 건의하고 기존 조세특례를 평가할 때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임.

이러한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수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직전 연도의 조세지출 실적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성과관리를 충실히 수행하고, 해당 연도의 조세지출 전망치를 최대한 정확하게 예측하여 기본계획의 적실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재 기획재정부가 공개하고 있는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직전 연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른 수치(직전 연도 조세지출 전망 및 해당 연도 조세지출 전망)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등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024년 조세지출 기본계획 상 조세지출 현황]

(단위: 조원, %)

구 분	'22년(실적)	'23년(전망)	'24년(전망)
▪ 국세감면액(A)	63.5	69.5	77.1
▪ 국세수입총액(B)*	422.9	369.1	394.9
▪ 국세감면율[A/(A+B)]	13.0	15.8	16.3
▪ 국세감면한도**	14.6	14.3	14.6
		직전 연도 조세지출	해당 연도 조세지출

첫째, 조세지출 기본계획 수립 시 직전 연도 조세지출 결산 사항을 확정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37)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조세특례의 사전·사후관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조세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2024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서 수치를 인용한 조세지출예산서는 2023년 9월 1일 제출[38]된 것으로, 조세지출예산서 제출 시에는 2023년 조세지출 규모가 확정되지 않아 단순 전망치만 제출하나, 2024년 조세지출 기본계획 수립 시점에서는 2023년 조세지출 결산 사항을 확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재정지출에 대한 결산 사항은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작성함에도 불구하고[39], 재정지출과 사실상 유사한 효과를 가져오는 조세지출에 대한 결산 사항은 조세지출예산서 제출 시점인 다음 연도 8월이 되어서야 작성하고 있음[40]. 이는 재정자원 운용의 종합적인 효과 파악 및 분석에 한계를 초래하여 결산의 실효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조세지출 기본계획 발표 시 직전 연도 조세지출 결산 사항을 포함하여 이러한 문제를 일부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둘째, 직전 연도 정기회에서 법률안을 심의·의결한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연도의 조세지출 전망치를 다시 추계하여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정부는 매년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해당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것을 가정하여 다음 연도 조세지출을 전망하고 있으며, 해당 수치는 조세지출예산서에 반영되어 제출되고 있음.

그런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수정 반영되거나 반영되지 않는 정부 제출 세법개정안 내용이 다수 존재할 뿐 아니라, 의원 발의 세법개정안 역시 다수 의결되고 있음. 따라서 조세지출 전망치는 당초 정부가 전망한 수치와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조세지출 기본계획 수립 시 직전 연도 조세지출예산서 상의 전망치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음.

이처럼 조세지출 전망치의 정확성이 저하될 수 있는 문제점을 방치하는 것은 '조세지출에 대한 합리적 운영방향 설정'이라는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제도적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38) 2024년도 예산안과 함께 제출됨

39) **「국가재정법」**

제59조(국가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40) 조세지출예산서 제출 시점

(4) 조세지출 예비타당성평가 제도의 합리적 운영 필요 (국세수입, 세제실)

현재 조세지출을 합리적이지 아니한 사유로 평가를 면제하거나, 평가를 실시하였음에도 법안 제출 시 그 결과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예비타당성평가 제도의 취지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음.

「조세특례제한법」은 정부가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를 신규로 도입하거나 기존 조세특례의 내용을 변경하여 추가되는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 전문적인 조사·연구기관에서 조세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를 첨부하도록 하는 이른바 "조세지출 예비타당성평가"(이하 "예비타당성평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41].

동 제도의 취지는 대규모 조세지출이 수반되는 조세특례를 도입하거나 변경하기에 앞서 사전 평가를 시행함으로써 국가재정관리를 강화하고, 조세지출의 형평성 및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률안 제출 시 이러한 평가 결과를 첨부하도록 하는 것은 국회에서 이를 고려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외에도 관계기관·언론·국민도 이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그런데 현재 예비타당성평가 제도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합리적이지 아니한 사유로 평가를 면제하거나 평가를 실시하였음에도 법안 제출 시 그 결과를 첨부하지 않고 별도로 제출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

41)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조세특례의 사전·사후관리) ⑤ 정부는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는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조사·연구기관에서 조세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대해 평가한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하려는 경우로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사항
2.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
3. 국제대회나 국가행사 등 지원 기간이 일시적이고 적용기한이 명확하며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시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는 사항
4.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기존 조세특례를 개선하려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제4항에 따른 평가 내용에 조세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인정하는 사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5조(조세특례의 사전·사후관리) ⑥ 법 제142조제5항을 적용할 때에는 기존 조세특례의 내용을 변경하는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로서 기존 조세특례 금액에 추가되는 연간 조세특례 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⑨ 특례세율의 변경과 적용대상의 추가 등 기존 조세특례의 내용을 변경하는 법률안은 법 제142조제5항에 따른 조세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는 법률안으로 본다. 다만,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단순히 연장하는 경우는 조세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는 법률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첫째, 예비타당성평가 면제 기준이 모호하여 면제 사유가 합리적이지 아니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상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유[42] 중 하나인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이라는 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며, 그 결과 2023년 예비타당성평가가 면제된 6건의 항목은 모두 해당 사유를 이유로 평가가 면제되었음.

[2023년 조세지출 예비타당성평가 면제 항목]

조세지출 항목	면제 사유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가속화 대응
임시투자세액공제	기업의 투자심리 악화에 따른 경기침체 대응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출산·양육 지원을 통해 저출산 심화에 대응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소상공인 지원 및 장기소비 위축 대응
고액기부 세액공제 한시 상향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으로 소득격차 확대 등 대응
개인택시용 간이과세자 공급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물가인상 우려 등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이 중 “고액기부 세액공제 한시 상향” 항목에 대하여는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으로 소득격차 확대 등에 대응”한다는 이유로 평가가 면제되었는데,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과 실제 기부금 증액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43]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이라는 정책과제는 한시적인 세액공제 확대로서 단기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정책과제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 추산 620억원의 세수감소를 수반하는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를 면제할 만큼 시급한 사안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임.

이처럼 행정부가 예비타당성평가를 회피할 수 있는 것은 과도하게 추상적인 면제요건 때문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42) **제142조(조세특례의 사전·사후관리)** ⑤ 정부는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는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조사·연구기관에서 조세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대해 평가한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하려는 경우로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사항
2.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
3. 국제대회나 국가행사 등 지원 기간이 일시적이고 적용기한이 명확하며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시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는 사항
4.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기존 조세특례를 개선하려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제4항에 따른 평가 내용에 조세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인정하는 사항

4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4151호)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

둘째, 예비타당성평가 결과를 법안 제출 시 첨부하지 아니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5항[44]은 정부는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는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조사·연구기관에서 조세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대해 평가한 결과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정부는 예비타당성평가 결과를 법률안 제출 시 첨부하지 아니하고, 별도 송부하고 있는데, 법안제출과 별개로 제출하는 방식은 평가한 결과를 '첨부'하도록 한 법률규정에 부합하지 않고, 법률안과 함께 예비타당성평가 결과를 한눈에 알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이와 같은 점들은 조세지출 예비타당성 평가의 실효성을 저해하여 제도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데 한계로 작용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44)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조세특례의 사전·사후관리) ⑤ 정부는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는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조사·연구기관에서 조세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대해 평가한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생 략)

(5) 미수납액 관리 강화 필요(국세수입, 세제실)

2023년도 국세 미수납액 및 미수납액 순증가액이 최근 5년간 계속 증가하여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 세수 감소의 한 요인이 되고, 납세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기획재정부는 미수납액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최근 5년간 미수납액 및 불납결손액 규모를 살펴보면, ① 미수납액은 2019년 41조 3,910억원에서 매년 증가하여 2021년 50조 4,965억원, 2023년에는 63조 9,714억원으로 최근 5년간 가장 큰 규모임. ② 불납결손액의 경우 2019년 3조 7,568억원에서 2021년 4조 3,694억원까지 증가하였다가, 2023년에는 2조 2,835억원으로 감소하였음.

[최근 5년간 미수납액 및 불납결손액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미수납액	413,910	441,835	504,965	558,488	639,714
불납결손액	37,568	38,624	43,694	18,290	22,835

자료: 기획재정부

이전년도 미수납액 이월분을 제외한 각 연도별 미수납액 순증가액 또한 매년 증가하여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는데, 2019년 2.4조원 규모에서 2021년 6.3조원, 2023년에는 8.1조원으로 나타남.

[연도별 미수납액 순증가액]

(단위: 조원)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4	2.8	6.3	5.4	8.1

자료: 기획재정부

2023년 미수납액 발생 세목별로 살펴보면, 소득세 신고분이 5조 9,375억원, 법인세 1조 5,978억원, 부가가치세가 9조 115억원 등으로 나타났음.

사유별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① 체납자 재력이 부족하거나 체납자가 주민등록 말소 등으로 행방불명된 상황 등으로 거두지 못한 경우가 52조 3,44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② 법령이나 계약상의 납기 등이 지나지 않은 납기미도래에 따른 미수납액이 5조 8,423억원이며, ③ 체납액 중 소송 진행 중이거나 압류·매각이 유예되어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강제징수가 유예된 정리유예는 2조 7,686억원, ④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

에 심한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했을 때 등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징수를 유예한 징수유예 규모는 1조 6,689억원임.

[2023년도 각 세목별 미수납액·결손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미수납액						결손
	징수유예	납기미도래	정리유예	체납자재력 및 거소불명	기타사유	소계	
합계	1,668,925	5,842,325	2,768,681	52,344,514	1,346,938	63,971,384	2,283,503
소득세-신고	749,150	1,097,791	186,390	3,904,219	-	5,937,550	6,449
소득세-원천	12,020	74,629	5,968	443,414	-	536,031	652
법인세	268,516	257,996	39,293	1,332,053	-	1,897,859	760
상속세	41,389	85,632	56,021	127,840	25,163	336,044	-
증여세	62,460	89,063	409,041	177,607	-	738,171	3
부가가치세	275,420	3,468,121	175,362	5,083,359	9,238	9,011,501	25,469
개별소비세	2,173	235,124	80,900	11,085	58,712	387,995	37
주세	1,207	18,384	-	2,470	18,340	40,401	497
증권거래세	58	664	448	5,764	-	6,934	2
인지세	135	84	-	63	-	282	-
관세	4,217	314,230	19,824	12,666	1,154,974	1,505,912	1,486
방위세	-	-	-	394	0	394	13
교통세	17	1,952	-	13,132	2,551	17,652	7,057
교육세	714	18,841	10,177	25,441	6,030	61,202	3,025
농특세	18,606	30,126	5,947	189,405	6,348	250,431	4,578
종합부동산세	130,067	133,702	25,129	947,053	-	1,235,951	8,755
과년도수입	102,775	15,985	1,754,180	40,068,548	65,583	42,007,073	2,224,721

주) 기타사유는 연부연납이나 물납허가 등 승인처리가 진행 중인 금액임.
자료: 기획재정부

이와 같은 재정수입의 미수납은 채무자 거소불명, 소멸시효 완성 등 다양한 사유로 수입 징수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는 있으나, 체납자 재력 및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고액 체납이 주된 세목에서 미수납으로 이어지는 것은 납세회피를 위한 재산은닉 때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부가가치세와 같은 간접세의 경우에는 담세자인 소비자가 이미 부담한 세금을 납세의무자인 사업자가 횡령한 것으로도 볼 수 있음.

미수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세수 감소의 한 요인이 되고, 불납결손으로 이어지는 경우 납세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기획재정부는 미수납액 관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6) 존속기한 규정에 부합하는 지침의 개정 및 재발령 필요 (정부출자수입, 국고국)

< 현 황 >

「정부출자수입」은 정부가 일반회계의 지분으로 가지고 있는 정부출자기업의 당기순이익에 대한 배당금으로, 2023회계연도 예산액은 1조 787억 4,900만원이었으나, 예산액 대비 87.2%인 9,411억 9,6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수납되었음.

[2023회계연도 정부출자수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목명	2023							2024
	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예산액
정부출자수입 (52-521)	1,078,749	-	1,078,749	941,196	941,196	-	-	982,344

< 검토의견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배당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의 존속기한이 경과하기 이전 지침의 재발령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 지침을 뒤늦게 제정하였으므로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정부출자수입」은 「국유재산법」 제4장 제8절(정부배당), 동법 시행령 제4장 제8절(정부배당)에 근거하여 정부가 출자한 기업의 순이익을 배당받는 것으로서 정부배당 예산 산정 및 결정·징수절차는 다음과 같음.

[정부출자수입 예산 산정 절차((N-1)년)]

구분		절차
(N-1)년	5~7월	(정부배당대상기업) 배당기초자료 제출 *5월 31일, 7월 31일까지 2회 제출
	7월 말	(기획재정부 및 소관부처) 정부출자수입 예산안 수립·제출
	8~12월	(국회) 정부출자수입 예산 확정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정부출자기관 배당금 결정 및 징수 절차(N년)]

구분		절차
N년	1월 말	(정부배당대상기업) 가결산자료 토대로 배당기초자료 제출
	2월 중	정부배당안 실무 협의
	2월 말	정부배당협의체 회의를 통해 정부배당성향 협의
	2월 말 ~ 3월	(정부배당대상기업) 주주총회, 이사회 등을 거쳐 결산 승인 및 배당금액 확정
	3월 ~ 4월	(정부배당대상기업) 정부배당금 납부(결산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
	5월	(기획재정부) 배당실적 국회보고 및 공표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국유재산법」과 동법 시행령은 정부배당대상기업 및 출자재산의 적용범위, 정부배당결정의 원칙과 정부배당대상기업의 제출 자료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배당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와 방법은 「정부배당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음. 실제로 정부배당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한 배당협의체, 배당금 수납 시기 및 배당실적 공표 등에 관한 사항은 「정부배당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에 근거함.

한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서는 훈령의 존속기한을 설정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훈령이나 예규가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고 있음. 또한, 중앙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존속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①존속기한이 설정된 경우 존속기한을 개정하거나 해당 훈령·예규등을 폐지한 후 재발령 또는 ② 훈령·예규등을 계속 시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훈령·예규 등을 폐지하도록 하고 있음[45].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2020년 6월 30일「정부배당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 3년의 존속기한을 설정하였으며 2023년 6월 30일까지 「정부배당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을 개정 또는 재발령하거나 위 지침을 폐지했어야 함.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2024년 6월까지 「정부배당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을 개정 또는 재발령하지 않아 위 지침은 실효되었으며 2024년 7월 3일에 이르러 동일한 내용의 지침을 다시 제정하였음. 「정부배당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의 경우 일반 국민에 대한

---

45)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훈령·예규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훈령·예규등을 제정하는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해당 훈령·예규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령·예규등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재검토기한을 설정할 수 있다.
1. 법령의 위임에 따라 발령되는 훈령·예규등
2. 국제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의 사유로 훈령·예규등을 폐지·제정하기 곤란한 훈령·예규등으로서 법제처장과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기로 협의한 훈령·예규등

② 중앙행정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훈령·예규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제처장과 협의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을 설정할 수 있다.
1. 상위 법령에 3년 이상의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이 설정된 경우로서 상위법령과 다른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
2. 해당 훈령·예규등의 조항에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이 설정된 경우
3. 그 밖에 해당 훈령·예규등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등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을 3년 이내로 정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훈령·예규등의 필요성 등을 재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훈령·예규등을 계속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가. 존속기한이 설정된 경우: 존속기한을 개정하거나 해당 훈령·예규등을 폐지한 후 재발령
나. 재검토기한이 설정된 경우: 재검토기한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개정
2. 훈령·예규등을 계속 시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 해당 훈령·예규등을 폐지

규제이기보다 정부 출자에 따른 배당 절차를 규정한 것이므로 폐지될 경우 배당 과정에서 정부와 기업 간 협의나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음. 따라서 지침이 실효되기 이전에 재발령을 통해 규정의 효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임.

하지만 2024년 7월에 이르러 뒤늦게 「정부배당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이 다시 제정되면서 2024년 배당수입 결정 및 징수 과정에서 이루어진 배당협의체 협의·조정, 배당액 수납은 「정부배당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에 근거한 명확한 절차적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행해진 문제가 나타남.

[정부배당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주요 내용]

주요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정부배당대상기업의 정부배당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 대상)** 이 지침은 일반회계의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재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출자재산에 관한 정부배당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4조 및 제6조에 대하여는 특별회계 및 기금의 중앙관서 소관 국유재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출자재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배당협의체 운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배당대상기업의 정부배당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배당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배당협의체는 기재부 제2차관, 재정관리관, 예산실장, 차관보와 특별회계·기금소관 중앙관서의 소속 고위공무원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며, 의장은 제2차관, 간사는 국고국장으로 한다. ③ 배당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조정한다. 1. 정부의 배당정책에 관한 사항 2. 일반회계 정부배당대상기업의 배당수준에 관한 사항 3. 국유재산법 제65조의5제2항에 따라 특별회계 및 기금의 중앙관서소관 정부배당대상기업의 정부배당 협의에 관한 사항 ④ 배당협의체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필요한 경우 해당 정부배당대상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정부배당에 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배당확정)** 일반회계 소관 정부배당대상기업은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라 배당협의체에서 정한 각 정부배당대상기업의 정부배당수준에 관한 사항을, 특별회계·기금소관 정부배당대상기업은 제4조제3항제3호에 따라 배당협의체에서 협의한 사항을 고려하여 이사회, 주주총회, 정부의 결산승인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배당을 확정한다. **제7조(배당금 수납)**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배당금 납부기한 7일전까지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 정부배당대상기업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정부배당대상기업은 「상법」 제464조의2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결산이 승인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배당금을 현금으로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배당금의 납입 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다른 법령에 따라 주식·현물 배당이 가능한 정부배당대상기업이 주식·현물의 비율, 종류 및 평가, 발행·물납의 시기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배당금을 주식발행 또는 현물로 납입할 수 있다. **제8조(배당실적 공표)**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유재산법 제65조의6에 따라 배당금의 수납이 완료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정부배당대상기업의 배당실적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9조(존속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3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추후 훈령 제·개정 시 존속기한이 경과하기 이전에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라. 세출 결산 검토의견

(1)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의 내실있는 운영 및 이월 관행 개선 필요 (국가경쟁력 분석 및 강화전략 수립, 경제정책국)

< 현 황 >

「국가경쟁력 분석 및 강화전략 수립 사업」은 IMD•WEF가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평가 분석 및 취약과제 등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방안을 연구하고 경제정책방향 수립 및 홍보를 지원하는 사업임. 2023년 예산액은 3억 500만원으로, 이 중 2억 6,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700만원을 불용하였음.

「국가경쟁력 분석 및 강화전략 수립 사업」의 내역사업인 「국가경쟁력 분석 및 강화전략연구 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3,3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억 4,800만원 중 1억 400만원을 집행하였고, 4,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3회계연도 국가경쟁력 분석 및 강화전략 수립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2023								2024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국가경쟁력 분석 및 강화전략 수립 사업(1133-301)	305	33	-	-	338	269	62	7	925
- 국가경쟁력 분석 및 강화전략 연구	**115**	**33**	**-**	**-**	**148**	**104**	**43**	**1**	**135**
- 경제정책방향 수립 및 홍보 지원	190	-	-	-	190	165	19	6	190
- 빅데이터 기반 실시간 경기진단 시스템 구축	-	-	-	-	-	-	-	-	600

자료 : 기획재정부

< 검토의견 >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의 내실 있는 운용을 통해 국가경쟁력 순위가 하락한 분야나 부문의 원인을 분석하고 종합적인 국가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정책연구용역이 반복적으로 이월되지 않고 연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첫째,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의 내실 있는 운용을 통해 국가경쟁력 평가와 결과분석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임

기획재정부 훈령인 「국가경쟁력분석 및 제고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국가경쟁력 및 국제평가지수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조정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소속으로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46], 협의회는 반기별로 개최하도록 규정[47]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2021년 6월 제10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의 IMD 국가경쟁력 순위는 2020년, 2021년 23위로 과거 연도와 비교해 순위가 상승하다가, 2022년 27위, 2023년에는 28위로 국가경쟁력 순위가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24년 6월에 발표한 IMD 국가경쟁력 순위는 20위로 상승하였음.

[최근 10년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순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IMD	25	29	29	27	28	23	23	27	28	20

자료 : 기획재정부

46) 제3조(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진하고 있는 국가경쟁력 및 국제평가지수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조정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소속으로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국가경쟁력 점검 및 제도개선과제 발굴
2. 국가경쟁력 결정요인 분석 및 국제평가지수 제고를 위한 전략 수립
3. 중앙행정기관의 국가경쟁력 및 국제평가지수 관련 업무에 대한 지원사항의 협의, 업무중복 및 애로사항 해소 등의 총괄·조정
4. 중앙행정기관의 국가경쟁력 및 국제평가지수 관련 업무의 추진 사항에 대한 점검·평가
5. 중앙행정기관의 국가경쟁력 및 국제평가지수 관련 업무의 수범사례 발굴 및 전파·확산
6. 중점관리가 필요한 새로운 국제평가지수의 선정·관리
7. 그 밖에 국가경쟁력 및 국제평가지수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7) 제8조(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는 반기별로 개최한다. 다만, 협의회의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IMD 국가경쟁력 순위는 4대 분야(인프라, 경제성과, 기업효율성, 정부효율성) 별로 순위를 발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인프라 분야가 2023년 16위에서 2024년 11위, 기업효율성 분야가 33위에서 23위로 10계단 상승하면서 종합순위(20위) 상승을 이끈 반면, 경제성과 분야는 14위에서 16위로 2계단, 정부효율성 분야는 38위에서 39위로 1계단 하락한 결과를 보였음.

특히, 정부효율성 분야에서는 재정 부문, 제도여건 부문, 기업여건 부문, 사회여건 부문 등에서 순위가 상승한 반면, 조세정책 부문은 2023년 26위에서 2024년 34위로 하락하였는바, 협의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국가경쟁력 순위가 하락한 분야나 부문의 원인을 분석하고 범부처 인식을 공유하여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최근 5년간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 개최실적]

연도	차수	개최시기	안건	참석자
2021	제10차	2021.6.18	- 2021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결과 분석 - IMD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강약요인 및 향후계획	기재부 1차관 관계부처 차관급 민간위원
2020	제9차 (서면)	2020.12.30	- WEF, 코로나 19 위기 특별판 보고서	기재부 1차관 관계부처 차관급 민간위원
	제8차	2020.6.17	- 2020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결과 분석 - IMD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추가과제 및 향후계획	기재부 1차관 관계부처 차관급 민간위원
2019	제7차	2019.10.30	-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분석 - WEF 생산물시장 평가 결과 및 대응방향	기재부 1차관 관계부처 차관급 민간위원
	제6차	2019.6.18	-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분석 - WEF 생산물시장 평가 결과 및 대응방향	기재부 1차관 관계부처 차관급 민간위원

자료 : 기획재정부

둘째, 정책연구용역의 이월이 반복되지 않도록 연구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발주 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국가경쟁력 분석 및 강화전략 연구 사업」의 정책연구비가 연례적으로 이월되고 있는데, 2022년의 경우 3건의 정책연구용역이 모두 12월에 발주되어 2023년으로 이월되었고, 2023년에 발주한 3건의 정책연구용역도 모두 6월, 9월, 10월에 늦게 발주됨에 따라 2024년으로 이월된 것으로 보이는바, 연구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연도 내에 용역이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함.

[국가경쟁력 분석 및 강화전략 연구 사업 정책연구비 집행내역]

(단위: 천원)

연도	연구과제명	연구수행기관	연구수행기간	예산액
2023	- 빅데이터를 활용한 실시간 경기진단과 경기예측을 위한 시스템 구축	한국개발연구원	2023.6.19.~2024.1.31	50,000
	- 2023년 IMD 국가경쟁력 결과분석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3.9.25~2024.2.23	30,000
	- 부동산 시장 변동성 완화방안	한국개발연구원	2023.10.25~2024.6.30	30,000
2022	- 2022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체계 및 결과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2.12.12~2023.3.31	30,000
	- 디지털 자산의 거시금융경제 영향 분석과 향후 정책방향 제언	동국대 산학협력단	2022.12.12~2023.3.31	40,000
	- 국가경쟁력제고를 위한 정책금융 개편방향	한국개발연구원	2022.12.12~2023.6.9	40,000

자료 : 기획재정부

(2) 물가감시센터 원가분석 등 용역보고서 공개 확대 필요 (소비자물가관리, 경제정책국)

< 현 황 >

「소비자물가관리 사업」은 물가조사 및 원가분석 등 소비자단체의 가격감시 기능을 지원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하려는 사업으로, 2023년 예산 10억 3,500만원 중 9억 7,100만원을 집행하고 6,400만원을 불용하였음.

동 사업은 특별물가조사, 물가감시센터, 행정성경비 등 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물가감시센터 사업은 가격조사 및 원가분석을 통해 소비자 생활물가를 모니터하고 생산자의 부당한 가격 인상을 견제하는 것으로 2023년 예산 7억 1,6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음.

특별물가조사 사업은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대한 소비자단체의 가격 관련 연구·조사 지원을 통해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과 물가안정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2023년 예산 2억 7,800만원 중 2억 1,400만원이 집행되고 6,4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3회계연도 소비자물가관리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2023								2024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소비자물가관리 사업 (1131-302)	1,035	-	-	-	1,035	971	-	64	812
- 특별물가조사	278	-	-	-	278	214	-	64	188
- 물가감시센터	716	-	-	-	716	716	-	-	583
- 행정성경비	41	-	-	-	41	41	-	-	41

자료 : 기획재정부

< 검토의견 >

기획재정부는 물가감시센터에서 수행하는 원가분석 보고서 공개 확대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와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생활필수품, 가공식품, 개인서비스, 공공서비스 등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된 품목의 원가분석을 통해 소비자 생활물가를 모니터하고, 부당하게 오른 품목이 없는지 모니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임.

기획재정부는 물가감시센터에 매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48], 보조금 예산은 회계사 등 전문가를 통한 원가분석 용역비, 간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인건비, 생필품 등 가격조사비, 물가감시 활동 및 물가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에 소요되는 예산임

한편, 23년에는 물가감시센터에서 회계사 등(회계사 4명, 교수 2명)을 통해 17건의 원가분석 등을 수행하였는데, 물가감시센터(https://kcprice.or.kr) 홈페이지[49]를 통해 공개되고 있는 보고서는 10건에 불과하며, 21년부터 23년까지 수행한 62건의 원가분석 보고서 중 21건(2024년 7월말 기준)만 공개되고 있어 누적공개율은 33.9%로 낮은 실정임.

소비자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분석보고서가 대부분 비공개로 분류되고 있는바, 생필품 등의 원가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분석결과의 공개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최근 3년간 물가감시센터 원가분석 보고서 공개 내역]

(단위 : 건, %)

2021			2022			2023			2021-2023		
수행	공개	공개율	수행	공개	공개율	수행	공개	공개율	수행	공개	공개율
25	7	28.0	20	4	20.0	17	10	58.8	62	21	33.9

자료 : 기획재정부

48) 소비자기본법 제32조(보조금의 지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록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49) 소비자물가정보서비스는 서울시 25개구의 300개 유통업체와 경기도 10개 지역의 120개 유통업체에서 생활필수품 39개 품목에 대해 가격조사를 실시

[2023년 물가감시센터 원가분석 등 사업수행 내역]

(단위: 천원)

원가분석 등 사업수행	홈페이지 공개여부	공개일자
서울시 대중교통요금 인상 타당성 분석	**공개**	2024.6.25
소주 가격 분석	비공개	-
일반의약품 가격차이 분석	**공개**	2024.5.3
배달앱 수수료 분석	비공개	-
은행 가계 대출금리 분석	비공개	-
중도상환 수수료 분석	비공개	--
국제곡물 가격과 국내식품 물가 동향 분석: 밀가루	**공개**	2024.5.3
국제곡물 가격과 국내식품 물가 동향 분석: 대두/옥수수	**공개**	2024.5.3
국제곡물 가격과 국내식품 물가 동향 분석: 2차 업체	**공개**	2024.5.3
이유식 원가와 소비자집단소송 분석	**공개**	2024.6.25
프랜차이즈 치킨 가격 인상의 적정성 검토	**공개**	2024.5.3
가공식품 소비행태 및 가격 동향	**공개**	2024.5.3
도시가계 소비지출품목 변화 및 가중치 분석	**공개**	2024.5.3
생활필수품 원가분석 보고서	비공개	-
국제항공료 요금인상 분석	비공개	-
지방상수도 요금 분석	**공개**	2024.6.25
지역간 자동차 엔진오일 교환비용의 유의성 분석	비공개	-

자료 : 기획재정부

(3) 비목별 용도에 부합하는 예산 편성·집행 필요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운영,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 현 황 >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운영 사업」은 수출·수주 애로를 한 곳에서 신속하게 해결하는 민관합동 지원체계인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임. 2023년 2월 한시조직으로 신설됨에 따라 예비비를 배정받아 2023년 예산현액은 7억 8,100만원으로, 이 중 7억 1,500만원을 집행하였고, 6,600만원을 불용하였음.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운영 사업」의 2023년 임차료 예산현액은 2억 1,000만원으로, 2억 700만원을 집행하였고 300만원을 불용하였으며, 2023년 일반용역비 예산현액은 9,000만원으로, 8,900만원을 집행하였고 1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3회계연도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운영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 세목명)	2023								2024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운영 사업(1331-305)	-	-	-	781	781	715	-	66	1,110
- 일반수용비(210-01)	-	-	-	189	189	186	-	3	202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	-	36	36	4	-	32	46
- 특근매식비(210-05)	-	-	-	14	14	1	-	13	12
- 임차료(210-07)	-	-	-	**210**	**210**	**207**	-	**3**	**432**
- 일반용역비(210-14)	-	-	-	**90**	**90**	**89**	-	**1**	-
- 기타운영비(210-16)	-	-	-	7	7	5	-	2	9
- 국내여비(220-01)	-	-	-	28	28	23	-	5	32
- 국외업무여비(220-02)	-	-	-	68	68	67	-	1	124
- 사업추진비(240-01)	-	-	-	18	18	18	-	-	35
- 관서업무추진비(240-02)	-	-	-	51	51	51	-	1	53
- 일반연구비(260-01)	-	-	-	-	-	-	-	-	100
- 정책연구비(260-02)	-	-	-	30	30	30	-	-	25
- 공사비(420-03)	-	-	-	40	40	34	-	6	40

< 검토의견 >

기획재정부는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하여 비목별 용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부적정한 예산 집행을 하였으므로, 향후 적절한 비목으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예산 편성·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기획재정부는 2023년 2월 한시조직으로 신설된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운영을 위한 경비를 예비비로 편성·집행하면서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하 "예산집행지침")의 비목별 용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예산 집행을 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임.

첫째, 관리용역비(210-15)로 집행하여야 할 청사 시설관리비를 임차료(210-07)로 집행하였음.

기획재정부는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의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코엑스와 2023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임차료와 관리비를 합산하여 총 1억 3,366만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임차료(210-07) 비목으로 전액 집행하였음.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2023년 사무실 임대차 계약현황]

(단위: 만원)

계약상대방	임차기간	계약금액		
		임차료	기본관리비	계
㈜코엑스	2023. 1. 1 ~ 12. 31	8,188	5,178	13,366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그런데 예산집행지침 상 비목별 용도에 따르면 임차료(210-07) 비목으로는 임대차계약에 의한 토지와 건물 등의 임차료, 각종 시설과 장비의 리스료, 차량 임차료 등을 집행하도록 하고 있고, 청사의 시설관리용역 등 관리업무를 외부 민간업체에 대행시키는 비용은 관리용역비(210-15)로 집행하도록 하고 있음.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이 임차료에 포함하여 집행한 기본관리비는 청사 시설관리를 외부 민간업체에 대행시키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관리용역비로 구분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이를 임차료 비목으로 집행한 것은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하여 부적정한 것으로 보임.

둘째, 일반연구비(260-01)로 집행하여야 할 홈페이지 구축 용역 비용과 관리용역비(210-15)로 집행하여야 할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 비용을 모두 일반용역비(210-14)로 집행하였음.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일반용역비는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 일상적인 업무를 대행시키는 비용으로, 이와 구분하여 전산개발 용역은 일반연구비로 집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또한, 전산운영 등의 관리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민간업체에 대행시키는 비용은 관리용역비로 집행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전산개발 용역인 홈페이지 구축비용은 일반연구비로, 전산운영 용역인 홈페이지 유지보수비용은 관리용역비로 집행하여야 하며, 이를 일반용역비로 집행한 것은 예산집행지침에 규정된 비목별 용도에 맞지 않아 부적정한 것으로 보임.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운영 사업의 잘못된 비목 집행 사례]

(단위: 백만원)

집행내역	집행액	집행한 비목	적절한 비목	비고
임차사무실 관리비	52	임차료(210-07)	관리용역비(210-15)	세목조정 후 집행 필요
홈페이지 구축	19	일반용역비(210-14)	일반연구비(260-01)	자체전용 후 집행 필요
홈페이지 유지·보수	9	일반용역비(210-14)	관리용역비(210-15)	세목조정 후 집행 필요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그런데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운영 사업」의 2023년 예산에는 적절한 비목인 관리용역비와 일반연구비가 편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는 해당 사업예산에 대한 예비비 배정 시 비목별 예산편성이 면밀하지 못하였고, 집행과정에서도 비목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여 세목조정 등 예산변경 편성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임.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운영 사업 운영비 및 연구용역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목	세목	금액
운영비(210)	일반수용비(210-01)	189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36
	특근매식비(210-05)	14
	임차료(210-07)	210
	일반용역비(210-14)	90
	기타운영비(210-16)	7
연구용역비(260)	정책연구비(260-02)	30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향후 기획재정부는 예산 집행이 적정한 비목으로 이루어지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4) 조세개혁추진단 운영 관련 예비비 불용과다 주의 (조세개혁추진단 운영, 세제실)

< 현 황 >

「조세개혁추진단 운영」은 상속세의 유산취득세[50] 방식으로의 전환 및 종합부동산세·재산세 간 연계성 제고 등 조세개혁 관련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임시조직인 조세개혁추진단을 운영하는 사업임. 동 사업은 당초 2023년도 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으나, 2023년 3월 24일 예비비 13억 8,700만원이 편성되며 세부사업이 신설되었으며,

예산현액 13억 8,700백만원 중 1억 1,900만원이 집행되었고, 5,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2억 1,8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3회계연도 조세개혁추진단 운영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조세개혁추진단 운영 (2131-310)	-	-	-	-	1,387	1,387	119	50	1,218	736

< 검토의견 >

예비비로 편성된 조세개혁추진단 운영 예산은 2023년도 예산현액 중 일반수용비, 일반용역비, 일반연구비 및 정책연구비 등의 대부분이 불용되었는데, 기획재정부는 향후 예비비 편성·요구 시 관련 요건 충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해야 하며, 집행과정에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조세개혁추진단은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 및 부동산 세제의 개편 등 조세개혁 관련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세개혁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2023. 2. 24. 시행)에 따라 설치되었음.

50)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는 재산 가액 기준으로 상속세를 매기는 과세체계

동 조직은 2024년 5월 기준 조세개혁추진단장 1인, 상속세 개편팀 7인(팀장 1인, 사무관 4인, 주무관 1인, 사무원 1인), 보유세 개편팀 5인(팀장 1인, 사무관 3인, 인턴 1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획재정부 직제에는 반영되지 않은 상황임[51].

[조세개혁추진단 개요]

<table>
<tr><th>구 분</th><th colspan="3">세부 내용</th></tr>
<tr><td>출범시기</td><td colspan="3">- 2023년 2월 24일</td></tr>
<tr><td>목 적</td><td colspan="3">-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 및 부동산 세제의 개편 등 조세 개혁 관련 국정과제 추진</td></tr>
<tr><td>인력 구성
(2024년 5월 기준)</td><td colspan="3">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원 소속</th><th>직급</th></tr>
<tr><td colspan="2">조세개혁추진단장</td><td>기획재정부</td><td>고공단 나급</td></tr>
<tr><td rowspan="7">상속세 개편팀</td><td>팀장</td><td>기획재정부</td><td>4급</td></tr>
<tr><td>사무관1</td><td>기획재정부</td><td>5급</td></tr>
<tr><td>사무관2</td><td>기획재정부</td><td>5급</td></tr>
<tr><td>사무관3</td><td>국세청 파견</td><td>5급</td></tr>
<tr><td>사무관4</td><td>국세청 파견</td><td>5급</td></tr>
<tr><td>주무관</td><td>기획재정부</td><td>7급</td></tr>
<tr><td>사무원</td><td>기획재정부</td><td>공무직</td></tr>
<tr><td rowspan="5">보유세 개편팀</td><td>팀장</td><td>행정안전부 파견</td><td>4급</td></tr>
<tr><td>사무관1</td><td>행정안전부 파견</td><td>5급</td></tr>
<tr><td>사무관2</td><td>기획재정부</td><td>5급</td></tr>
<tr><td>사무관3</td><td>국토교통부 파견</td><td>5급</td></tr>
<tr><td>인턴</td><td>기획재정부</td><td>-</td></tr>
</table>
</td></tr>
<tr><td>직제 반영여부</td><td colspan="3">- 미반영</td></tr>
</table>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2023년도 「조세개혁추진단 운영」 사업은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 및 종합부동산세·재산세 간 연계성 제고를 위하여, 홍보전담인력 관련 일용임금(3,400만원), 대국민 토론회, 공청회, 방송, 유튜브 홍보비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 7억 9,200만원, 여론조사를 위한 일반용역비 1억 3,500만원, 일반연구비 1억원 및 정책연구비 2억원 등 총 13억 8,700만원이 예비비를 통하여 편성되었으나,

이 중 특근매식비, 임차료, 기타운영비, 국내여비, 사업추진비, 관서업무추진비 등 1억

51) 2024년 8월 기준 상속세 개편팀은 6인(팀장 1인, 사무관 3인, 주무관 1인, 사무원 1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1,900만원이 집행되었고, 정책연구비 5,000만원은 이월되었으며, 전액 또는 상당 부분 불용된 일반수용비, 일반용역비, 국외업무여비, 일반연구비 등을 포함한 12억 1,800만원이 불용되어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이 87.8%에 달함.

[2023년도 조세개혁추진단 운영 예산현액 세부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세목	예산액		예비비 배정액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본예산	추경					
· 일용임금 (110-04)	-	-	34	34	-	-	34 (100.0)
· 일반수용비 (210-01)	**-**	**-**	**792**	**792**	**21**	**-**	**771 (97.3)**
· 특근매식비 (210-05)	-	-	9	9	2	-	7 (77.8)
· 임차료 (210-07)	-	-	3	3	2	-	1 (33.3)
· 일반용역비 (210-14)	**-**	**-**	**135**	**135**	**-**	**-**	**135 (100.0)**
· 기타운영비 (210-16)	-	-	5	5	4	-	1 (20.0)
· 국내여비 (220-01)	-	-	13	18	15	-	3 (16.7)
· 국외업무여비 (220-02)	-	-	53	47	-	-	47 (100.0)
· 사업추진비 (240-01)	-	-	23	23	14	-	10 (43.5)
· 관서업무추진비 (240-02)	-	-	14	14	14	-	-
· 일반연구비 (260-01)	**-**	**-**	**100**	**100**	**-**	**-**	**100 (100.0)**
· 정책연구비 (260-02)	**-**	**-**	**200**	**200**	**47**	**50**	**103 (51.5)**
· 보험금 (320-04)	-	-	7	7	-	-	7 (100.0)
합 계	**-**	**-**	**1,387**	**1,387**	**119**	**50**	**1,218 (87.8)**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

이러한 이월 또는 불용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유산취득세·보유세 연구용역 보고서의 제출 지연[52]으로 인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등 관련 법률의 개정 작업이 2024년으

로 연기됨에 따라 2023년 공청회·토론회 개최경비, 여론조사 경비와 유튜브 등 홍보료 등 관련 예산이 집행되기 어려웠다는 입장임.

그러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를 요구하기 전에 ① 당초 본예산 편성 시 예측할 수 없었는지(예측가능성), ② 연도 중 시급하게 지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시급성), ③ 기정예산으로 충당이 가능한지(보충성) 등을 검토하도록 하고, 예비비 요구시에는 집행가능성을 감안하여야 하며, 예비비 집행시에는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개혁추진단 예산의 경우 일용임금·보험료, 일반용역비 및 일반연구비는 전액 불용되었고, 일반수용비의 불용률은 97%가 넘으며, 「보유세 연계성 강화를 위한 개편 필요성 및 향후 개편 방안 연구」를 위한 정책연구비 5,000만원이 이월되었음.

이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규정한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예비비를 요구한 것으로 보일 소지가 있으며, 결과적으로 예비비의 편성이 필요할 만큼 시급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게 하는 예산집행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52) 기획재정부는 조세개혁추진단을 설치·운영하기 전인 2022년 10월부터 「상속세 유산취득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70년 이상 유지된 상속세의 전면 개편을 연구·논의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법률적 쟁점이 제기될 수 있고, 상기 연구용역 외에도 해외 사례 등에 대한 심층적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이 인지되어 계약기간을 2차례 연장하였고, 2023년 5월부터 「국가 간 상속세제 차이에 대한 연구」를 추가로 실시하였던 것으로 보임. 또한, 2023년 7월부터 「보유세 연계성 강화를 위한 개편 필요성 및 향후 개편 방안 연구」도 함께 추진하였는데, 동 연구용역도 계약기간이 2차례 연장되어 2024년 11월에 연구가 종료될 예정임.

[유산취득세 및 보유세 연구용역 추진 현황]

구분	연구용역명	세부사업명 (사업코드)	발주 금액	계약 금액	계약 업체	계약기간	계약 방식
유산 취득세 개편 연구용역	상속세 유산취득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정책연구 개발(R&D) (7135-302)	1억원	1억원	○○, △△ 회계법인	(최초계약기간) '22.10.4.~'23.5.31. (1차 연장) '22.10.4.~'23.9.30. (2차 연장) '22.10.4.~'23.12.13.	일반 경쟁
	국가 간 상속세제 차이에 대한 연구	조세개혁 추진단 운영 (2131-310)	5천만원	5천만원	한국 □□□□ 연구원	'23. 5.30.~'23.12.15.	수의 계약
보유세 개편 연구용역	보유세 연계성 강화를 위한 개편 필요성 및 향후 개편 방안 연구	조세개혁 추진단 운영 (2131-310)	5천만원	5천만원	한국 □□□□ 연구원	(최초계약기간) '23. 7.10.~'23.12.31. (1차 연장) '23. 7.10.~'24. 6.30. (2차 연장) '23. 7.10.~'24.11.30.	수의 계약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예비비는 총액으로만 국회에서 의결되고 사후 승인되는 국회 예산심의권의 예외적 사항으로, 본예산으로 편성할 수 없었던 시급성이 인정되는 예산 소요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집행될 필요가 있고 사업 예산은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하여 국회에서의 심의·확정 과정을 거치는 것이 적정할 것이므로, 기획재정부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한편, 기획재정부는 2023년도에 조세개혁추진단을 포함한 4개의 임시조직 운영 예산을 예비비를 통해 편성·집행하였는데, 정책추진의 계획성과 예산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임시조직 운영예산을 예비비를 통해 집행하는 관행을 가급적 지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2023년도 기획재정부 조직운영 관련 예비비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지출결정시기			배정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지출요청서 제출	국무회의 의결	배정일				
신성장전략추진기획추진단 운영	3.17.	3.21.	3.22.	377	257	-	120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운영	2.24	3.7	3.8	781	715	-	66
조세개혁추진단 운영	3.17.	3.21.	3.24.	1,387	119	50	1,218
금융투자지원단 운영	4.17	4.24	4.28	738	439	-	298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결론적으로, 예비비로 편성된 조세개혁추진단 운영 예산은 2023년도 예산현액 중 일반수용비, 일반용역비, 일반연구비 및 정책연구비 등의 대부분이 불용되었는데, 기획재정부는 향후 예비비 편성·요구 시 관련 요건 충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해야 하며, 집행과정에서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5) 시의적절한 정책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비 집행 필요 (국고업무관리, 국고국)

< 현 황 >

「국고업무관리」 사업은 공공기관 결산지원, 출자기관 관리 및 배당정책 지원, 담배 관련 정책 지원, 국고운용 선진화 및 국가채권관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2023년 예산액은 5억 1,600만원으로, 이 중 1,300만원을 전용하였고, 4억 1,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8,500만원을 불용하였음.

「국고업무관리」 사업의 2023년 정책연구비 예산현액은 7,000만원으로, 전액 불용하였음.

[2023회계연도 국고업무관리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23								2024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국고업무관리 (2233-302)	516	-	△13	-	503	418	-	85	365
- 일반수용비 (210-01)	133	-	-	-	133	130	-	3	135
- 특근매식비 (210-05)	4	-	-	-	4	4	-	-	4
- 관리용역비 (210-15)	80	-	-	-	80	80	-	-	78
- 국내여비 (220-02)	17	-	-	-	17	17	-	-	17
- 국외업무여비 (220-02)	28	-	△13	-	15	13	-	2	28
- 사업추진비 (240-01)	14	-	-	-	14	14	-	-	14
- 일반연구비 (260-01)	171	-	-	-	171	160	-	11	20
- 정책연구비 (260-02)	**70**	**-**	**-**	**-**	**70**	**-**	**-**	**70**	**70**

< 검토의견 >

정책연구비를 전액 불용한 것은 정책연구에 기초한 정책 개선의 지연을 가지고 올 우려가 있으므로 추후 예산 집행 시 시의적절한 정책 개선의 바탕이 되는 정책연구비의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2023년 「국고업무관리」 사업에서 국고운용 선진화 정책개발을 위한 정책연구를 실시하기 위하여 정책연구비(260-02) 7,000만원(3,500만원×2회)이 편성되었으나, 전액 집행되지 않고 불용처리 되었음.

집행수요의 미발생 또는 집행 효율화를 통해 예산의 불용이 발생한 경우 예산의 효율화 측면에서 불용이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나, 집행 부진에 따른 불용의 경우 국회가 심의·확정한 예산을 성실히 집행하지 않았다는 문제 뿐 아니라 예산 사업이 의도하고 있는 목적의 시의적절한 달성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

기획재정부는 2023년 편성된 정책연구용역 예산은 당초 '단품 슬라이딩 제도[53] 개선 연구용역'을 위해 하반기 집행될 예정이었으나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단품 슬라이딩 제도 개선 검토'가 반영됨에 따라 2023년 예산을 불용하고 2024년 신규로 동일한 정책연구용역 예산을 반영하였다는 입장임[54].

[국고업무관리 사업 정책연구용역 각목 명세서]

연도	내역	산출근거
2023	[260-02] 정책연구용역 국고운용 선진화 정책개발	35,000,000원*2회
2024	[260-02] 정책연구용역 국고운용 선진화 정책개발	35,000,000원*2회

자료: 기획재정부

단품 슬라이딩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선행 연구용역의 조속한 실시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하지만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단품 슬라이딩제도 개

53) 순제조원가의 0.5% 초과 자재의 가격변동률이 15% 이상일 경우 해당 자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제도
54) 기획재정부는 '계약금액조정제도 개선 연구'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조달연구원과 2024.3.15. 수의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금액은 5,000만원이며 과제수행기간은 6개월임.

선 검토’가 반영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정책연구비 전액을 불용하고 동일한 연구용역을 2024년에 편성함으로써 오히려 관련 제도 개선을 지연시키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또한 불가피한 이유로 당초 계획했던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할 수 없을지라도 정책 개선을 위한 수요를 발굴하고 새로운 주제로 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7,000만원을 전액 불용하였음. 특히, 위와 같은 문제는 정책연구를 하반기에 뒤늦게 추진하면서 새로운 연구 주제 설정과 연구용역 발주를 시작할 경우 연내 예산 집행이 어려웠기 때문에 비롯된 것으로 보임.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예산 집행 시, 국회가 심의·확정한 정책연구비를 불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정책연구를 통한 제도 개선이 시기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6) 고객만족도조사 기본설계 용역의 활용가능성 제고 노력 필요 등 (공공기관 평가 및 관리, 공공정책국)

< 현 황 >

「공공기관 평가 및 관리 사업」은 공공기관의 전년도 경영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사 및 성과급 등에 반영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계 확립, 경영효율성 향상 및 공공서비스 증진을 유도하는 사업임. 2023년 예산액은 67억 3,700만원으로, 이 중 66억 3,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억 1,200만원을 이월하고, 5억 3,000만원을 불용하였음.

동 사업의 내역사업 중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 운영 사업」의 23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억 1,500만원을 포함한 42억 6,000만원으로, 이 중 37억 7,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8,000만원을 이월하고, 3억 1,000만원을 불용하였음. 또한 내역사업 중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운영 및 기관장 워크숍」의 23년 예산액은 4억 5,000만원이며, 3억 4,300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 7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3회계연도 공공기관 평가 및 관리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2023								2024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공공기관 평가 및 관리(2531-300)	6,737	739	-	-	7,476	6,633	312	530	7,304
-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 운영	**3,945**	**315**	**-**	**-**	**4,260**	**3,770**	**180**	**310**	**4,109**
-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운영 및 기관장 워크숍	**450**	**-**	**-**	**-**	**450**	**343**	**-**	**107**	**554**
- 공공기관 채용박람회 운영 및 공공기관 국제컨퍼런스	690	424	-	-	1,114	912	132	70	855
- 기타운영비	139	-	-	-	139	116	-	23	139

자료 : 기획재정부

< 검토의견 >

공공기관 고객만족도조사 기본설계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본설계 용역계약 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고, 2020년 이후 공공기관 기관장 워크숍이 개최되지 않고 있으므로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정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첫째, 공공기관 고객만족도조사 기본설계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본설계 용역의 계약 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55)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56)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의 장은 고객만족도 조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음.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기본설계는 공공기관이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의 수행방식에 대한 계획 수립을 의미하며, 기본설계를 통해 공공기관의 사업 중 고객만족도 조사가 가능한 사업을 선정하는 등 고객만족도 조사를 수행하는 외부 전문기관의 업무수행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음.

2020년 이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조사 기본설계 예산이 매년 이월되고 있으며, 2023년의 경우에도 예산액 2억 6,300만원 중 7,0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음.

[2020-23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조사 기본설계 이월액 및 이월사유]

(단위 : 백만원)

연도	연구용역명	이월액	이월사유	용역계약기간
2020	2020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기본설계	36	계약기간 미도래	2020.11.~2021.6.
2021	2021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기본설계	235	계약기간 미도래	2021.11.~2022.6.
2022	2022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기본설계	235	계약기간 미도래	2022.11.8.~2023.6.30.
2023	2023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기본설계	70	계약기간 미도래	2023.11.8.~2024.6.30.

자료 : 기획재정부

55) 제13조(고객헌장과 고객만족도 조사) ②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은 그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56) 제17조(고객헌장 등) ③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고객만족도 조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한편, 공공기관이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2023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는 2024년 4월 17일에 발표[57]되었는데, 2023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기본설계 용역(2023.11.8.~ 2024.6.30.)은 2024년 6월 30일까지로 기본설계 결과가 고객만족도 조사에 제대로 활용될 수 있을지 의문이 있음.

기획재정부는 기본설계 용역이 진행 중에 있더라도 중간 결과를 외부 전문기관에게 제공하여 고객만족도 조사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입장이나, 기본설계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본설계 용역의 계약 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둘째, 향후 예산편성 시 공공기관 기관장 워크숍 개최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공공정책국은 공공기관 기관장 워크숍 개최를 위해 매년 예산에 반영(2023년 예산 7,600만원)하고 있음에도 2020년 이후 단 한차례도 워크숍을 개최하지 않고 있음.

기획재정부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코로나 19 등으로 기관장 워크숍을 미개최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2023년의 경우에는 기관장 워크숍을 개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예산편성 시 워크숍 개최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으로 보임.

[2020-24년 공공기관 기관장 워크숍 예산 및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2020		2021		2022		2023		2024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75	-	78	-	77	-	76	-	145

자료 : 기획재정부

57) 기획재정부는 2023년도 고객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우수기관과 보통기관 비율은 작년 대비 각각 4.4%p 늘어난 24.6%, 49.2%로 나타났고, 미흡기관은 6.4%p 감소한 25.7%로 집계되었다고 4.17.(수) 발표함

(7) 국가회계결산지원단 구성 개선 필요 (국가회계제도운영, 재정관리국)

< 현 황 >

「국가회계제도운영 사업」은 회계연도별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정기한 내 국회에 제출하고 그 결과를 예산과정에 반영하며, 중앙관서 재무제표 작성 지원 및 회계처리 적정성 검토를 위한 회계·결산 지원단을 운영하는 사업임. 2023년 예산액은 12억 1,200만원으로, 이 중 11억 2,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9,000만원을 불용하였음.

「국가회계제도운영 사업」의 내역사업인 「회계결산지원단 운영」은 이·전용을 제외한 예산현액 7억 1,500만원 중 7억 500만원을 집행하였고, 1,0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3회계연도 국가회계제도운영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2023								2024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국가회계제도운영 사업(2631-301)	1,212	-	-	-	1,212	1,122	-	90	1,162
- 결산보고서 인쇄 등	377	-	-	-	377	334	-	43	377
- 회계결산지원단 운영	**715**	**-**	**-**	**-**	**715**	**705**	**-**	**10**	**715**
- 국회결산심사 등 대응지원	28	-	-	-	28	26	-	2	28
- 유관기관 업무협의	7	-	-	-	7	7	-	-	7
- 국가결산보고서 시범작성	50	-	-	-	50	50	-	-	-
- 국가결산 연구	35	-	-	-	35	-	-	35	35

< 검토의견 >

국가회계결산지원단 구성 시 동일한 업체와 지속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기획재정부는 계약 과정에서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기획재정부는 중앙관서의 재무제표 작성을 지원하고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매년 회계법인과의 계약을 통하여 국가회계결산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10년간의 계약현황을 살펴보면, 동일한 특정 회계법인(△△회계법인)과 지속적으로 계약을 하고 있으며[58], 그 대부분이 수의계약임.(11회 중 9회가 수의계약)

[최근 10년간 회계결산지원단 계약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계약방법	계약금액	참여업체수	계약업체	결산지원단 구분	공고일	수의계약 사유 (경쟁인 경우 최종선정사유)
2023	조달(수의)	708	1	△△회계법인	국가회계	'23.11.29	단일응찰로 유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③)
2022	조달(수의)	705	1	△△회계법인	국가회계	'22.11.7	단일응찰로 유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③)
2021	조달(경쟁)	714	2	△△회계법인	국가회계	'21.12.20	기술평가 결과 적합한 업체를 선정
2020	조달(수의)	696	1	△△회계법인	국가회계	'20.12.10	단일응찰로 유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③)
2019	조달(수의)	707	1	△△회계법인	국가통합	(1차) '20.1.6, (2차) '20.1.23	단일응찰로 유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①)
	조달(경쟁)		2	△△회계법인	중앙관서	(1차) '19.8.20 (2차) '19.9.4	기술평가 결과 적합한 업체를 선정
2018	조달(수의)	425	1	△△회계법인	국가통합	(1차) '18.12.24 (2차) '19.1.9	단일응찰로 유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①)
	조달(경쟁)	200	2	한국공인회계사회	중앙관서	(1차) '18.12.24	기술평가 결과 적합한 업체를 선정
2017	조달(수의)	421	1	△△회계법인	국가통합	(1차) '17.12.12 (2차) '17.12.27	단일응찰로 유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①)
	조달(수의)	274	1	한국공인회계사회	중앙관서	(1차) '17.12.12 (2차) '17.12.27	단일응찰로 유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①)
2016	조달(수의)	435	1	△△회계법인	국가통합	(1차) '16.12.8 (2차) '16.12.23	단일응찰로 유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①)
	조달(수의)	383	1	한국공인회계사회	중앙관서	(1차) '16.12.8 (2차) '16.12.23	단일응찰로 유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①)

58)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를 도입한 이후부터 계속 동일한 회계법인임

연도	계약방법	계약금액	참여업체수	계약업체	결산지원단 구분	공고일	수의계약 사유 (경쟁인 경우 최종선정사유)
2015	조달(수의)	454	1	△△회계법인	국가통합	(1차) '15.12.3 (2차) '15.12.17	단일응찰로 유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①)
	조달(수의)	820	1	한국공인회계사회	중앙관서	(1차) '15.12.3 (2차) '15.12.16	단일응찰로 유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①)
2014	자체(수의)	469	1	△△회계법인	국가통합	(1차) '14.12.4 (2차) '14.12.17	단일응찰로 유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①)
	자체(수의)	993	1	한국공인회계사회	중앙관서	(1차) '14.12.4 (2차) '14.12.17	단일응찰로 유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①)

자료 : 기획재정부 제출자료 재구성

이와 같이 특정 업체와의 반복적인 수의계약은 일반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과 예산 집행지침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며[59], 불필요한 특혜논란이 생길 수 있으므로 사업의 공정성을 위하여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경쟁입찰을 하려 했으나 다른 법인이 입찰하지 않고, 입찰하더라도 기술평가에서 △△회계법인보다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동일 회계법인과 지속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입장임.

그러나 「국가계약법」에서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불특정 다수의 경쟁을 통해 계약이행의 품질 제고를 도모하고 정부와 특정 업체· 기관 간의 유착관계를 방지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특히 기획재정부는 국가 계약제도의 관리·운영을 총괄하는 부처로서 다른 정부기관보다 경쟁입찰 원칙을 준수해야 할 당위성이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경쟁입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봄.

---

59) **「국가계약법」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② (생략)

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우선, 국가회계결산지원단 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60]에 따라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여 협상적격자를 선정한 후 협상 절차를 통해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따르고 있음. 이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5항 상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40일 전에 공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10일 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최근 5년의 사례를 보면 공고기간이 10~21일 사이임.

[최근 5년간 국가회계결산지원단 공고 현황]

연도	공고일	접수개시일	접수마감일	공고기간	비고	계약업체
2023	2023.11.29.	2023.12.18.	2023.12.20.	20일	국가회계 결산지원단	△△ 회계법인
2022	2022.11.07.	2022.11.25.	2022.11.29.	21일		
2021	2021.12.20.	2021.12.29.	2021.12.31.	10일		
2020	2020.12.10.	2020.12.18.	2020.12.22.	11일		
2019	2020.1.6.	2020.1.21.	2020.1.23.	16일	국가통합 결산지원단	
	2019.8.20.	2019.9.2.	2019.9.4.	14일	중앙관서 결산지원단	

자료: 나라장터 공고문을 토대로 작성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년 5월부터 시행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 상의 특례로 인해 40일 미만으로 공고했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나, 동 지침이 시행되기 이전인 2020년 이전의 공고기간도 마찬가지로 40일 미만이었음. 동 계약 건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4항 및 제5항[61]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60)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용역계약을 할 때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여 협상적격자를 선정한 후 협상절차를 통해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협상적격자를 선정해야 한다.

6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1의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⑤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제43조의3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볼 근거가 없으므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 적용 기간인 2024년 12월 31일 이후에는 40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참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계약지침에 따른 한시적 특례 주요내용]

내 용		근거
입찰보증금(영37조①) 및 계약보증금 감면 (영50조①, 52조①)	▪ 50% 감면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검사기간 단축(영55조①)	▪ 14일 이내 → 7일 이내	
대가지급 기간 단축 (영58조①)	▪ 5일 이내 → 3일 이내	
유찰 수의계약 기준 완화(영27조③)	▪ 2회 유찰시 → 1회 유찰시	
입찰공고 기간 단축	**▪ 일반경쟁입찰 : 7일전 → 5일전 협상계약 : 40일전 → 10일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
선금·하도급대금 지급기간 단축	▪ 선금 : 14일 이내 → 5일 이내 하도급대금 : 15일 이내 → 5일 이내	
선금지급 한도 확대	▪ 선금지급 한도 70% → 80%	
입찰보증서를 지급각서로 대체		

자료 : 기획재정부

국가회계결산지원단 운영은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업무이며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 상 일련의 결산 일정이 정해져 있어 계약 및 운영 시기도 매년 예측이 가능한 만큼, 기획재정부는 조기에 공고하여 공고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타 회계법인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다수의 회계법인이 공고를 인지하고 입찰에 응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1.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8) 국외업무여비 집행 개선 필요 (국가회계제도운영, 재정관리국)

< 현 황 >

「국가회계제도운영 사업」은 회계연도별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정기한 내 국회에 제출하고 그 결과를 예산과정에 반영하며, 중앙관서 재무제표 작성 지원 및 회계처리 적정성 검토를 위한 회계·결산 지원단을 운영하는 사업임. 2023년 예산액은 12억 1,200만원으로, 이 중 11억 2,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9,000만원을 불용하였음.

「국가회계제도운영 사업」의 2023년 국외업무여비 예산현액은 1,200만원으로, 1,0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3회계연도 국가회계제도운영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 세목명)	2023								2024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국가회계제도운영 사업(2631-301)	1,212	-	-	-	1,212	1,122	-	90	1,162
- 일반수용비(210-01)	377	-	-	-	377	334	-	43	377
- 일반용역비(210-14)	715	-	-	-	715	705	-	10	715
- 국내여비(220-01)	16	-	-	-	16	16	-	-	16
- 국외업무여비(220-02)	**12**	**-**	**-**	**-**	**12**	**10**	**-**	**2**	**12**
- 사업추진비(240-01)	7	-	-	-	7	7	-	-	7
- 정책연구비(260-02)	85	-	-	-	85	50	-	35	35

< 검토의견 >

하나의 국외출장을 일부는 주요사업비에서, 일부는 기본경비에서 비용을 집행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기획재정부는 IPSAS(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62]의 쟁점 및 최신동향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발굴하기 위하여 연례적으로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PSASB) 정례회의에 참석하고 있음.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PSASB) 정례회의 개요]

○ 위원회 연혁
- 1986년 국제회계사연맹(IFAC)에 의해 공공재무관리(PFM) 및 회계책임성 개선을 위한 공공부문위원회(PSC) 설립
- 2004년 정부 등 공공부문을 위한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IPSAS) 개발 및 발행에 중점을 둔 IPSASB로 위원회 명칭 변경

○ 위원회 구성: 17개국 총 18명의 위원으로 구성 (2024.5.기준)
○ 회의개최 목적: 공공부문 재무보고의 개선 및 공공재무관리 강화를 위한 회계기준 및 지침 개발
○ 회의개최 현황: 연 4회 개최 (분기별)

자료 : 기획재정부 제출자료 재구성

그런데 2023년 IPSASB 정례회의 참석 국외출장 시 하나의 출장에 대하여 일부는 주요사업비인 국가회계제도운영 세부사업에서, 일부는 기본경비에서 비용이 집행되었음.

[2023년도 IPSASB 정례회의 참석 국외출장 현황]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출장지	출장 인원	출장기간	출장비	출장목적
국가회계제도운영	캐나다 (토론토)	3명	2023.12.4.~ 2023.12.10	10,164	IPSASB 정례회의 참석
총액인건비 비대상기본경비 (재정관리국)				5,982	

자료 : 기획재정부

62) 민간부문의 국제회계기준(IFRS)에 비견되는 공공부문의 국제 표준 회계기준(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하나의 출장에 대하여 서로 다른 세부사업에서 국외업무여비를 집행하는 것은 세부사업 단위로 예산을 편성하여 심의하고 결산하는 예산 과정을 감안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또한,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도 예산을 인건비, 기본경비, 주요사업비로 구분하고, 기본경비로 추진하던 사업을 주요사업비로 전환·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기본경비와 주요사업비를 분리하여 편성하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하나의 출장에 대하여 일부는 주요사업비에서, 일부는 기본경비에서 집행하는 것은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음.

따라서 앞으로는 동일한 목적의 출장은 단일 세부사업에 편성하도록 노력하고, 예산상의 문제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전용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 단일 세부사업에서 집행할 필요가 있음.

(9) 민간투자제도 국제협력 사업의 연례적 집행 부진 개선 필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지원, 재정관리국)

< 현 황 >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지원 사업」은 ① 민간투자심의위원회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민간투자사업 운영지원 ② 해외 민간투자시장 확대 및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민간투자제도 국제협력 ③ 민간투자제도 환경에 대응을 위한 민간활성화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사업임. 2023년 예산액은 3억 7,300만원으로, 이 중 1억 3,600만원을 전용하였고, 1억 7,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000만원을 이월하고, 5,700만원을 불용하였음.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민간투자제도 국제협력」은 예산액 1억 4,300만원 중 1억 3,60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전용을 제외한 예산현액 700만원을 전액 불용하였음.

[2023회계연도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지원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2023								2024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지원 사업 (2645-300)	373	24	△136	-	261	174	30	57	336
- 민간투자사업 운영지원	80	-	-	-	80	33	-	47	80
- 민간투자제도 국제협력	**143**	**-**	**△136**	**-**	**7**	**-**	**-**	**7**	**106**
- 민자활성화 연구용역	150	24	-	-	174	141	30	3	150

< 검토의견 >

연례적으로 사업수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불용 및 전용이 발생한 민간투자제도 국제협력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민간투자제도 국제협력」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민간투자사업 제도를 개발도상국 등에 전수하고 해외 민간투자시장을 분석하여, 국내기업의 해외 민간투자시장 진출 지원 및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에 신규편성 되었으며, 사업비 대부분이 해외 공동세미나 및 국제행사 개최용역 경비 등 일반용역비(210-14)로 편성되어 있음.

[2020~2023년도 민간투자제도 국제협력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A)	이·전용 등	예산현액 (B)	집행액 (C)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D)	집행률 (C/B)
2020	115	-	115	13	-	102	11.3
2021	149	-	149	-	-	149	-
2022	143	△136	7	3	-	3	42,86
2023	143	△136	7	-	-	7	-

자료 : 기획재정부 제출자료 재구성

동 내역사업의 예산액 대비 집행액을 보면 2020년 신규편성된 이후 4년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이 제대로 실시된 바가 없음. 2020년도의 경우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려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현지 컨퍼런스 개최가 어려워짐에 따라 행사를 취소하였으며, 2021년도의 경우에도 편성 예산을 전액 불용하였음. 2022년도의 경우 국외업무여비 300만원만 집행하고 일반용역비 1억 3,600만원을 전액 타 세부사업으로 전용하여 사업을 미실시하였으며, 2023년도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일반용역비 1억 3,600만원을 전액 타 세부사업으로 전용하여 사업을 미실시하고 남은 예산은 전액 불용하였음.

2020~2021년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특수성이 있지만, 대면행사 개최가 불가했다면 비대면/온라인 화상회의 등 대면행사를 대체하는 방식의 사업수행을 검토할 수도 있었을 것임. 또한, 2022년도부터는 사업수행이 가능했음에도 2년 연속으로 일반용역비

전액을 타 세부사업에 전용하였음.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해 전문연구기관(한국개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지급하는 사업출연금 부족으로 인한 전용이었다는 입장임.

2024년도의 경우에도 예산요구 당시에는 베트남 및 캄보디아와의 국제행사 개최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했으나, 현재 '민간투자제도 30주년 기념 국제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함. 이는 예산편성 시 심사·반영되지 않은 사업의 집행이며, 2024년이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정 30주년이므로 동 행사는 사전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던 만큼 사전에 별도로 예산안에 반영하여 예산심사를 받아 진행했었어야 함.

이러한 연례적인 사업미실시로 인한 불용 및 전용은 예산편성 시 사업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대상 국가의 수요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음.

[민간투자제도 국제협력 사업 예산 중 일반용역비(210-14) 산출 및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산출내역	집행(예정)내역
2021	- 일반용역비: 142 ▪ 국제행사 개최 수행사 용역 142: 71 * 2회(베트남, 카자흐스탄)	- 일반용역비: 0 ▪ 전액 미집행
2022	- 일반용역비: 136 ▪ 국제행사 개최 수행사 용역 136: 68 * 2회(베트남, 카자흐스탄)	- 일반용역비: 0 ▪ 전액 타 세부사업 전용
2023	- 일반용역비: 136 ▪ 국제행사 개최 수행사 용역 136: 68 * 2회(베트남, 캄보디아)	- 일반용역비: 0 ▪ 전액 타 세부사업 전용
2024	- 일반용역비: 99 ▪ 국제행사 개최 수행사 용역 99: 49.5 * 2회(베트남, 캄보디아)	- 일반용역비: 미정 ▪ '민간투자제도 30주년 기념 국제행사' 수행사 용역(국내, 1회)

자료 : 기획재정부 제출자료 재구성

기획재정부는 동 사업의 불용 및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률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 마련 및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 과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민간투자제도 도입 30주년 기념 국제행사 계획(안)]

○ 추진배경: 1994년「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제정 30주년을 맞이하여 그간의 성과 정리 및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국제행사 개최 (기획재정부, KDI 공동주최)

○ 행사 주요내용

- 일시·장소: 2024년 11월 중, 서울시내 호텔
- 참석자: 민자 관련 민간·정부·학계 담당자 및 전문가, 국제기구 및 각국 대사관 고위인사 등 약 200명 참석
- 구성: 우수기관 표창, 세션별 주제 발표·토론, 우수 사례 발표 및 국제협력 등

자료 : 기획재정부 제출자료 재구성

(10)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행사비 집행 시정 필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재정정책국)

< 현 황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사업」은 중·장기 시계에서 국가재원을 보다 거시적·전략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임. 2023년 예산액은 9억 3,200만원으로, 이 중 8,700만원을 전용하였고, 10억 3,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00만원을 불용하였음.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사업」의 2023년 일반용역비 예산현액은 10억원으로, 9억 9,900만원을 집행하였고 1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3회계연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 세목명)	2023								2024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2711-300)	932	20	87	-	1,039	1,038	-	1	932
- 일반수용비(210-01)	20	-	-	-	20	20	-	-	20
- 일반용역비(210-14)	**885**	**20**	**95**	**-**	**1,000**	**999**	**-**	**1**	**885**
- 국외업무여비(220-02)	8	-	△8	-	-	-	-	-	8
- 사업추진비(240-01)	19	-	-	-	19	19	-	-	19

< 검토의견 >

기획재정부는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시 시정요구가 있었음에도, 2023년에도 전용을 통해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행사비를 집행하였으므로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음.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사업」에서는 매년 개최되는 행사 비용 충당을 위해 타 세부사업으로부터의 전용을 통한 과도한 행사비를 집행하고 있으므로,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시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2023년도에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었음.

[연도별 행사 비용을 위한 전용 사례]

연도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비목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비목	
2023	전용 ('23.9.25.)	재정전략기획 및 협력강화 (2712-301)	210-14	95	국가재정운용 계획수립 (2711-300)	210-14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비용 증가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사업 일반용역비 부족
2022	전용 ('22.8.26)	재정건전성 관리강화 (2712-302)	260-01	12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2711-300)	210-14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비용 부족분 전용
	전용 ('22.8.26)	재정전략기획 및 협력강화 (2712-301)	210-14	90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2711-300)	210-14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비용 부족분 전용
	전용 ('22.11.25)	재정전략기획 및 협력강화 (2712-301)	260-01	9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2711-300)	210-14	재정비전 2050 워크숍 개최 및 미래세대 TF 간담회 개최 비용 부족분 전용
	전용 ('22.11.25)	재정전략기획 및 협력강화 (2712-301)	260-02	11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2711-300)	210-14	재정비전 2050 워크숍 개최 및 미래세대 TF 간담회 개최 비용 부족분 전용
	전용 ('22.11.25)	재정건전성 관리강화 (2712-302)	210-01	17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2711-300)	210-14	재정비전 2050 워크숍 개최 및 미래세대 TF 간담회 개최 비용 부족분 전용

자료: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2022년도에는 2개의 세부사업으로부터 1억 3,900만원을 전용하여 국가재정전략회의 등 행사경비 부족분에 충당하였는데, 이에 대해 국회는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시 “국가재정전략회의 등은 매년 연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임에도 사전 계획된 예산범위를 초과하여 타 세부사업으로부터의 전용을 통한 과도한 행사비를 집행하는 것은 부적절함”을 지적하였음.

해당 건은 기획재정위원회의 2022회계연도 결산 예비검토 시(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23. 8. 23., 전체회의 ’23. 8. 24. 의결) 시정요구(요구유형: 시정)된 사항이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심사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지적되어 2023년 9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해당 건에 대한 시정요구(요구유형: 주의)를 의결하였음[63].

그럼에도 기획재정부는 2023년도에도 동일한 문제점을 반복하였는데, 특히 기획재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23년 9월 25일에 국회 시정요구시 지적된 동일한 사유(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비용에 충당)로 타 세부사업으로부터 전용(9,500만원)하여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비용으로 집행하였음.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2023년도에는 미래세대와의 대화 간담회 등 예상치 못한 용역비(2,200만원) 지출이 발생하였으며,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국민들에게 개방된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함에 따라, 구조물 설치비, 원상복구비, 안전점검비 등 행사 개최 비용이 크게 증가”하여 전용을 실시하였다는 입장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사업」의 일반용역비 사업인 ‘국가재정전략회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지원단 운영용역’은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통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에도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편성된 예산범위를 초과하여 집행되었으므로, 기획재정부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고, 타 세부사업으로부터의 전용을 통해 과도한 행사비가 집행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국회가 심의·확정한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임.

63) 2023. 12. 2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 의결

[2022·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사업의 일반용역비 편성 및 집행 내역]

구 분	예산 편성 내역	실제 집행 내역
2023년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지원단 운영 및 국가재정전략회의 행사 용역 : 8억 85백만원*1건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지원단 용역 : 7억 14백만원 - 국가재정전략회의 행사 용역 : 2억 43백만원 - 미래세대와의 대화 간담회 : 22백만원
	8억 85백만원	9억 79백만원
2022년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지원단 운영 및 국가재정전략회의 행사 용역 : 8억 82백만원*1건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지원단 용역 등 : 7억 85백만원 -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용역 : 1억 99백만원 - 재정비전 2050 워크숍 : 17백만원
	8억 82백만원	10억원

*2023년의 경우 전년도(2022년)에 이월된 건의 집행(미래세대 TF 간담회 20백만원 집행) 제외
자료: 기획재정부

(11) 일반용역비 집행부진 개선 필요 (재정전략기획 및 협력강화, 재정정책국)

< 현 황 >

「재정전략기획 및 협력강화 사업」은 재정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시책 마련 및 제도 연구, 재정법령 및 제도정비 관련 연구·지원, 재정사업 심층평가, 분야별 지출구조 조정 등을 추진하는 사업임. 2023년 예산액은 17억 9,300만원으로, 이 중 8,700만원을 전용하였고, 12억 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5억 3,800만원을 불용하였음.

「재정전략기획 및 협력강화 사업」의 2023년 일반용역비 예산현액은 1억 6,500만원으로, 4,100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 2,4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3회계연도 재정전략기획 및 협력강화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 세목명)	2023								2024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재정전략기획 및 협력강화(2712-301)	1,793	184	△87	-	1,890	1,202	150	538	969
- 상용임금(110-03)	44	-	-	-	44	18	-	26	45
- 일반수용비(210-01)	67	-	-	-	67	27	-	40	58
- 일반용역비(210-14)	**260**	**-**	**△95**	**-**	**165**	**41**	**-**	**124**	**296**
- 국내여비(220-01)	23	-	△11	-	12	9	-	2	15
- 국외업무여비(220-02)	23	-	19	-	42	38	-	4	72
- 사업추진비(240-01)	24	-	-	-	24	24	-	-	20
- 일반연구비(260-01)	201	-	△175	-	26	-	-	26	100
- 정책연구비(260-02)	-	-	175	-	175	150	10	15	354
- 고용부담금(320-09)	9	-	-	-	9	2	-	7	9
- 사업출연금(350-02)	1,142	184	-	-	1,326	894	140	292	-

< 검토의견 >

기획재정부는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시 시정요구가 있었음에도, 2023년에도 타 세부사업 예산부족을 사유로 과다한 전용을 실시하는 등 일반용역비 사업 집행이 부진하였으므로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음.

「재정전략기획 및 협력강화 사업」 중 일반용역비 집행과 관련하여, 국회가 심의·확정한 예산사업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타 세부사업 예산부족을 사유로 한 과다전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시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2023년도에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었음.

「재정전략기획 및 협력강화 사업」에 편성된 일반용역비 사업은 연례적 집행 저조, 과다한 자체전용이 반복되고 있음.

[재정전략 기획 및 협력강화 사업의 연도별 일반용역비 집행 현황]

연도	예산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집행 내역		자체전용, 불용 등
				용역명	집행 금액	
2018	1억원	9,526만원	95.26%	재정법령 학술대회	6,400만원	500만원 (불용)
				재정법령 학술대회	2,636만원	
				학술대회 PPT자료 제작	490만원	
2019	1억원	4,490만원	44.9%	재정법령 학술대회	4,490만원	5,000만원 (전용)
2020	1억원	6,200만원	62%	재정운용 심포지엄	2,000만원	3,800만원 (불용)
				국정워크숍 PPT자료 제작	1,000만원	
				국무위원 워크숍 개최	3,200만원	
2021	1억원	-	-	전액 불용		1억원 (불용)
2022	9,000만원	-	-	전액 자체전용		9,000만원 (전용)
2023	2억 6,000만원	4,060만원	15.62%	한-OECD 재정전망 세미나	4,060만원	9,500만원 (전용) 1억 2,400만원 (불용)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 재구성

2022년의 경우 타 세부사업의 예산 부족에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반용역비 예산 전액(9,000만원)을 전용함에 따라 사업이 미집행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국회는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시 “일반용역비 사업이 과다 전용 등으로 집행이 부진하므로 이를 시정할 것”을 지적하였음.

해당 건은 기획재정위원회의 2022회계연도 결산 예비검토 시(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23.8.23., 전체회의 '23.8.24. 의결) 시정요구(요구유형: 시정)된 사항이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심사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지적되어 2023년 9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해당 건에 대한 시정요구(요구유형: 시정)를 의결하였음[64].

그럼에도 기획재정부는 2023년도에도 동일한 문제점을 반복하였는데,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 의결이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23년 9월 25일에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국회 시정요구시 지적된 동일한 내용(타 세부사업 예산 부족에 충당하기 위해 9,500만원 전용)을 반복[65]하였고, 1억 2,400만원을 불용하여 사업 집행이 부진하였음.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타 세부사업으로의 전용은 국가재정전략회의의 행사비 부족에 충당하기 위해 불가피하였으며, 2024년에는 시정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과다한 전용 및 집행부진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임.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향후 다른 세부사업의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과다한 전용을 실시하여 국회가 심의·확정한 예산 사업을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 집행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야 할 것임.

64) 2023. 12. 2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 의결
65) 전용 내역

연도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비목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비목	
2023	전용 ('23.9.25.)	재정전략기획 및 협력강화 (2712-301)	210-14	95	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 (2711-300)	210-14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비용 증가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사업 일반용역비 부족

(12) 한국재정정보원의 장애인 고용률 제고 필요 (한국재정정보원 운영, 재정정책국)

< 현 황 >

「한국재정정보원 운영 사업」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하고 국가재정 관련 정책의 개발을 지원하며,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수출 등 재정정보화 분야의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재정정보원의 기관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는 사업임. 2023년 예산액은 365억 9,300만원이며, 전액 집행하였음.

[2023회계연도 한국재정정보원 운영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2023								2024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한국재정정보원 운영(2713-504)	36,593	-	-	-	36,593	36,593	-	-	40,356

< 검토의견 >

한국재정정보원은 여러 연도에 걸쳐 법적 의무사항인 장애인 의무고용을 미준수하고 있으므로, 장애인 직원 퇴직 및 신규채용 저조에 대한 원인 분석 등을 실시하고 실효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 고용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한국재정정보원은 「한국재정정보원법」에 따라 2016년 7월 설립되고 2017년 1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으로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관리, 재정통계 관리, 재정분야 정보통신망 운영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한국재정정보원의 업무 범위(한국재정정보원법 규정)]

1.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국가재정법」 제97조의2제1항에 따라 재정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개발한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운영 및 관리
2. 재정 관련 통계의 관리
3.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
4.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수출 등 재정정보화 분야의 국제협력
5. 재정 분야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관제센터(사이버공격 정보를 탐지·분석하여 즉시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는 기구를 말한다)의 운영 및 관리
6. 그 밖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자료 : 한국재정정보원법 제5조제2항 내용 발췌

한국재정정보원의 2023년 수입내역을 살펴보면 한국재정정보원은 전기이월금 및 기타 수입금을 제외하고 기관 운영 경비를 포함한 모든 사업경비를 출연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정부출연 공공기관임.

[2023년도 한국재정정보원의 수입 내역(결산 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		수입 금액
전기이월금(집행잔액, 이월금 등)		6,464
출연금	한국재정정보원 운영	36,593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	13,809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2,918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	18,360
	재정정보분석	565
기타수입금(임대수입, 정부 수탁과제 수행)		861
합 계		**79,570**

자료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한국재정정보원 수입·지출 현황 자료 발췌

한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이라 함)」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에 대하여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장애인 의무고용률)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미이행하는 경우 부담금을 납부하게 하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비장애인에 비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제도로 장애인고용법에서는 국가기관·민간사업주·공공기관 등의 유형별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규정하고 있음[66].

6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1.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4
2.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6
3. 2024년 이후: 1천분의 38

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실적액을 근로자의 총수로 환산한다)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제28조의2(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특례) 제28조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출연기관은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대하여 장애인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고용률에 해당하는 장애인 수를 계산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1.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4
2.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6

[장애인고용법에 따른 기관별 장애인 의무고용률 현황]

구 분	국가·지방자치단체	상시 50명 이상 근로자 고용 사업주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포함)
비율산정 기준	공무원 정원 기준	상시근로자 기준	상시근로자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률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4 -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6 - 2024년 이후: 1천분의 38	-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0분의 27 -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000분의 29 - 2019년 이후: 1000분의 31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4 -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6 - 2024년 이후: 1천분의 38

한국재정정보원은 장애인 채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임.

첫째, 한국재정정보원은 여러 연도에 걸쳐 법적 의무사항인 장애인 의무고용을 미준수하고 있으므로,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요인을 분석하여 그에 따른 대응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국재정정보원의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 여부를 살펴보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 중 4개년도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하고 있으며, 2021년을 기점으로 장애인 고용인원은 연도별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67].

한국재정정보원의 장애인 고용률(2023년: 2.92%)은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2023년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의 장애인 고용률 평균(3.9%)[68]과 비교하더라도 저조한 수치이며, 전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상승('20년: 3.52% → '21년: 3.78% → '22년: 3.84% → '23년: 3.90%)하는 추세인 것에 비해 한국재정정보원은 하락 추세에 있음.

3. 2024년 이후: 1천분의 38

67) 한국재정정보원은 인건비를 포함한 기관 운영경비(한국재정정보원 운영 사업, 2713-504)를 출연금으로 지급받고 있으며,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에 따른 부담금 납부(2022년 : 2,853만원, 2023년 : 1,756만원 납부)도 해당 출연금에서 지급하고 있음.

68) 고용노동부, '2023년 장애인 고용률 3.17%로 지속 상승' 보도자료 참조, 2024.5.23.

[한국재정정보원의 연도별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 현황]

(단위: 명,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상시근로자수	208	234	270	307	322	308
장애인 고용인원	1	5	12	14	10	9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법정비율)	6 (3.2)	7 (3.4)	9 (3.4)	10 (3.4)	11 (3.6)	11 (3.6)
장애인 고용률	0.48	2.14	4.44	4.56	3.11	2.92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여부	미이행	미이행	이행	이행	미이행	미이행

자료 :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재정정보원은 4개년도에 걸쳐 장애인 의무고용이 미준수된 사유에 대하여 '장애인 직원의 퇴직이 증가'하였고, '장애인 신규채용에 대한 응시율 저조 등 장애인 상시채용에 대한 어려움'에 기인한 것으로 설명함.

한국재정정보원이 제시한 '장애인 직원 퇴직 증가' 사유에 대해 살펴보면, 한국재정정보원의 연도별 장애인 퇴직 현황에서 2020·2021년(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과 2022·2023년(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을 비교할 경우 퇴직인원은 비슷한 수준이고, 오히려 2022·2023년에는 예측가능한 '고용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에 비해 예측이 어려운 '개인사정에 의한 퇴직' 비율은 더 줄어든 것으로 보이며,

[한국재정정보원의 연도별 장애인 퇴직 현황]

(단위: 명)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장애인 퇴직인원		2	1	5	7	4	7
퇴직 사유별 인원	개인 사정	1	1	3	5	2	3
	고용 기간 만료	1	-	2	2	2	4

자료 : 한국재정정보원

조직문화·처우 등에 대한 불만족 사유는 없는지, 조직차원의 개선 필요사항은 무엇인지 등 장애인 퇴직 증가 원인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국재정정보원이 제시한 또다른 사유인 '장애인 상시채용의 어려움'에 대해 살펴보면, 한국재정정보원의 연도별 장애인 채용시 채용규모에 비해 응시비율(서류지원, 면접응시)이 낮은 측면은 있는 것으로 보임.

[한국재정정보원의 연도별 장애인 채용 현황]

(단위: 명)

구분	채용규모		채용 직급	서류 지원자	서류 합격자	면접 응시자	합격자	임용 인원	비고
'20년	1차	4	정규직5급	18	9	2	1	1	장애제한
		10	청년인턴(6개월)	21	21	15	5	5	장애제한
	2차	5	청년인턴(6개월)	10	10	5	2	1	장애제한
'21년	1차	-	정규직4급	-	-	-	-	1	장애가점
		5	청년인턴(6개월)	11	11	9	5	4	장애제한
	2차	5	청년인턴(6개월)	5	5	3	2	2	장애제한
'22년	1차	2	정규직5급	10	9	2	-	-	장애제한
		2	청년인턴(5개월)	3	2	1	1	1	장애제한
	2차	1	정규직5급	23	20	1	-	-	장애제한
		3	청년인턴(4개월)	-	-	-	-	-	장애제한
	3차	6	청년인턴(6개월)	2	2	2	2	2	장애제한
		-	청년인턴(2개월)	-	-	-	-	1	장애가점
'23년	1차	2	청년인턴(9개월)	4	4	2	2	2	장애제한
	2차	4	청년인턴(6개월)	3	3	2	2	2	장애제한
	3차	6	청년인턴(6개월)	4	3	3	2	1	장애제한

자료 : 한국재정정보원

그러나 '장애인 상시채용 어려움'을 '채용 공고 및 면접에 지원하는 인원수가 저조하고 면접을 통과하는 합격 인원 역시 적다'라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것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채용 직급이 단기 기간제 신분인 청년인턴으로 채용(2023년의 경우 채용인원 전원을 청년인턴으로 채용)하기 때문은 아닌지[69], 채용 조건은 적절했는지

등 실제 응시율이 낮은 근본적인 이유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단기간 채용에 그치는 청년인턴 채용으로 장애인 고용률을 맞추려는 계획이 장애인고용법상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취지에 맞는지에 대한 검토 역시 필요할 것으로 보임[70].

또한, 한국재정정보원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별 혁신계획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하였는데, 당초 기획재정부는 향후 수년간 단계적 인력 감축('22년: 326명 → '23년: 317명 → '24년: 308명 → '25년: 298명)을 권고하였음에도 한국재정정보원은 2022년 12월부로 정원을 단기간에 조정(326명 → 298명)하였음.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별 혁신계획 진행 경과]

일 시	협의 내용	비 고
2022년 7월 29일	기획재정부의「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확정 및 공공기관별 혁신계획 작성·제출 요청	향후 3년간 단계적 인력 감축 권고 ('22년: 326명 → '23년: 317명 → '24년: 308명 → '25년: 298명)
2022년 8월 31일	한국재정정보원 공공기관별 혁신계획 제출	2022년 12월부로 정원(326명 → 298명) 감축 계획
2022년 12월 26일	기획재정부 계획 승인	제1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승인
2022년 12월 28일	기관 직제규정 상 정원 조정	기관 이사회 규정 개정 의결

자료 : 한국재정정보원

이는 한국재정정보원의 경영상 판단으로 단계적 인력 감축보다는 단기적인 감축을 통해 인력운용의 불확실성을 사전에 제거하고 기관 운영을 효율화하겠다는 측면으로 이해가 됨.

69) 2020년·2022년 정규직 채용에는 다수의 인원이 지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음.

70) 다만, 장애인고용법 시행령(제24조)에 따라 장애인고용법상 장애인 의무고용률 산정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의 요건은 '해당 연도의 매월 16일 이상(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인 근로자 등'으로 하고 있어, 청년인턴 등 기간제 근로자도 포함됨.

다만, 단기간의 정원 조정으로 장애인 채용의 대부분을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 청년인턴으로 채용하거나, 정규직 신규채용 인원 축소가 장애인의 정규직 채용규모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에 대한 확인 및 분석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국재정정보원의 연도별 정·현원 현황 및 증감사유를 살펴보면 정원이 조정된 2023년 신규채용 인원이 급격히 낮아진 것으로 확인됨.

[한국재정정보원 연도별 정·현원 현황 및 증감사유]

연도	2020	2021	2022	2023
정원	272명	299명	323명 ('22.12월 298명으로 변경)	298명
현원	237명	280명	294명	281명
전년 대비 현원 증감사유	무급휴직(-19명), 중도퇴직자(-21명) **신규 채용(48명)**	무급휴직(-15명), 중도퇴직자(-13명) **신규 채용(52명)**	무급휴직(26명), 중도퇴직자(21명), **신규 채용(31명)**	무급휴직(29명), 중도퇴직자(18명) **신규 채용(10명)**

자료 : 한국재정정보원

둘째, 한국재정정보원은 장애인 고용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행정적인 방안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한국재정정보원의 장애인 고용률 향상을 위한 연도별 방안을 살펴보면 장애인 퇴직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직원 대상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장애인 신규채용 향상을 위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을 실시하고 있음.

[한국재정정보원의 연도별 장애인 고용 향상 방안]

일시	장애인 퇴직 관련	장애인 신규채용 관련
’23년 12월	-	장애인 고용을 위한 업무 협의 (세종 공공기관 장애인 일자리)
’23년 10월	-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기관 업무협의 (서울시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23년 4월	-	장애제한 채용 홍보요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3년 1월 ~ 12월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전직원 대상)	-
’22년 10월	-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기관 업무협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2년 4월 ~ 12월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전직원 대상)	-
’21년 11월		장애인 고용 지원자 추천의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1년 5월 ~ 12월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전직원 대상)	-
’21년 4월		장애인 고용·직무훈련을 위한 업무협의 (일산직업능력개발원)
’20년 6월 ~ 11월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전직원 대상)	-
’19년 9월	-	장애인 채용 관련 채용홍보 협조요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9년 4월	-	장애인 채용 관련 채용홍보 협조요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9년 10월 ~ 12월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전직원 대상)	-
’18년 10월 ~ 12월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전직원 대상)	-
기타사항	유연근무제(시차, 단시간), 외부교육장 이동시 장애인 택시 지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 편의지원	장애 제한경쟁 분야의 채용공고로 장애인인력 확보 및 그 외 전형에서 장애인 5% 가점 부여

자료 : 한국재정정보원

그러나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복지법」[71]에 따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71)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매년 소속 직원·학생을

공공기관 등이 모두 공통적으로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한국재정정보원의 자체 방안이나 노력이라고 할 수 없으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관계기관에게 장애인 채용을 위한 업무협의를 하고 있으나, 장애인 채용홍보, 지원자 추천 의뢰 등 연도별 2～3차례 정도 실시하는 수준으로 실질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따라서 한국재정정보원은 장애인 직원 퇴직 및 신규채용 저조 등에 대한 원인 분석을 실시하고 실효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 고용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72].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하 “인식개선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2) 한국재정정보원은 2024년에는 장애제한 정규직 채용을 실시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컨설팅에 참여하거나 관계기관 업무협의 및 홍보활동을 보다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할 예정이라는 입장임.

(13) ‘자율기구’ 취지에 부합하도록 국제투자협력단 (舊 금융투자지원단) 운영 필요 (금융투자지원단 운영(신규), 국제금융국(舊 대외경제국))

< 현 황 >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총액의 일부를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음. 일반회계의 경우, 「국가재정법」 제22조[73]의 규정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음. 다만, 예산총칙 등에 따라 미리 사용목적을 지정해 놓은 예비비(이른바 “목적예비비”[74])는 이와 별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음.

2023년 예비비 예산액은 4조 6,000억 원이었는데, 이를 예비비지출 소요에 필요한 관련 부처에 7,339억 5,200만원을 배정한 후 예산 현액은 3조 8,660억 4,800만원으로, 이 중 6,072억원을 집행하였고 3조 2,757억 6,4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3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예비비 사용명세]

(단위: 백만원)

구분	2023					
	예산액		지출결정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예비비 (3069-300)	4,600,000	4,600,000	1,393,952	1,309,109	15,127	3,275,764*
(기획재정부 소관)			663,283	608,731	50	54,502
- 국가안전보장활동 지원			660,000	607,200	-	52,800
- 원스톱수출지원단 운영			781	715	-	66
-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 운영			377	257	-	120
- 조세개혁추진단 운영			1,387	119	50	1,218
- 금융투자지원단 운영			738	440	-	298

* ‘지출결정 후 잔액’ + ‘지출결정액(배정액) 중 불용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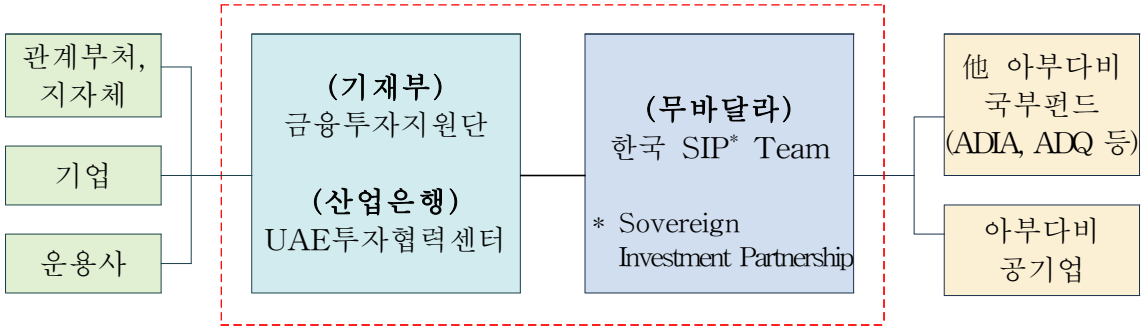
자료 : 기획재정부 자료 바탕으로 재작성

73) 제22조(예비비) ①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 등에 따라 미리 사용목적을 지정해 놓은 예비비는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74) 제12조 일반회계 예비비 중 3,700,000,000,000원은 재해대책비(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 상환액 및 전염병 예방·대책비 포함), 인건비(국민건강보험 부담금, 연금부담금 등 연동경비 포함),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부족액 보전 경비, 법적 의무지출의 전년도 미지급금 및 당해연도 지급 부족액(단,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에 한함), 감염병에 따른 방역 및 손실보상 등 피해지원, 국제부담금 이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

이 중 「금융투자지원단 운영 사업」은 2023년 1월 15일 한-UAE 정상회담 당시 UAE 국부펀드에서 총 300억 달러 규모를 한국에 투자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UAE 투자협력위원회 등 협의체를 운영하고, UAE 투자를 희망하는 우리나라 기업을 소개하며, 투자수요를 발굴하고 투자제안을 전달하는 등의 사안을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3년 2월 22일부터 2024년 2월 21일까지 1년 한시로 금융투자지원단을 만들어 운영하는 신규사업임.

[한-UAE 투자협력채널 개요]



자료 :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2023년 4월 28일 「예비비」로 「금융투자지원단 운영」을 위해 7억 3,800만원을 배정하였는데, 이 중 4억 3,9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9,8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3회계연도 예비비 중 금융투자지원단 운영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2023								2024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용·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비비 (3069-300)	4,600,000	-	-	△733,952	3,866,048	607,200	-	3,258,848	4,200,000
- 금융투자지원단 운영 (3231-309)	-	-	-	738	738	439	-	298	120

< 검토의견 >

기획재정부는 자율기구인 금융투자지원단('23. 2. 22~ '24. 2. 21.)을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제투자협력단('24. 2. 22~ '25. 2. 21.)으로 변경하여 운영 중인바 이는 존속기간을 최대 1년까지 둘 수 있도록 하는 '자율기구'의 취지에 반하고, 매년 예비비로 사업을 운영하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행정안전부는 2022년 7월 각 부처의 국정과제나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각 부처의 장관이 1~2개 과를 1년의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관 자율기구제'를 추진함.

이에 따라 대통령령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75]에서는 사회적으로 긴급하고 중요한 현안이 발생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할 경우 임시정원(자율기구)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동 통칙에 따르면 자율기구의 운영기간은 기본적으로 6개월 이내로 하되 1회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최대 1년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기획재정부는 투자유치를 완료하기 위한 총력 지원을 위하여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소속으로 2023년 2월 「자율기구 금융투자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 훈령)[76]을 마련함. 동 규정에서는 지원단을 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설치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1회만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77]. 같은 해 4월 25일 6

---

75)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긴급현안 대응을 위한 정원 운영의 특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회적으로 긴급하고 중요한 현안이 발생하여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일시적으로 따로 두는 정원(이하 "임시정원"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임시정원의 운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76) **「자율기구 금융투자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다른 국가 정부 및 관련 기관과의 금융투자 협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아랍에미리트의 對한국 투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뒷받침하여 조속한 성과창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금융투자지원단(이하 "금융투자지원단"이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3년 8월 22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4년 2월 21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77) **「자율기구 금융투자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조직의 설치)** ④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금융투자지원단"이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였을 경우는 즉시 폐지하며, 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설치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명[78]으로 구성된 추진단에 대해 업무추진비 5,000만원, 일반수용비 1억 600만원, 국외업무여비 3억 5,500만원 등 7억 3,800만원의 9개월 분 예비비를 편성함.

[2023회계연도 금융투자지원단 운영 예비비 편성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예산(A)	예비비(B)	증감(B-A)	%
▪ 국제투자협력단 운영	-	738,400	순증	순증
◦ 일반수용비[210-01]	-	106,750		
◦ 특근매식비[210-05]	-	5,670		
◦ 임차료[210-07]	-	81,500		
◦ 일반용역비[210-14]	-	120,000		
◦ 기타운영비[210-16]	-	3,420		
◦ 국내여비[220-01]	-	12,000		
◦ 국외여비[220-02]	-	354,750		
◦ 사업추진비[240-01]	-	24,810		
◦ 사업추진비[240-02]	-	25,500		
◦ 정책연구비[260-01]	-	-		
◦ 건설비[420-03]	-	4,000		

자료 : 기획재정부

직제가 아닌 자율기구로 금융투자지원단을 구성한 사유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2023년 1월 300억 달러 투자가 결정되고, 이를 실행·구체화하기 위한 조직이 시급하게 필요해짐에 따라 기획재정부 직제에 규정하지 못하고 훈령으로 규정하였다는 입장임.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2023년 2월 22일부터 1년 한시로 구성된 금융투자지원단이 2024년 2월 21일 종료되었음에도,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제투자협력단을 2024년 2월 22일부터 국제금융국 소속으로 구성함. 국제투자협력단의 근거가 되는 「자율기구 국제투자협력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자율기구 금융투자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과 비교할 때 대상국이 UAE에서 범위가 다소 확장되었다는 점과 소관 국(局)이 변경되었다는 점 이외에는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되어있음.

78) 단장 : 3급 국장

[금융투자지원단과 국제투자협력단의 근거규정 비교]

구분	금융투자지원단	국제투자협력단
목적	○국가 정부 및 관련 기관과의 금융투자 협력을 효과적으로 지원·촉진	
	○아랍에미리트의 對한국 투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뒷받침	
소관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기능	○외국과의 금융투자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총괄적인 정책수립 및 제도 등의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외국과의 금융투자 협력관계 구축 및 개선에 관한 사항 ○투자협력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투자협력 네트워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국내외 홍보 및 애로사항 해소 등 금융투자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韓-UAE 고위급 투자협력 대화 등 협력채널 운영에 관한 사항	
존속기한	2023. 2. 22. ~ 2024. 2. 21.	2024. 2. 22. ~ 2025. 2. 21.
조직의 구성	단장(기재부 3급 또는 4급) 및 직원(기재부 공무원 및 파견자)	

자료: 「자율기구 금융투자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및 「자율기구 국제투자협력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이는 행정안전부에서 당초 사회적으로 긴급하고 중요한 현안이 발생해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경우 임시로 자율기구를 두어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에 반한 조직 운영임. 특히 국제투자협력단을 2024년 2월 새로이 만든 시기는 2023년 1월 한-UAE 정상회담 이후 1년이나 지난 시기로, 금융투자지원단을 2023년 2월 신속히 만들어야 할 상황과 비교했을 때 긴급성과 시급성이 낮은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기존 금융투자지원단의 정식 직제 반영의 가능성이 높지 않고, UAE 외 다양한 국가의 국부펀드 등과 투자협력 추진이 필요한 상황인 점을 감안하여 새로이 국제투자협력단을 1년 한시 자율기구로 구성하였다는 입장임.

그러나 총 300억 달러 규모의 UAE 국부펀드 투자가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직제에 반영되는 체계적인 조직 및 인력이 필수적인데, 300억 달러의 투자가 정부 주요 역점사업

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와의 직제 협의가 보다 원만하게 이뤄져야 했을 것으로 사료됨.

직제에 대한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못함에 따라 또다시 2024년 2월 22일부터 2025년 2월 21일까지 1년간 자율기구라는 임시조직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2025년 2월 22일 이후의 동 사업의 추진 계획은 불투명한 상황임.

2024년 5월 29일 한·UAE 정상회담을 통해 아랍국가 최초로 UAE와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을 체결하고 3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약속을 재확인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UAE 국부펀드들의 우리나라 투자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보다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체계적인 조직을 구성하고 구체적인 투자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면밀한 사업추진이 필요함.

한편, 기획재정부는 국회 예산심의 이후인 2023년 4월 및 2024년 3월에 금융투자지원단과 국제투자협력단 운영을 위한 예비비를 각각 배정하였음. 이로 인해 2년 연속 동 사업 운영예산 대부분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음[79]. 따라서 향후 기획재정부는 매년 예비비로 사업을 운영하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79) 국회에서 2024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예산안을 심의할 당시 금융투자지원단 운영(3231-309) 사업 1억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이는 2024년 1월 1일부터 지원단 종료일인 2024년 2월 21일까지의 약 50일간 운영되는 금융투자지원단 운영에 대한 예산액이었음.

(14) 2023년도 분담금 불용하고 2024년 재편성·집행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필요 (국제금융기구 출연(ODA), 개발금융국)

< 현 황 >

「국제금융기구 출연(ODA) 사업」은 세계은행(WB),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미주개발은행(IDB),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등 국제금융기구 출연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빈곤감축 및 녹색성장 등 세계경제 당면과제에 공동 대응하는 사업으로, 전액 국제부담금(340-02) 비목으로 편성되어 있음. 2023년 예산액 및 예산현액은 1,593억 4,800만원으로, 이 중 1,374억원을 집행하였고, 219억 4,8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3회계연도 국제금융기구 출연(ODA)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2023							2024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용·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국제금융기구 출연(ODA) 사업(3134-301)		159,348	-	-	159,348	137,400	-	21,948	345,054
WB	- WB 금융혁신기금	2,638	-	-	2,638	2,580	-	58	11,758
	- WB 녹색성장기금	15,825	-	-	15,825	15,815	-	10	15,600
	- WB 초급전문가 JPO 파견	2,795	-	-	2,795	2,847	-	△52	2,823
	- 한-WB 협력기금	37,985	-	-	37,985	37,759	-	226	110,714
	- WB IFC 녹색회복혁신기금	3,956	-	-	3,956	3,870	-	86	3,986
ADB	- ADB e-Asia 지식협력기금	19,639	-	-	19,639	19,639	-	-	28,182
	- ADB-13차 재원보충	23,849	-	-	23,849	23,849	-	-	21,232
AfDB	- 한·아프리카 경제협력기금	5,934	-	-	5,934	5,934	-	-	15,600
EBRD	- EBRD 기술자문협력기금	2,884	-	-	2,884	2,553	-	331	1,868
	- EBRD 지속가능인프라기금	1,212	-	-	1,212	1,290	-	△78	-
	- 초급전문가 JPO 및 인턴파견	1,588	-	-	1,588	1,678	-	△90	1,742
	- EBRD 기후행동 특별기금	**1,319**	**-**	**-**	**1,319**	**-**	**-**	**1,319**	**2,619**
	- EBRD 재난대응 특별기금		-	-	-	-	-	-	65,000
IDB	**- IDB 지식협력기금**	**2,637**	**-**	**-**	**2,637**	**-**	**-**	**2,637**	**2,637**
	- IDB 빈곤감축기금	**2,637**	**-**	**-**	**2,637**	**-**	**-**	**2,637**	**7,837**
	- IDB 재정혁신협력기금	5,275	-	-	5,275	5,106	-	169	5,200
IMF	- 한·IMF 기술협력기금	2,637	-	-	2,637	2,580	-	57	7,176
	- IMF 빈곤감축성장기금	**14,638**	**-**	**-**	**14,638**	**-**	**-**	**14,638**	**29,180**
CABEI	- 한·CABEI 협력기금	11,900	-	-	11,900	11,900	-	-	11,900

< 검토의견 >

기획재정부는 세수결손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도 납부하여야 할 분담금을 불용하고 해당 금액을 2024년도 예산으로 편성하였는바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기획재정부는 당초 2023년도 국제기구에 납부하기로 약정키로 하여 편성한 금액 중 212억 3,100만원을 불용하면서 불용한 금액만큼을 2024년도 예산안에 편성하였음.

구체적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450만 달러를 납입하는 「EBRD 기후행동 특별기금」은 매년 분담금을 약정하여 납부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는 2023년 100만 달러, 2024년 100만 달러를 각각 납부하는 연도별 MOU를 체결하였음에도 2023년에는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2024년도에 2년치인 26억 1,900만원(201만 달러)를 편성하였음.

IDB의 경우 분담금을 매년 약정하여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지급할 의사가 있는 총액만 약정하는 특징을 지니는데, 「IDB 빈곤감축기금」은 2023년에 향후 2,000만 달러를 납입하는 LOU[80]가 체결되어 기획재정부는 2023년 200만달러, 2024년 400만 달러를 납입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나 실제 2023년에 납입하지 않고, 2024년에 2023년 미납입분까지 포함한 78억 3,700만원(603만 달러)를 편성하였음. 「IDB 지식협력기금」은 2023년뿐만 아니라 2024년 8월 현재까지도 IDB와 MOU를 체결하지 않아 구체적인 납입스케쥴이 없는 실정임.

「IMF 빈곤감축성장기금」은 당초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5,589만 달러(0.414억 SDR)를 납입하는 MOU를 체결하여 2023년 1,118만 달러를 납입할 예정이었으나, 기획재정부가 IMF에 직접 납입일정 조정을 요청하여 2023년에 납입하지 않고, 2024년에 2023년 미납입분까지 포함한 291억 8,000만원(2,245만 달러)을 납부하는 MOU를 체결함.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2024년 예산에 동 분담금으로 291억 8,000만원(2,245만 달러)을 편성하였음.

80) Letter of Understanding; 동의서

[2023회계연도에 불용한 국제기구 분담금 2024년도 편성현황]

(단위: 백만원, $)

국제기구	내역사업명	'23년			'24년		
		당초 MOU상 납입액	편성액	불용액	당초 MOU상 납입액(A)	편성액 (B)	차이 (B-A)
EBRD	기후행동 특별기금	1,319** (102만)	1,319 (102만)	1,319 (102만)	1,300 (100만)	2,619 (201만)	1,319 (101만)
IDB	빈곤감축 기금	2,637*** (204만)	2,637 (204만)	2,637 (204만)	5,200 (400만)	7,837 (603만)	2,637 (203만)
	지식협력 기금	-	2,637 (204만)	2,637 (204만)	-	2,637 (203만)	2,637 (203만)
IMF	빈곤감축 성장기금	14,638**** (1,135만)	14,638 (1,135만)	14,638 (1,135만)	14,540 (1,118만)	29,180 (2,245만)	14,640 (1,127만)
합 계			21,231 (1,645만)	21,231 (1,645만)	21,040 (1,618만)	42,273 (3,252만)	21,233 (1,634만)

* 편성 기준환율 : 2023년도 1,290원/1$, 2024년도 1,300원/1$

** 당초 '23~'26 4년간 450만 달러를 납입하는 MOU를 매년 체결하여 2023년 100만 달러를 납입(환차손 고려해 102만 달러 편성)

*** 당초 '23~'28 6년간 2,000만 달러를 납입하는 다년간 MOU를 체결하여 2023년 200만 달러를 납입(환차손 고려해 204만 달러 편성)

**** 당초 '23~'27 5년간 5,589만 달러(0.414억 SDR)를 납입하는 MOU를 매년 체결하여 2023년 1,118만 달러를 납입(환차손 고려해 1,135만 달러 편성)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동 세부사업은 국제기구와 미리 MOU 등으로 협약한 금액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예산집행의 예측가능성이 높아 연례적으로 매우 높은 집행률[81]을 보인다는 점을 감안하면, 2023년도 세수 부족 상황 등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2023년도에 편성된 예산 대부분을 집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최근 4년간 국제금융기구 출연 사업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2020	137,088	82,883	-	-	-	82,883	80,505	97.1	97.1	-	2,378
2021	217,302	217,302	-	-	-	217,302	213,280	98.2	98.2	-	4,022
2022	155,436	155,436	-	-	-	155,436	155,160	99.8	99.8	-	276
2023	159,348	159,348	-	-	-	159,348	137,400	86.2	86.2	-	21,948

자료 : 기획재정부 자료 바탕으로 재작성

81) 편성환율과 집행환율의 괴리로 인한 환차 발생으로 연례적으로 100%가 아닌 90%대 후반의 집행률을 보임.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도 국제금융기구 출연은 국제금융기구 및 국제사회와의 약속(MOU, 공여협정(Contribution Agreement) 등)에 기반한 의무지출로 약속된 일정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나, 2023년 세입상황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하게 납입일정을 조정하고, 감액분을 차년도 예산으로 반영했다는 입장임.

2023년도에 발생한 대규모 세수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동 세부사업의 예산 중 일부를 불용한 것은 한정된 예산을 우선순위에 따라 집행하는 차원에서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으나, 향후에는 이러한 예산 불용 및 재편성·집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15) 양자 정책자문 사업관리 개선 및 비ODA 국가에 대한 사업 분리 필요
(경제발전경험공유(ODA), 대외경제국)

< 현 황 >

「경제발전경험공유(ODA) 사업」은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경제발전 경험을 개도국을 포함한 경제협력 국가와 공유함으로써 협력대상국의 경제·사회적 발전을 지원하고 상호 경제협력을 증진시키는 ODA 사업임. 2023년 예산액 및 예산현액은 190억 1,700만원으로, 이 중 170억 1,800만원을 집행하였고, 12억 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7억 9,700만원을 불용하였음.

「경제발전경험공유(ODA) 사업」의 내역사업인 「양자 정책자문」은 예산현액 105억 5,500만원 중 107억 3,900만원을 집행하였고, 11억 9,100만원을 이월하였는바 동 내역사업에서 13억 7,500만원을 초과집행[82]하였음.

[2023회계연도 경제발전경험공유(ODA)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내내역사업명)	2023							2024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경제발전경험공유(ODA) 사업(3234-301)	19,017	-	-	19,017	17,018	1,202	797	23,683
- 양자 정책자문	10,555	-	-	10,555	10,739	1,191	△1,375	15,680
· 22/23 계속	3,765	-	-	3,765	3,629	-	136	2,940
· 23/24 신규	6,790	-	-	6,790	7,110	1,191	△1,511	12,740
- 국제기구 공동컨설팅	5,695	-	-	5,695	4,408	-	1,287	5,015
· 22/23 계속	1,530	-	-	1,530	1,083	-	447	1,200
· 23/24 신규	4,165	-	-	4,165	3,325	-	840	3,815
- 사업기획 및 성과관리	2,416	-	-	2,416	1,546	11	859	2,635
- 운영비	351	-	-	351	325	-	26	353

82) 동 세부사업은 대부분 일반용역비(210-14, 2023년도 예산액 186억 6,600만원)로 편성되어 있는데, 기획재정부는 내역사업 구분 없이 일반용역비를 집행하여 음(-)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음.

< 검토의견 >

양자 정책자문 내역사업에서 당초 계획과 달리 계약 시기를 지연하여 집행률이 저조하므로 향후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고, ODA사업에서 비ODA 국가를 대상으로 동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세부사업을 분리할 필요가 있음.

기획재정부는 「양자 정책자문」 내역사업 중 '23/24 신규' 내내역사업에서 11억 9,100만원을 이월시켰는데, 이월된 계약은 '2023/24년도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Ⅱ'임. 세부과업내용을 살펴보면 '라오스 루앙프라방 국제공항 항공 운영체계 개선', '말레이시아 사라왁주 수소로드맵 수립', '세르비아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BIO-4 센터 조성 지원' 및 '카자흐스탄 노후발전소 수명 연장 및 에너지 효율 개선 방안'임. 4개의 세부과업 모두 사업 기간은 12개월임.

기획재정부는 매년 동 내역사업 수행을 위해 한국수출입은행, KDI, KOTRA로 구성된 컨소시업과 계약을 체결하여 일반용역비를 집행하는데, 연례적으로 사업공고 후 유찰하고 재공고 후 동 컨소시엄과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2023년의 경우, 기획재정부는 예년과 달리 사업공고를 지연하여 11월 27일부터 12월 15일까지 진행하여 유찰하고, 재공고를 2024년 1월 3일부터 4일까지 진행함에 따라 이월액이 발생하였음. 기획재정부는 사업선정 및 협의 과정에 예상보다 긴 시간이 소요되어 입찰공고가 예년 대비 지연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음.

[최근 5년간 '23/24 신규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Ⅱ' 입찰공고일 내역]

(단위 : 일)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사업 공고	8. 22. ~ 9. 3.	9. 10. ~ 9. 22.	10. 12. ~ 10. 26.	10. 21. ~ 11. 11.	**11. 27.~12. 15.**
재 공고	9. 17. ~ 9. 19.	10. 12. ~ 10. 16.	11. 15. ~ 11. 18.	11. 23. ~ 11. 24.	**'24. 1. 3. ~ 1. 4.**

자료 : 나라장터 공고 바탕으로 재작성

동 내역사업은 N-2년에 KOTRA가 협력국으로부터 제안서를 공모·접수하고 N-1년에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심의 및 사업 최종 승인을 거쳐 N년도에 나라장터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 수행자를 결정하고 있음. 통상적으로 10~11월부터 12개월 동안 사업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동 내역사업의 계약을 2024년 1월로 미루는 것은 동 사업의 효과성 및 시의성 등을 고려할 때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기획재정부도 「2023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보고서」에서 동 사업에 대해 '미흡' 평가를 하여 2024년도 예산안 편성 시 전년 대비 10% 감액하는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함.

기획재정부는 향후 동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고, 수원국이 동 사업을 적시에 제공받음으로써 우호적인 경제협력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한편, ODA사업인 동 사업에서 비ODA 국가를 대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세부사업을 분리할 필요가 있음.

「양자 정책자문」 내역사업의 국가별(아시아, 중동·아프리카, 중남미) ODA 국가 사업은 국무조정실 산하의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되고 조정되고 있음[83]. 그러나 비ODA 국가에 대한 정책자문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음.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2023회계연도에 ODA사업인 동 사업에서 비ODA 국가를 대상으로 28억 7,200만원의 양자 정책자문 내역사업을 집행하였음. ODA 사업인 「경제발전 경험공유(ODA) 사업」에서 비ODA 국가를 대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예산 집행임.

---

83)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7조(국제개발협력위원회)** ①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계획·전략 및 정책이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요 사항을 조정 및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 및 심사·의결한다.
1. 제11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수립·수정에 관한 사항
2. 제14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수립·수정에 관한 사항
3. 제15조에 따른 중점협력대상국 선정 및 해당 국가에 대한 중기지원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4. 제16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5. 제22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점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책 중 정부 차원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2023회계연도 양자 정책자문 내역사업 편성·집행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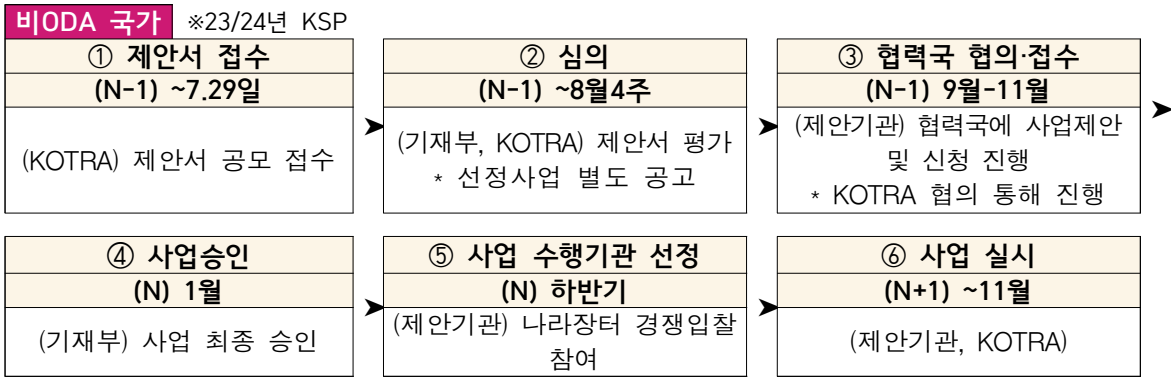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2023년 편성	2023년 집행
○ 계속(22/23) 3,765백만원	○ 계속(22/23) 3,765백만원
·아시아 1,200 (10개×400×30%)	·아시아 717 (라오스, 몽골2, 베트남2, 인니, 캄보디아, 필리핀, **호주**)
·중동·아프리카 405 (3개×450×30%)	·중동·아프리카 537 (요르단, 이집트, **사우디, 쿠웨이트, 오만**)
·중남미 1,350 (9개×500×30%)	·중남미 995 (도미니카, 볼리비아, 콜롬비아2, 쿠바, 파라과이, 페루, **우루과이**)
·CIS·유럽 405 (3개×450×30%)	·CIS·유럽 704 (우즈벡, 세르비아, 아르메니아, 키르키즈,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협력국 긴급요청사업 405 (3개×450×30%)	·협력국 긴급요청사업 677 (라오스, 말레이, **MRC(메콩강위원회)**, 가나2, 르완다, 세르비아)
○ 신규(23/24) 6,790백만원	○ 신규(23/24) 6,790백만원
·아시아 2,240 (8개×400×70%)	·아시아 1,177 (라오스, 몽골, 베트남, 인니, 태국)
·중동·아프리카 945 (3개×450×70%)	·중동·아프리카 961 (남아공, 요르단, **카타르**)
·중남미 1,400 (4개×500×70%)	·중남미 1,055 (콜롬비아, 파라과이, **칠레**)
·CIS·유럽 945(3개×450×70%)	·CIS·유럽 945 (보스니아, 알바니아, 우즈벡, 타지키스탄2, **크로아티아,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리투아니아**)
·협력국 긴급요청사업 1,260(4개×450×70%)	·협력국 긴급요청사업 1,079 (캄보디아, 르완다, 쿠바, 우즈벡)

주 : 볼드체 및 밑줄에 해당하는 국가는 비ODA 국가를 의미함.
자료 : 기획재정부 자료 바탕으로 재작성

게다가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민간 사업 제안 공모문'을 살펴보면, 비ODA국가를 명시적으로 동 사업의 범위로 포함시켜 제안서 접수, 심의, 사업승인 등의 일련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동 세부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2023년도 KSP 민간 사업 제안 공모문 중 비ODA국가 사업선정 절차]



자료 : 2023년도 KSP 민간 사업 제안 공모문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해외 수주 지원 등을 위해 비ODA 국가와도 정책자문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입장임.

그러나 동 세부사업은 전액 우리나라 ODA 사업액에 계상된다는 점에서, 비ODA 국가에 지원하는 목적의 예산이 동 사업에서 편성·집행될 경우 ODA 통계에 왜곡이 발생할 것으로 보임.

게다가 비ODA 국가를 대상으로 한 사업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필요시 기획재정부가 단독으로 결정·집행하며, 현재까지도 비ODA 국가에 지원하는 법령상 근거가 없는 상황으로 절차적 측면에서도 체계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음.

그럼에도 기획재정부는 2024년에도 ODA 국가 및 비ODA 국가와의 사업수행을 확대하기 위해 3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24/25년 신규 협력국 긴급요청사업'으로 10건의 정책자문을 수행할 예정이며 긴급요청사업 정책자문 10건 중 7건[84]은 비ODA 국가를 대상으로 집행할 계획이라는 입장인바, 조속히 비ODA 국가에 대한 정책자문을 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만들고 세부사업을 분리시킬 필요가 있음.

[2023·2024년도 양자 정책자문 내역사업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2023년 예산	2024년 예산
('22) 12,196백만원 → ('23) 10,555백만원, 1,641백만원 감액	**('23) 10,555→ ('24) 15,680백만원, 48.6%**
○ 계속(22/23) 3,765백만원 ・아시아 1,200 (10개×400×30%) ・중동・아프리카 405 (3개×450×30%) ・중남미 1,350 (9개×500×30%) ・CIS・유럽 405 (3개×450×30%) ・협력국 긴급요청사업 405 (3개×450×30%) ○ 신규(23/24) 6,790백만원 ・아시아 2,240 (8개×400×70%) ・중동・아프리카 945 (3개×450×70%) ・중남미 1,400 (4개×500×70%) ・CIS・유럽 945(3개×450×70%) **・협력국 긴급요청사업 1,260(4개×450×70%)**	○ 계속(23/24) ('23)3,765 → ('24)2,940백만원, △21.9% ・아시아 600 (5개×400×30%) ・중동・아프리카 270 (2개×450×30%) ・중남미 450 (3개×500×30%) ・CIS・유럽 810 (5개×450×30%) ・협력국 긴급요청사업 405 (7개×450×30%) ○ 신규(24/25) ('23)6,790 → ('24)12,740백만원, +87.6% ・아시아・오세아니아 3,640 (13개×400×70%) ・중동・아프리카 1,890 (6개×450×70%) ・중남미 2,800 (8개×500×70%) ・CIS・유럽 1,575 (4개×450×70%) **・협력국 긴급요청사업 3,150 (10개×450×70)**

자료 : 기획재정부 자료 바탕으로 재작성

84) 영국, 호주, 스페인, 슬로바키아, 크로아티아, 오만, 폴란드

(16) 기본경비 적정 소요를 반영한 합리적인 예산 편성 필요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예산실)

< 현 황 >

예산실 기본경비 사업은 예산실 운영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경비로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사업(7111-216)과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 사업(7111-266)으로 구분됨.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사업의 2023년 예산액은 11억 8,500만원으로, 9억 2,600만원을 집행하였고, 2억 5,900만원을 불용하였음.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 사업의 2023년 예산액은 24억 6,500만원으로, 이 중 23억원을 집행하였고, 1억 6,5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3회계연도 예산실 기본경비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 세목명)	2023								2024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사업(7111-216)	1,185	-	-	-	1,185	926	-	259	1,185
- 특근매식비(210-05)	**303**	**-**	**△7**	**-**	**296**	**96**	**-**	**200**	**297**
- 기타운영비(210-16)	58	-	7	-	65	65	-	-	64
- 특정업무경비(250-03)	824				824	758		66	824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 사업(7111-266)	2,465	-	-	-	2,465	2,300	-	165	2,515
- 일반수용비(210-01)	973	-	△22	-	951	868	-	83	973
- 공공요금및제세(210-02)	5	-	-	-	5	5	-	-	5
- 임차료(210-07)	332	-	-	-	332	332	-	-	354
- 시설장비유지비(210-09)	5	-	-	-	5	5	-	-	5
- 국내여비(220-01)	517	-	38	-	554	554	-	-	568
- 국외업무여비(220-02)	45	-	△16	-	29	29	-	-	45
- 관서업무추진비(240-02)	234	-	-	-	234	220	-	14	237
- 공사비(420-03)	107	-	-	-	107	101	-	6	107
- 자산취득비(430-01)	248	-	-	-	248	194	-	54	221

자료: 기획재정부

< 검토의견 >

예산실 기본경비 사업의 특근매식비(210-05)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어 불용이 예상되므로 2025년 예산편성 시 적정 규모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예산실의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는 특정업무경비(250-03목), 특근매식비(210-05목), 기타운영비(210-16목)로 구성되며, 2023년 특근매식비 예산은 3억 264만원이고, 이 중 9,569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34%로 나타남.

예산실의 최근 3년간 특근매식비 집행현황을 보면, 2021년 86.5%, 2022년 78.5%로 2023년을 제외하면 비교적 양호한 수준임

[최근 3년간 예산실 특근매식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

2021			2022			2023			2024
예산	집행	집행률	예산	집행	집행률	예산	집행	집행률	예산
289,000	249,908	86.5	302,643	237,643	78.5	302,643	95,688	31.6	297,000

자료 : 기획재정부

2023년 특매비 불용사유에 대해서 예산실은 2022년까지 국내 출장 공무원에게 국내여비 외에 특근매식비도 중복적으로 지급되었는데[85], 2023부터는 이러한 중복문제를 해소함으로써 불용액이 증가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국내 출장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국내여비에는 운임, 식비, 숙박비, 일비가 포함되고 있으므로 출장자에게 별도로 특근매식비를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한 예산의 중복지급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예산실이 2023년부터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출장자에게 특근매식비를 집행하지 않은 것을 타당한 조치로 이해됨.

다만, 국내여비와 특근매식비의 중복지급 문제를 인지하여 2023년 초부터 국내 출장 공무원에게 특근매식비를 집행하지 않았으므로 2023년 특근매식비 불용이 예상되는 상

85)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특근매식비 지급대상자는 정규근무시간 개시 2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이며,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식비를 지급 받은 자는 특근매식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황이며, 2024년 예산 규모를 2023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편성함으로써 2024년 특근매식비 예산 또한 대부분 불용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2025년 예산편성 시에는 특근매식비 예산을 적정한 수준으로 편성하여 불용예산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17)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상환 유예 재발 방지 필요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국고국)

< 현 황 >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사업은 일반회계 부족재원 조달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국채발행자금을 통해 예수받은 자금의 이자를 상환하기 위한 것으로서, 2023년 예산액은 14조 4,843억 2,100만원이 편성되었고 5조 9,056억 1,9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8조 5,787억 2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3회계연도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23								2024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용·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8711-871)	14,484,321	-	-	-	14,484,321	5,905,619	-	8,578,702	18,262,006

< 검토의견 >

기획재정부는 일반회계의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한 예수이자상환 유예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일반회계는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예수 받은 경우 약정된 예수이자를 정해진 일정에 따라 상환할 필요가 있으며 기획재정부는 원활한 예수이자 상환을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사업을 편성·집행하고 있음.

2023년 예수이자 상환 예산은 14조 4,843억원이나, 이 중 40.8%인 5조 9,056억원만 집행하고 8조 5,787억원을 불용하였음. 불용액 가운데 약 7조 8,000억원[86]은 실제 지급되어야할 이자를 유예한 것으로서 2023회계연도 약 56.4조원에 이르는 세수결손에 따라 발생한 일반회계 재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것임.

세수부족으로 인한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한 예수이자 상환 유예는 2014년 이후 처음 발생한 것이며 2014년 당시 3조 9,700억원에 이르는 이자를 상환 유예하였고, 국회는 이에 대하여 '세수부족으로 인한 지출 소요 부족액을 이자지출 불용 등으로 해소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것'이라는 시정을 요구한 바 있음.

[2014년 예수이자 상환 유예 현황]

(단위: 십억원)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집행률	불용사유
7,765	3,712	4,053	47.8%	자금사정에 따른 상환유예 3,970 자연불용 83 (편성·실행 금리 차이 등)

자료: 기획재정부

[2014년 유예 예수이자 상환 현황]

(단위: 십억원)

연도	미상환액	상환액	미상환 잔액	지연이자 지급액
2015	3,970.3	234.7	3,735.6	7.5
2016	3,735.6	3,735.6	-	141.5

자료: 기획재정부

86) 예수이자 상환 불용액 8조 5,787억원 유예된 이자를 제외한 7,787억원은 예산안 편성 당시 예수금리와 실제 예수금리 간 차이 등으로 인한 자연 불용분에 해당

기획재정부는 예수이자 상환 유예 재발에 대하여 「국가재정법」 제43조5항[87]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예산 집행 보류 조치 권한을 활용한 것으로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불가피한 상황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한 예수이자상환 유예로 인하여 야기된 이자 7.8조원에 대해 일반회계는 추가적인 이자를 부담해야하며 이에 따라 추후 지출 부담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공공자금관리기금 운용위원회는 유예된 예수이자에 대하여 23년 3,4분기 국고채 평균 조달금리에 해당하는 3.792%의 이자율을 적용하였고 기획재정부는 2025년 1월에 예수이자 유예분에 대한 상환을 예정하고 있는 바, 일반회계가 부담하여야하는 추가적 이자 지출은 최소 약 2,9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88].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세수부족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상환 유예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87) **「국가재정법」 제43조(예산의 배정)** ①~④ (생 략)
⑤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수지의 적정한 관리 및 예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조정하거나 예산배정을 유보할 수 있으며,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88) 25년 1월 유예 예수이자를 상환할 경우, 연체기간은 최소 1년이며 3.792%의 이자율을 적용할 경우, 2,957억원 이상의 추가적 이자지출이 발생함

3. 기획재정부 소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가. 개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지특회계')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74조에 따라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지역균형발전 시책 지원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음. 동 법 제75조에 근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관리·운용 주체는 기획재정부 장관이고 회계의 예산은 중앙행정기관의 조직별로 구분되어 있음[89].

2023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입 수납액은 당초 세입예산 11조 9,273억원의 107.1%인 12조 7,711억원으로, 지역자율계정과 지역지원계정의 주세 3조 5,686억원, 각 계정별 일반회계 전입금 4조 6,491억원과 기타특별회계 전입금 2조 7,648억원, 계정간 전입금 1,840억원, 전년도이월금 등 6,914억원, 전년도 세계잉여금 280억원을 수납하였음.

2023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출 집행액은 1,840억원으로, 지역자율계정에서 지역지원계정으로 계정간 전출하는 내용으로 집행되었음.

89) 제74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지역균형발전시책 지원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75조(회계의 관리·운용)
① 회계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② 회계의 예산은 중앙행정기관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세출예산의 배정·자금운영·결산, 그 밖에 회계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3회계연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결산 현황]

(단위: 억원)

구분	세입				세출		
		항목	예산	결산	소관	예산	결산
총 계			119,273	127,711	총 계	119,273	118,659
지역자율계정	소 계		25,534	30,554	소 계	25,534	25,507
	자체수입	주세수입(40%)	12,860	14,275	부처사업비	23,694	23,667
		법정부담금	2,225	2,829			
		기타수입	560	740			
	내부지출	일반회계 전입	2,229	1,858	지원계정전출	1,840	1,840
		전년도이월금 등	-	2,117			
		농특회계(구조) 전입	6,846	7,923			
		농특회계(임업) 전입	813	813			
		환특회계 전입	-	-			
지역지원계정	소 계		90,391	93,611	소 계	90,391	89,840
	자체수입	주세수입(60%)	19,291	21,412	부처사업비	90,391	89,840
		법정부담금	2,502	3,059			
		기타수입	2,418	2,147			
	내부지출	일반회계 전입	45,610	41,772			
		전년도이월금 등	-	4,651			
		계정간전입금	1,840	1,840			
		농특회계(구조) 전입	-	-			
		농특회계(임업) 전입	1,646	1,646			
		교특회계 전입	3,619	3,619			
		환특회계 전입	13,465	13,465			
제주계정	소 계		2,775	2,862	소 계	2,775	2,758
	자체수입	기타수입	34	61	부처사업비	2,775	2,758
	내부지출	일반회계 전입	2,338	2,338			
		전년도 세계잉여금	220	280			
		환특회계 전입	183	183			
세종계정	소 계		573	684	소 계	573	554
	자체수입	기타수입	4	14	부처사업비	573	554
	내부지출	일반회계 전입	523	523			
		전년도이월금 등	46	146			

나. 검토의견

(1) 교통·에너지·환경세 전입액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 정산 필요 (지특회계 지역자율계정 일반회계전입금, 예산실)

< 현 황 >

지특회계 지역자율계정의 세입은 주세(100분의 40) 등 자체수입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의 내부지출로 구성되며, 세출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대한 보조 및 계정간전출금으로 구성됨[90]. 2023년 지역자율계정 일반회계전입금 세입예산은 2,229억 4,200만원이며, 이 중 1,857억 8,600만원이 수납되었음

[2023회계연도 지특회계 지역자율계정 일반회계전입금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목명	2023							2024
	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예산액
일반회계전입금 (91-911)	222,942	-	222,942	185,786	185,786	-	-	306,516

자료 : 기획재정부

90) 제78조(지역자율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지역자율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세법」에 따른 주세의 100분의 40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6조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
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4.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4조제2항제4호, 제4조의2제2항제3호 및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라 회계로 전입되는 전입금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豫受金)
6.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7. 회계의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② 회계의 지역자율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의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보조
2.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사업에 필요한 경비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4.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5. 계정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6. 회계의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의 전출금

< 검토의견 >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82조제1항은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000분의 20을 지특회계 지역자율계정의 세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교통·에너지·환경세 전입액의 예산액과 결산액 사이에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차액을 결산 연도의 다음 연도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도록 하고 있는바[91], 향후 예산편성 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지특회계 지역자율계정 세입 중 일반회계 전입금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82조에 근거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0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지특회계 지역자율계정으로 전입하는 것임.

일반회계로부터 지역자율계정으로의 전입금 예산은 교통·에너지·환경세 예산액 11조 1,471억원의 10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인 2,229억 4,200만원인데, 2023년에 지역자율계정으로 전입된 예산(지특회계 지역자율계정 전출 사업 23년 집행액)은 1,857억 8,600만원으로 371억 5,60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일반회계 배정 자금 부족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설명함.

[2023회계연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자율계정) 전출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2023								2024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용·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 전출(8010-802)	222,942	-	-	-	222,942	185,786	-	37,156	306,516
- 특별회계전출금 (610-02)	222,942	-	-	-	222,942	185,786	-	37,156	306,516

자료 : 기획재정부

91) 제82조(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
①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0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교통·에너지·환경세전입액"이라 한다)을 일반회계로부터 이 회계에 전입하여야 한다.
② 교통·에너지·환경세전입액은 지역자율계정의 세입으로 한다.
③ 정부는 회계의 수입으로 회계에 속하는 경비의 전부를 마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④ 교통·에너지·환경세전입액의 예산액과 결산액 사이에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결산 연도의 다음 연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등 4개의 계정으로 구분되며, 이 중 지역자율계정은 도서(섬), 지방소도읍, 접경지역, 농어촌 등의 생활기반 확충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 포괄보조금 형식으로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으로, 중앙정부가 세부 내역사업별로 재원을 교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다 많은 자율성이 부여되며,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한편, 기획재정부는 매년 일반회계 전입금에 상당하는 예산을 지역자율계정에서 지역지원계정으로 전출하고 있는데, 2023년의 경우 1,840억원을 지역자율계정에서 지역지원계정으로 전출하였음.

[지역자율계정 일반회계전입금 및 타 계정 전출 내역]

(단위: 억원)

계정	항목	2021		2022		2023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지역자율계정	일반회계 전입금 (세입)	3,138	3,138	3,076	3,076	2,229	1,858
	지역지원계정 전출 (세출)	2,974	2,974	5,551	4,163	1,840	1,840

자료 : 기획재정부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82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지특회계 지역자율계정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세입 확보를 위해 지역지원계정과는 달리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000분의 20을 지역자율계정의 세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교통·에너지·환경세 전입액의 예산액과 결산액에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결산 연도의 다음연도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됨.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일반회계 배정자금 부족에 따른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인 371억 5,600만원은 결산 연도의 다음연도인 2025년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할 필요가 있음.

4. 기획재정부 소관 기금

1) 공공자금관리기금

가. 개요

공공자금관리기금은 국고채 통합발행으로 회계·기금의 필요 자금을 조달하고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1994년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라 신설되었으며, 국채관리기금과 재정융자 특별회계를 각각 흡수·통합하였음.

이에 따라 현재 공공자금관리기금은 총괄계정(공공자금관리기금과 국채관리기금 통합), 융자계정(재정융자특별회계 융자계정의 흡수), 차관계정(재정융자특별회계 차관계정의 흡수)으로 구분되어 운용되고 있음.

2023년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규모는 전년(250조 7,576억원) 대비 34조 6,554억원(+13.8%) 증가한 285조 4,129억원임.

2023년도 총괄계정의 조달 및 운용실적은 수정 계획액 298조 1,513억원 대비 95.3%인 284조 2,837억원을 집행하였음.

국고채수입 164조 81억원, 기금예탁원금회수 78조 5,706억원 등으로 총 284조 2,837억원을 조달하였으며,

일반회계예탁금 55조 4,413억원, 기타기금으로의 예탁금 60조 8,116억원 등으로 총 284조 2,837억원을 운용하였음.

[2023회계연도 공공자금관리기금 총괄계정 조달 및 운용 규모]

(단위: 억원, %)

조 달				운 용			
구 분	계획(A)	실적(B)	B/A	구 분	계획(C)	실적(D)	D/C
국공채수입	1,677,925	1,640,081	97.7	일반회계예탁금	554,413	554,413	100.0
예수금	261,393	254,659	97.4	기타회계기금예탁금	722,774	626,848	86.7
예탁원리금회수	1,033,945	930,739	90.0	예수원리금상환	343,761	342,666	99.7
국공채원리금회수	2,267	704	31.1	국고채원리금상환	1,311,462	1,286,894	98.1
기타이자수입 등	5,983	16,654	278.4	국공채인수 등	49,103	32,017	65.2
합 계	2,981,513	2,842,837	95.3	합 계	2,981,513	2,842,837	95.3

2023년도 융자계정의 조달 및 운용실적은 수정 계획액 7,772억원 대비 100.0%인 7,772억원 규모임. 융자계정은 융자금・예탁금 등의 원리금 수입과 총괄계정 및 차관계정으로부터의 예수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사회간접자본 확충사업 및 취약 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등 공공목적의 국책사업에 대한 재정융자를 실시하고 있음.

[2023회계연도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조달 및 운용 규모]

(단위: 억원, %)

조 달				운 용			
구 분	계획(A)	실적(B)	B/A	구 분	계획(C)	실적(D)	D/C
융자원리금회수	1,091	1,012	92.8	융자금	11	11	100.0
예수금	2,700	2,251	83.4	예수원리금상환	6,962	6,962	100.0
예탁원리금회수	51	52	102.0	여유자금운용	798	799	100.1
일반회계전입금	93	93	100.0				
기타이자수입 등	3,837	4,365	113.8				
합 계	7,772	7,772	100.0	합 계	7,772	7,772	100.0

2023년도 차관계정의 조달 및 운용실적은 수정 계획액 3,519억원 대비 100.0%인 3,519억원 규모임. 차관계정은 공공차관 협약에 의해 도입한 재정차관 자금의 회수 및 상환 등을 관리하기 위한 것임. '23년 잔여재원을 총괄계정으로 전출하여 '24년 이후 운용계획은 없음.

[2023회계연도 공공자금관리기금 차관계정 조달 및 운용 규모]

(단위: 억원, %)

조 달				운 용			
구 분	계획(A)	실적(B)	B/A	구 분	계획(C)	실적(D)	D/C
여유자금회수	3,519	3,519	100.0	전출금	3,519	3,519	100.0
합 계	3,519	3,519	100.0	합 계	3,519	3,519	100.0

나. 검토의견

(1) 잔존만기가 긴 예탁금의 조기회수 지양 필요 (기금예탁원금회수, 국고국)

< 현 황 >

「기금예탁원금회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총괄계정이 다른 회계·기금 또는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을 회수하는 것으로서, 당초 65조 5,841억 6,800만원에서 14조 4,000억원이 증액된 79조 9,841억원 6,800만원이 수정 계획되어 77조 8,871억 4,000만원이 수납되었음.

[2023회계연도 기금예탁원금회수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목명	2023								2024
	계획액		이체등 증감액	계획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계획액
	당초	수정							
기금예탁원금회수 (92-923)	65,584,168	79,984,168	-	79,984,168	77,887,140	77,887,140	-	-	111,097,618

< 검토의견 >

2023회계연도에 외국환평형기금에 신규로 예탁한 예탁금을 조기상환 받는 것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운용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예탁 잔존기간이 지나치게 많이 남은 예탁금 조기 회수를 지양하고 예탁금의 조기 회수 이후 동일 기금에 대한 신규 예탁 또한 지양할 필요가 있음.

기획재정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재원을 자금이 부족한 회계나 기금에 예탁하고 있으며, 예탁을 받으려는 회계나 기금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예탁요구액, 예탁 기간, 사용계획,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 계획 등을 명시한 예탁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함. 한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탁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실제 예탁 기간 역시 대부분 10년 내외로 정해지고 있음.

2023회계연도 공공자금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따르면 당초 외국환평형기금에 예탁된 자금 중 49조 8,018억 가량을 상환받을 것을 계획하였으나, 세수부족으로 인하여 14조 4,000억원을 추가로 조기상환 받아 총 64조 2,018억원을 상환받았음. 조기상환 분 14조 4,000억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이 23년 3월 예탁한 6조 9,869억원, 23년 6월 예탁한 2조 9,131억, 10월에 예탁한 4조 5,000억원으로 구성됨.

[외국환평형기금 예탁금 조기상환 구성]

(단위: 억원, %)

예탁 일자	예탁금리	예탁규모	상환규모	당초 만기일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일자
23. 3. 9.	4.034	30,000	30,000	25. 12. 9.	23. 11. 22.
23. 3. 9.	4.043	39,869	39,869	32. 12. 9.	
23. 6. 8.	3.569	119,263	29,131	33. 3. 9	
23. 10. 24.	3.712	10,000	10,000	26. 9. 9.	
23. 10. 24.	3.813	35,000	35,000	33. 9. 9.	

자료: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최근 강달러 현상으로 인해 외국환평형기금의 재원사정이 개선되었으며 높은 이자율의 예탁금 상환을 통해 외국환평형기금의 수지 개선을 도모하고자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해 조기 상환을 실시하였다는 입장임.

하지만 잔존만기가 많이 남은 예탁금을 상환받은 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첫째, 잔존만기가 긴 예탁금을 조기 상환 받는 것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운용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예탁 및 융자조건 결정기준」 제7조제3항[92]은 예탁금을 조기상환 받을 경우 예탁잔존기간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부과금액은 예탁 잔존기간이 길수록 커지게 됨. 이는 조기상환에 따라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장기적 기금운용에 차질이 발생하고 조기상환 분에 대한 자금 운용을 위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므로 잦은 조기상환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할 수 있음.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에 23년 3월, 6월 및 10월에 예탁한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재원을 당해연도에 곧바로 상환받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 입장에서 잔존기간이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남은 예탁금을 회수한 결과를 가지고 옴. 이는 자금 운용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운용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둘째, 외국환평형기금으로부터 조기상환을 받은 이후 또 다시 외국환평형기금에 대한 신규예탁을 실시함으로써 자금 운용상 비합리성이 나타남. 기획재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으로부터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을 조기상환 받은 이후 12월에 다시 외국환평형기금에 자금을 예탁한 바, 조기상환을 받지 않고 12월 예탁을 줄였다면 불필요한 기금 간 내부거래와 기금운용비용을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아울러 예탁금리는 총괄계정이 조달하는 자금의 평균조달금리에 기금운용 경비를 추가하여 결정되고[93], 평균조달금리는 국고채 발행금리에 의해 변화하게 되므로 채권시장

---

92)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예탁 및 융자조건 결정기준」 제7조(예탁금리 등)** ①~② (생 략)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총괄계정으로부터 자금을 예탁받은 회계·기금의 관리자 또는 총괄계정이 인수한 유가증권의 발행자의 요청으로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예탁기간 만료전에 자금을 상환받는 경우에는 그 상환일까지의 이자에 예탁 잔존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기한전 상환계획을 상환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미리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상환일까지의 이자에 상환으로 인하여 자금운용에 소요되는 추가비용만을 부과할 수 있다.
1. 예탁 잔존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 중도상환금액 × 0.5%
2. 예탁 잔존기간이 2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 중도상환액 × 0.3%
3. 예탁 잔존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 중도상환액 × 0.1%

93)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예탁 및 융자조건 결정기준」 제7조(예탁금리 등)** ① 예탁금리는 예탁일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분기 종료월 21일부터 전분기 종료월 20일(해당일이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 전일)까지 총괄계정이 조달하는 자금의 평균조달금리에 기금운용 경비를 추가하여 결정한다. 다만, 회계·기금의 성격, 관리기금 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회계·기금별로 예탁금리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고채의 할인·할증발행, 일시적인 자금 과부족 조절을 위한 비용, 기타 기금운용 비용 등을 감안하여 연 0.10% 범위내에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 경비를 정한다.

의 상황, 경기상황 등에 의해 변동성을 가짐. 조기상환을 받지 않고 신규 예탁을 줄일 경우 공공자금관리기금과 외국환평형기금 모두 금리 변동성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기상환보다 신규예탁 감소가 바람직한 측면이 있었다고 보임.

[2023년 외국환평형기금에 대한 신규 예탁내역]

(단위: 억원, %)

예탁시기	예탁규모	예탁금리	상환 여부
3월	69,869	4.043	상환
4월	15,000	3.544	미상환
6월	119,263	3.569	일부 상환
	15,000	3.544	미상환
9월	104,573	3.474	미상환
	30,000	3.308	미상환
10월	35,000	3.813	상환
	10,000	3.712	상환
12월	99,314	3.813	미상환

자료: 기획재정부

실제로 기획재정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재원 9조 9,314억원을 2023년 12월, 외국환평형기금에 3.813%의 금리로 신규 예탁한 바, 이는 6월에 예탁한 후 조기상환 받은 자금의 금리 3.569%와 10월에 예탁한 후 조기상환 받은 자금의 3.712%의 금리보다 높은 것임. 기획재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의 수지 개선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을 조기상환 하였지만 오히려 더 높은 금리로 신규 예탁을 받는 비합리성이 나타났고 이는 금리 변동성에 노출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음.

따라서 추후 기획재정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운용취지를 감안하여 잔존기간이 지나치게 많이 남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을 조기상환 받은 이후 다시 신규 자금을 예탁하는 것을 지양하고 자금 운용의 합리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2) 국유재산관리기금

가. 개요

국유재산관리기금은 기존의 단순한 유지·보존 위주의 국유재산 관리정책에서 벗어나 「국유재산법」 제26조의2에 따라 국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을 통해 국유재산의 가치를 제고·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음.[94]

2023년도 수입은 2조 6,829억원으로 수입계획 대비 103.9%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국유의 토지·건물 등 국유재산 매각대금 1조 7,099억원, 국유재산 대여료 등 재산수입 1,887억원, 변상금 등 경상이전수입 477억원, 여유자금회수 2,354억원, 예탁이자수입 5,012억원으로 구성됨.

2023년도 지출은 2조 6,829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6.5%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공용재산취득 9,062억원, 비축토지 매입비 800억원 등의 사업비와 기금운영비 26억원, 공자기금예탁 9,600억원, 여유자금운용 7,341억원 등에 활용함.

지출내역 중 사업비의 집행실적은 현액 1조 2,181억원 대비 9,862억원(81.0%)이며, 국유 청·관사 등 공용재산 취득사업 집행실적이 현액 1조 1381억원 대비 9,062억원으로 79.6%임.

여유자금은 현액 5,985억원 대비 실적 7,341억원으로 122.7% 수준으로 운영하였으며, 그 사유는 국유재산 매각대 등 자체수입 증가에 따라 운용액이 증가하여 집행률이 증가하였음.

94) **「국유재산법」 제26조의2(국유재산관리기금의 설치)** 국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국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한다.

[2023회계연도 국유재산기금 수입·지출 총괄표]

(단위: 억원, %)

수 입				지 출			
구 분	계획(A)	실적(B)	B/A	구 분	현액(C)	실적(D)	D/C
○ 자체수입	19,342	19,463	100.6	○ 사업비	12,181	9,862	81.0
- 국유재산 매각대	16,549	17,099	103.3	- 공용재산 취득사업	11,381	9,062	79.6
- 국유재산 대여료 등 재산수입	2,142	1,887	88.1	- 비축토지 매입	800	800	100.0
- 변상금 등 경상이전수입	651	477	73.3	○ 기금운영비	28	26	94.3
○ 정부내부수입	4,816	5,012	104.1	○ 정부내부지출	9,600	9,600	100.0
○ 여유자금회수	1,671	2,354	140.9	○ 여유자금운용	5,985	7,341	122.7
합 계	25,829	26,829	103.9	합 계	27,794	26,829	96.5

자료: 기획재정부

나. 검토의견

(1) 위탁개발임차료 조기 지급을 위한 대규모 기금운용계획변경 지양 필요 (총괄, 국고국)

< 현 황 >

국유재산관리기금에서 위탁개발임차료를 지급하는 사업은 「대법원수원법원청사신축(위탁개발임차료 정부지급금)」, 「법무부 수원고지검신축(위탁개발임차료 정부지급금)」 등 총 8개 사업이 있으며, 이 중 5개 사업에 대하여 대규모 자체변경이 이루어진 바 있음.

[위탁개발임차료 지급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당초(A)	수정(B)	결산	증감율(B/A)
대법원 수원법원청사신축 (위탁개발임차료 정부지급금)	9,890	41,971	41,971	424.3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영등포복합청사신축 (위탁개발임차료 정부지급금)	457	6,530	6,530	1428.8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남양주복합청사신축 (위탁개발임차료 정부지급금)	225	225	225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광주동구복합청사신축 (위탁개발임차료 정부지급금)	230	230	230	-
법무부 수원고지검신축 (위탁개발임차료 정부지급금)	9,429	44,323	44,323	470.07%
국세청 중부세무서청사신축 (위탁개발임차료 정부지급금)	3,028	27,322	27,322	902.31%
국세청 서대문세무서청사신축 (위탁개발임차료 정부지급금)	3,095	3,095	3,095	-
통계청 남양주복합청사신축 (위탁개발임차료 정부지급금)	346	4,647	4,647	1343.06%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 검토의견 >

위탁개발임차료 지급을 위해 집행부진 사업의 예산을 감액하고 위탁개발임차료를 증액하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연도 말에 대규모로 실시하는 것은 공용재산 취득에 대한 국회 심의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지양할 필요가 있음.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청사위탁개발은 국회의 예산 심의를 받지 않으며 기획재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계획 수립,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기획재정부의 승인으로 시행됨. 국유재산관리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개발을 통해 개발한 청사에 수요기관이 임차를 통해 입주한 경우 위탁개발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음.

이때, 위탁개발임차료를 지급하는 사업은 ①임차료 납부를 완료한 경우 수요기관이 청사를 취득하는 방식과 ②납부 완료 이후 기획재정부가 여전히 청사의 소유권을 가지고 추후 수요기관과 기획재정부가 사용 부분에 대하여 협의하는 방식으로 구분됨.

[2023년 위탁개발임차료 지급 사업 구분]

소유권 이전 O	소유권 이전 X
- 대법원 수원법원청사신축 - 법무부 수원고지검신축 - 국세청 중부세무서 청사신축 - 국세청 서대문세무서 청사신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영등포복합청사신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남양주복합청사신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광주동구복합청사신축 - 통계청 남양주복합청사신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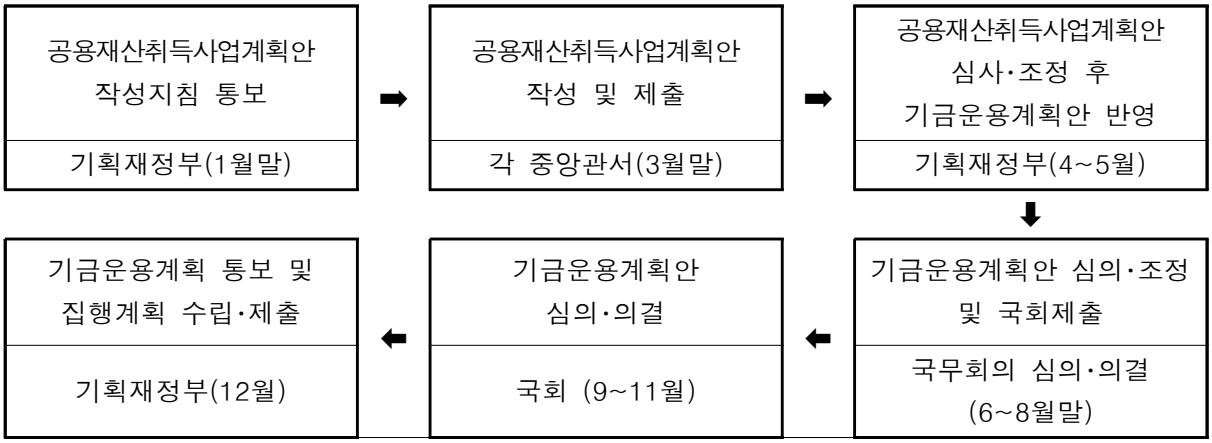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 재구성

[위탁개발임차료 지급을 통한 청사 취득 사업수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위탁개발사업승인	기획재정부	- 기획재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개발 사업계획 수립 및 기재부 승인
⇩		
② 위탁개발(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 민관복합청사(위탁청사) 설계 및 공사 추진
⇩		
③ 위탁운영(입주)	한국자산관리공사	- 위탁청사 준공 후 수요기관 입주 후 임차료 지급
⇩		
④ 운영종료(소유권)	수요기관	- 위탁운영 기관 종료 후 수요기관 사용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수요기관 소유 취득)

자료: 기획재정부

[공용재산취득사업 수행체계도]



자료: 기획재정부

국유재산관리기금이 자체적으로 기금운용계획을 통해 청·관사를 개발하고 수요기관이 청·관사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 설계, 공사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기금운용계획 심의를 통한 국회의 통제를 받아야 함. 하지만 위탁개발청사에 대한 임차료 지급을 통해 수요기관이 청사를 취득하는 경우 매년 임차료에 대해서만 국회 심의를 받게 되므로 수요기관의 청·관사 취득에 대한 국회의 재정통제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됨.

이에 따라, 국회는 국회의 사전승인 없이 건설된 위탁개발 청사에 대한 임차료를 국유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하였고 기획재정부 역시 지적을 수용하여 2019년 이후 위탁개발방식의 청사 신축을 추진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

한편, 이미 완공된 위탁개발청사에 대해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는 사업의 경우 임차료 예산을 통해서라도 국회의 감독을 받을 필요가 있으나 대규모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른 임차료 조기 지급이 이루어질 경우 실질적으로 수요기관의 공용재산취득 시기가 빨라지는 효과가 발생하고 이는 공용재산취득에 대한 국회 감독권을 더욱 약화시킬 수 있음.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위탁개발임차료 지급을 통해 수요기관이 청사를 취득하는 4개의 사업 중 3개의 사업에 대하여 2023년 12월 27일 대규모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해 임차료를 조기 지급하였는 바, 수요기관의 청사취득에 대한 국회의 감독 및 통제권이 약화된 문제가 나타남.

[위탁개발임차를 통한 소유권 취득 사업의 사용료 납부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계획액		집행액	총 사용료	총 납부액	잔액	계약 임대기간	2023년 기준 연차
	당초	수정						
대법원 수원법원 청사신축	9,890	41,971	41,971	280,180	118,665	161,515	25년	5년
법무부 수원고지검 신축	9,429	44,323	44,323	241,145	103,567	137,578	25년	5년
국세청 중부세무서 청사신축	3,028	27,322	27,322	67,314	40,824	26,490	25년	3년
국세청 서대문 세무서 청사신축	3,095	3,095	3,095	57,918	18,742	39,176	25년	3년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 재구성

기획재정부는 대규모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위탁개발청사 임차료를 지급하는 것은 국회의 지적을 존중하여 위탁개발을 통한 청사취득 문제를 조기에 해소하려는 취지라는 입장임. 하지만 일반적인 청사취득과 달리 위탁개발임차료 지급을 통한 청사취득은 임차료에 대한 심의가 청사취득에 대한 감독 수단이라는 점에서 위탁개발을 통한 청사취득 문제의 해소를 위해 임차료 조기 지급이 필요한 경우 매년 9월 제출되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여 증액된 임차료에 대한 국회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위탁개발임차료 증액에 상응하여 집행부진 사업에 대한 대규모 사업비 감액 변경이 이루어진 바, 이에 따라 실제로는 집행부진 사업이지만 집행률이 제고되는 효과가 나타남. 이는 세부사업의 집행성과 파악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고 관례적인 자체변경은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과정에서 면밀한 제반 환경 분석의 필요를 감소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음.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위탁개발청사 임차료 조기지급을 위한 연도 말 대규모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을 지양하고 임차료 조기 지급이 필요할 경우 국회에 제출되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여 심사를 받아야 할 것임.

[자체변경에 따른 집행률 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계획액		집행액	집행률*	
	당초	수정		당초 계획 대비	수정 계획 대비
대법원 청사시설 취득 (1331-300)	33,615	28,628	18,903	56.23	66.03
대법원 청주지법 충주지원 신축 (1331-413)	1,278	-	-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시설 취득 (1531-300)	15,490	12,697	9,245	59.68	72.81
대통령경호처 기타시설 신축 (1910-500)	5,437	3,967	873	16.05	22.00
주호놀룰루총영사관 청사 신축 (2231-360)	11,586	7,008	6	0.05	0.08
법무부 서울검찰청사 증축 (2431-436)	4,005	2,405	2,184	54.53	90.81
법무부 전주교도소 신축 (2434-408)	2,971	935	-	-	-
행정안전부 부산지방합동청사 신축 (2631-403)	10,882	4,386	463	4.25	10.55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 청사 취득 (3231-310)	12,518	10,047	10,099	80.68	100.52
국세청 청사시설 취득 (4531-300)	44,245	33,738	31,642	71.52	93.79
통계청 기타시설 취득 (4833-500)	4,661	1,361	1,189	25.51	87.36
경찰청 방배경찰서 신축 (5131-414)	8,671	5,771	4,935	56.91	85.51
경찰청 양산동부경찰서 신축 (5131-420)	1,003	3	-	-	-
경찰청 수원팔달경찰서 신축 (5131-995)	9,023	871	7,387	81.87	848.11
기상청 청사시설 취득 (5931-300)	11,643	9,461	10,411	89.42	110.04
해양경찰청 경찰서 청사 취득 (6031-310)	12,246	8,819	8,697	71.02	98.62
해양경찰청 훈련시설 취득 (6031-330)	3,349	674	318	9.50	47.18
해양경찰청 관사시설 취득 (6032-340)	4,906	1,817	1,290	26.29	70.00
정책연수원 신축 (6933-100)	19,260	16,950	16,360	84.94	96.52

자료: 자체변경 감액이 십억원 이상인 사업 대상으로 기획재정부 자료 재구성

*집행률이 100% 이상인 사업은 전년도 이월금액을 포함하여 집행하였기 때문임

(2)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지급되는 인건비의 지급 비목 변경 필요 (인건비, 국고국)

< 현 황 >

「인건비」 사업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위탁 관리·운영 인력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지출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23년 17억 6,900만원이 계획되어 16억 4,7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1억 2,2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3회계연도 인건비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 세목명)	2023							2023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인건비(3579-101)	1,769	1,769	-	1,769	1,647	-	122	1,814
- 보수(110-01)	1,769	1,769	-	1,769	1,647	-	122	1,814

< 검토의견 >

보수(110-01)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에게 지급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비목을 민간위탁사업비(320-02)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국유재산의 총괄청인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95]하고 있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유재산관리기금의 회계 사무, 결산보고서 작성 사무,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재원으로 개발하는 사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고 있음[96].

한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 사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부담이므로 위탁사무와 관련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총액인건비, 여비 등 경상경비 및 각종 공과금 등 재산경비는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재원을 통해 지출되고 있음. 다만, 현재 국유재산관리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위탁 관리·운영 인력에 소요되는 인건비 지출을 보수(110-01) 목으로 지급하고 있는 바, 이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기획재정부의 '2023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보수(110-01)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및 각종 수당을 말함. 따라서 법령으로 공무원에 대한 정해진 봉급과 각종 수당만이 보수(110-01)로 지급이 가능함. 하지만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며 이들에 대한 급여는 법령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보수(110-01)로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

95) **「국유재산법」 제26조의6(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운용)** ① 국유재산관리기금은 총괄청이 관리·운용한다.
② 총괄청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96)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8조의2(국유재산관리기금 관리·운용 사무의 위탁)** ① 총괄청은 법 제26조의6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다.
1. 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기금(이하 이 장에서 "국유재산관리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에 관한 회계 사무
2.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무
3.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재원으로 개발하는 사업에 관한 사무
4.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사무
5. 그 밖에 총괄청이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부담으로 한다.

다른 기금을 살펴보면, 한국수출입은행에 운용·관리 사무를 위탁[97]하고 있는 대외경제협력기금의 경우 한국수출입은행에 인건비를 민간위탁사업비(320-02)[98]로 지급하고 있으며 한국환경공단에 운용·관리 사무를 위탁[99]하고 있는 기후대응기금 역시 인건비를 민간위탁사업비로 지급하고 있음.

[기금 별 관리·운용 위탁기관에 대한 비용 지급 현황]

(단위: 백만원)

기금명	세부사업명	비목	계획	결산
국유재산관리기금	인건비(3579-101)	보수(110-01)	1,769	1,647
	경상운영비(3579-201)	민간위탁사업비(320-02)	863	835
대외경제협력기금	인건비(3679-101)	민간위탁사업비(320-02)	18,201	18,201
	기금관리비(3676-201)	민간위탁사업비(320-02)	3,856	3,856
기후대응기금	인건비(7177-101)	민간위탁사업비(320-02)	1,926	1,926
	기금운영비(7177-201)	민간위탁사업비(320-02)	435	435

자료: 기획재정부

따라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지급되는 급여성 비용을 보수(110-01)로 편성하기보다 민간위탁사업비(320-02)로 편성하여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부합하는 계획안을 작성하는 한편, 다른 기금과의 편성 상 통일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97)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외경제협력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그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이 부담한다.

98) 법률에 규정된 국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책임 하에 행사하는 경우의 비용

99) **「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 위탁기관 고시」 제1조(위탁기관)** 기후대응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한국환경공단법」에 의한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3) 대외경제협력기금

가. 개요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은 개발도상국의 산업 발전 및 경제 안정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 이들 국가 간 경제 교류를 증진하기 위하여 1987년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정을 통해 설치되었음. 기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용·관리하되, 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는 한국수출입은행에 위탁하고 있으며, 기금 운용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기금운용위원회를 두고 있음. 2023회계연도 기금운용규모는 전년 대비 2,069억 5,600만원 증가한 1조 5,151억 1,400만원으로, 계획 대비 집행률은 93.5%임.

먼저, 2023회계연도 수입 결산에 따르면 일반회계로부터 7,872억 9,900만원을 전입하였고,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3,600억원을 예수하였음. 그 밖에 차관 만기에 따른 융자 원금 회수 2,589억 500만원, 융자 이자 수입 등 612억 100만원, 여유자금 회수 365억 100만원 및 여유자금 운용 수입 112억 800만원을 수납하였음.

[2023회계연도 대외경제협력기금 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년 결산	2023년 계획		2023년 결산(B)		2024년 계획
		당초	수정(A)		B/A	
합 계	1,308,158	1,621,131	1,621,131	1,515,114	93.5	2,208,746
일반회계 전입금	662,268	887,257	887,257	787,299	88.7	1,218,749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345,000	417,068	417,068	360,000	86.3	656,249
융자금 원금 회수	207,546	224,622	224,622	258,905	115.3	245,891
융자금 이자 수입 등	44,488	46,352	46,352	61,201	132.0	54,034
여유자금 회수	44,009	42,881	42,881	36,501	85.1	30,081
여유자금 운용 수입	4,847	2,951	2,951	11,208	379.8	3,742

다음으로, 2023회계연도 지출 결산에 따르면 대개도국 차관에 1조 3,960억 7,100만원을 지출하여 92.9%의 집행률을 보였고, 대개도국 차관 지원 사업에 305억 5,700만원, 경협증진자금(EDPF) 지원 사업에 12억 2,600만원을 지출하였음. 그 밖에 공자기금예수 원리금 상환에 244억 1,200만원, 기금 운영에 220억 5,700만원, 여유자금운용에 407억 9,100만원을 집행하였음.

[2023회계연도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년 결산	2023년 계획		2023년 결산(B)		2024년 계획
		당초	수정(A)		B/A	
합 계	**1,308,158**	**1,621,131**	**1,621,131**	**1,515,114**	**93.5**	**2,208,746**
대개도국 차관	1,217,604	1,502,976	1,502,976	1,396,071	92.9	2,031,979
대개도국 차관 지원	18,764	31,806	31,806	30,557	96.1	36,715
경협증진자금 지원	831	1,633	1,633	1,226	75.1	1,470
공자기금예수 원리금 상환	13,076	32,578	32,578	24,412	74.9	56,541
기금 운영비	21,382	22,057	22,057	22,057	100.0	22,929
여유자금 운용	36,501	30,081	30,081	40,791	135.6	59,112

나. 검토의견

(1) 향후 EDCF 출자 시 수익성 증대 위한 면밀한 사업관리 필요 (정부출자주식 매각대, 대외경제협력기금)

< 현 황 >

「정부출자주식매각대 사업」은 투자증권(펀드) 청산에 따른 출자 잔여금을 회수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 수입 사업임. 2023년 계획액이 없었으나, 157억 6,0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전액 수납되었음.

[2023회계연도 정부출자주식매각대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2023							2024
	계획액		이체등 증감액	계획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계획액
	당초	수정						
정부출자주식매각대 사업 (78-781)	-	-	-	-	15,760	15,760	-	-

< 검토의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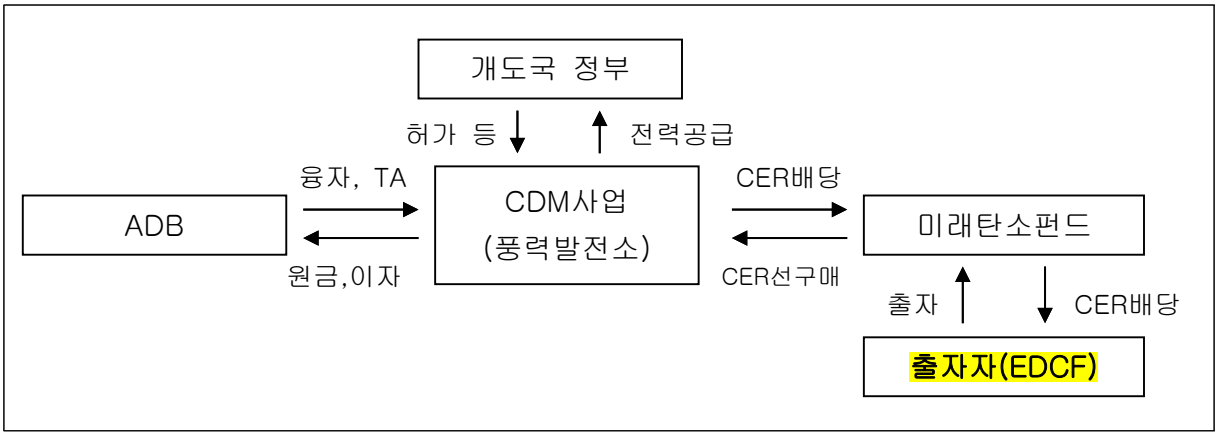
기획재정부는 향후 EDCF를 통한 출자 시 수익성을 증대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면밀히 할 필요가 있음.

2023회계연도 「정부출자주식 매각대 사업」에 계상된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전액 'ADB 미래탄소펀드'에 출자한 2,000만 달러 규모의 투자증권이 청산되면서 회수된 출자 잔여금 1,200만 달러(157억 6,000만원)임.

ADB 미래탄소펀드는 아시아개발은행(ADB)가 지원하는 역내 개발도상국의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100]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권(CER; Certified Emission Reductions)[101]을 선구매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펀드임. ADB는 동 펀드를 2009년 11월 13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운용하였음.

기획재정부가 대외경제협력기금을 통해 출자하는 방식은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7조(기금의 용도)제1호[102]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ADB 미래탄소펀드 사업 구조도]



자료 : 기획재정부 자료 바탕으로 재작성

100) 교토의정서가 지정한 온실가스 의무감축국과 비의무감축국 간 협력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개발하고, 감축량만큼 배출권을 확보하는 사업

101) 교토의정서 하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권리로 온실가스 의무감축국가와 비의무감축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온실가스 감축사업(CDM)에서 확보되는 배출권(우리나라는 비의무감축국에 해당)

102)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7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1. 개도국의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동시에 대한민국과 개도국의 경제교류를 증진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의 실시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어음 할인, 채무 보증 또는 유가증권 인수를 포함하며, 이하 "융자등"이라 한다) 또는 출자

기획재정부가 동 펀드에 출자를 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음. 교토의정서에 따라 비준 당사국 중에서 부속서 1에 해당하는 선진국(미국, 영국, 일본 등 38개국)이 1차 의무감축 대상국으로 지정되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최소한 5.2% 줄일 것을 목표로 했는데, 1차 의무감축 당시 비의무감축국이었던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2차 의무감축 대상국으로 지정될 것을 대비하여 2009년 선제적으로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 펀드에 출자를 실시함. 동 펀드를 통해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서 2013년 이후 발생하는 탄소배출권을 선구매하는 방식으로 운용하고자 하였으며, 우리나라는 출자비율에 따라 약 18만톤의 배출권을 확보하고자 하였음[103].

구체적으로 출자경과를 살펴보면, 2008년 7월 ADB에서 동 펀드를 설립하기로 의결을 하였고, 2009년 9월 우리나라 EDCF 기금운용위원회는 2,000만달러 규모의 동 펀드 출자를 의결함. 이에 2009년 11월 기획재정부·한국수출입은행·ADB 간 펀드참여계약서(P/A)에 서명하였음.

이후 2010년 5월 「ADB 미래탄소펀드 출자」 세부사업에 편성된 500만 달러의 계획액 집행을 시작으로 2010~2013년 4년간 총 2,000만달러 규모의 동 펀드 출자를 완료함.

[EDCF의 ADB 미래탄소펀드 사업 출자경과]

○ 2008. 7. : ADB, 미래탄소펀드(Future Carbon Fund) 설립 의결
○ 2009. 9. : EDCF 기금운용위원회, EDCF 출자(2천만달러) 의결
○ 2009. 11. : 기재부·수은·ADB 간 펀드참여계약서(P/A) 서명
○ 2010. 3. : 출자자 모집 마감(총 1.15억불*)
* 한국(20백만달러), 핀란드(20백만달러), 벨기에(20백만달러), 스웨덴(20백만달러), 포스코(20백만달러), 에네코(네덜란드 민간에너지 기업, 15백만달러)
○ 2010. 5. : EDCF 최초 출자금(5백만달러) 납입
○ 2011. 7. ~2013. 12. : EDCF 잔여 약정액 납입(연간 5백만달러)

자료 :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총 출자금 2,000만달러 중 약 1,200만달러만 회수하고 800만달러 중 약 600만 달러에 해당하는 가치를 탄소배출권으로 보유하고 있었는데, 「파리협정」 제6조와 관련된 부속서에서 2013년 이전의 탄소배출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함에 따라 600만 달러 규모의 탄소배출권은 전부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음. 800만 달러 중 약 200만 달러는 ADB 미래탄소펀드 사무국 운영비에 기 집행됨. 결국 800만 달러는 전

103)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ADB 미래탄소펀드 연차총회」 개최, 2011. 3. 7.

부 2015년과 2021년 2차례에 거쳐 대외경제협력기금 회계에서 감액손실로 인식되었고, 2023회계연도에서 1,200만 달러 규모의 회수금만 동 세부사업 수입액으로 계상됨.

[ADB 미래탄소펀드에 출자된 2,000만 달러 투자내역]

(단위 : US$)

내역		금액
A	약정액	20,000,000.00
B	납입액	20,000,000.00
C	수수료	200,000.00
D	펀드운용비용(출자자간 분담)	1,493,676.54
E	투자금액	6,142,867.80
반환 대상액(B-C-D-E)		12,163,455.66

자료 : 기획재정부

결국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재원으로 투자된 2,000만 달러 상당의 출자액은 2023회계연도 결산에서 아무런 수익 없이 1,200만 달러 규모만 회수되었는바, 향후 기획재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자개발은행 출자를 추진할 때 보다 면밀히 출자를 통한 효과성을 분석하고 리스크 요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2) 연례적인 대규모 자체변경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제도개선 필요 (대개도국차관(단위사업), 대외경제협력기금)

< 현 황 >

「대개도국차관」 단위사업은 장기저리의 양허성 차관제공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 및 경제안정을 지원하고, 기금사업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증진시키는 사업으로, 「아시아차관(융자)(ODA)」, 「아프리카차관(융자)(ODA)」, 「중동-CIS차관(융자)(ODA)」, 「중남미차관(융자)(ODA)」 및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융자)(ODA)」 총 5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됨.

[2023회계연도 대개도국 차관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

단위사업명 (- 세부사업명)	2023								2024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A)	수정(B)	증감(B-A) ((B-A)/A)						
대개도국 차관 (3331)	1,502,976	1,502,976	-	-	1,502,976	1,396,071	-	106,905	2,031,979
- 아시아차관 (3331-301)	705,400	500,307	△205,093 (△29.1)	-	500,307	456,839	-	43,468	849,890
- 아프리카차관 (3331-303)	304,852	234,680	△70,172 (△23.0)	-	234,680	188,685	-	45,995	416,981
- 중동-CIS차관 (3331-305)	131,972	10,946	△121,026 (△91.7)	-	10,946	9,631	-	1,315	112,383
- 중남미차관 (3331-306)	36,396	13,918	△22,478 (△61.8)	-	13,918	13,264	-	654	43,864
- 민간·국제기구 협력차관 (3331-309)	324,356	743,125	418,769 (129.1)	-	743,125	727,652	-	15,473	608,861

「대개도국차관」 단위사업의 2023년도 계획액은 1조 5,029억 7,600만원이고, 이 중 92.9%인 1조 3,960억 7,100만원을 집행하고, 1,069억 500만원을 불용하였음.

「아시아차관(융자)(ODA)」 사업의 2023년 계획액은 7,054억원으로 이 중 29.1%인 2,050억 9,300만원을 자체 감액변경[104]하여 계획현액 5,003억 700만원 중 4,568억 3,900

104) 8월 7일 1,780억 2,900만원 감액변경, 12월 22일 270억 6,400만원 감액변경

만원을 집행하였고, 434억 6,800만원을 불용하였음. 「아프리카차관(융자)(ODA)」 사업의 2023년 계획액은 3,048억 5,200만원으로 이 중 23.0%인 701억 7,200만원을 자체 감액변경하[105]여 계획현액 2,346억 8,000만원 중 1,886억 8,500만원을 집행하였고, 459억 9,500만원을 불용하였음.

「중동-CIS차관(융자)(ODA)」 사업의 2023년 계획액은 1,319억 7,200만원으로 이 중 91.7%인 1,210억 2,600만원을 자체 감액변경[106]하여 계획현액 109억 4,600만원 중 96억 3,100만원을 집행하였고, 13억 1,500만원을 불용하였음. 「중남미차관(융자)(ODA)」 사업의 2023년 계획액은 363억 9,600만원으로 이 중 61.8%인 224억 7,800만원을 자체 감액변경[107]하여 계획현액 139억 1,800만원 중 132억 6,400만원을 집행하였고, 6억 5,400만원을 불용하였음.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융자)(ODA) 사업」은 개도국 개발협력사업에 대한 국제개발금융기구 협조융자[108] 사업을 수행하고 현지 금융기관의 전문성 및 수원국 내 네트워크를 활용한 소규모 민간부문 개발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임. 2023년 계획액은 3,243억 5,600만원으로, 이 중 129.1%인 4,187억 6,900만원을 자체 증액변경[109]하여 계획현액 7,431억 2,500만원 중 7,276억 5,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54억 7,300만원을 불용하였음.

대개도국차관사업은 일반적으로 ① 수원국의 개발수요 파악을 통해 사업을 발굴하고 및 정부 간 협의를 거쳐 후보사업을 확정한 후, ② 기술적 · 경제적 · 정책적 측면의 타당성조사를 수행하고, ③ 수원국의 차관신청 이후 사업심사를 하며, ④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사업을 승인하고, ⑤기본약정(F/A) 등의 협정을 체결하여 차관계약을 체결한 뒤, ⑥ 차관계약의 내용에 따라 컨설턴트를 선정하고, ⑦구매, 사업실시 및 자금을 집행하는 체계로 진행됨.

105) 8월 7일 472억 2,600만원 감액변경, 12월 22일 229억 4,600만원 감액변경
106) 8월 7일 853억 4,700만원 감액변경, 12월 22일 356억 7,900만원 감액변경
107) 8월 7일 194억 5,300만원 감액변경, 12월 22일 30억 2,500만원 감액변경
108) ADB, IDB(미주개발은행), WB(세계은행), AfDB, EBRD 등 주요 MDB와 공동으로 개발도상국의 개발사업에 대한 자금 조달에 참여하는 것(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109) 8월 7일 3,300억 5,500만원 증액변경, 12월 22일 887억 1,400만원 증액변경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 진행절차]

단 계	진 행 절 차
사업 발굴	○정상회담, 고위급회의 또는 EDCF 사무소 등을 통해 수원국의 개발수요 파악 ○정부 간 정책협의를 통해 후보사업(Rolling Plan) 등 확정
타당성조사(F/S)	○수원국 자체적 타당성조사 또는 수원국 요청시 수은 발주로 기술적, 경제적, 정책적 타당성 조사
사업 심사 (현지심사 포함)	○수원국의 차관신청을 바탕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은 수출입은행장에게 사업에 대한 심사 요청 ○수은은 사업범위, 사업비 등 사업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기재부장관에게 제출
사업승인	○기재부장관은 외교부 등 관계부처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에 대한 지원규모, 지원조건 등 지원방침을 결정
정부간협정 체결	○정부간 시행약정(Arrangement; A/R) 체결 단, 기본약정(Framework Arrangement; F/A) 체결시, AR 생략(대부분 F/A 체결)
L/A 교섭 및 체결	○정부간 협정(기본약정 포함)에 따라 수출입은행장은 수원국 정부와 차관계약 내용에 대해 교섭하고 차관계약(Loan Agreement: L/A) 체결
컨설턴트 고용	○수원국의 사업실시기관은 차관계약의 내용에 따라 컨설턴트를 선정하고 고용계약 체결
본구매	○사업실시기관은 경쟁입찰을 실시하고, 시공사 선정 후 구매계약 체결
사업실시 및 자금지출	○공정진행 단계에 따라 컨설턴트 및 본구매 계약자 앞으로 대금 지급
사후관리	○완공점검(사업완공보고서 접수시점)시에는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수행되었는지를 점검 ○사후평가(완공점검 후 2년) 시에는 사업의 준비단계부터 사업시행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수원국 국민 복리증진 및 경제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 종합적 평가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 바탕으로 재작성

「아시아차관」, 「아프리카차관」, 「중동-CIS차관」, 「중남미차관」 등 지역별 차관의 경우 ①부터 ⑦까지의 업무 전부를 우리나라와 수원국이 직접 수행하고 있어 수년간 사업이 진행되나,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융자)(ODA)」[110] 사업 중 대부분은 국제금융기구를 통해 수원국 사업에 자금을 집행하는 협조융자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위의 사업절차 중 ①부터 ⑥까지의 업무 중 대부분을 국제금융기구(다자개발은행)에서 수행하고, 우리나라는 ⑦자금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기에 위 절차를 모두 거치는 데 1년 내외의 짧은 시간만 소요되는 특징이 있음.

110)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은 국제기구와 협조융자를 통칭하는 분류로서 개발사업차관이 대부분을 구성하며 일부 프로그램 차관이 포함됨.

< 검토의견 >

기획재정부가 연례적으로 대개도국차관 내 세부사업 간 대규모로 자체변경하고 있으므로, 연례적 자체변경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국가재정법」 제70조[111]에서는 금융성 기금이 아닌 기금은 주요항목[112]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20% 이하[113]인 경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자체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20%를 초과할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국가재정법」상 기금운용계획변경 절차]

구 분	정부 내 절차	국회 제출 절차
주요항목 지출금액 20% 초과 변경 (금융성 30% 초과)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	국회 제출 (국회의 심의·확정)
주요항목 지출금액 20% 이내 변경 (금융성 30% 이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	-
주요항목 지출금액 범위 내 세부항목 변경	기금관리주체 자체변경	-

동 규정을 법률에 명시한 것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금관리주체에게 신축적 운용의 자율성을 부여하되, 주요항목변경이 일정비율을 초과하면 이를 새로운 기금운용계획안으로 보아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한 것임[114].

---

111) **「국가재정법」 제7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기금관리주체는 지출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기금관리주체(기금관리주체가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경우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는 기금운용계획 중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조정하여 마련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요항목 지출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1. 별표 3에 규정된 금융성 기금 외의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2 이하
2. 별표 3에 규정된 금융성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3 이하. 다만,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소요되는 경상비에 해당하는 주요항목 지출금액에 대하여는 10분의 2 이하로 한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9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은 국회에서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12) 「국가재정법」 제67조에 근거한 장(분야)·관(부문)·항(프로그램)

「국가재정법」 제67조(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③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성질별로 구분하고 지출계획은 성질별 또는 사업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주요항목의 단위는 장·관·항으로, 세부항목의 단위는 세항·목으로 각각 구분한다.

113) 금융성 기금의 경우는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 30% 이하

다만 대외경제협력기금의 「3331 대개도국차관」 단위사업은 「아시아차관」, 「아프리카차관」, 「중동·CIS차관」, 「중남미차관」 및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 총 5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아시아차관」, 「아프리카차관」, 「중동·CIS차관」, 「중남미차관」 등 세부사업에서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 세부사업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더라도 동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음.

기획재정부는 연례적으로 지역별 차관사업에서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으로 자체변경을 하고 있음.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3년 「아시아차관(△29.1%)」, 「아프리카차관(△23.0%)」, 「중동·CIS차관(△91.7%)」, 「중남미차관(△61.8%)」 등 지역별 차관사업에서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129.1%)」 사업으로 계획을 변경하였음.

[2023회계연도 「대개도국 차관」 단위사업 내 대규모 세부사업 간 자체변경 내역]

(단위 : 백만원, %)

기금명 (○프로그램명 - 단위사업명 · 세부사업명)	'23년 계획 (A)	자체변경 (B)	증감	
			(B-A)	(B-A)/A
대외경제협력기금	1,621,131	1,621,131	-	-
○ 대외경제협력지원	1,536,415	1,536,415	-	-
- 대개도국차관	1,502,976	1,502,976	-	-
· 아시아차관	705,400	500,307	△205,093	△29.1
· 아프리카차관	304,852	234,680	△70,172	△23.0
· 중동-CIS차관	131,972	10,946	△121,026	△91.7
· 중남미차관	36,396	13,918	△22,478	△61.8
·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	324,356	743,125	418,769	129.1

자료 : 기획재정부 자료 바탕으로 재작성

2022년과 2021년에도 자체변경을 통한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 사업의 증액규모는 각각 61.6%와 118.1%에 해당함.

114) 「국가재정법」 중 기금 관련 규정의 전신인 「기금관리기본법」은 기금운용계획변경 시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를 비금융성기금은 30%, 금융성기금은 50%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국가재정법」이 제정되면서 그 범위를 각각 20%와 30%로 축소시켜 국회의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의·확정 권한을 강화하였음.

[2022년 지역별차관과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의 추경·자체변경 증감 내역]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 명	2022년 계획					
	당초	제1회 추경 증감분	제2회 추경 증감분	자체변경 증감분	제2회 추경 대비 증감율	수정
◦아시아차관	639,379	-	△34,680	△140,540	△23.2	464,159
◦아프리카차관	319,980	-	△42,359	30,554	11.0	308,175
◦중동-CIS차관	79,531	-	△23,312	△34,871	△62.0	21,348
◦중남미차관	47,171	-	△2,516	△7,649	△17.1	37,006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	247,362	-	-	152,506	61.6	399,868
합 계	1,333,423	-	△102,867	-	-	1,230,556

자료 : 기획재정부 자료 바탕으로 재작성

[2021년 지역별차관과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의 추경·자체변경 증감 내역]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 명	2021년 계획					
	당초	제1회 추경 증감분	제2회 추경 증감분	자체변경 증감분	당초 대비 증감율	수정
◦아시아차관	438,680	-	-	△208,610	△47.6	230,070
◦아프리카차관	301,583	-	-	△17,816	△5.9	283,767
◦중동-CIS차관	77,884	-	-	△59,730	△76.7	18,154
◦중남미차관	47,042	-	-	△28,975	△61.6	18,067
◦태평양차관	149,271	-	-	27,385	18.3	176,656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	243,736	-	-	287,746	118.1	531,482
합 계	1,258,196	-	-	-	-	1,258,196

자료 : 기획재정부 자료 바탕으로 재작성

기획재정부는 집행주체가 우리 정부가 아닌 수원국 정부이기 때문에 연간 사업별 집행규모가 수원국 정치·경제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크고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ODA 기여를 위해 집행률 제고가 필요하여, 지역별 차관 사업에서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융자)(ODA)」 사업으로 계획변경을 하는 데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임.

그러나 지역별 차관사업을 계획변경하여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융자)(ODA)」의 협조융자 방식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은 기금집행의 효과성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대규모로 반복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우선, 협조융자 방식은 사업의 결정과 추진을 국제기구가 수행하고 있어 지역별 차관에 비해 사업 결정 및 추진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따라서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융자의 효과성을 검토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제약됨.

또한, 협조융자 방식은 지역별 차관에 비해 비구속성 비율이 더 높아 정부가 집행하는 기금이 우리나라 기업으로 지원되는 비율이 낮으므로, 한정된 재원을 국익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하게 위해서는 협조융자방식을 과도하게 늘리는 방식을 지양할 필요가 있음.

[2023년 기준 대개도국차관사업의 구속성·비구속성 원조 비율]

(단위 : %)

구분	지역별 차관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
구속성[115]	100.0	29.1
비구속성[116]	0.0	70.9

주: 지역별 차관은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CIS를 의미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렇듯, 기획재정부는 「대개도국 차관」 단위사업에서 연례적으로 대규모 자체변경을 하지 않도록 상이한 성격을 지닌 지역별 차관과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 간 자체변경 시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자체변경을 허용하는 등의 기획재정부 자체의 규정을 마련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 사업의 지출변경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 지출금액을 20% 초과하여 변경할 경우 EDCF 기금운용위원회[117]에 보고하는 등 절차를 개선하고, 국제기구별 중기파이프라인(최대 3년)을 구축하

115) 입찰자격을 공여국 기업으로 한정하는 원조방식
116) 입찰자격에 대한 제한이 없는 원조방식
117)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10조(기금운용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기금운용위원회를 둔다.
1.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2. 기금운용계획
3. 결산보고사항
4.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0조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3. 외교부장관

며 WB, ADB, IDB 등 국제기구별 중기후보사업 및 사업별 소요액을 조사하여 민간·국제협력기구차관 수요의 정확성을 제고할 계획이라는 입장임.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6. 보건복지부장관
7. 국토교통부장관
8. 해양수산부장관
9. 국무조정실장
10. 대통령비서실의 경제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11. 국가정보원 제1차장
12. 한국수출입은행장
13. 한국국제협력단총재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된다.

(3) 협조융자 사업 관리를 별도 세부사업으로 분리 필요 (사업심사평가연구(ODA), 대외경제협력기금)

< 현 황 >

「사업심사평가연구(ODA) 사업」은 대개도국 차관사업 관련 기술전문가 고용 및 외부 용역사업 지원을 통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원조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임. 2023년 계획액은 43억 4,2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4억 2,800만원을 포함한 계획현액 47억 7,000만원 중 28억 2,800만원을 집행하였고, 2억 2,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7억 1,800만원을 불용하였음.

「사업심사평가연구(ODA) 사업」의 내역사업인 「협조융자 사업관리」은 계획현액 28억 7,100만원 중 12억 9,200만원을 집행하였고, 15억 7,900만원을 불용하였음. 「기금관련 위원회 개최」 내역사업은 계획현액 600만원 중 4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3회계연도 사업심사평가연구(ODA)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2023							2024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사업심사평가연구(ODA)사업 (3376-632)	4,342	4,342	428	4,770	2,828	224	1,718	4,027
- 협조융자 사업관리	**3,012**	**2,871**	-	**2,871**	**1,292**	-	**1,579**	**2,057**
- 기술전문가 고용	1,144	1,285	403	1,688	1,381	172	135	1,761
- 정책연구	180	180	25	205	151	52	2	200
- 기금관련 위원회 개최	**6**	**6**	-	**6**	**4**	-	**2**	**9**

< 검토의견 >

다자개발은행에 대한 수수료 비용으로 편성되는 「협조융자 사업관리」 내역사업은 동 사업목적과 무관하므로 별도 세부사업으로 계획액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사업심사평가연구(ODA) 사업」은 대개도국 차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전문가를 고용하고 EDCF 관련 정책을 연구하는 등 외부 용역사업 지원을 통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원조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2003년부터 계속사업으로 편성되고 있으며,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지침」[118]에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런데, 동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인 「협조융자 사업관리」는 다자개발은행(MDB;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하기 위해 편성된 바, 협조융자에 따른 수수료 지급은 「사업심사평가연구(ODA) 사업」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기획재정부는 「협조융자 사업관리」 내역사업을 「대개도국차관지원」 단위사업 내 개별 세부사업으로 조정하는 것을 예산실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임. 참고로 2023년 5월 발간된 「2023년 기금존치평가보고서」에서도 「협조융자 사업관리」 내역사업을 개별 세부사업으로 분리 편성하라는 평가결과가 있었음.

특히 「사업심사평가연구(ODA) 사업」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협조융자 사업관리」 내역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증하여 2022년 계획액부터는 동 세부사업의 50%를 초과하는 모습을 보이는바, 「협조융자 사업관리」 내역사업을 동 세부사업에서 분리시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더 큰 것으로 보임.

---

118)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지침」 제11조(차관지원비 지원기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 지원대상사업의 발굴·실시 및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차관지원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개도국정부등 또는 재외공관에서 지원대상사업 발굴 및 타당성조사 등 사전준비를 위하여 컨설턴트 파견을 요청한 경우
2. 개도국정부등이 차관 및 보증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컨설턴트 파견을 요청한 경우
3. 지원대상사업이 기술이나 자금조달 등의 중대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계획보다 공정이 지연된 때, 문제점 등의 조사 또는 해결을 위하여 컨설턴트 고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4. 개도국정부등이 환경영향 평가, 주민이주계획 수립 등 지원대상사업의 환경·사회영향 대응을 위하여 컨설턴트 파견을 요청한 경우
5. 개도국정부등이 완공 이후 운영·관리 등 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컨설턴트 파견, 기자재 지원 등을 요청한 경우
6. 개도국정부등이 프로그램차관 지원과 관련하여 정책과제, 개발사업 등 실시를 위하여 컨설턴트 파견을 요청한 경우
7. 기타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근 5년간 협조융자 사업관리 내역사업 편성 및 집행 비중]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계획액	계획현액	집행액	계획액	계획현액	집행액	계획액	계획현액	집행액	계획액	계획현액	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계획액
													계획현액	집행액	
사업심사평가연구	1,625	1,809	1,244	1,894	2,114	1,604	3,263	3,372	2,502	4,342	4,770	2,828	4,342	2,404	4,027
-협조융자사업관리	540	573	562	918	918	873	2,183	1,995	1,664	2,871	2,871	1,292	2,871	1,292	2,057
비중	33.2	31.7	45.2	48.5	43.4	54.4	66.9	59.2	66.5	66.1	60.2	45.7	66.1	53.7	51.5

자료 : 기획재정부 자료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협조융자 사업관리」 내역사업을 별도 세부사업으로 분리시킬 필요가 있음.

4) 복권기금

가. 개요

복권기금은 복권판매수익금의 효율적 사용을 통해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설치됨(2004. 4. 시행).

2023년 결산기준 기금운용규모는 수정계획 대비 0.5% 감소한 7조 8,729억원으로, 주요수입은 복권판매수입 6조 7,482억원, 여유자금 및 공자기금 예탁원금 회수 3,950억원, 연금복권당첨금 지급준비금 회수 4,795억원 등이며,

주요지출은 당첨금, 수수료 등 복권판매사업비 3조 9,717억원, 복권기금지원 사업비 3조 447억원, 여유자금 운용 및 공자기금 예탁 등 2,436억원, 연금복권 당첨금 지급준비금 운용 5,489억원 등임.

복권기금 지원사업비 중 약 34%는 법정배분사업으로서 문화재보호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8개 기금·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복권법령에 정해진 비율대로 배분하였으며,

그밖에 약 64%는 공익사업으로서 취약계층 지원 1조 2,967억원, 저소득층 주거안정지원 5,504억원, 문화예술 진흥지원 2,357억원, 국가유공자 복지지원 229억원 등에 사용하였음.

[2023회계연도 복권기금 수입결산]

(단위: 억원)

항 목	'23계획		'23결산 (B)	증 감	
	당초	수정(A)		(B-A)	%
○ 복권판매수입	67,441	68,345	67,482	△864	△1.3
○ 소멸시효완성 당첨금	549	549	627	79	14.3
○ 기타 이자, 불용액 등	927	927	663	△264	△28.5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원금 회수	3,037	3,037	2,987	△50	△1.6
○ 여유자금 회수	11	11	963	952	8,651.2
○ 연금복권당첨금 지급준비금 예수	1,357	1,357	1,212	△145	△10.7
○ 연금복권당첨금 지급준비금 회수	4,872	4,872	4,795	△77	△1.6
합 계	78,194	79,098	78,729	△369	△0.5

[2023회계연도 복권기금 지출결산]

(단위: 억원)

항 목	'23계획		'23결산 (B)	증 감	
	당초	수정(A)		(B-A)	%
○ 복권판매 사업비	40,032	40,434	39,717	△716	△1.8
○ 부담금 등	117	117	107	△10	△8.4
○ 복권기금지원 사업비	30,651	30,998	30,447	△550	△1.8
- 법정배분사업	10,346	10,346	10,338	△7	△0.1
- 공익사업	20,305	20,652	20,109	△543	△2.6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740	740	740	-	-
○ 여유자금 운용	394	550	1,696	1,146	208.5
○ 연금복권당첨금 지급준비금 운용	5,718	5,718	5,489	△229	△4.0
○ 연금복권당첨금 지급준비금 교부	542	542	532	△10	△1.8
합 계	78,194	79,098	78,729	△369	△0.5

나. 검토의견

(1) 투명한 운영을 통한 안정적인 복권사업 추진 필요 (총괄, 복권위원회)

< 현 황 >

우리나라의 복권 판매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그중에서 온라인복권인 로또6/45복권(이하 '로또'라고 함.) 판매액의 비중은 2023년 기준으로 전체의 83.7%(총 복권판매액 6조 7,507억 원 중 5조 6,526억 원)에 달할 정도로 로또의 비중이 절대적임. 로또의 당첨률 및 당첨금 구조는 아래와 같음.

[로또 게임 당첨률 및 당첨금 구조]

등위	당첨방법	당첨률	당첨금
1등	6개 숫자 일치	1:8,145,060	4, 5등 제외 75%
2등	5개+보너스 숫자 일치	1:1,357,510	4, 5등 제외 12.5%
3등	5개 숫자 일치	1:35,724	4, 5등 제외 12.5%
4등	4개 숫자 일치	1:733	50,000원
5등	3개 숫자 일치	1:45	5,000원

자료 : 「2022 복권백서」를 토대로 재구성

< 검토의견 >

로또 조작설 및 당첨번호 예측행위와 같이 복권에 대한 신뢰성을 저해하고 복권사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임.

로또는 2002년 12월 2일 출시된 이후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아왔으며 2023년까지 총 1100회나 추첨이 이루어졌음. 그러나, 이와 같이 관심과 구매자가 많은 만큼 조작 의혹 등 투명성에 대한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며, 특히 2022년 및 2023년의 일부 추첨 건의 경우 각각 아래와 같이 1등 및 2등 당첨자 숫자가 이례적으로 많이 나오면서 조작 의혹이 매우 강하게 제기되었음.

[제1019회차 및 제1057회차 로또 당첨 개요]

○ 제1019회차(2022.06.11. 추첨)
- 1등 당첨번호 : 1, 4, 13, 17, 34, 39 (수동 42명, 자동 6명, 반자동 2명)
- 1등 당첨자수 및 당첨금 : **50명**, 4억 3천 856만원[119]
- 1등 당첨 상세현황 : 일선 판매점 44개소, 인터넷 판매분 6건

○ 제1057회차(2023.03.04. 추첨)
- 1등 당첨번호 : 8, 13, 19, 27, 40, 45
- 2등 당첨 : 당첨번호 5개 숫자일치 + 보너스 숫자(12번) 일치
- 2등 당첨자수 및 당첨금 : **664명(역대 최다)***, 689.6만원

* 특히, 664게임 중 103게임이 서울 동대문구의 한 판매점에서 판매되었음

- 2등 당첨 상세현황

당첨 번호(5개)	보너스 번호	수동	자동	반자동	합계
08 13 19 27 40	12	590	4	2	596
08 13 19 27 45	12	8	9	0	17
08 13 19 40 45	12	4	12	0	16
08 13 27 40 45	12	3	10	0	13
08 19 27 40 45	12	1	10	0	11
13 19 27 40 45	12	3	8	0	11
합계		609	53	2	664

자료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예를 들어, 평균적으로 한 회차당 판매량이 1억 장 정도임을 감안 시 1등 당첨자의

119) 당시 1등 당첨자수 50명으로 역대 최다 1등 당첨 건이었으나, 이후 제1128회차(2024.07.13. 추첨)에서 1등 당첨자수가 63명(1게임당 당첨금액 4억 1천 993만원)이 나오면서 동 회차가 역대 최다 1등 당첨 건이 되었음

경우 보통 12명 내외로 발생(1억 장 × 1/814만 = 12.3)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제1019회차에서는 50명이 발생하였고, 2등 당첨자는 보통 74명 내외로 발생(1억 장 × 1/136만 = 73.7)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제1057회차에서는 664명이 발생하였음.

이러한 이례적인 당첨자의 발생은 무작위 추첨 방식인 로또 게임의 구조상 구매자가 선호하는 번호조합이 우연히 추첨된 경우 등 확률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례임에도 불구하고[120], 이러한 일부 사례를 근거로 로또를 포함한 복권사업에 대한 신뢰성을 문제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사례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해서 최근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사이트임.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란 로또 당첨이 예측된다며 조합한 번호를 일정 기간 유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임. 이러한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는 사업자가 임의로 조합한 번호를 발송하는 것으로서 과학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로또는 조작이므로 번호를 미리 알아내는 것이 가능하다거나, (조작은 아니더라도) 일정한 패턴이 있어서 과거 당첨번호 분석을 통해 금번 회차 추첨번호의 예측이 가능할 것이라는 등의 심리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음. 2024년 한국소비자원의 보도자료[121]에 의하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구제 사건은 총 1,917건이며, 특히 2022년과 2023년은 각 600건 이상으로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122]

[최근 5년간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사건 현황]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건수(건)	88	227	332	655	615	1,917
전년대비 증감율(%)	-	158.0	46.3	97.3	△6.1	-

자료 :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이미 서울대 통계연구소의 연구결과 등 복권위원회가 수차례 실시한 연구에서 로또 당첨번호 추첨은 독립성(independence: 각 회의 추첨이 서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짐)과 균

120) 특히, 제1057회차에서 문제가 된 2등 103게임이 판매된 서울 동대문구 판매점의 경우 자동 1게임, 수동 102게임이 판매되었으며, 수동 102게임 중 100게임은 동일 날짜, 동일 시간대에 판매된 것으로 확인되어 동일인이 구매한 것으로 추정됨(로또 1게임의 가격은 1,000원이며, 1인당 구매한도는 10만원임)

121)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소비자피해 여전! - 과학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용하지 말아야 -」(2024.5.29.)

122) 주요피해유형은 '계약해제·해지 시 이용료 환급 거부 및 위약금 과다 부과 (60.9%)', '미당첨 시 환급 약정 미준수 등 계약불이행 (27.6%)', '청약철회 시 환급 거부 (7.3%)' 등임.

등성(uniformity: 당첨번호 추첨 시 가능한 모든 당첨번호 조합이 같은 확률로 뽑히는 것)을 만족하는 무작위적인 추첨 방식으로 잘 작동하고 있음이 검증되었음. 즉, 예측서비스 업체에서 주장하듯이 과거 당첨번호의 정보를 이용하여 앞으로의 당첨번호를 예측하는 것은 통계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미임.

로또 조작설 등 음모론과 그에 수반되는 당첨번호 예측행위 등은 공정한 확률게임이라는 복권의 일반인식에 대한 신뢰성 저하 등으로 복권의 건전성 훼손 등 복권사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기획재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이고 단호한 대응이 필요함.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최근 제1019회차 및 제1057회차 관련 조작 의혹 확산에 대응하여 아래와 같이 <2023년도 로또복권 신뢰성 종합검증대책>을 시행하였음.

[2023년도 로또복권 신뢰성 종합검증대책 시행 주요내역]

구분	내용	비고
기재부 출입기자단 현장 검증	복권시스템 운영현황 견학(목동 IT본부) 및 추첨 생방송(상암동 스튜디오) 참관	2023.4.8. 실시
추첨방송 국민대공개 행사	기존 방청객 10명 내외 참관하에 진행된 추첨방송을 大공개 행사로 실시 -참관인 150명 및 24개 언론 참가 -기자간담회, 추첨준비과정 공개, 기재부 2차관 출연 등	2023.6.10. 실시
「온라인복권 추첨과정 및 시스템 신뢰성 검증」 용역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추첨 및 방송, 판매데이터 관리시스템의 외부개입 및 데이터 위·변조 가능성 검증 → 조작(위변조) 불가 결론	일반연구비 (260-01) 99,474천원 집행
「로또복권 다수당첨 관련 확률·통계적 검증」 용역 -서울대 통계연구소	국내외 확률·통계 모형, 이론 등을 토대로 최근 다수 당첨에 대해 검증 → 확률상 정상범위 결론	정책연구비 (260-02) 20,000천원 집행

자료 : 기획재정부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복권사고 예방 및 대응 방안」(2023.4.)을 마련하여 복권 사고에 대한 수탁사업자의 책임을 강화[123]하고, 「복권발행·관리 자문단 운영규정」 제정(2024.4.24.)을 통해 복권발행·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에 관한 자문 및 상시적 검증을 위해 2024년 5월부터

123) 사고에 대한 위약벌을 강화(최대 1천만원 → 3천만원), 동일 사유로 3회 이상 중대사고 발생 시 계약해지도 가능하도록 계약조건 신설 등

‘복권발행·관리 자문단’을 구성[124]하여 운영중이며, 사고대응 매뉴얼도 사고유형별로 현행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음. 그러나 논란이 발생하고 나서 후속조치로 대응하기에 앞서, 선제적으로 복권사업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우선, 로또를 포함한 복권사업이 투명하고 안정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조작설 또는 당첨번호 예측가능설 등이 왜 비과학적·비논리적인지를 설명하는 내용의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홍보 시에도 최근 변화하는 트렌드에 따라, 지상파 위주의 홍보방식에서 탈피하여 젊은 세대들의 접근도가 높은 유튜브·포털사이트·SNS 등 다양한 매체를 지상파 방송과 적절히 배분하여 전 세대에 걸친 홍보방식의 다각화가 필요함.

또한, 복권의 건전한 이미지와 추첨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도를 저해하는 행동 단속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경찰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과 협력을 강화하여 조작설 등 가짜뉴스 유포 또는 불법사이트 등의 차단을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음.[125]

복권기금은 타 공공사업과 다르게 국민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로 재원이 마련되는 만큼, 장기적인 사업 안정성을 위하여 기획재정부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복권사업을 운영하여야 할 것임.

---

124) 3개 분야, 총 12명 위촉(2024.5.)
① 시스템 검증 분야 5명(복권시스템 구축·운영 및 정보보안을 위한 IT분야)
② 복권상품 분야 3명(복권상품 구조 및 당첨 관련 검증을 위한 확률·통계 분야)
③ 사고대응 공통분야 4명(법률·행정·경영, 복권정책 경력자 등 / 사고대응매뉴얼·사고처리 과정의 적정성 검토)

125) 현행 「복권 및 복권기금법」상 복권위원회 및 그 수탁사업자는 복권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및 처벌 권한은 없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경찰 등 관계 당국에 불법사이트 등을 신고하고 있음.
(복권위원회의 불법사이트 방송통신심의위 신고 실적: ‘19년 1,266건 → ‘21년 3,235건 → ‘23년 3,995건)

(2) 복권기금 지원사업 불용액 반납 관리 강화 필요 (기타경상이전수입, 복권위원회)

< 현 황 >

「기타경상이전수입」은 기금으로 전출한 사업을 제외한 복권기금 지원사업의 취소·축소·중단 등으로 발생한 불용액 중 사업주체가 복권기금에 반납하는 불용액으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9조의2[126]는 불용액 발생 시 그 사유와 금액을 지체 없이 복권위원회에 통보하고 해당 금액을 늦어도 다음다음 연도까지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023년에는 181억 9,300만원을 징수결정하였으나 169억 4,800만원이 수납되고 12억 4,500만원이 미수납되었음.

[2023회계연도 기타경상이전수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23								2024
	계획액		이체등 증감액	계획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계획액
	당초	수정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	23,857	23,857	-	23,857	18,193	16,948	1,245	-	12,796

126)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9조의2(불용액의 복권기금에의 반납)** ① 기관의 장등은 해당 복권기금사업의 취소·축소·중단 등으로 인하여 불용액(不用額)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와 금액을 지체 없이 복권위원회에 통보하고 해당 금액을 복권기금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 불용액의 반납금액은 늦어도 다음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상 수입계획에 계상하여야 한다.

< 검토의견 >

복권기금 불용액이 법정기한 내에 반납되지 않는 경우가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기획재정부는 해당 사업에 대한 「복권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엄격한 적용을 통해 불용액이 법정기한 내에 반납되도록 관리가 필요함.

복권기금 불용액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9조의2에 따라 지체 없이 반납되어야 하고, 늦어도 다음다음 연도까지는 반납되어야 함. 그러나, 2023년 말 기준으로 12억 4,500만원이나 미수납되었고, 특히 그중에서 1억 300만원은 2021년도에 반납고지된 후 이미 다음다음 연도가 초과한 상태임. 이러한 미수납은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음(2021년 14억 8,300만원, 2022년 15억 600만원 등).

[복권기금 불용액 미수납 현황]

(단위: 백만원, 2023.12.31.기준)

세부사업명	해당기관	반납 고지일	반납기한	미수납액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산림청	'23.12.8.	'23.12.19.		404
요보호아동그룹홈 운영 및 지원	복지부	'21.12.16.	'21.12.31.	64	208
	복지부	'22.10.19.	'22.11.3.	65	
	복지부	'23.1.12.	'23.1.27.	79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비	복지부	'21.11.23.	'21.12.10.		29
입양아동 가족지원	복지부	'22.12.28.	'22.12.31.	69	514
	복지부	'23.4.6.	'23.4.21.	445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복지부	'21.12.16.	'21.12.31.	10	60
	복지부	'23.12.15.	'23.12.29.	50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지원 ※ 2006년 사업	복지부	'23.12.20.	'23.12.29.		29
합 계 (복지부 841백만원 + 산림청 404백만원)					1,245

자료 : 기획재정부 제출자료 재구성

[최근 3년간 기타경상이전수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당초	수정(A)						
2021	15,434	15,434	15,434	15,050	13,567	87.9	90.1	1,483
2022	23,876	14,300	14,300	13,623	12,117	84.7	88.9	1,506
2023	23,857	23,857	23,857	18,193	16,948	71.0	93.2	1,245

자료: 기획재정부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미반납 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납을 독려하는 등의 노력을 취하고 있으며, 기한 내 불용액을 반납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를 준용하여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반납하지 아니한 불용액 금액을 상계할 수 있도록 「2024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관련 내용을 신설하였다는 입장임. 기획재정부는 사업수행 부처·기관에 동 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관리할 예정임을 주지시킴으로써 불용액 반납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임.

[2024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17

1 사업수행부처·기관 등은 법 제29조의2에 따라 해당 복권기금사업의 취소·축소·중단·완료 또는 회계연도의 종료 등으로 인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와 금액을 지체 없이 복권위원회로 통보하고 해당 금액을 복권기금에 반납

① 다만, 반납예산 미계상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늦어도 반납사유 발생 다음다음 연도 중에는 반납을 완료하여야 함

② 기한 내 불용액을 반납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를 준용하여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반납하지 아니한 불용액 금액을 상계할 수 있음 (신설)

(3)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연례적 집행부진 관리 강화 필요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복권위원회)

< 현 황 >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노후화된 아동시설의 보수 등을 통한 시설 안전 지원, 아동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기능 개선 지원 및 아동시설 운영을 위한 장비 지원 등을 통해 요보호아동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임.

동 사업의 2023년 예산액은 53억 원으로, 이 중 51억 9,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9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3회계연도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 세목명)	2023							2024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본예산	추경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6365-347)	5,300	5,300	-	5,300	5,191	-	109	4,770
-자치단체 자본보조 (330-03)	5,300	5,300	-	5,300	5,191	-	109	4,770

< 검토의견 >

기획재정부는 연례적으로 이월 및 불용이 발생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 검토와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함.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고 함.)별 아동복지시설 중 증·개축, 개·보수, 장비보강이 필요한 시설이 지자체의 사업심사(전년도 4월경)를 거쳐 선정되면, 복권기금에서 비용의 50%를 보건복지부를 거쳐 지자체에 교부하고, 지자체는 지방비 50%를 추가하여 대상 시설에 지원하는 사업임. 그런데 동 사업 예산의 실집행현황을 보면 다수의 지자체에서 사업 지연이 발생함에 따라 연례적으로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음.

[최근 3년간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예산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부처			사업시행주체								
	계획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 집행률 (C/A)
	당초	수정 (A)						예산 현액	집행액 (C)			
2021	5,300	5,300	5,100	5,100	423	5,523	3,999	5,100	3,592	1,280	244	67.7
2022	5,300	5,300	5,211	5,211	1,280	6,491	3,431	5,211	2,316	2,812	248	43.7
2023	5,300	5,300	5,191	5,191	2,812	8,003	4,234	5,191	2,943	2,432	1,337	55.5

자료 : 기획재정부

[2023년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지역별 실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지역	사업시행주체							전년도 실집행률 (%)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서울	596	54	650	479	143	28	73.7	99.5
부산	37	-	37	34	-	3	91.9	100.0
대구	138	559	697	659	14	24	94.5	6.4

지역	사업시행주체							전년도 실집행률 (%)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인천	192	-	192	160	-	32	83.3	100.0
광주	256	24	280	265	-	15	94.6	66.3
대전	219	651	870	216	651	3	24.8	10.1
울산	2	112	114	114	-	-	100	0
경기	68	-	68	50	18	-	73.5	66.7
강원	81	-	81	80	-	1	98.8	100.0
충북	416	889	1,305	274	200	831	21.0	45.5
충남	603	-	603	344	222	37	57.0	100.0
전북	125	-	125	125	-	-	100	92.7
전남	705	523	1,228	742	161	325	60.4	19.2
경북	1,334	-	1,334	412	903	19	30.9	94.9
경남	414	-	414	273	121	20	65.9	90.5
제주	5	-	5	5	-	-	100.0	88.0
합계	5,191	2,812	8,003	4,234	2,432	1,337		

자료: 기획재정부

이와 관련하여 동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127]에 따라 실시된 '2023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2023.9.)에서도 집행부진 및 사업수요 부족 등으로 인하여 일정 수준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감축' 평가[128]를 받는 등 집행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음.

12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보조사업의 존속기간과 연장평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사업을 제외한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실효성 및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평가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존속기간이 연장된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및 해당 결과의 예산안 반영 정도를 「국가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28) **「2023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지침」 제16조(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① 평가단은 제15조에 따른 결과를 종합하여 보조사업의 즉시폐지, 단계적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변경, 정상추진으로 최종판정을 도출한다.
② 평가단은 도출된 각 판정결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추가로 제시할 수 있다.
1. 즉시폐지 : 해당 보조사업의 다음 년도 폐지
2. 단계적폐지 : 즉시폐지는 아니나, 존속기간 범위 내에서 일몰기한을 설정하여 폐지
3. 통폐합 : 유사사업 및 관련사업과 통합
4. 감축 : 지원 필요성은 인정되나, 지원 적정 규모가 감소한 경우 감액
5. 사업방식 변경 : 사업 방식이나 보조율 변경 등
6. 정상추진 : 적정 소요 지원

동 사업은 기획재정부(복권위원회), 보건복지부, 시·도 및 시·군·구의 아동 관련부서를 거쳐 대상 시설에 예산이 배정되어 집행되는데, 이러한 실집행률 저조는 주로 해당 지자체에서 지방비 확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지연되거나, 시세 대비 낮은 공사 단가로 인하여 낙찰업체가 계약 체결을 포기하거나, 입찰공고·설계 등 관련 행정절차가 지연됨으로 인해 공사가 연내 완료되지 못하면서 발생하였음.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는 '보조금 교부 시 점검사항'에서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지방비 부담능력 유무·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명확히 확인한 후 집행 가능한 보조금만을 교부하여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복권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도 사업수행 부처·기관 등은 월별로 지출 가능한 금액 범위 내에서 자금 교부를 요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음.

따라서 동 사업을 실제로 추진하는 보건복지부는 예산을 지원할 지자체 선정 시 지방비 충당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는 기금관리주체로서 이에 대한 책임성 있는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임.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조속히 지방비 확보를 준비하도록 독려하고, 연중 사업진행 경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자금을 교부하여야 하며, 계약 및 공사 관련 행정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을 관리해야 할 것임. 특히 장기공사가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연내 완공이 가능하도록 해당 지자체의 면밀한 사전준비가 필요할 것임.

또한 집행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연내 집행 가능성이 낮은 지자체의 사업비는 타 지자체에 교부하는 등 전체적인 이월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이 경우 지나치게 늦은 시기에 자금이 추가교부 되면 해당 지자체에서도 지방비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연중 지속적인 집행상황 점검이 필요할 것임.

특히 동 사업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복권기금의 공익사업 목적[129]에 부합하는 사업임에도, 연례적인 사업지연 및 실집행 저조로 인하여 공익목적 달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기획재정부는 충분한 사전 검토와 철저한 사업관리를 하여야 할 것임.

---

129)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③ 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과 제4항에 따른 비용 및 경비를 제외한 복권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다만, 제5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복권기금의 비율은 100분의 5 범위로 한다.
3. 저소득층, 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여성, 불우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5) 외국환평형기금

가. 개요

외국환평형기금은 환율의 급등락 조정 및 외화 유동성 공급 등을 통한 외환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외국환거래법」 제13조에 따라 설치되었음. 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을 통해 환율 상승(원화 절하)시에는 외화를 매도해 원화를 매입하고, 환율 하락(원가 절상)시에는 원화를 매도해 외화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급격한 환율 변동에 대응하고 있음. 외국환평형기금은 국고채 발행으로 조달된 원화를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수하고,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을 통해 외화를 조달하는 방법으로 재원을 확보함. 2023회계연도 기금운용규모는 전년 대비 52조 5,717억원 증가한 137조 3,194억원으로, 수정된 기금운용계획 대비 집행률은 91.2%임.

먼저, 2023회계연도 수입 결산에 따르면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49조 8,019억원을 예수하였고,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을 통해 700억엔의 외화(6,308억원 상당)를 차입하였으며, 외환건전성부담금은 1,344억원을 징수하였음. 그 밖에 한국투자공사(KIC) 출자배당금으로 641억원을 수납하였고,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여유자금 예치금 84조 7,302억원을 회수하였으며, 기타재산이자수입 등은 1조 9,581억원이 발생하였음.

[2023회계연도 외국환평형기금 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년 결산	2023년 계획		2023년 결산(B)	B/A	2024년 계획
		당초	수정(A)			
합 계	84,747,641	136,287,466	150,620,021	137,319,387	91.2	205,120,149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27,967,051	55,301,850	55,301,850	49,801,850	90.1	56,647,550
국공채(외평채) 수입	-	3,483,000	3,483,000	630,826	18.1	19,690,000
외환건전성부담금	119,519	125,007	125,007	134,378	107.5	139,952
정부출자수입(KIC)	117,617	38,040	38,040	64,067	168.4	56,720
여유자금 회수	54,600,663	75,485,107	89,817,662	84,730,166	94.3	125,983,811
기타재산이자수입 등	1,942,791	1,854,462	1,854,462	1,958,100	105.6	2,602,116

다음으로, 2023회계연도 지출 결산에 따르면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에 대한 원금 상환에 64조 2,019억원, 이자 상환에 5조 110억원을 집행하였고,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원금 상환에 1조 3,334억원,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이자와 파생거래 이자 등을 더한 차입금 이자 상환에 5,285억원을 집행하였음. 그 밖에 기금 운영에 11억원을 지출하였으며, 한국은행 등에 여유자금 66조 2,436억원을 예치하였음.

[2023회계연도 외국환평형기금 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년 결산	2023년 계획		2023년 결산(B)	B/A	2024년 계획
		당초	수정(A)			
합 계	84,747,641	136,287,466	150,620,021	137,319,387	91.2	205,120,149
공자기금예수 원금 상환	26,681,460	49,801,850	64,201,850	64,201,850	100.0	94,647,550
공자기금예수 이자 상환	4,667,782	5,606,219	5,538,774	5,010,986	90.5	5,918,316
국공채(외평채) 원금 상환	-	1,290,000	1,333,400	1,333,400	100.0	1,715,000
차입금 이자 상환	673,401	754,266	754,266	528,476	70.1	1,165,188
기금 운영비	1,029	1,103	1,103	1,089	98.7	1,257
여유자금 운용	52,723,969	78,834,028	78,790,628	66,243,587	84.1	101,672,838

나. 엔화표시 외평채 발행 분석

「국공채수입 사업」은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이하 '외평채')의 발행을 통해 조성되는 외평기금 수입 사업임. 2023년도 예산총칙에 따르면 외평채 발행한도는 3조 4,830억원(30억 미국 달러)으로, 이 중 6,308억 2,600만원(700억엔, 5억 달러 상당)의 엔(¥)화표시 외평채를 발행하였음.

[2023회계연도 국공채수입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23							2024
	계획액		이체등 증감액	계획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계획액
	당초	수정						
국공채수입 사업 (81-811)	3,483,000	3,483,000	-	3,483,000	630,826	630,826	-	19,690,000

기획재정부는 2023회계연도 외화표시 외평채 발행 한도 3조 4,830억원 중 18%인 6,308억원의 채권만 발행하였음. 그런데 모든 채권이 700억엔 규모의 엔화 표시 외평채였음. 이는 2023년 6월 일본에서 열린 한일 재무장관 회담의 후속조치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일 금융시장 협력을 강화하고, 외환보유액 통화구성을 다양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임.

사상 처음으로 발행된 이번 엔화표시 외평채는 3년물 330억엔, 5년물 235억엔, 7년물 70억엔, 10년물 65억엔이 발행되었음.

[2023회계연도 엔화표시 외평채 발행 내역]

(단위: bp, %, 억엔)

만기	발행일	만기일	가산금리[1)]	표면이자율[2)]	발행금액
엔화표시(3년물)	2023-09-14	2026-09-14	+23	0.475	330
엔화표시(5년물)	2023-09-14	2028-09-14	+33	0.750	235
엔화표시(7년물)	2023-09-14	2030-09-13	+43	1.032	70
엔화표시(10년물)	2023-09-14	2033-09-14	+48	1.312	65
합 계					700

주 1) 지표금리인 TONA(Tokyo Overnight Average Rate) Mid-Swap 대비 발행자 신용도에 따라 지급
주 2) 발행금리 = 지표금리(TONA Mid-Swap) + 가산금리
자료 : 기획재정부

참고로, 최근 10년간 외화표시 외평채의 잔액 및 통화별 잔액을 살펴보면, 달러화·유로화·위안화·엔화표시 외평채가 발행되었는데, 2023년도 기준으로는 달러화·유로화·엔화표시 외평채 잔액이 존재함.

구분	통화별잔액											
	달러			유로			위안			엔		
	발행	상환	잔액	발행	상환	잔액	발행	상환	잔액	발행	상환	잔액
2014	1,099,200	3,297,600	4,836,480	1,002,390	-	2,171,845	-	-	-	-	-	-
2015	-	-	5,156,800	-	640,265	1,440,596	541,650	-	541,650	-	-	-
2016	-	604,250	4,713,150	-	-	1,426,050	-	-	519,780	-	-	-
2017	1,071,400	-	5,249,860	-	-	1,439,156	-	-	490,950	-	-	-
2018	1,118,100	-	6,596,790	-	-	1,439,055	-	488,280	-	-	-	-
2019	1,736,700	1,736,700	6,831,020	-	-	1,459,609	-	-	-	-	-	-
2020	680,000	-	7,099,200	936,768	-	2,442,288	-	-	-	-	-	-
2021	592,750	-	8,328,138	939,638	503,378	2,886,031	-	-	-	-	-	-
2022	-	-	8,902,783	-	-	2,905,080	-	-	-	-	-	-
2023	-	1,289,400	7,768,635	-	-	3,067,169	-	-	-	638,862	-	638,862

주 : 발행액은 발행일 기준 환율, 상환액은 상환일 기준 환율, 통화별 잔액은 연도말 기준 환율(발행액은 발행일 기준, 잔액은 연말 환율이므로 차이 발생)
자료 : 기획재정부 자료 바탕으로 재작성

700억엔 규모의 외평채 발행으로 조달된 금액 중 670억엔은 한국투자공사에 위탁하여 일본 주식(MSCI 일본 인덱스) 및 채권(엔화 인덱스) 등 엔화 자산에 투자 중임.

기획재정부는 2023회계연도에 달러화 표시 외평채를 발행하지 않은 사유와 관련하여, 미국 국채금리 상승 흐름 속에서 비용효율화를 위해 달러표시 외평채를 발행하지 않았다는 입장임.

다. 검토의견

(1) 한국투자공사 해외지사 운영규정에 샌프란시스코·뭄바이 사무소 반영되도록 개정 필요(총괄, 외국환평형기금)

< 현 황 >

한국투자공사는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의 운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여 금융산업의 발전에 기여[130]하는 우리나라 국부펀드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131]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임. 한국투자공사의 근거법인 「한국투자공사법」은 2005년 시행되었는데, 2006년에는 한국은행 및 재정경제부(現 기획재정부)와 자산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글로벌 주식·채권투자 및 대체투자를 개시함.

한국투자공사는 외국환평형기금 및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 등을 바탕으로 한 자산 중 일부를 위탁받아 이를 운용[132]하는데, 2023년 12월말 기준 위탁자산은 총 1,175억 달러로, 779억달러(원화 100조원 상당)의 누적투자수익을 바탕으로 한 총 운용자산 규모는 1,894억 달러임.

[기재부(외평기금) 및 한국은행의 KIC 위탁현황]

(단위: 억 달러,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기획재정부	연도별 위탁액	85.3	100.0	100.0	100.0	100.0	50.0	25.7	5.0	40.0	50.0	-	4.5
	누적 위탁액	300.4	400.4	500.4	600.4	700.4	750.4	776.2	781.2	821.2	871.2	871.2	875.6
	비중	60	67	71	75	74	75	76	72	73	74	74	74

130) **「한국투자공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투자공사를 설립함으로써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의 운용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여 금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3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1. 공기업·준정부기관: 직원 정원, 수입액 및 자산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2. 기타공공기관: 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 이외의 기관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른 법률에 따라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되어 있거나 기관 운영의 독립성, 자율성 확보 필요성이 높은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32) **「한국투자공사법」 제30조(자산위탁의 계약)** ①공사와 위탁기관간에 체결하는 자산위탁의 계약은 위탁기관이 공사의 위탁자산에 대한 운용용도 및 운용방식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한국은행 및 「국가재정법」에 의한 기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산을 위탁하는 기금에 한정한다)의 관리주체가 각각 공사와 체결하는 자산위탁의 계약에는 위탁자산의 운용용도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②위탁자산에 대한 운용수익의 지급절차, 지급방식 및 운용수수료는 위탁기관과 공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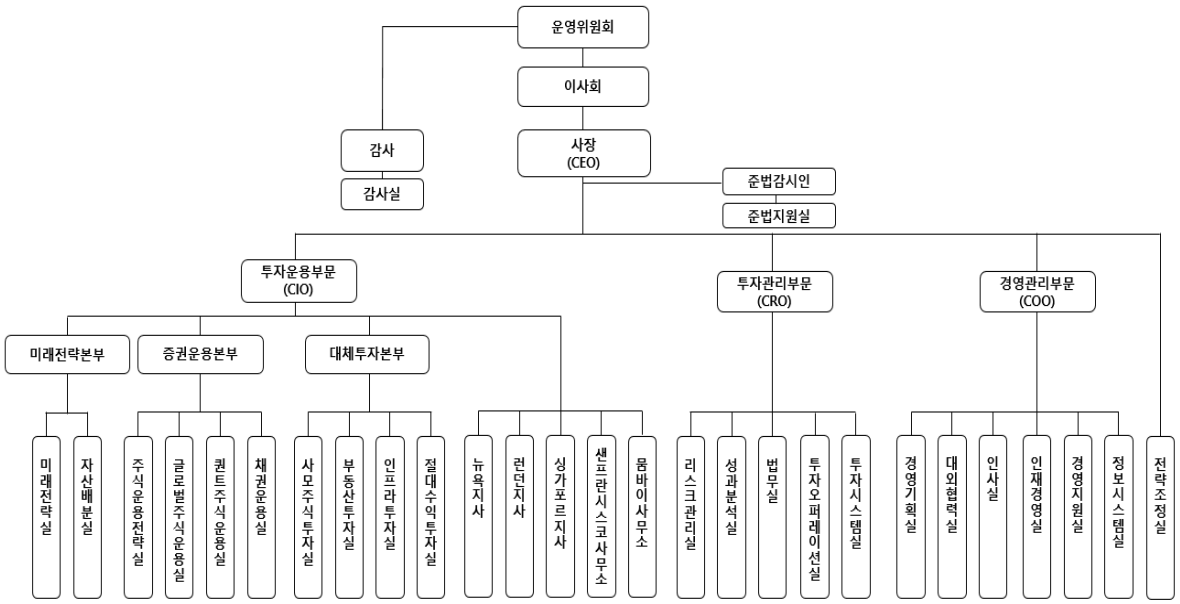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한국은행	연도별 위탁액	-	-	-	-	50.0	-	-	50.0	-	-	-	-
	누적 위탁액	200.0	200.0	200.0	200.0	250.0	250.0	250.0	300.0	300.0	300.0	300.0	300.0
	비중	40	33	29	25	26	25	24	28	27	26	26	26
계	연도별 위탁액	85.3	100.0	100.0	100.0	150.0	50.0	25.7	55.0	40.0	50.0	0.0	4.5
	누적 위탁액	500.4	600.4	700.4	800.4	950.4	1000.4	1026.2	1081.2	1121.2	1171.2	1171.2	1175.6
	비중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주: 위탁원금 기준, 계약기준이 아닌 실제 수령 받은 금액 기준.
자료: 한국투자공사

한국투자공사의 조직은 3부문 3본부 24실, 3지사, 2사무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투자공사법」 및 「한국투자공사 정관」[133]에 따라 2024년 현재 뉴욕지사, 런던지사, 싱가포르지사, 샌프란시스코 사무소 및 뭄바이 사무소 등 총 5개의 해외거점을 두고 있음.

[한국투자공사 조직도]

(2024년 5월 말 기준)



자료 : 한국투자공사

133) **「한국투자공사법」 제4조(사무소)** ①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한국투자공사 정관」 제3조(사무소)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공사는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 검토의견 >

한국투자공사는 샌프란시스코 사무소 및 뭄바이 사무소를 신설하였음에도 「해외지사 운영규정」을 개정하지 않았으므로 동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한국투자공사의 해외지사는 2010년 7월 뉴욕지사가 개소된 것을 시작으로 2011년 2월 런던지사, 2017년 9월 싱가포르지사가 개소됨. 이후 3년 반이 지난 2021년 3월, 첫 번째 해외사무소인 샌프란시스코 사무소가 개소됐고, 2024년 4월에는 뭄바이사무소가 개소됨.

[한국투자공사 해외지사·해외사무소 개소 현황]

○ 2010. 07 : 뉴욕지사 개소
○ 2011. 12 : 런던지사 개소
○ 2017. 09 : 싱가포르지사 개소
○ 2021. 03 : 샌프란시스코사무소 개소
○ 2024. 04 : 뭄바이사무소 개소

뉴욕지사, 런던지사, 싱가포르지사의 경우 지사를 새로이 신설할 때마다 「해외지사 운영규정」을 제·개정하는 절차를 거쳤음. 구체적으로, 2010년 7월 뉴욕지사를 개소하기 위해 동 규정을 2010년 6월 7일 제정했고, 2011년 12월 런던지사를 개소하기 위해 2011년 11월 동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2017년 9월 싱가포르지사를 개소하기 위해 2017년 6월 동 규정을 개정[134]하였음.

그러나 샌프란시스코사무소 및 뭄바이사무소의 경우 「해외지사 운영규정」의 개정 없이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이는 부절적함. 따라서 「해외지사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법령상 근거를 둔 해외사무소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134) **「해외지사 운영규정」 제2조(관할지역)** 지사 업무관할지역은 별표1과 같다. 다만, 본사에서 특별히 요청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관할지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별표1] 해외지사 업무관할지역

지사명	관할지역	비고
뉴욕지사	미주지역	
런던지사	유럽, 중동, 아프리카지역	
싱가포르지사	동남아시아, 인도 및 오세아니아지역	

(2) 기금운용계획변경 관련 제도 개선 필요 등
(외국환평형기금에서 공자기금으로 예수원금상환, 외국환평형기금)

< 현 황 >

외평기금 지출사업인 「외국환평형기금에서 공자기금으로 예수원금상환 사업」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공자기금')에서 발행한 국고채를 통해 조달된 원화재원을 외국환평형기금(이하 '외평기금')으로 예수함에 따라 발생한 예수원금을 만기도래 등의 사유로 공자기금으로 상환하는 사업임.

2023회계연도 계획액은 49조 8,018억 5,000만원으로, 2023년 10월 24일 외평기금 제2차 운용계획 자체변경을 통해 당초 계획액 대비 14조 4,000억원(28.9% 증) 증액된 계획현액 64조 2,018억 5,0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음.

[2023회계연도 외평기금에서 공자기금으로 예수원금 상환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2023							2024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외평기금에서 공자기금으로 예수원금 상환사업 (9110-910)	49,801,850	64,201,850	-	64,201,850	64,201,850	-	-	94,647,550
- 예수금원금상환 (510-04)	49,801,850	64,201,850	-	64,201,850	64,201,850	-	-	94,647,550

외평기금 수입사업인 「기금예수금 사업」은 국고채 발행을 통해 조달된 공자기금 중 일부를 외평기금으로 예수하는 것으로, '공자기금으로부터 기(旣) 예수받은 원금을 상환하기 위한 예수' 및 '신규예수'로 구성되어 있음.

2023회계연도 계획액은 55조 3,018억 5,000만원으로, 5조 5,000억원 감소한 49조 8,018억 5,000억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음. 공자기금에 원금을 상환하기 위한 예수는 계획액 49조 8,018억 5,000만원 전액 수납하였으나, 신규 예수분 5조 5,000억원은 전액 미수납되었음.

[2023회계연도 기금예수금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2023							2024
	계획액		이체등 증감액	계획 현액 (A)	징수 결정액 (B)	수납액	차이 (B-A)	계획액
	당초	수정						
기금예수금 사업 (94-943)	55,301,850	55,301,850	-	55,301,850	49,801,850	49,801,850	△5,500,000	56,647,550
-원금상환위한 예수	49,801,850	49,801,850	-	49,801,850	49,801,850	49,801,850	-	51,147,550
-신규 예수	**5,500,000**	**5,500,000**	**-**	**5,500,000**	**-**	**-**	**△5,500,000**	**5,500,000**

기획재정부는 2023년 9월 18일 보도자료[135]를 통해 '59.1조원 세수부족 보전대책'을 발표함. 동 보도자료에서 기획재정부는 보전대책으로 ①기금 여유재원(외평기금 등 24조원 내외), ②세계잉여금(일반회계 등 4조원 내외), ③지방교부세·금(23조원 내외), ④통상적 불용('21년 3.7조원, '22년 7.9조원) 등을 제시함.

2023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외국환평형기금 결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종적으로 외평기금에서 19.9조원을 공자기금 재원으로 확보하였음. 그리고, 공자기금 재원 중 9.6조원을 일반회계로 추가로 예탁하였음. 외평기금의 19.9조원 재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금 지출사업 중 「외국환평형기금에서 공자기금으로 예수원금상환 사업」에서 2023년 10월 24일 자체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해 14.4조원을 공자기금으로 조기상환했고, 기금 수입사업 중 「기금예수금 사업」에서 당초 공자기금으로부터 예수받아야 했던 신규예수 분 5.5조원을 예수받지 않았음.

135) 기획재정부, '금년 국세수입은 예산 대비 △49조원 예상, 여유재원 활용해 차질없는 재정집행 추진', 2023. 9. 18.

< 검토의견 >

기획재정부는 14.4조원의 외평기금 조기상환 과정에서 국회에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지 않고 자체변경하였는데 법령 해석상 모호한 부분이 있으므로 논의가 필요하고, 외평기금의 조기상환 및 활용 과정에서 국가채무의 질이 악화된 측면이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음.

기획재정부는 2023년 10월 24일 「외국환평형기금에서 공자기금으로 예수원금상환사업」 지출규모를 자체변경하여 14.4조원 증액하였음.

「국가재정법」 제70조[136] 제2항에서는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운용계획 중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다만,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금융성기금 이외의 기금의 경우 20% 이하로 변경할 때(제1호), 금융성기금의 경우 30% 이하로 변경할 때(제2호),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적 지출금액(제3호), 환율 및 금리의 변동, 기한 전 상환으로 인한 차입금 원리금 상환 지출금액 등(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자체변경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외평기금은 「국가재정법」상 금융성 기금 이외의 기금이고, 2023년 「외국환평형기

---

136) 제7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기금관리주체(기금관리주체가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경우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는 기금운용계획 중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조정하여 마련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요항목 지출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1. 별표 3에 규정된 금융성 기금 외의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2 이하
2. 별표 3에 규정된 금융성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3 이하. 다만,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소요되는 경상비에 해당하는 주요항목 지출금액에 대하여는 10분의 2 이하로 한다.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적 지출금액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금액
   가. 기금운용계획상 여유자금 운용으로 계상된 지출금액
   나. 수입이 기금운용계획상의 수입계획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그 초과수입과 직접 관련되는 지출금액
   다. 환율 및 금리의 변동, 기한 전 상환으로 인한 **차입금** 원리금 상환 지출금액
5. 기존 국채를 새로운 국채로 대체하기 위한 국채 원리금 상환
6.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 부족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연도에 이미 발행한 국채의 금액 범위에서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초과 조세수입을 이용한 국채 원리금 상환

⑤ 기금관리주체는 제3항제4호다목,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지출금액을 변경한 때(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2를 초과한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변경명세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명세서에는 국채 발행 및 상환 실적을 포함하여야 한다.

금에서 공자기금으로 예수원금상환 사업」에서 자체변경한 14.4조원은 당초 계획액 대비 28.9% 증가한 규모로, 원칙적으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예수원금 상환'을 「국가재정법」 제70조제3항제4호다목의 '기한 전 상환으로 인한 **차입금** 원리금 상환 지출금액'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금운용계획을 자체변경 하였음.

이에 대해 살펴보면, 「국가재정법」은 차입금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예수금 상환이 차입금 상환에 해당하는지 다소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다만, 법 제9조에 따라 마련된 '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 내에 있는 재정용어사전에서는 상환지출을 '예수원리금[137] 상환'과 '국내차입금 상환'으로 구분하고 있는바, 예수금과 차입금을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국가재정법」상 '차입금' 관련 규정]

조문	내용
제9조(재정정보의 공표)	① 정부는 예산, 기금, 결산, **국채, 차입금,** 국유재산의 현재액, 통합재정수지 및 제2항에 따른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재정통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정보통신매체·인쇄물 등 적당한 방법으로 알기 쉽고 투명하게 공표하여야 한다.
제18조(국가의 세출재원)	국가의 세출은 **국채·차입금(외국정부·국제협력기구 및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되는 차입자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외의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국채** 또는 **차입금**으로써 충당할 수 있다.
제20조(예산총칙)	①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총괄적 규정을 두는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제18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국채**와 **차입금**의 한도액(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에 계상된 **국채**발행 및 **차입금**의 한도액을 포함한다)
제68조(기금운용계획안의 국회제출 등)	① 정부는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요항목 단위로 마련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에 계상된 **국채**발행 및 **차입금**의 한도액은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총칙에 규정하여야 한다.
제90조(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및 사용계획)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00분의 3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1. **국채**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융자계정의 **차입금(예수금을 포함한다)**의 원리금. 다만, 200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입금(예수금을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137) 국채발행을 통해 마련된 재원은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기금들의 예수금으로 이용되고 있음.

조문	내용
제91조(국가채무의 관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전전년도 및 전년도 **국채** 또는 **차입금**의 차입 및 상환실적 2. 해당 회계연도의 **국채** 발행 또는 **차입금** 등에 대한 추정액 3.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국채** 발행 계획 또는 **차입** 계획과 그에 따른 **국채** 또는 **차입금**의 상환 계획

또한, 법 제18조·제20조·제68조는 국가 세출의 재원을 국채·차입금 외의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국채발행과 차입금의 한도액을 예산총칙에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가 제출하는 '예산총칙'[138]에서는 '차입금'에 대해 정부가 한국은행, 민간기금 또는 국제기구, 외국정부 등으로부터 법정유가증권 발행 없이 직접 차입한 금액임을 전제로 작성되고 있음.

이에 더해, 법 제90조에서는 차입금 용어에 예수금을 포함하고자 할 경우 법문언에 "차입금(예수금을 포함한다)"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기금운용계획변경을 규정하고 있는 법 제70조는 그 반대 해석상 차입금에 예수금이 포함되지 않는다고도 볼 여지가 있음.

이처럼 「국가재정법」의 제 규정을 살펴보았을 때, 외평기금이 공자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을 상환하는 것이 「국가재정법」 제70조제3항제4호다목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국가재정법」제70조제3항4호의 취지는 조기상환을 통해 기금의 채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외평기금 조기상환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동 조항 관련 차입금에 관한 명시적인 정의 규정이 없어 본 조항의 취지를 고려하였다는 입장임.

그러나, 기획재정부 입장에 따르면 향후 외평기금의 공자기금 예수금 상환에 대해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을 자체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제한 없이 가능하게 될 수 있을 것임.

---

138)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예산총칙」 제9조** 2023년도 중 국가의 차입금 한도액 또는 국채발행한도액(액면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당해연도에 발행한 국채를 차환하기 위한 국채발행액은 그 한도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① 주택도시기금	19,000,000,000,000 원
② 공공자금관리기금	169,000,000,000,000 원
③ 외국환평형기금	3,000,000,000 달러(미합중국화폐)

「국가재정법」에서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국회에 변경안을 제출하는 취지는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주요한 지출의 변경에 대해서는 국회가 이를 심의함으로써 기금운용계획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도모하기 위함임. 이러한 「국가재정법」의 취지를 감안하여, 예수금 상환에 대해서도 일정 규모 이상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해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음.

한편, 2023년 외평기금의 조기상환 및 활용으로 인해 통합재정수지 및 관리재정수지의 변동은 없으나, 국가채무의 질적부문에서 변동이 있는 것으로 보임.

「국가재정법」 제7조제2항제6호[139]에서는 통합재정수지[140]를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재정통계로서 순수입에서 순지출을 뺀 금액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음. 다만, 외평기금은 같은 호 단서 및 동법 시행령[141]에 따라 통합재정수지에서 제외하고 있음. 외평기금의 상기한 특성으로 인하여 외평기금의 수지가 변동하더라도 우리나라의 통합재정수지 및 관리재정수지는 영향을 받지 않음.

---

139) **「국가재정법」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②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재정통계로서 순(純)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망과 관리계획. 다만, 통합재정수지에서 제외되는 기금은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기준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0) 관리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지 - (국민연금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고용보험기금+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재정수지

141)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④ 법 제7조제2항제6호 단서에 따라 국제통화기금의 정부재정통계편람 및 경제협력개발기구 등의 공공부문채무통계작성지침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은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재정통계로서 순(純)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에서 제외한다.
9.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

[통합재정수지 포괄범위]



자료 : 기획재정부

외평기금 이외의 다른 계정성 기금[142]이 통합재정수지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외평기금이 제외된 것은 외평기금의 역할이 재정활동보다는 금융활동에 가깝기 때문임. 공자기금에서 외평기금으로 예탁하는 국고채 재원을 '외환시장 안정용 국고채'라고 하는데, 외환시장 안정용 국고채는 그에 상응하는 외화자산을 보유했기 때문에 금융성 채무로 분류되고 있지만, 외평기금의 재원을 세수결손에 보전한다면 이는 사실상 적자성 채무로 전환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상기한 바와 같이 2023회계연도에 외평기금에서 공자기금으로 총 19.9조원의 예수금을 조기상환(14.4조원)하거나 미예수(5.5조원)하였고, 그 중 9.6조원을 일반회계에 예탁하였음.

이로 인해 기획재정부는 통합재정수지 및 관리재정수지의 변화 없이 일반회계에 해당 재원을 예탁하게 되었음. 그러나, 이는 결과적으로 금융성 채무가 일부 적자성 채무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향후 국가재정 관리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142) 계정성 기금은 기금관리주체와 사업집행주체가 다른 기금으로서 특정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자금을 모아 사업을 집행하는 주체에 전달하여 주는 역할을 수행함. 공자기금, 공적자금 상환기금, 복권기금, 양곡증권정리기금 등

6)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가. 개요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사회기반시설 사업시행자의 신용을 보증하여 사업시행자가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투자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1994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근거하여 설치되었음.[143]

동 기금은 신용보증기금이 관리하며, 기금의 보증공급 규모는 2023년 말 누계 기준 37조 4,141억원(218개 사업)이고, 2023년에는 2조 6,543억원(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사업 등 6개 사업)이 신규로 공급되었음.

기금의 2023년 수입실적은 당초 계획액 7,701억원보다 18.9% 감소한 6,242억원으로, 그 내역은 자체수입 330억원, 정부출연금 100억원, 여유자금회수 5,309억원, 기타(기금예탁 원금회수 및 이자수입) 503억원임.

수입실적이 계획보다 감소한 이유는 금융시장 상황에 따른 운용자산 포트폴리오 변경으로 계획 대비 1,317억원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임.[144]

---

14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0조(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설치 및 관리)** ① 민간투자사업자금이 원활하게 조달될 수 있도록 제34조제1항 각 호의 금전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이 관리·운용한다.
제34조(보증 대상 및 한도 등) ①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금전채무에 대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기관은 사업시행자, 정부발주사업을 초과시공하는 자 및 제58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등"이라 한다)의 경영상태, 사업전망, 신용상태 등을 공정하고 성실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 또는 정부발주사업을 초과시공하는 자가 금융회사등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대출기관등"이라 한다)로부터 민간투자사업자금의 대출·급부 등(이하 "대출등"이라 한다)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
2. 제58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하는 자가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함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
3. 제58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하는 자가 해당 채권의 원리금 지급을 위하여 대출기관등으로부터 대출등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

144) 금융시장의 상황이 변동함에 따라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 등을 장기보유 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음.

[2023회계연도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수입 실적]

(단위: 억원, %)

구 분	계 획 (A)	실 적 (B)	비율(B/A)	증감 (B - A)
○ 자체수입	472	330	69.9	△142
- 이자수입	197	118	59.9	△79
- 대위변제회수	35	14	40.0	△21
- 보증료수입	240	198	82.5	△42
○ 정부내부수입	603	603	100.0	-
- 출연금	100	100	100.0	-
- 기금예탁 원금회수	500	500	100.0	-
- 기금예탁 이자수입	3	3	100.0	-
○ 여유자금회수	6,626	5,309	80.1	△1,317
합 계	7,701	6,242	81.1	△1,459

기금의 2023년 지출실적 또한 당초 계획액 7,701억원보다 18.9% 감소한 6,242억원으로, 그 내역은 사업비 4억원, 기금운영비 52억원, 여유자금운용 6,186억원임. 지출실적이 계획보다 감소한 이유는 금융시장 상황에 따른 운용자산 포트폴리오 변경으로 계획 대비 1,251억원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임.

[2023회계연도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지출 실적]

(단위: 억원, %)

구 분	계 획 (A)	실 적 (B)	집행률(B/A)	A - B 이월액	A - B 불용액
○ 사업비	159	4	2.5	-	155
- 대위변제	154	-	-	-	154
- 구상권관리비	1	-	-	-	1
- 보증료환급	4	4	100.0	-	-
○ 기금운영비	105	52	49.5	-	53
- 인건비	23	23	100.0	-	-
- 경 비	12	11	91.7	-	1
- 선급법인세	70	18	25.7	-	52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	-	-	-	-
○ 여유자금운용	7,437	6,186	83.2	-	1,251
계	7,701	6,242	81.1	-	1,459

주1) 대위변제: 산업기반신용보증에 의해 민간투자사업 자금을 조달한 사업시행자가 주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기금이 대신 보증채무를 채권은행에 이행하는 것

주2) 구상권관리비: 보증부실기업·대위변제기업으로부터 구상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부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7) 기후대응기금

가. 개요

기후대응기금은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2021년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약칭 “탄소중립기본법”)[145]의 제정을 통해, 2022년 1월 1일부터 설치·운용을 개시한 기금임.

먼저, 2023회계연도 수입 결산에 따르면 수입은 2조 2,267억원으로 계획 대비 집행률은 96.8% 실적을 달성였으며, 세부내역으로 배출권 매각대금 852억원을 수납하였고, 일반회계로부터 1조 2,223억원, 교통시설특별회계로부터 3,000억원, 전력기금으로부터 2,000억원, 복권기금으로부터 956억원을 전입하였고,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2,726억원을 예수하였음. 그 밖에 여유자금 회수 227억원, 여유자금운용이자수입 및 사업비 반납 등 283억원을 수납하였음.

[2023회계연도 기후대응기금 수입결산]

(단위: 억원)

항 목		’23계획		’23결산 (B)	증 감	
		당초	수정(A)		(B-A)	%
자체수입	배출권 매각대금	4,009	2,087	852	△1,235	△59.2
	이자수입, 사업비 반납 등	-	-	283	283	순증
정부내부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12,223	12,223	12,223	-	-
	교통시설특별회계 전입금	3,000	3,000	3,000	-	-
	전력산업기반기금 전입금	2,000	2,000	2,000	-	-
	복권기금 전입금	910	956	956	-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2,726	2,726	2,726	-	-
여유자금 회수		-	-	227	227	순증
합 계		24,867	22,992	22,267	△725	△3.2

14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기후대응기금의 설치) ① 정부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다음으로, 2023회계연도 지출 결산에 따르면 지출은 2조 2,267억원으로 계획대비 96.8%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온실가스 감축, 저탄소생태계조성 등 사업비 2조 1,911억원과 기금운영비 26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171억원, 여유자금운용 159억원을 집행하였음.

지출내역 중 사업비 집행실적은 온실가스감축 8,748억원, 저탄소생태계조성 4,951억원, 공정한전환 2,013억원 및 탄소중립기반구축 6,199억원을 집행하였으며, 계획대비 집행률은 96.1%임.

[2023회계연도 기후대응기금 지출결산]

(단위: 억원)

항 목		'23계획		'23결산 (B)	증 감	
		당초	수정(A)		(B-A)	%
사업비	온실가스감축	9,866	8,976	8,748	△228	△2.5
	저탄소생태계조성	6,364	5,635	4,951	△684	△12.1
	공정한전환	2,038	1,977	2,013	36	1.8
	탄소중립기반구축	6,276	6,204	6,199	△5	△0.1
	소 계	24,544	22,792	21,911	△881	△3.9
기금운영비		27	26	26	-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174	174	171	△3	△1.7
여유자금운용		122	-	159	159	순증
합 계		24,867	22,992	22,267	△725	△3.2

나. 검토의견

(1) 안정적인 기금 수입 재원 확보방안 마련 필요 (기후대응기금 수입, 미래전략국)

< 현 황 >

2023년 기후대응기금 수입은 당초 2조 4,867억 2,300만원을 계획하였으나, 자체수정을 통해 2조 2,991억 5,800만원으로 감액하였고, 이 중 2조 2,266억 9,800만원을 수납하였음.

기후대응기금의 수입 중 온실가스 배출권 매각대금을 포함하는 기타경상이전수입의 2023년 계획현액은 2,086억 6,000만원으로, 이 중 996억 2,2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정부내부수입인 다른 회계·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의 2023년 계획현액은 2조 904억 9,800만원으로, 2조 904억 9,800만원 전액을 수납하였음.

[2023회계연도 기후대응기금 기타경상이전수입 및 정부내부거래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 세목명)	2023				2024
	계획액		결산(B)	집행률 (B/A)	계획액
	당초	수정(A)			
기후대응기금 수입	2,486,723	2,299,158	2,226,698	96.8	2,391,807
- 정부출자수입(52-521)	-	-	759	순증	-
- 기타민간이자수입(54-544)	-	-	1,383	순증	3,000
- 기타재산이자수입(54-546)	-	-	11,254	순증	7,084
- 기타재산이자외수입(54-547)	-	-	-	-	289,694
- 과태료(56-563)	-	-	53	순증	-
- 위약금(57-572)	-	-	1	순증	-
-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	**400,896**	**208,660**	**99,622**	**47.7**	**2,184**
-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75-754)	-	-	460	순증	-
- 한국은행예치금회수(85-851)	-	-	247	순증	-
-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85-853)	-	-	22,421	순증	12,189
- 일반회계전입금(91-911)	**1,222,255**	**1,222,255**	**1,222,255**	**100.0**	**1,149,413**
- 특별회계전입금(91-912)	**300,000**	**300,000**	**300,000**	**100.0**	**300,000**
- 기금전입금(91-913)	**290,975**	**295,646**	**295,646**	**100.0**	**308,333**
- 기금예수금(94-943)	**272,597**	**272,597**	**272,597**	**100.0**	**319,910**

< 검토의견 >

기획재정부는 기후대응기금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자체수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안정적인 수입 재원 확보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첫째, 기후대응기금의 주요 자체수입원인 온실가스 배출권 매각대금이 2022년과 비교하여 큰 폭으로 감소하여 총수입 중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5.1%에 불과하므로, 자체수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기후대응기금의 수입 중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2년 15.8%에서 2023년 5.1%로 하락하였음. 이렇듯 자체수입 비중이 급감한 것은 주요 자체수입원인 온실가스 배출권 매각대금[146]이 2022년 3,188억 2,600만원에서 2023년 852억 3,300만원으로 73.3% 감소한 것이 주요한 원인임.

[기후대응기금 수입구조(결산기준)]

(단위: 백만원, %)

구분	2022년		2023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기후대응기금 수입 합계	2,046,509	100	2,226,698	100
- 자체수입 소계	**323,250**	**15.8**	**113,533**	**5.1**
온실가스 배출권 매각대금	318,826	15.6	85,233	3.8
사업비 정산금 및 반환금	16	0	14,389	0.7
출자 및 융자이자 수입	251	0	2,142	0.1
여유자금운용 등 이자 수입	3,187	0.2	11,254	0.5
과태료 및 위약금	70	0	54	0
융자원금회수	900	0	460	0
- 정부내부수입	1,723,259	84.2	2,090,498	93.9
- 여유자금 회수	-	-	22,668	1.0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146) 온실가스 배출권 매각대금은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경매 수입과 시장조성자에 이전한 배출권 예비분의 현금 상환 수입액으로 구성됨.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14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148]에 따라 유상할당된 배출권을 경매방식으로 공급하여 얻은 수익으로, 낙찰 방식은 유효 응찰가격 중 가장 높은 가격의 수량부터 총 입찰수량에 도달하는 가격의 수량까지 순차적으로 결정되고, 낙찰가격은 낙찰 대상 업체가 제시한 유효 응찰가격 중 최저가격으로 함.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규모는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라 결정되는데, 2021년부터 2025년까지는 국가 배출권 제3차 할당 계획기간으로 유상할당 대상업종에 속하는 할당업체의 전체 할당량 중 10%를 유상으로 할당하고 있음.

[계획기간별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규모]

(단위: 만톤)

구분	제1차 계획기간 (2015~2017)	제2차 계획기간 (2018~2020)	제3차 계획기간 (2021~2025)
배출허용총량	168,987	177,713	303,551
유상할당량	-	2,089	11,872
유상할당비율	0%	3%	10%

자료: 환경부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배출권 유상할당 경매는 2019년부터 매월 실시되고 있으며, 매각 대금은 2021년까지는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수입금이었으나, 2022년 기후대응기금이 설치되면서 기후대응기금의 수입금[149]으로 편성되고 있음.

---

147)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배출권의 할당)** ③ 제1항에 따른 배출권의 할당은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하되, 무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의 비율은 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상 등 국제적 동향, 물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직전 계획기간에 대한 평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8)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배출권의 무상할당비율 등)** ③ 3차 계획기간 이후의 무상할당비율은 100분의 90 이내의 범위에서 관련 국제적 동향 및 이전 계획기간의 감축 실적에 대한 평가 등을 고려하여 할당계획에서 정한다. 이 경우 무상할당비율은 직전 계획기간의 무상할당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계획기간에 할당대상업체에 유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은 할당대상업체를 대상으로 경매의 방법으로 할당한다.

14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기후대응기금의 설치) ① 정부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 6. (생략)
7.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라 배출권을 유상으로 할당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입
8. · 9. (생략)

배출권 유상할당 경매 수입은 2019년과 2020년에는 수입금 실적이 계획보다 높았으나, 2021년 이후 코로나 19와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함에 따라 배출권 초과공급이 발생하면서 수입금 실적이 계획 대비 하락하고 있는 상황임.

특히, 2023년에는 수입금 실적이 당초 계획 대비 21.6%에 불과하여 저조하며, 전년도 수입금의 1/4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였음. 이는 주요 유상할당 대상인 발전업계의 배출량 감소[150]로 경매 참여 수요가 감소하여 수급불균형이 크게 발생하였고, 경기둔화 및 에너지믹스 개선 등으로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함에 따라 시장가격이 하락하여 이와 연동된 유상할당 경매가격 또한 큰 폭으로 하락하였기 때문으로 보임.

[연도별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 계획 및 실적]

(단위: 천톤, 백만원, %)

구분	계획 수량	입찰 수량(A)	응찰 수량	낙찰 수량(B)	낙찰률 (B/A)	낙찰 단가	수입금		
							계획(C)	실적(D)	D/C
2019	7,950	8,090	12,195	7,950	98.3	29,238	204,600	232,174	113.5
2020	8,250	9,434	9,428	8,171	86.6	30,385	215,818	248,017	114.9
2021	18,243	20,463	12,999	11,177	54.6	26,373	490,325	294,461	60.1
2022	25,800	23,236	14,585	13,642	58.7	23,243	730,584	316,714	43.4
2023	20,600	19,010	8,265	7,888	41.5	10,672	389,340	84,088	21.6

자료: 환경부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150)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에 따르면, 전환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1년 2억 2,370만톤에서 2022년(잠정) 2억 1,390만톤으로 4.4% 감소하였고, 2023년은 2022년(잠정)보다 4.8% 감소한 2억 370만톤으로 추정하여 2년 연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연도별 주요 4대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단위: 백만톤)

부문	2018	2019	2020	2021	2022(잠정)	2023(추정)
전환	268.4	248.7	218.1	223.7	213.9	203.7
산업	260.8	256.4	246.8	262.2	245.8	244.7
건물	52.1	48.6	46.5	46.9	48.3	45.2
수송	96.2	99.0	94.2	96.9	97.8	95.0

* 상기 배출량은 배출활동별 배출량 산정식 등을 활용하여 산정한 값으로, 할당대상업체를 대상으로 탄소배출 측정·보고·검증체계(MRV)를 통해 실제 배출량을 측정하는 배출권거래제 인증배출량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환경부 보도자료(2024. 4. 7.)를 토대로 재구성

이와 같은 기후대응기금 자체수입 실적 저조는 기금 지출사업의 안정적인 운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됨. 실제로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이 당초 계획을 하회하자 2023년 11월 기금운용계획을 자체변경하여 44개 세부사업의 사업비 1,799억원 및 기금운영비 1억원을 감액하고, 여유자금 122억원을 전액 삭감하여 사업비로 충당하였음.

[온실가스 배출권 수입 저조에 따른 프로그램별 사업비 감축 규모]

(단위: 개, 백만원)

프로그램	세부사업 수		2023년 계획액	감액규모
	전체	감액		
계	152	44	2,454,418	△179,923
온실가스감축	27	19	986,624	△89,042
저탄소생태계조성	20	9	636,422	△72,955
공정한전환	13	8	203,781	△10,761
탄소중립기반구축	92	8	627,591	△7,165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중간목표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목표를 수립하고 있는데, 이는 목표기간인 12개년(2019~2030년) 동안 연평균 4.1% 감소에 상응하는 수준임.[151]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이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나, 2021년(3.4% 증가)과 2022년(3.3% 감소)은 목표 달성에 미흡한 측면이 있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후대응기금의 원활한 사업추진이 더욱 요구되는 상황임.

[연도별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단위: 백만톤)

구분	2018 (기준년도)	2019	2020	2021	2022(잠정)
총 배출량	725.0	699.2	654.4	676.6	654.5
전년도 대비 변동율	-	-3.6%	-6.4%	3.4%	-3.3%

* 총 배출량은 흡수제거량을 반영하지 않은 배출량임.
자료: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환경부 보도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151)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 중기 경제전망 Ⅱ, 2022. 10.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기후대응기금의 지출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허용량 재검토, 유상할당 비율 확대[152], 배출권 가격 안정화 등 온실가스 배출권 수입을 증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추가적인 자체수입원을 발굴하는 등 자체수입을 확대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둘째, 기후대응기금은 자체수입 저조로 다른 회계·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등 정부내부수입에 의존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데, 20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장기간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보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기후대응기금 수입구조(결산기준)]

(단위: 백만원, %)

구분	2022년		2023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기후대응기금 수입 합계	2,046,509	100	2,226,698	100
- 자체수입	323,250	15.8	113,533	5.1
- 정부내부수입 소계	**1,723,259**	**84.2**	**2,090,498**	**93.9**
일반회계 전입금 (교통·에너지·환경세 7% 포함)	763,154	37.3	1,222,255	54.9
교통시설특별회계 전입금	300,000	14.7	300,000	13.5
전력산업기반기금 전입금	200,000	9.8	200,000	9.0
복권기금 전입금	-	-	95,646	4.3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460,105	22.5	272,597	12.2
- 여유자금 회수	-	-	22,668	1.0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152) **주요 배출권거래제 도입 국가의 유상할당 비율 현황**

한국	EU	미국 캘리포니아주	캐나다 퀘벡주
10% ※ 할당량 기준 4.4%	전환: 100% 산업: 탄소누출 0% ('34년까지 100%) 탄소비누출 70% ('30년까지 100%) 열: 0~70% ※ 할당량 기준 57%	발전: 100% 산업: 무상할당 ※ 할당량 기준 50%	발전: 100% 산업: 차등적용(탄소집약도, 무역노출도, 제품생산량 등을 고려) ※ 할당량 기준 61%

자료: 기획재정부·환경부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기후대응기금의 가장 큰 수입원은 교통·에너지·환경세[153]이나,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신설 당시부터 일몰이 예정[154]되어 있는 상황이고, 휘발유와 경유를 대상으로 부과하므로 점차 친환경 에너지로의 대체가 이루어지면 장기적으로는 수입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

또한, 그 밖의 일반회계 전입금과 교통시설특별회계 및 전력산업기반기금 전입금은 해당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해당 회계·기금의 수입 및 지출 여건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수입원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기후대응기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용을 위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입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15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71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정부는 매 회계연도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천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기금에 전입하여야 한다.

154) 1994년 1월 1일 교통세로 신설될 당시 2003년 12월 31일까지 10년간 한시적으로 부과될 계획이었으나, 이후 총 7차례 유효기한이 연장되어 현행법 기준으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될 예정임.

(2) 국제감축사업 면밀한 사업관리, 온실가스 국제감축 실적인정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 마련 및 실질적 평가지표 정비 필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기재부)(신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산업부)(신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환경부)(신규), 기후대응기금)

< 현 황 >

「기후대응기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155]에 따라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조성한 「국가재정법」상 기금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은 「파리협정」제6조 및 「탄소중립기본법」제35조[156]에 따라 국제감축사업을 활성화하여 상향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필요한 감축실적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감축을 발굴하고, 기반구축 및 역량강화를 수행하는 2023년도 신규사업임. 2023회계연도 기준 기후대응기금 내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기재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산업부)」 및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환경부)」 등 3개의 세부사업이 있음.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기재부)」의 2023년 계획액은 25억원으로, 이 중 3억 5,000만원을 전용감하였고, 계획현액 21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음.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산업부)」의 2023년 계획액은 63억 5,000만원으로, 이 중 11억 3,800만원을 전용감하였고, 계획현액 52억 1,200만원을 집행하였음.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환경부)」의 2023년 계획액은 103억 5,000만원으로, 이 중 37억 5,000만원을 전용감하였고, 계획현액 66억원 중 65억 9,500만원을 집행하였음.

---

155) **「탄소중립기본법」 제69조(기후대응기금의 설치)** ① 정부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156) **「탄소중립기본법」 제35조(국제 감축사업의 추진)** ① 협정 제6조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얻기 위하여 행하는 기술지원, 투자 및 구매 등의 사업(이하 "국제감축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내용, 온실가스 예상감축량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정부는 등록된 국제감축실적을 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⑥ 정부는 외국 정부와 공동으로 국제감축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외국 정부와 협의하여 국제감축사업 협의체를 둘 수 있다.
1. 사업수행 방법의 승인
2. 국제감축사업의 등록
3. 국제감축실적의 이전

[2023회계연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기재부, 산업부, 환경부)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23							2024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기재부)(6131-300)	2,500	2,150	-	2,150	2,150 (2,019)	-	-	2,550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산업부)(6131-311)	6,350	5,212	-	5,212	5,212 (4,447)	-	-	38,710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환경부)(6131-610)	10,350	6,600	-	6,600	6,595 (6,015)	-	5	23,550

< 검토의견 >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에서 국제감축 논의가 지연되는 것을 감안하면서 국제감축사업을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고, 파리협정 제6.2조에 따른 온실가스 국제감축 실적인정을 위해 다른 국가들과 추진 중인 국제감축사업 협의체가 작동될 수 있도록 타깃국가 다양화·구체적 추진계획 마련 등의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으며, 부처마다 상이한 성과지표를 통일하고 실질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첫째, 당사국총회에서 국제감축 논의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국제감축 논의가 타결될 것을 전제로 편성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의 면밀한 사업관리가 필요함.

우리나라는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157]'를 수립해 2018년 총배출량 대비 40%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음.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중 '국제감축' 목표는 탄소중립기본계획('23.4.)에 따라 2030년까지 국제감축 3,750만톤을 달성해야 함.

「파리협정」 제6조[158]에서는 국제감축의 방법을 크게 2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6.2조의 '협력적 접근법' 및 제6.4조의 'UN감독기구 하 지속가능발전 메커니즘'[159]이 그것임.

---

157) 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간목표로서, 파리기후변화 협정에 따라 참가국이 스스로 정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2018년 총 배출량(727.6백만톤) 대비 40% 감축(2030년 436.6백만톤)을 목표로 함.(대통령소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158) **「파리협정」 제6.2조** 국가결정기여를 위하여 당사자가 국제적으로 이전된 완화 성과의 사용을 수반하는 협력적 접근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당사자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 거버넌스 등에서 환경적 건전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며, 이 협정의 당사자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자총회가 채택하는 지침에 따라, 특히 이중계산의 방지 등을 보장하기 위한 엄격한 계산을 적용한다.

제6.4조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배출 완화에 기여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메커니즘을 이 협정의 당사자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자총회의 권한과 지침에 따라 설립한다. 이 메커니즘은 이 협정의 당사자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자총회가 지정한 기구의 감독을 받으며, 다음을 목표로 한다.

가. 지속가능한 발전 증진 및 온실가스 배출의 완화 촉진

나. 당사자가 허가한 공공 및 민간 실체가 온실가스 배출 완화에 참여하도록 유인 제공 및 촉진

다. 유치당사자 국내에서의 배출 수준 하락에 기여. 유치당사자는 배출 감축으로 이어질 완화 활동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것이며 그러한 배출 감축은 다른 당사자가 자신의 국가결정기여를 이행하는 데에도 사용될수 있다. 그리고

라. 전지구적 배출의 전반적 완화 달성

159) 다른 국가들도 NDC 이행을 위해 국제감축 시장메커니즘을 활용할 계획이며, 특히 지속가능 메커니즘(6.4조)에 비해 행정절차 등이 간소한 협력적 접근법(6.2조)의 활용 의향이 높은 것으로 제시되었음(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22. 2. 9.)

< 파리협정 6조 활용 의향 >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온실가스 국제감축 시장메커니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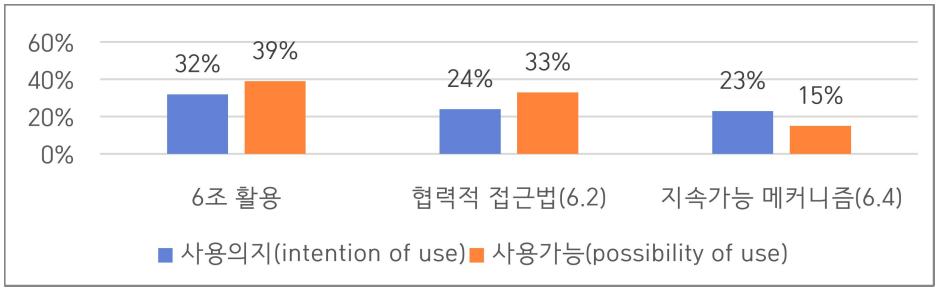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해외투자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추진을 위한 「산업·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협의체」 출범', 2022. 2. 9.)

제6.2조의 협력적 접근법은 2021년 11월 영국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타결되었으나, COP28에서 세부기준 마련까지는 합의가 도출되지 않아 국제감축 실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보수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한 상황임. 제6.4조의 지속가능발전메커니즘은 COP28에서 합의되지 못한바 진행이 지지부진한 상황임.

그럼에도 기후대응기금 소관 개별 부처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계획액은 지속적으로 증액 편성되고 있음. 2024년도의 경우도 기재부 소관 세부사업 25억 5,000만원, 산업부 소관 세부사업 387억 1,000만원 및 환경부 소관 세부사업 235억 5,000만원이 계획되었고, 국토부 소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도 새로이 만들어져 23억 2,000만원이 계획됨.

[2024년도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 계획액 편성근거]

<기재부> ('23) 2,500백만원 → ('24요구) 2,550백만원, 50백만원 증액
■ 타당성조사 지원 ('23) 1,900백만원 → ('24요구) 2,200백만원, 300백만원 증액
· 예비타당성 조사 지원 3개 사업 × 200백만원 = 600백만원
· 본타당성 조사 지원 4개 사업 × 400백만원 = 1,600백만원
■ 전담기관 운영비 및 연구용역비 ('23) 600백만원 → ('24요구) 350백만원, 250백만원 감액



* 출처 : UNFCCC Synthesis Report(21.9월), 총 164개 NDC분석

<산업부> (‘23) 6,350백만원 → (’24요구) 38,710백만원, 32,360백만원 증액
■ 법정민간대행사업(320-08) : 38,700백만원
가. 투자사업(33,000백만원) ‘23년 6,000백만원 → ’24년 33,000백만원
・ 6,000백만원 x 2건, 3,000백만원 x 7건
나. 펀드조성 ’23년 0 → ‘24년 3,000백만원
・ 3000백만원 x 1식
・ 총150억원 규모(정부 30억, 민간 120억) 펀드 조성 추진
다. 타당성조사 ’23년 0 → ‘24년 2,000백만원
・ 예비타당성조사: 200백만원 x 4건
・ 본타당성조사: 400백만원 x 3건
라. 기반조성 ’23년 350 → ‘24년 700백만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10백만원

<환경부> (‘23) 10,350백만원 → (’24요구) 23,550백만원, 13,200백만원 증액
■ 감축실적 확보 22,500백만원
・(본사업) 7개×2,100백만원=14,700백만원
(타당성조사) 본타13개사업×400백만원+예타13개사업×200백만원=7,800백만원
■ 정부간 양자 협력 체계 구축 1,050백만원
・(전담기관 3개소 위탁사업비) 1,040백만원, (국외여비) 10백만원

<국토부> (‘23) 0백만원 → (’24요구) 2,320백만원, 2,320백만원 순증
■ 국제감축사업 위탁운영 : (‘23) 0백만원 → (’24요구) 320백만원, 순증
- (요구) 국제감축사업 제도 운영 등 전담기관 운영비 및 국제감축사업 진출기업에 대한 컨설팅, 초청연수, 상대국과의 감축실적 이전 협의 등
- (산출) 320백만원 x 1식 (위탁기관 : 해외건설협회)
■ 국제감축사업 발굴 및 개발 지원 : (‘23) 0백만원 → (’24요구) 1,990백만원, 순증
- (요구) 국제감축사업 발굴 및 개발을 위한 감축사업 타당성조사지원, 투자지원 등
- (산출) i) 예비타당성 용역비 지원 약1,200백만원(6건×200백만원)
ii) 본타당성 용역비 지원 약800백만원(2건x400백만원)
■ 기타경상경비 : (‘23) 0백만원 → (’24요구) 10백만원, 순증
- (요구) 국제감축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기후변화 관련 국내외 협력을 위한 운영비
- (산출) 국제감축사업 관련 세미나 개최, 자료 인쇄 등 경상비용 10백만원

자료 : 기획재정부 자료 바탕으로 재작성

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국제감축 실적인정을 위한 전단계로서 예비타당성조사, 본타당성조사, 투자지원 및 기반조성을 위해 계획액을 편성하였고, 특히 「파리협정」 제6.2조뿐만 아니라 제6.4조도 COP28에서 타결될 것을 전제로 계획액이 편성되었음. 그러나 2024년 8월 기준 「파리협정」 제6조 관련 사항은 당사국총회에서 합의되지 않은 상황인바, 이로 인해 개별 부처에서는 사업 위험이 낮아 향후 추진이 유연한 소규모 사업을 위주로 타당성조사 및 투자지원 등을 진행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2024년 집행률도 저조할 것으로 예상됨[160].

160) 정부는 COP29(’24)에서 세부 기술지침 합의 등이 이루어진 후 감축실적이전 등 실질적 국제감축사업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국제감축사업 협의체 강화사업, 상대국가의 역량배양 사업 등을 추진할 필요성이 높다는 입장임.

따라서 COP에서의 국제감축 실적 인정 논의경과를 분석하면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관리를 할 필요가 있음.

둘째, 파리협정 제6.2조에 따른 온실가스 국제감축 실적인정을 위해 다른 국가들과 추진 중인 국제감축사업 협의체가 작동될 수 있도록 타깃국가 다양화·구체적 추진계획 마련 등의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 잠재력, 기업수요 등을 고려하여 국제감축 우선협력 27개국[161]을 선정하여 양자 간 기후변화 협정이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파리협정」 제6.2조 및 「탄소중립기본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2024년 8월 현재 27개국 중 베트남, 몽골, 가봉 및 우즈베키스탄 등 4개 국가를 '타깃국가'로 삼아 양자 간 기본협정을 체결하고 국제감축사업 협의체를 구성하여 국제감축 실적을 인정받고자 하였음.

[베트남, 몽골, 가봉, 우즈베키스탄과의 국제감축 기본협정 체결·발효 경과]

<베트남>
- '대한민국정부–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기후변화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체결('21. 5.)
- 동 기본협정 '21. 11. 27. 발효

<몽골>
- 파리협정 제6조 협력적 접근에 관한 이행약정 및 '환경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22. 5.)
- '대한민국정부–몽골 정부 간의 기후변화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체결('23. 2.)
- 동 기본협정 '23. 6. 11. 발효

<가봉>
- '대한민국정부–가봉공화국 정부 간의 기후변화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체결('23. 5.)
- 동 기본협정 '23. 6. 14. 발효

<우즈베키스탄>
- '대한민국정부–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기후변화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체결('23. 6.)
- 동 기본협정 '23. 11. 23. 발효

자료 :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정부의 기후변화협력 기본협정 표준문안을 활용함에 따라 4개국가와의 기본협정 사항이 비교적 유사함. 「파리협정」 제6.2조의 협력적 접근법을 활

161) (아시아) 네팔,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인니, 인도, 태국, 라오스, 우즈베키스탄, 조지아, 키르기스스탄, 파키스탄, 필리핀
(중남미) 칠레, 콜롬비아, 브라질, 코스타리카, 페루
(중동/아프리카) 가나, 가봉, 사우디, 세네갈, 모로코, 우간다, UAE

용하고 측정·보고·검증(MRV) 역량을 배양하며, 기후기술을 개발·이전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와 베트남, 몽골, 가봉 및 우즈베키스탄 각 국가와의 국제감축사업 협의체 모두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임. 기본협정을 기반으로 실제 양국간 감축사업 승인 및 운영을 담당할 국제감축사업 협의체(공동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나, 상대국의 내부 법령 미비로 구체적인 협력이 지연되고 있음.

구체적으로 우리나라는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되면서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고, 배출권거래제도도 이미 시행 중이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보고·검증하는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지만, 베트남·몽골·가봉·우즈베키스탄 등 개발도상국의 경우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인프라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임[162].

다만 우리나라는 상대국가와 협정을 맺고 시범사업(Pilot Project)을 수행하는 방식을 모색 중인데, 국제감축사업 협의체에서 이를 위해 사업 추진절차, 검증기관 지정 위한 지침, 등록부 운영 지침, 사업계획서 수립지침 등의 사항에 대해 합의가 필요하지만 이러한 절차가 원만히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이로 인해 개별 부처별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에서 타당성조사 및 설치지원 사업 등을 하고자 기금을 계획 및 집행하고자 하였으나, 베트남, 몽골, 가봉 및 우즈베키스탄의 미온적인 협조로 국제감축실적 인정이 전혀 발생하고 있지 않고 집행률도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온실가스 국제감축과 관련한 3개의 세부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함에 따라, 2023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과정에서 온실가스 국제감축과 관련된 3개의 세부사업은 총 52억 3,800만원 감액조정이 되었음.

162) 세계 최초로 ITMOs(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 국제적으로 이전된 감축실적) 사례로 보고된 스위스-태국간 국제감축 사업의 경우, 태국 내 탄소시장 법령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사업을 운영중인 것으로 파악됨(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역]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구분	목	세목	세사업	금액	계획수정 사유
온실가스 국제감축 (기재부)	자체변경 ('23.11.24.)	320	08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350	기후대응기금 세수 결손*에 따른 기금 전반의 지출 구조조정 실시 * 탄소배출권 가격 하락으로 인한 정부의 탄소배출권 매각 수입 저조
온실가스 국제감축 (산업부)		320	08	국제감축 기반조성	△47	
		320	08	국제감축 시범사업	△1,091	
온실가스 국제감축 (환경부)		320	08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3,750	
합 계					△5,238	

자료 : 기획재정부 자료 바탕으로 재작성

상기한 바와 같이 COP28에서 제6.2조 세부기준 마련까지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기에 제6.2조의 협력적 접근법이 국제감축 실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보수적으로 면밀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상황임.

따라서 다른 국가들과 추진 중인 국제감축사업 협의체가 작동될 수 있도록 타깃 국가를 더욱더 다양화하고, 개별 국가별로 구체적 추진계획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셋째, 기획재정부는 부처마다 상이한 성과지표를 통일하고 실질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온실가스 국제감축의 경우 탄소중립기본계획('23.4.)에 따라 2030년까지 국제감축 3,750만톤을 달성해야 한다는 정량적인 목표가 명확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현재 4개 부처가 수행 중인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성과지표는 정량적인 목표를 포함하지 않고, 제각각 다양한 지표로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됨.

구체적으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기재부)」의 경우 성과지표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타당성조사 건수'를 설정하고 있고,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산업부)」의 경우 '온실가스 국제감축실적'을 성과지표로 사용하고 있으나 실제 감축실적이 아닌 배출권가격 대비 집행액을 산식으로 삼고 있으며,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환경부)」의 경우 국제감축사업 공모 선정 건수를 성과지표로 삼고 있음.

2024년 신규 세부사업인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국토부)」의 경우에도 타당성조사 지원 건수 및 국제감축 사업 지침서 마련을 성과지표로 삼고 있음.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 성과지표 현황]

세부사업명	성과지표	구분	'23	'24	'23/'24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온실가스 국제감축 (기재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타당성조사 건수 (단위 : 개)	목표	4	7	대규모 사업 지원 중심으로 목표치 설정(환경부 국제감축사업 단가(4억원) 참조)	연간 타당성조사 진행 완료 건수	전수조사
		실적	9				
		달성도	225%				
온실가스 국제감축 (산업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실적 (단위 : 톤)	목표	25,000	150,000	투자지원 본예산 60억원, 배출권가격 2.4만원*	실적치=투자지원예산/배출권고시가격(당해)/10년**	투자지원 사업선정 사업계획 기준
		실적	25,922	-			
		달성도	103.7	-			
온실가스 국제감축 (국토부)	타당성조사 지원 (단위: 건)	목표	-	3	매몰비용으로 여겨지는 F/S비용을 지원하여 타당성 높은 시범사업 발굴	타당성 조사 지원 건수	F/S 지원 계약서
		실적	-	-			
		달성도	-	-			
	국제감축 사업 지침서 마련 (단위: 건)	목표	-	1	국제감축사업 추진을 위한 지침서 마련	방침	방침
		실적	-	-			
		달성도	-	-			
온실가스 국제감축 (환경부)	국제감축사업 발굴 건수 (단위 : 건)	목표	4	6	사업초기 단계로 사업발굴 난이도를 고려하여 설정	국제감축사업 공모 선정 건수	관련 보고 문서
		실적	6	-			
		달성도	150	-			

* '22~'26년 국내 배출권 거래제 예상 평균가격 24,000원/tCO2eq

** 국제감축사업 인증유효기간 고정형 사업기간(10년)에 따라 투자지원액을 10년간 국제감축실적으로 분할상환

자료 : 기획재정부 자료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국제감축 부문은 「파리협정」 제6조 관련 세부 이행규칙 미합의, 국내감축의 보충적 수단 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 수립 시 연도별 감축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2030년 3,750만톤 감축'이라는 목표만 반영되어있는 상황으로, 향후 「2035 NDC」 수립 과정에서 관련 국제기준 확정, 최초 국제감축실적 활용시기('26년 예상)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중심으로 연도별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할 예정이라는 입장임.

그러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궁극적인 사업목적을 고려할 때 최종적으로 온실가스 국제감축 실적을 인정받기 위한 범부처 차원의 구체적인 사업목표 및 성과지표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만약 현재 국제감축 실적 인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2030년 3,750만톤 감축’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위해 개별 부처마다 상이한 성과지표를 선정하고 있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주체인 기획재정부는 개별 부처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제감축사업 성과지표를 실질적으로 설정하고 통일시킬 필요가 있음.

(3) 지자체 보조 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 필요 (탄소중립도시숲 조성, 산림청)

< 현 황 >

「탄소중립도시숲 조성사업」은 도시화에 따라 도시인구는 증가하나 생활권 주변 녹색 공간은 부족한 상황에서 미세먼지 저감·도시열섬현상 완화 및 탄소흡수원 조성 등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위한 도시숲 확대로 국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임. 국유지에 도시숲을 조성하거나, 지자체 보조를 통해 생활밀착형숲·기후대응도시숲·자녀안심근린숲등을 조성하고, 공익림 숲 가꾸기 또는 탄소저감 조림을 하고, 기타 기후대응 도시숲등 조성사업 모니터링등을 실시하고 있음

동 사업의 2023년 예산액은 당초 2,066억 4,400만원이나, 1,884억 3,900만원으로 계획을 변경하였고, 이중 98.7%인 1,859억 6,100만원을 집행하고 24억 7,8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3회계연도 탄소중립도시숲 조성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2023							2024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탄소중립도시숲 조성 사업(6133-302)	206,644	188,439	-	188,439	185,961 (164,946)	-	2,478	140,737
- 기후대응도시숲조성	87,235	79,112	-	79,112	79,112	-	-	87,000
- 국유지도시숲조성관리	7,620	7,620	-	7,620	7,221	-	399	6,370
- 생활밀착형숲조성	41,500	37,500	-	37,500	37,500	-	-	8,000
- 기후대응 도시숲 등 조성사업모니터링	1,365	1,365	-	1,365	1,352	-	13	695
- 산림자원통계분석시스템구축	443	443	-	443	436	-	7	443
- 탄소중립도시숲운영	433	433	-	433	362	-	71	433
- 시민정원사양성	126	126	-	126	126	-	-	126
- 탄소저감조림	12,842	11,842	-	11,842	11,111	-	731	-
- 공익림가꾸기	44,525	40,025	-	40,025	38,843	-	1,182	35,125
- 자녀안심그린숲조성	8,000	7,418	-	7,418	7,418	-	-	-
- 도시숲등실태조상통계관리	450	450	-	450	432	-	18	450
- 도시숲등관리지표측정평가	1,805	1,805	-	1,805	1,784	-	21	1,805
- 모범도시숲인증 및 도시녹화운동	300	300	-	300	264	-	36	290

< 검토의견 >

내역사업인 「생활밀착형숲 조성사업」,「기후대응도시숲 조성사업」중 몇몇 지자체 내역사업의 실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 국고보조사업의 내실화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음.

2023년 「탄소중립도시숲조성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98.7%이나, 자치단체 보조사업의 실제 집행현황을 감안할 경우 동 사업의 예산 실집행률은 87.5%임. 다음 표에서 보듯이 지방자치단체보조로 추진되는 내역사업의 실집행률이 대체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보이나 부산, 광주, 대전 등에서의 몇몇 사업은 실집행률이 50%를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2023회계연도 「탄소중립도시숲 조성」내역 사업별, 지역별 집행률 현황]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명	지역	교부액(수정)(A)	실집행액		실집행률(B/A)
			국비(B)	지방비	
기후대응도시숲	서울	3,471	2,795	2,795	80.5%
	부산	3,421	1,925	1,925	56.3%
	대구	1,968	1,913	1,913	97.2%
	인천	4,320	4,247	4,247	98.3%
	광주	1,117	1,086	1,086	97.2%
	대전	1,307	536	536	41.0%
	울산	5,094	4,982	4,982	97.8%
	세종	446	431	431	96.6%
	경기	3,740	2,912	2,912	77.9%
	강원	2,576	1,339	1,339	52.0%
	충북	6,265	4,498	4,498	71.8%
	충남	8,498	7,993	7,993	94.1%
	전북	6,570	6,026	6,026	91.7%
	전남	14,281	11,112	11,112	77.8%
	경북	7,125	6,472	6,472	90.8%
	경남	5,633	5,111	5,111	90.7%
	제주	3,280	3,185	3,185	97.1%
공익림가꾸기	서울	773	742	742	96.0%
	부산	2,441	2,364	2,364	96.8%
	대구	1,627	1,541	1,541	94.7%
	인천	673	605	605	89.9%
	광주	95	79	79	83.2%
	대전	312	285	285	91.3%
	울산	1,641	1,595	1,595	97.2%
	세종	136	129	129	94.9%
	경기	1,106	1,020	1,020	92.2%

내역사업명	지역	교부액(수정)(A)	실집행액		실집행률(B/A)
			국비(B)	지방비	
	강원	1,935	1,909	1,909	98.7%
	충북	1,767	1,737	1,737	98.3%
	충남	2,159	1,807	1,807	83.7%
	전북	808	733	733	90.7%
	전남	3,241	3,039	3,039	93.8%
	경북	7,051	6,211	6,212	88.1%
	경남	7,322	6,838	6,838	93.4%
	제주	2,169	2,161	2,161	99.6%
생활밀착형 숲조성	서울	240	229	229	95.4%
	부산	485	238	238	49.1%
	대구	456	288	288	63.2%
	인천	228	220	220	96.5%
	광주	228	16	16	7.0%
	대전	485	195	195	40.2%
	강원	3,150	2,201	2,201	69.9%
	충북	2,178	1,418	1,418	65.1%
	충남	1,500	1,201	1,201	80.1%
	전북	2,050	1,169	1,169	57.0%
	전남	4,840	3,968	3,968	82.0%
	경북	1,452	1,385	1,385	95.4%
	경남	1,139	700	700	61.5%
	제주	969	948	948	97.8%
자녀안심그린숲조성	서울	466	462	462	99.1%
	부산	446	446	446	100.0%
	대구	180	179	179	99.4%
	인천	290	289	289	99.7%
	광주	516	511	511	99.0%
	대전	659	654	654	99.2%
	울산	275	273	273	99.3%
	세종	180	169	169	93.9%
	경기	1,289	1,267	1,275	98.3%
	강원	243	241	241	99.2%
	충북	267	265	265	99.3%
	충남	182	171	171	94.0%
	전북	275	267	267	97.1%
	전남	597	596	596	99.8%
	경북	676	670	670	99.1%
	경남	877	876	876	99.9%
탄소저감조림	서울	638	600	600	94.0%
	부산	121	121	121	100.0%
	대구	88	85	85	96.6%
	인천	55	49	49	89.1%
	광주	44	42	42	95.5%
	대전	385	355	355	92.2%
	울산	66	65	65	98.5%
	경기	484	459	447	94.8%
	강원	1,022	1,013	1,013	99.1%

내역사업명	지역	교부액(수정)(A)	실집행액		실집행률(B/A)
			국비(B)	지방비	
	충북	220	220	220	100.0%
	충남	1,165	1,058	1,058	90.8%
	전북	1,649	1,582	1,582	95.9%
	전남	1,473	1,361	1,361	92.4%
	경북	1,924	1,866	1,863	97.0%
	경남	1,231	1,198	1,198	97.3%
	제주	77	77	77	100.0%
도시숲관리 지표측정평가	대전	417	365	365	87.5%
	세종	116	100	100	86.2%
	충북	523	465	465	88.9%
	충남	704	622	622	88.4%

자료: 산림청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정부는 2023년 기후대응기금의 배출권 매각수입이 당초 계획보다 부진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사업 시급성 및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감액하는 것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바 있고 동 사업도 이에 해당하여 당초 계획의 8.8%에 해당하는 182억 50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였음. 사업비 감액조정이 없고, 실집행액 규모가 현재와 동일하였다면 동 사업의 예산집행률은 90.0%, 실집행율은 79.8%에 해당하였을 것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르면, 보조금을 교부함에 있어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연내 집행가능성, 이월금 보유현황등을 검토하여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 취소등이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함.[163] 산림청은 각 내역사업별로 보조금을 3~4회로 나누어 교부하는등의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보조사업의 관리에 더욱 유의해야 할 것임.

한편 산림청과 국무조정실은 지난 2023년 9월~12월에 합동으로 「미세먼지차단숲 조성사업」 점검을 한 바 있음. 「미세먼지차단숲 조성사업」은 2023년에 동 사업의

163)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한다. 다만 해당 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3. 생략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및 실집행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내역사업 중 하나인 「기후대응도시숲 조성사업」으로 전환된 것으로, 산업단지, 화력발전소, 소규모 공장지대 및 주요 도로 · 철도 등 미세먼지 발생원 주변, 도심내 고온지역 내 유휴지, 광장 및 도로 등 포장지역, 도심 생활권 주변 숲 조성이 가능한 대규모 유휴지를 대상지로 하고, 미세먼지 저감숲, 도시열섬 완화숲, 도시 탄소저장숲등을 조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지자체 보조방식(보조율 50%)으로 추진되는 사업임.

[2023회계연도 「기후대응도시숲 조성사업」 개요]

○ 목적 : 도시열섬 및 폭염 완화, 탄소 흡수, 미세먼지 저감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도심내 생활권 및 도시 주변지역에 대규모 숲 조성 ○ 사업유형 : 미세먼지 저감숲, 도시열섬 완화숲, 도시 탄소저장숲 - 미세먼지 저감숲 : 미세먼지 발생원 주변 및 생활권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숲 조성 - 도시열섬 완화숲 : 도심내 고온지역 및 포장공간(도로, 광장 등)을 활용한 숲 조성 - 도시 탄소저장숲 : 도심내 대규모 유휴지 숲 조성을 통한 탄소흡수원 확충 ○ 사업규모 - 2022년 192.8ha, 2023년 183ha - 조성단가 : 1ha당 10억원(국비 5억원) ○ 대상지 : 산업단지, 화력발전소, 소규모 공장지대 및 주요 도로·철도 등 미세먼지 발생원 주변, 도심내 고온지역내 유휴지, 광장 및 도로 등 포장지역, 도심 생활권 주변 숲 조성이 가능한 대규모 유휴지 ○ 사업주체·지원조건: 지자체, 국비 50% 보조 ○ 23년 당초 예산 내역 - 174.47ha×1,000백만원×50% = 87,235백만원

지난 4년간(19~22년) 사업이 추진된 전국 135개 지방자치단체 362개소에 대해 전수조사한 결과, 대상지 선정,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이자 정산 분야 등 총 1,170건, 465억원의 부적정 집행내역을 적발하였음. 지자체가 산림청의 변경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지를 추가하거나, 수목 식재 외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한 것임.[164]

「미세먼지 차단숲(현 기후대응도시숲) 조성사업」은 그동안 주거지역의 미세먼지 저감에 있어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 되고 있는 바, 동 사업이 목적에 부합하게 집행되고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산림청은 동 사업의 업무기준을 개선하는 등 사업의 내실화에도 유의하여야 할 것임.

※ 인천 석남산업단지와 주거지역 사이에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한 이후, 총 121일 중 84일(69.4%) 동안 주거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산업단지 대비 39.8% 낮게 나타남(2023.12. 산림과학원)[165]

164) 미세먼지 차단숲 보조금 사업 점검결과보고, 국무조정실 · 산림청 합동
165) 산림청 보도자료, “차단숲 조성하니 주거지 미세먼지 농도가 산업단지보다 현저히 낮아!”, 2023.12.28

(4)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사업 추가지연 방지를 위하여 사업관리 철저 필요(그린창업생태계기반구축 사업, 중소벤처기업부)

< 현 황 >

「그린창업생태계기반구축 사업」은 창업·벤처기업 지원 인프라 및 친환경 인프라와 교통·문화·주거·복지시설 등 정주 여건이 결합된 그린스타트업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임. 2023년 계획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84억 8,300만원을 포함하여 294억 4,600만원으로, 이 중 100억 1,300만원을 집행하였고, 40억원을 이월하였으며, 154억 3,300만원을 불용하였음.

「그린창업생태계기반구축 사업」의 단일 내역사업인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의 2023년 민간자본보조 계획현액은 288억 9,600만원으로, 94억 8,600만원을 집행하였고, 40억원을 이월하였으며, 154억 1,0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3회계연도 그린창업생태계기반구축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 세목명)	2023							2024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그린창업생태계기반구축 사업(6231-600)	30,003	20,963	8,483	29,446	10,013	4,000	15,433	13,505
·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30,003	20,963	8,483	29,446	10,013	4,000	15,433	13,505
- 민간경상보조(320-01)	1,000	550	-	550	527	-	23	505
- 민간자본보조(320-07)	**29,003**	**20,413**	**8,483**	**28,896**	**9,486**	**4,000**	**15,410**	**13,000**

< 검토의견 >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사업은 부지 미확보, 행정절차 지연 등 사업관리 미흡으로 사업 일정이 지연되어 보조금 집행실적이 부진하므로 향후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 추가적인 사업 일정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그린창업생태계기반구축 사업」의 단일 내역사업인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사업」은 그린스타트업타운 내 앵커시설인 복합허브센터 건축을 위하여 창업진흥원을 보조사업자로 하여 지정 또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조성지에 설계비 및 건축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차년도 설계비 5억원 및 2차년도 조성비 140억원 총 145억원을 지원함.[166)167)]

조성지는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민간협력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사업계획 평가를 거쳐 조성지가 확정되면 창업진흥원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을 체결하며, 이후 설계용역을 거쳐 건축공사가 진행됨.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사업은 현재 충남 천안, 광주, 대구, 강원 원주, 부산, 경남 진주 6개 지역에서 진행 중인데, 충남 천안은 국비 집행이 완료되었음.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선정연도	선정방식	조성지	민간협력기관	2023년 계획현액		사업진행현황 (2024. 8. 기준)
				용도	금액	
2020	공모	충남(천안)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	-	부분 개소
2021	공모	광주광역시	광주테크노파크	건축비 (이월)	8,483	조성 중
2022	지정	대구광역시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건축비	9,500	설계용역 완료
	지정	강원(원주)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	건축비	9,910	설계용역 중
2023	지정	부산광역시	부산테크노파크	설계비	500	설계용역 중
	공모	경남(진주)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	설계비	503	설계용역 중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166) 조성지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국비로 지원되는 조성비에 대응하여 지방비 140억원 이상을 매칭하여야 함.

167) 동 사업은 2022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단계적 폐지)에 따라 2024년 예산에는 신규 조성지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으며, 2026년까지 기존 선정된 조성지에 대한 조성비를 지원할 예정임.

동 사업의 보조금 집행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보조사업자인 창업진흥원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창업진흥원이 교부받은 보조금을 간접보조사업자(사업시행자)인 각 지자체의 민간협력기관에 재교부하여 최종 집행하는 방식인데, 중소벤처기업부의 집행률과 간접보조사업자인 민간협력기관의 최종 집행률이 2023년 계획현액 대비 각각 32.8%와 3.9%로 저조한 상황임.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사업 민간자본보조(320-07) 집행실적]

(2023. 12. 31. 기준, 단위: 백만원)

구분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계획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교부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28,896	9,486	4,000	15,410	32.8%	9,486	8,983	503	-
광주광역시	8,483	8,483	-	-	100%	8,483	8,483	-	-
대구광역시	9,500	-	2,000	7,500	0%	-	-	-	-
강원도 원주	9,910	-	2,000	7,910	0%	-	-	-	-
부산광역시	500	500	-	-	100%	500	400	100	-
경남 진주	503	503	-	-	100%	503	100	403	-

* 창업진흥원 예산액 및 집행액은 해당 기관의 전년도 이월액을 제외한 금액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사업 민간자본보조(320-07) 간접보조사업자 집행실적]

(2023. 12. 31. 기준. 단위: 백만원)

구분	중기부	창업진흥원		사업시행자(민간협력기관)				
	계획현액 (A)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계획현액 대비 집행률 (B/A)
계	28,896	9,486	8,983	8,983	1,131	7,852	-	3.9%
광주광역시	8,483	8,483	8,483	8,483	1,131	7,352	-	13.3%
대구광역시	9,500	-	-	-	-	-	-	0%
강원도 원주	9,910	-	-	-	-	-	-	0%
부산광역시	500	500	400	400	-	400	-	0%
경남 진주	503	503	100	100	-	100	-	0%

* 창업진흥원 및 민간협력기관의 예산액 및 집행액은 해당 기관의 전년도 이월액을 제외한 금액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동 사업은 조성지로 선정된 당해연도에는 설계비를 지원하고, 다음연도에는 조성비(건축비)를 지원하는 2개년도 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2020년 사업이 시작된 이후 선정된 모든 지역에서 사업이 지연되어 보조금 집행부진 및 이월이 연례적으로 발생하였음.

2021년 선정된 광주광역시는 2021년 12월 설계용역을 시작하였으나, 사업부지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철도 노선과 중복되어 국토교통부, 코레일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에 시간이 소요되면서 설계용역 기간이 연장되었고, 당초 계획[168]보다 1년 이상 늦어진 2023년 12월에야 착공되었으나, 조성지 인접 위치에 지하철 공사현장이 있어 지장물 이전 등으로 공사가 중지되어 일정이 지연된 바 있음.

2022년 선정된 대구광역시는 당초 계획한 부지 미확보로 인한 사업부지 변경으로, 강원도 원주시는 사업계획 미비로 사업계획 평가 통과가 지연되어 후속 절차인 협약체결 및 설계용역 공모가 지연되면서 두 지역 모두 설계용역이 2023년에 완료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2023년 예정이었던 공사 착공이 지연되어 2023년 편성된 2차년도 조성비가 전액 집행되지 못하였음.

또한, 2023년 선정된 부산광역시와 경남 진주시는 각각 사업부지 변경으로 인한 사업계획 평가 지연 및 공공건축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로 사업일정이 지연되면서 2023년 예정이었던 설계용역 공모가 2024년으로 지연되었음.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사업 지연현황]

선정 연도	조성지	준공·개소		사업진행단계 (2024. 8. 기준)	사업 지연 사유
		당초	변경		
2021	광주	‘23년	‘25년	조성 중	· 부지확보 관련 협의 지연
2022	대구	‘24년	‘26년	설계용역 완료	· 당초 계획 부지 미확보로 인한 부지변경
	강원 원주	‘24년	‘26년	설계용역 중	· 사업계획 보완, 건축설계·인허가 지연
2023	부산	‘25년	‘26년	설계용역 중	· 당초 계획 부지 미확보로 인한 부지변경
	경남 진주	‘25년	‘26년	설계용역 중	· 부지확보 관련 협의 지연, 공공건축 심의 등 행정절차 기간 소요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168) 당초 사업계획에 따르면 2022년 9월 착공하여 2023년 12월 준공예정이었으나, 착공이 2023년 12월로 지연되어 2025년 9월 준공예정으로 계획변경되었음.

이와 같이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사업은 사업추진 중인 모든 조성지가 사업부지 확보 등 사업 사전준비 부족으로 사업 일정이 순차적으로 지연되면서 사업완료 예정 시기가 당초 계획보다 1 ~ 2년 이상 늦춰지는 등 사업관리가 미흡한 측면이 있음.

향후 중소벤처기업부는 추가적인 사업 일정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사업자인 창업진흥원과 각 조성지 사업시행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 변경 계획된 기간 내에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5)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보조금의 단계적 교부 등 사업관리 철저 필요 (습지보전관리, 환경부)

< 현 황 >

「습지보전관리」는 습지의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 증진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자체에서 주기적인 습지조사, 훼손지 복원, 사유지 매입, 보전·이용시설 설치 등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습지를 보전·관리하는 사업임. 2023년 계획현액은 280억 8,100만원으로, 254억 2,400만원을 집행하였고, 3억 2,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3억 3,400만원을 불용하였음.

「습지보전관리」 사업은 「습지보호지역 조사 및 모니터링」, 「습지보호지역 지정 및 관리」, 「습지보호지역 사유지 매입」, 「습지보호지역 훼손지 복원 및 보전이용시설 설치」, 「대중인식증진 및 대외협력」 등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습지보전관리」의 내역사업인 「습지보호지역 훼손지 복원 및 보전이용시설 설치」 사업은 계획현액 91억 2,800만원 중 90억 7,000만원을 집행하였고, 5,8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3회계연도 습지보전관리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2023							2024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습지보전관리 (6133-403)	31,624	25,624	2,457	28,081	25,424	323	2,334	35,393
- 습지보호지역 조사 및 모니터링	550	550	11	561	395	-	166	598
- 습지보호지역 지정 및 관리	2,168	2,168	102	2,254	1,579	323	352	1,773
- 습지보호지역 사유지 매입	19,383	13,383	2,164	15,547	13,816	-	1,731	23,800
- 습지보호지역 훼손지 복원 및 보전이용시설 설치	**8,947**	**8,947**	**181**	**9,128**	**9,070**	-	**58**	**8,740**
- 대중인식증진 및 대외협력	576	576	-	591	564	-	27	482

< 검토의견 >

습지보호지역 훼손지 복원 및 보전이용시설 설치 사업은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보조금의 단계적 교부 및 실집행률 제고 방안 마련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내역사업 「습지보호지역 훼손지 복원 및 보전이용시설 설치」 사업은 습지보호지역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지장물(주택, 축사 등) 철거, 비점오염저감시설[169] 조성, 수목 식재 및 습지 보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설(습지 보호·연구시설 및 교육·홍보 시설 등) 설치를 통한 습지의 현명한 이용을 도모하는 사업임.

동 내역사업을 통하여 습지보호지역 내 수목식재 등 복원, 탐방로·안내판 설치 등 이용, 야생생물 서식지 개선사업 등을 수행하였음.

[습지보호지역 훼손지 복원 및 보전이용시설 설치 세부내용]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비목	예산	내용(예시)
습지보호지역 훼손지 복원 및 보전이용시설 설치	자치단체 자본보조 (330-03)	7,837	(복원) 보호지역 내 지장물(주택, 축사 등), 수목 식재, 조류 서식지 복원 등 (이용) 탐방로·안내판 설치, 탐조대 등교육·체험시설 설치, 습지센터 건립 등
지방환경관서 직접 사업	공사비 (420-03)	1,110	- 야생생물 서식처 개선사업(토양환경 정비, 은신처·먹이 제공) - 습지 육역화 방지를 위한 유지용수 확보시설 설치 - 보호지역 경계목 교체 - 노후 탐방로 정비공사
계		8,947	

자료: 환경부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169) 「물환경보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이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13. "비점오염저감시설"이란 수질오염방지시설 중 비점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동 내역사업의 실집행액은 22억 8백만원, 실집행률은 24.7%로, 실집행률이 낮은 주된 사유는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의 실집행률이 14.8%로 부진했기 때문임.

[습지보호지역 훼손지 복원 및 보전이용시설 설치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계획액	계획현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습지보호지역 훼손지 복원 및 보전이용시설 설치	8,947	8,947	2,208	24.7
- 자치단체 자본보조(330-03)	7,837	7,837	1,156	14.8
- 공사비(420-03)	1,110	1,110	1,052	94.8

* 전년도 이월액 제외
자료: 환경부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지방자치단체별 실집행률(전년도 이월액 제외)을 보면, 실집행률이 0%~58.6%인 지자체는 총 9개로, 사유는 토지매입 지연, 기본 및 실시설계 절차 지연 등 행정절차 지연이 대부분임.

[지방자치단체별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지역	계획현액	실집행액	이월액	실집행률	부진사유	비고
광주광역시	700	70	630	10.0	도시계획 변경, 건축심의 등 사전행정절차 추진 지연	2024. 1월 도시계획 변경
강원 철원	140	51	89	36.6	군사보호지역 협의로 인한 공사 착공 지연	2024 1월 군사보호지역 협의
강원 인제	210	35	175	16.8	기본 및 실시설계 공모 지연	2023. 11월 기본 및 실시설계 공모
충북 충주	245	225	-	91.8		
전남 순천	1,810	-	1,810	38.80	습지보호지역 농경지 협의 매수 부진	
전남 신안	672	194	478	28.9	국립공원사업 시행 등으로 인한 지연	2023.11월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완료
경북 문경	140	77	63	55.0	실시설계 지연	2023.10.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 시행
경남 김해	2,800	-	2,800	0	하천기본계획(변경) 용역 지연	하천기본계획 미준공
경남 창녕	700	258	442	36.9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기한 미도래(2023.4월~2024.10월)	
경남 고성	420	246	173	58.6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지연	2023. 11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업체 선정
계	7,837	1,156	6,660			

* 전년도 이월액 제외
자료: 환경부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환경부는 동 내역사업 보조금을 나누어서 교부하지 않고 상반기에 1회에 모두 교부 완료하였음(2월: 6개 지자체, 3월: 3개 지자체, 4월: 1개 지자체).

[보조금 교부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지자체	교부일	금액
1	광주광역시	2023.3.6	700
2	강원 철원	2023.2.27	140
3	강원 인제	2023.2.27	210
4	충북 충주	2023.2.27	245
5	전남 순천	2023.3.6	1,810
6	전남 신안	2023.3.6	672
7	경북 문경	2023.4.17	140
8	경남 김해	2023.2.14	2,800
9	경남 창녕	2023.2.14	700
10	경남 고성	2023.2.14	420
합계			7,837

자료: 환경부 제출 자료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 및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170]

보조금을 분할하지 않고 한 번에 교부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 이후의 상황 변화로 인한 변동사항을 보조금 교부계획에 반영하지 못하여 예산의 비효율적 운영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의 집행 가능성, 사업기간 등에 대한 점검 후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교부할 필요가 있음.

170)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한다.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2023.1, p.117)
각 중앙관서의 장은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보조금을 교부하고 총사업비, 사업기간, 지방비 부담조건 등 자치단체의 신청내용이 예산으로 편성된 내용과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확인한 후 교부함으로써 보조금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환경부는 보조금 조기 집행을 위해 1회에 전액 교부하였으나 실집행 실적이 저조하여 집행실적 관리를 위한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에 따르면, 보조금의 교부여부 결정시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연내 집행가능성, 이월금 보유현황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함.[171]

환경부는 보조금 교부 과정에서 사업의 집행 가능성, 사전 행정절차 진행 정도 등을 충실히 확인하여 보조금 예산을 단계적으로 교부하고 실집행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업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171)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및 실집행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6)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 사업의 실집행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 환경부)

< 현 황 >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 사업은 중앙부처·지자체·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이행을 지원하고, 기후변화 취약계층 및 지역 맞춤형 적응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18년 대비 2030년까지 40%감축) 달성을 위한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활동 추진 및 교육시설 설립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2023년 계획현액은 441억 4,000만원으로, 434억 5,300만원을 집행하였고, 5억 3,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4,800만원을 불용하였음.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의 내역사업인 「기후변화 취약계층·지역 지원」 사업은 기후위기로부터 취약계층·지역의 피해 최소화와 기후탄력성 향상을 위한 맞춤형 적응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임. 2023년 계획현액은 98억 3,800만원으로, 98억 3,700만원을 집행하였고, 1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3회계연도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2023							2024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 (6331-301)	45,547	43,960	180	44,140	43,453	538	148	32,032
- 기후위기 적응대책 추진	8,810	8,507	180	8,687	8,111	538	37	6,026
-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역 지원사업	**10,000**	**9,838**	**-**	**9,838**	**9,837**	**-**	**1**	**10,000**
- 지자체 탄소중립 지원 사업	12,981	12,961	-	12,961	12,881	-	80	7,431
-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4,355	4,230	-	4,230	4,230	-	-	-
- 온실가스 줄이기 및 탄소중립 홍보 캠페인	3,000	3,020	-	3,020	2,998	-	22	2,868
-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지원	1,700	1,700	-	1,700	1,700	-	-	700
- 탄소중립 체험관 건립	4,500	3,500	-	3,500	3,500	-	-	4,800
- 기타 경비	201	204	-	204	196	-	8	207

< 검토의견 >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 사업의 실집행률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내역사업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 사업」은 노인, 어린이 등 기후변화 취약계층[172]의 현황 및 공간특성을 고려하여 대상별 거주환경·이용시설·이동행태 등 여건을 개선하고 취약계층 밀집지에 맞춤형 적응인프라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임.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 사업 개요]

구분	내 용
사업목적	-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취약계층 대상 피해 경감 및 적응능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
사업기간	- 2021년 ~ 계속
지원형태 및 예산	- 지자체 보조(국비 50%, 지방비 50%) : 95억원 - 직접사업(컨설팅 및 효과분석) : 5억원
사업시행주체 (실 집행주체)	- 환경부, 한국환경연구원, 지자체
지원근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42조(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

자료: 환경부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세부적으로 취약가구·시설 차열 도장사업, 야외근로자 쉼터 조성사업, 녹색 공간 조성사업 등 7개의 사업 유형으로 추진되었음.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 사업의 세부 사업유형]

사업유형	내 용
취약가구·시설 차열 도장사업	- 건물 지붕, 벽면 등 차열 조성
야외근로자 쉼터 조성사업	- 폭염·한파대응 근로유형별 쉼터 마련 · 고정형 쉼터 : 공공부지·사유지 적용 · 이동식 쉼터 : 트레일러 제작·운영
소규모 물길쉼터 조성사업	- 취약계층 밀집지역 내 공원, 광장 등에 물순환 수변공간 조성
폭염대응 쉼터 조성사업	- 소규모 물길쉼터, 식재, 쿨링포그 등 폭염쉼터
녹색공간 조성 사업	- 건물 녹화, 소규모 마을정원 등
물순환 회복사업	- 빗물저류·침투시설
소규모 사업장 녹색인프라 조성사업	- 기후위험과 환경문제의 취약지 개선을 위한 종합사업 · 환경오염·침수대응, 취약주거개선, 취약공장개선, 폭염공동대응

자료: 환경부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172) (건강) 고령자, 아동, 장애인 등, (사회·경제) 저소득층, 조손가구 등, (직업) 야외근로자, 농어업 종사자 등

내역사업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 사업」의 실집행률을 보면, 2022년도 사업은 예산 47억 5천만원, 실집행률 82.2%, 이월액 3억 4,000만원인 반면, 2023년도 사업의 예산은 전년도의 2배인 95억원, 실집행률 69.7%, 이월액 20억 2백만원으로 나타났음.

2023년도 실집행률이 낮은 사유에 대해 환경부는 실시설계 지연, 민원 발생으로 인한 행정절차 지연, 타 사업과 공사구간 중복 등으로 설명하고 있음.

[2022년 및 2023년 예산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실집행액	이월액	실집행률
2022년	4,750	3,905	340	82.2
2023년	9,500	6,620	2,002	69.7

자료:환경부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환경부는 실집행 부진과 관련하여, 2024년은 대상사업 선정 시 실집행 가능여부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분기별 집행실적 점검 등 집행부진 사업을 집중 관리하겠다는 입장임.

동 내역사업은 폭염, 한파 등에 취약한 계층들의 피해 예방과 취약성 완화를 통하여 지역사회 기후안전망을 강화하려는 사업임을 고려할 때 연도 내 사업 완료가 중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환경부는 사전 사업설계 착수방안 검토, 보조금 교부 전 집행현황 점검 등 실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7) 탄소중립 체험관 개선 사업 보조금의 단계적 교부 및 보조금 관리 개선 필요(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 환경부)

< 현 황 >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 사업은 중앙부처·지자체·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이행을 지원하고, 기후변화 취약계층 및 지역 맞춤형 적응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18년 대비 2030년까지 40%감축) 달성을 위한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활동 추진 및 교육시설 설립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2023년 계획현액은 441억 4,000만원으로, 434억 5,300만원을 집행하였고, 5억 3,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4,800만원을 불용하였음.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의 내역사업인 「탄소중립 체험관 건립」 사업은 2050 탄소중립 필요성을 전시·교육·체험할 수 있는 교육시설 설립을 지원하는 사업임. 2023년 계획현액은 35억원으로, 35억원을 집행(교부)하였음.

[2023회계연도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2023							2024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 (6331-301)	45,547	43,960	180	44,140	43,453	538	148	32,032
- 기후위기 적응대책 추진	8,810	8,507	180	8,687	8,111	538	37	6,026
-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역 지원사업	10,000	9,838	-	9,838	9,837	-	1	10,000
- 지자체 탄소중립 지원 사업	12,981	12,961	-	12,961	12,881	-	80	7,431
-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4,355	4,230	-	4,230	4,230	-	-	-
- 온실가스 줄이기 및 탄소중립 홍보 캠페인	3,000	3,020	-	3,020	2,998	-	22	2,868
-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지원	1,700	1,700	-	1,700	1,700	-	-	700
- 탄소중립 체험관 건립	**4,500**	**3,500**	**-**	**3,500**	**3,500**	**-**	**-**	**4,800**
- 기타 경비	201	204	-	204	196	-	8	207

< 검토의견 >

탄소중립 체험관 건립 사업의 보조금 교부시 관련 지침을 준수하고, 교부 전 긴밀한 사전 업무협의 등 보조금 관리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내역사업 「탄소중립 체험관 건립」 사업은 탄소중립 인식 제고 및 공감 확산을 위해 '2050 탄소중립'의 필요성을 전시·교육·체험할 수 있는 탄소중립 에듀센터 건립, 탄소중립 체험관 개선 등 교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임.

[내역사업 탄소중립 체험관 건립 사업 개요]

구분	내 용
사업목적	- 탄소중립 인식 제고 및 공감 확산을 위해 '2050 탄소중립'의 필요성을 전시·교육·체험할 수 있는 교육시설 조성
사업기간	- 2022년 ~ 계속
지원형태 및 예산	- 탄소중립 체험관 개선(자치단체 자본보조-국비 50%, 지방비 50%) : 25억원 - 탄소중립 에듀센터 건립(사업출연금) : 10억원
사업시행주체 (실 집행주체)	- 환경부, 한국환경연구원, 지자체
지원근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녹색성장을 위한 생산·소비 문화의 확산) 및 제67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자료: 환경부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내역사업 「탄소중립 체험관 건립」의 내내역사업 「탄소중립 체험관 개선」 사업은 기존 기후변화체험관[173]의 전시 및 안전시설 등의 개선을 통하여 지역의 탄소중립 비전, 미래상 등 참여형 체험 홍보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임.

[내내역사업 탄소중립 체험관 개선 사업 개요]

□ 사업 핵심내용(지원내용)
○ 탄소중립 체험관 개선
- (총사업비) 25억 (지자체 보조, 국고 50%)
- (개선내용) 기존 기후변화체험관의 전시 및 안전시설 등을 개선하여 지역의 탄소중립 비전, 미래상 등 참여형 체험 홍보시설 개선
- (시행주체) 지자체(기후변화체험관 운영주체)

173) 전국에 12개 기후변화체험관(10개 시·도)을 구축(2010~2015년)하여 운영 중임.

내내역사업 「탄소중립 체험관 개선」 사업의 2023년도 총 사업비는 25억원으로, 9억 5,500만원이 집행되고 19억 7,500만원이 이월되었음.

2023년도에 「탄소중립 체험관 개선」 사업 대상자로 경상남도와 강원도가 선정되어 사업이 추진되었음.

[탄소중립 체험관 개선 사업 예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시행주체(기관명)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계획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집행액(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C/A)
	당초	수정(A)						예산현액	집행액(C)			
경남	1,250	1,250	1,250	1,250	-	1,250	955	1,250	955	725	-	42.0
강원	**1,250**	**1,250**	**1,250**	**1,250**	**-**	**1,250**	**-**	**1,250**	**-**	**1,250**	**-**	**0.0**
소계	2,500	2,500	2,500	2,500	-	2,500	955	2,500	955	1,975	-	21.0

그런데 강원도(원주시) 「탄소중립 체험관 개선」 사업은 실집행률이 0%로 전액 이월되었는데, 실집행률이 0%인 사유는 설계 과정에서 자문의견(안전문제로 사업구역 내에 있는 야외놀이터 철거) 반영으로 사업 계획이 변경되었고, 이후 야외놀이터 시설 철거 후 홍보관 운영 계획 변경, 기존 제안요청 내용 수정, 공고 사전절차 이행 등 관련 행정절차가 순연적으로 연기되었기 때문임.

보조금은 2023. 6. 8. 경상남도와 강원도에 각각 12억 5,000만원씩 한번에 전액 교부되었음.

[탄소중립 체험관 개선 사업 보조금 교부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시행주체	교부액	교부일
경남(김해)	1,250	2023.6.8
강원(원주)	1,250	

자료: 환경부 제출 자료

그러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174] 및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175]에서 보조금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환경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을 준수하여 보조금을 2회 이상 나누어 교부하여야 할 것임.

또한, 보조금 교부 전 지자체와의 긴밀한 사전 업무 협의를 통하여 보조금 관리를 충실히 할 필요가 있음.

보조금을 교부함에 있어서는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하고,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176]

야외놀이터 안점점검 결과[177] 통보일은 2023년 5월이고 보조금 교부는 2023년 6월에 이루어졌는데, 원주시는 야외놀이터 시설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았을 당시에는 야외놀이터 철거 후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연내 정상 추진할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것이고, 환경부는 지자체 사업추진 현황 및 지방비 확보 등을 확인하여 6월에 교부완료하였다는 입장임.

그러나 야외놀이터 철거로 인한 사업일정 지연은 예측이 가능하였을 것인바, 사전에 환경부와 원주시가 야외놀이터 안점점검 결과와 관련하여 긴밀한 업무협의가 있었다면 2023년 6월에 보조금의 전액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임.

환경부는 보조금 교부시 사업의 집행 가능성, 사전 행정절차 진행 정도 등을 충실히 점검한 후 보조금 예산을 교부하는 등 보조금 관리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174)「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이하 생략).

175) 각 중앙관서의 장은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보조금을 교부하고 총사업비, 사업기간, 지방비 부담조건 등 자치단체의 신청내용이 예산으로 편성된 내용과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확인한 후 교부함으로써 보조금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기획재정부,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023.1, p.117).

176)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한다. 다만 해당 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및 실집행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177) 점검결과 “미흡”으로 폐쇄 조치요청

(8) 사업재편계획 승인시 탄소중립 분야에 대한 비중 확대 필요 (사업재편지원기반구축, 산업통상자원부)

< 현 황 >

「사업재편지원기반구축 사업」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자율적·선제적 사업재편 추진을 위해 사업재편 수요발굴 및 파트너십 구축, 컨설팅, 업종별 분석 및 실태조사, 심의위원회 운영, 전담지원기관 운영 등 사업재편지원기반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사업임.

2023년 계획액은 당초 80억 500만원으로, 자체변경을 통해 77억 300만원으로 수정하였고,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계획현액 77억 900만원 중 76억 8,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3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3회계연도 사업재편지원기반구축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2023							2024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사업재편지원기반구축 (6332-403)	8,005	7,703	6	7,709	7,686	-	23	5,482

< 검토의견 >

사업재편계획 승인시 탄소중립 분야에 대한 승인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사업재편지원기반구축 사업」에서는 정상기업이 선제적·자발적으로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후적 구조조정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재편제도를 지원하고 있음.

[사업재편과 구조조정 비교]

구 분	사업재편	구조조정	
특 징	선제적·자율적 혁신 촉진 → 사회적·경제적 비용 낮음	사후적·타율적 구조조정 → 사회적·경제적 비용 높음	
법 률	기업활력법 (사업재편)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워크아웃)	채무자회생법 (법정관리·파산)
대 상	정상기업(개인사업자 제외)	부실 징후기업	부실기업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재편제도는「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이라 함)」[178]에 근거한 제도로서,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①과잉공급 업종 기업, ②신산업 진출 기업, ③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179]을 대상을 하여 기업이 제출한 사업재편계획 심의·승인 후 행정적·재정적 지원[180]을 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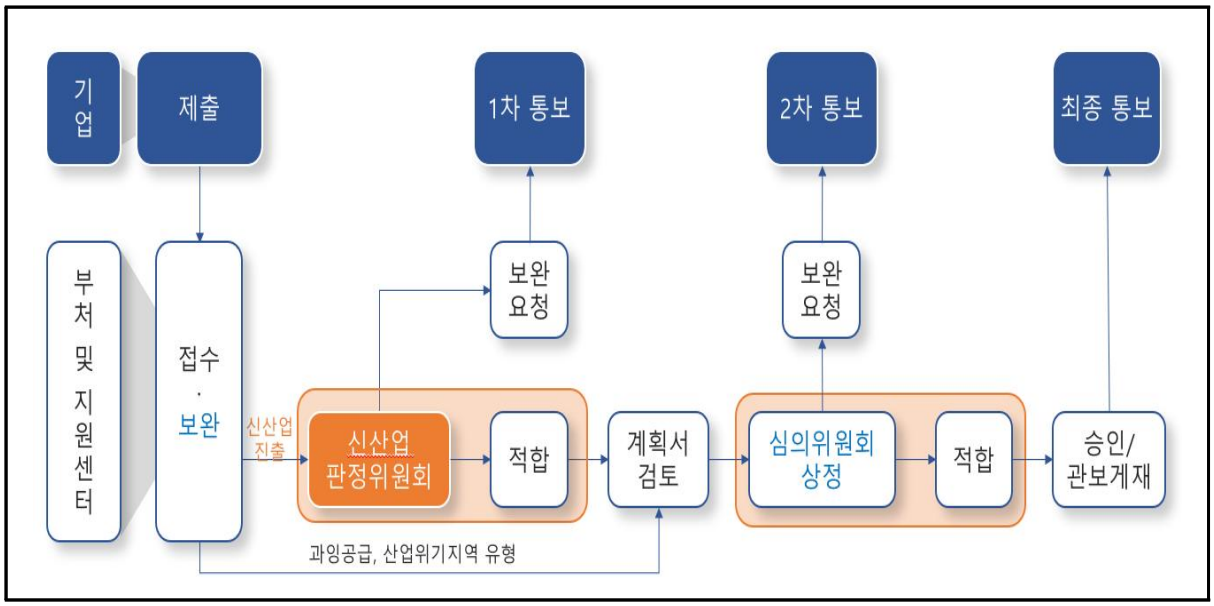
---

178)「**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업이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및 규제 등을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활력과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며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사업재편”이란 기업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생산성을 상당 정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가. 합병, 분할, 주식의 이전·취득·소유, 회사의 설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구조를 변경하는 것
나. 기업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분야나 방식을 변경하여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거나 신기술을 도입하는 등 사업의 혁신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
3. “사업재편계획”이란 기업이 사업재편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른 승인을 받을 목적으로 작성한 계획을 말한다.

179) 2024년에는 기업활력법 개정으로 적용범위 추가 확대 예정임.
('24.3월 시행) 디지털 전환·탄소중립 추가, ('24.7월 시행) 공급망 안정 추가

180) 제도·절차 간소화(상법·공정거래법 등), 자금·세제·R&D 등 우대 등

[사업재편계획 승인 절차]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재편 대상 중 하나인 '신산업 진출 기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업활력법에 따라 '신산업 진출'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지역혁신성장사업, 혁신금융서비스,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 신성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 국가전략기술 산업'에 해당되어야 함[181].

이 중 '신성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것으로 기후대응기금 목적에 맞는 '탄소중립 기술'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탄소중립 기술에는 '탄소포집·활용·저장, 수소, 신재생에너지, 산업공정, 에너지효율·수송에 관한 기술'이 인정되고 있음.

---

181)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신산업"이란 기존 산업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사회적·경제적 가치가 있어 시장성, 파급효과, 성장 잠재력과 국민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신산업의 범위)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12호가목에 따른 지역혁신성장사업을 통하여 육성하려는 산업
2.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3. 「산업융합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을 생산하거나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산업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4.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를 활용하는 산업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신성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활용하는 산업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의2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는 산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신성장·원천기술 중 '탄소중립 기술' 내용]

구분	분야	신성장・원천기술
13. 탄소중립	가. 탄소포집・활용・저장	연소 후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연소 전 이산화탄소 포집기술
		순산소 연소기술 및 저가 산소 대량 제조기술
		이산화탄소 지중 저장소 탐사기술
		이산화탄소 수송・저장 기술
		산업 부생가스(CO, CH4) 전환기술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나. 수소	부생수소 생산기술
		액화수소 제조를 위한 수소액화플랜트 핵심부품 설계 및 제조기술
		액화수소 운반선의 액화수소 저장・적하역 및 증발가스 처리기술
		암모니아 발전 기술
		산업용 수소 보일러 및 연소기 설계・제작 기술
	다. 신재생에너지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지지형셀・스택・시스템 설계 및 제조 기술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 Solid Oxide Fuel Cell) 소재 기술
		페로브스카이트(Perovskite), 페로브스카이트・결정질 실리콘 등 탠덤 태양전지 핵심소재 제조 및 대면적화 기술
		풍력에너지 생산 기술로서 회전동력을 증속시켜 발전기에 전달하는 부품 설계 및 제조기술
		풍력에너지 생산 기술로서 발전기(Generator) 및 변환기(Inverter) 제조기술
		풍력발전 블레이드 기술
		지열 에너지 회수 및 저장 기술
		지열발전기술
		바이오매스 유래 에너지 생산기술
		폐기물 액화・가스화 기술
		미활용 폐열 회수・활용을 통한 발전 기술
		해상풍력 발전단지 내・외부 전력망에 사용되는 해저케이블 시스템 기술
		고효율 n형 대면적 태양전지와 이를 집적한 모듈화 기술
	라. 산업공정	함수소가스 활용 고로취입기술
		복합취련전로 활용 스크랩 다량 사용기술
		이산화탄소 반응경화 시멘트 생산기술
		산화칼슘 함유 비탄산염 산업부산물의 시멘트 원료화 기술
		이산화탄소 저감 시멘트 생산을 위한 연・원료 대체기술
		시멘트 소성공정 유연탄 대체 기술
		석유계 플라스틱 대체 바이오 케미칼 원료 생산기술
		전기가열 나프타 분해기술
		반도체・디스플레이 식각・증착공정의 대체소재 제조 및 적용기술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불소화합물 및 아산화질소 배출 저감기술
		해상(FSRU) 및 육상 LNG터미널에서의 LNG 냉열발전 결합형 재기화 기술
		철강 가열공정 탄소연료 대체기술
		전기로 저탄소원료(직접환원철・수소환원철) 활용기술
	마. 에너지효율・수송	지능형 전력계통(Smart Grid) 설계 및 제조기술
		지능형 배전계통 고도화 및 운용기술
		지능형 건축물 에너지 통합 관리시스템 기술
		지능형 검침인프라(AMI,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설계・제조기술
		데이터센터 냉방・공조 및 에너지 효율화 기술
		극저온 액체 저장 및 이송용 펌프 설계・제조기술
		히트펌프 적용 온도 범위 확대 및 효율 향상 기술
		선박용 디젤엔진 제조 기술
		친환경 굴착기 설계・제조기술

구분	분야	신성장・원천기술
		암모니아 추진선박의 연료공급 및 후처리 기술
		극저온 액체 저장 및 이송용 극저온 냉동기술: 극저온 액체 저장 및 이송용 극저온 냉동기술
		연료전지, 배터리 및 축발전기 모터를 적용한 선박 발전시스템
		고효율 산업용 전동기 설계・제조 기술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 중 탄소중립기술 내용 발췌(세부설명은 제외한 것으로 별표에는 각 기술별 세부조건 및 설명이 명시되어 있음)

한편, 2023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업재편계획 승인 내역(총 93개)을 살펴보면, 93개 승인 사업 전부가 '신산업 진출'을 사유로 사업재편계획이 승인되었는데, 이 중 기후대응기금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탄소중립 기술'로 선정된 사업은 7개 사업(승인 비중 7.53%, 7개/93개)에 불과함.

[2023년 사업재편 승인 사업 중 승인사유가 '탄소중립 기술'인 사업 현황]

연번	사업재편계획 내용	승인사유
1	에너지 사용의 패러다임 변화로 저탄소에너지(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사업재편 추진	탄소중립 기술 (조특법 별표7)
2	연료전지 시장 확대 전망에 따라 건물용 고체산화물 연료전지시스템 분야 재편 추진	탄소중립 기술 (조특법 별표7)
3	요식업 분야 소형 전기집진기 시장 변화에 따라 폐식용유 포집장치로 사업재편 추진	탄소중립 기술 (조특법 별표7)
4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수소저장용기 분야 진출	탄소중립 기술 (조특법 별표7)
5	자동차산업 패러다임 변화로 전기 굴삭기용 부품 분야로 사업 다각화	탄소중립 기술 (조특법 별표7)
6	국내외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에너지 산업 분야로 사업재편 추진	탄소중립 기술 (조특법 별표7)
7	기존사업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제품서비스에 관련된 신사업 분야로 사업재편 추진	탄소중립 기술 (조특법 별표7)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승인사유가 '탄소중립 기술'은 아니지만, 일부 사업 내용이 탄소중립과 관련된 사업도 52개 사업에 달한다는 입장임.

[2023년 사업재편 승인 사업 중 일부 사업내용이 탄소중립과 관련된 사업 현황(산업통상자원부 의견)]

연번	사업재편계획 내용	탄소중립 관련 내용
1	전기차 보급확대에 따라 전기자동차용 인덕터 코어로 사업재편 추진	탄소중립 이행 기반 구축 (전기차 전용 부품)
2	글로벌 초격차 산업육성 기조에 따라 OLED 신규소재 개발로 사업재편 추진	탄소중립 이행 기반 구축 (탄소배출 저감 소재)
3	2차전지 시장 성장에 따라 원통형 배터리 소재(니켈도금강판) 분야로 사업재편 추진	탄소중립 이행 기반 구축 (전기차 배터리용 핵심소재)
4	탄소중립 트렌드에 따라 재생에너지 사업 분야로 사업재편 추진	탄소중립 이행 기반 구축 (재생에너지)
5	글로벌 배터리 시장 성장에 따라 이차전지 소재 분야로 사업재편 추진	탄소중립 이행 기반 구축 (전기차 배터리용 핵심소재)
6	기존 철강사업에서 경량금속 복합소재 제조기술로 사업 다각화 추진	탄소중립 이행 기반 구축 (방사성물질 흡수 소재개발)
7	탄소중립 및 ESG 트렌드를 고려, 생분해성 PLA 소재 적용 항바이러스 필터 사업 재편	탄소중립 이행 기반 구축 (폐기물 저감 소재)
8	미래차 시장 성장 전망에 대응하여 경량 전기차에 사용할 수 있는 유리 대체 경량 플라스틱 소재 개발 추진	탄소중립 이행 기반 구축 (전기차 전용 경량부품)
9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라 전기차용 경량 흡·차음재 시장 진출 추진	탄소중립 이행 기반 구축 (전기차 전용 경량부품)
10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친환경 미래차 부품 분야로 사업재편 추진	탄소중립 이행 기반 구축 (전기차 전용부품)
11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전기차 부품 분야로 사업재편 추진	탄소중립 이행 기반 구축 (전기차 전용부품)
12	자동차 산업 구조 변화에 따라 전기차 부품 분야로 사업재편 추진	탄소중립 이행 기반 구축 (전기차 전용부품)
13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미래차 부품 분야로 사업재편 추진	탄소중립 이행 기반 구축 (전기차 전용부품)
14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수소차 부품 분야로 사업재편 추진	탄소중립 이행 기반 구축 (수소차 전용부품)
15	건설기계장비 친환경화에 따라 저탄소 공정기술 적용 선박용 구조물 분야 재편 추진	탄소중립 이행 기반 구축 (탄소배출 저감)
16	전기자동차 산업 성장에 따라 2차전지 갭필러 분야로 사업재편 추진	탄소중립 이행 기반 구축 (전기차 배터리용 핵심소재)
17	친환경 차량 시장으로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전기자동차 부품 분야로 사업재편 추진	탄소중립 이행 기반 구축 (전기차 전용부품)
18	기존 LED 사업을 바탕으로 태양광 활용 스마트팜 분야로 사업재편 추진	탄소중립 이행 기반 구축 (신재생에너지 활용 스마트팜)
19	국내외 탄소중립 정책에 맞춰 탄소 저감 기능성 점착테이프로 사업재편 추진	탄소중립 이행 기반 구축 (탄소배출 저감)
20	이차전지 시장 확대에 따라 이차전지용 전극소재 분산 처리장비로 사업재편 추진	탄소중립 이행 기반 구축 (전기차 배터리용 핵심소재)
21	글로벌 전기차 시장 성장에 따라 이차전지 각형 배터리 셀 하우징으로 사업재편 추진	탄소중립 이행 기반 구축 (전기차 배터리용 핵심소재)
22	전기차 등 이차전지 급성장에 따라 하이니켈 양극재 사업 확대를 위한 재편 추진	탄소중립 이행 기반 구축 (전기차 배터리용 핵심소재)
23	글로벌 탄소 저감 트렌드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용 버스바(busbar)로 사업재편 추진	탄소중립 이행 기반 구축 (전기차 배터리용 핵심소재)
24	자율 이동 로봇(AMR)용 전원 통합관리 배터리팩 분야로 사업 다각화 추진	탄소중립 이행 기반 구축 (전기차 배터리용 핵심소재)
25	기존사업을 바탕으로 다기능 실리콘 복합소재로 사업재편 추진	탄소중립 이행 기반 구축 (전기차 배터리용 핵심소재)
26	시장규모 확대에 따른 배터리 재사용 관리 분야로 사업 다각화	탄소중립 이행 기반 구축 (전기차 배터리용 재사용)

연번	사업재편계획 내용	탄소중립 관련 내용
27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전기차 고전압 배터리 분야 진출	탄소중립 이행 기반 구축 (전기차 배터리용 핵심소재)
28	이차전지 시장규모 확대에 따른 사업 다각화	탄소중립 이행 기반 구축 (전기차 배터리용 핵심소재)
29	기존 폴리실리콘 재활용 사업에서 이차전지용 실리콘 파우더로 사업재편 추진	탄소중립 이행 기반 구축 (전기차 배터리용 핵심소재)
30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전기차 무선충전 기술분야로 사업재편 추진	탄소중립 이행 기반 구축 (전기차 배터리 충전)
31	국내외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전기차용 배터리 분야로 진출	탄소중립 이행 기반 구축 (전기차 배터리용 핵심소재)
32	자동차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전기차 부품 분야로 사업재편 추진	탄소중립 이행 기반 구축 (전기차 전용부품)
33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전기차 차체 분야로 사업재편 추진	탄소중립 이행 기반 구축 (전기차 전용부품)
34	전기차용 자가진단장치(OBD) 제조 및 배터리 정보 제공 서비스 분야 진출	탄소중립 이행 기반 구축 (전기차 전용부품)
35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전기차 고효율 구동시스템으로 사업 다각화	탄소중립 이행 기반 구축 (전기차 구동시스템)
36	국내외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전기차용 배터리 모듈케이스 분야 진출	탄소중립 이행 기반 구축 (전기차 배터리용 핵심소재)
37	자동차산업 패러다임 변화로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로 사업재편 추진	탄소중립 이행 기반 구축 (전기차 배터리용 핵심소재)
38	자동차산업 패러다임 변화로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로 사업재편 추진	탄소중립 이행 기반 구축 (전기차 배터리용 핵심소재)
39	자동차산업 패러다임 변화로 하이브리드 전용 부품 분야로 사업 다각화	탄소중립 이행 기반 구축 (전기차 전용부품)
40	자동차산업 패러다임 변화로 전기차 부품분야로 사업 다각화	탄소중립 이행 기반 구축 (전기차 전용부품)
41	자동차산업 패러다임 변화로 전기차 공조시스템 부품 분야로 사업재편 추진	탄소중립 이행 기반 구축 (전기차 전용부품)
42	자동차산업 패러다임 변화로 전기차용 액추에이터 분야로 사업 다각화	탄소중립 이행 기반 구축 (전기차 전용부품)
43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전기차 부품 분야로 사업재편 추진	탄소중립 이행 기반 구축 (전기차 전용부품)
44	자동차산업 패러다임 변화로 친환경차용 구동시스템 고효율화 사업 다각화	탄소중립 이행 기반 구축 (전기차 구동시스템)
45	자동차산업 패러다임 변화로 전기차용 부품 분야로 사업재편 추진	탄소중립 이행 기반 구축 (전기차 전용부품)
46	자동차산업 패러다임 변화로 전기차용 부품 분야로 사업재편 추진	탄소중립 이행 기반 구축 (전기차 전용부품)
47	반도체 시장 변화에 따라 기존 알루미늄에서 신소재를 적용한 웨이퍼로 사업 다각화	탄소중립 이행 기반 구축 (저전력 반도체 핵심소재)
48	국내외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미생물을 활용하는 바이오·헬스 분야로 사업재편 추진	탄소중립 이행 기반 구축 (폐기물 저감)
49	국내외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산업 부산물 및 폐플라스틱 활용하는 신사업 진출	탄소중립 이행 기반 구축 (폐기물 저감)
50	빌딩 에너지 관리 시스템(BEMS) 시장 증가에 따라 에너지관리시스템 분야 재편 추진	탄소중립 이행 기반 구축 (에너지 효율)
51	자동차산업 패러다임 변화로 고기능성 마스터배치 품목으로 사업재편 추진	탄소중립 이행 기반 구축 (전기차 전용부품)
52	광통신산업 시장 변화로 광촉매 필터 모듈 분야로 사업 다각화	탄소중립 이행 기반 구축 (휘발성 유기화합물 제거)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그러나, 상기 52개 사업은 당초 사업재편계획 승인시 '탄소중립 기술'을 전제로 심사한 것이 아닌, '신산업 진출'로 인정되는 다른 기술 및 사업분야[182]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승인된 것으로 사후적으로 탄소중립과의 관련성을 조사[183]한 것이며,

상기 52개 사업을 포함하더라도 2023년 승인 사업 중 기후대응기금의 목적과 관련된 비중은 63.4%[184]로 해당 사업이 전액 기후대응기금에 편성된 사업임을 고려할 때 높은 수치는 아닌 것으로 판단됨.

이렇듯 해당 사업의 일부 내용이 탄소중립 등 기후대응기금의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사업재편지원기반구축 사업」의 연혁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재편지원기반구축 사업」은 당초 기후위기 대응 등의 목적으로 추진된 것이 아닌 기업활력법에 따른 선제적·자율적 혁신 촉진을 목적으로 시작된 사업으로서, 2021년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일반회계 사업으로 편성되어 오다 2022년 기후대응기금이 신설 후 현재까지 기후대응기금 사업으로 집행되고 있음.

해당 사업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업활력법에 근거한 사업으로 2024년 3월 기업활력법 개정으로 대상 사업에 '탄소중립활동'이 추가되기 전까지는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목적[185]이 주된 사업 목적이 아니었고, 특정 탄소중립기술이 대상 사업 중 일부분인 '신산업 진출' 분야에 포함되어 있는 수준이었음.

---

182) 기업활력법 시행령에 따라 인정되는 신산업 지출 기술·분야는 '지역혁신성장사업, 혁신금융서비스,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 신성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 국가전략기술' 등이 있음.

183) 2023회계연도 기후대응기금 결산 검토를 위한 자료요구에 대하여 답변의 일환으로 해당 내역을 조사한 것으로 보임.

184) 59개 사업(탄소중립기술 7개 + 탄소중립 관련 사업 52개) ÷ 93개 사업(2023년 승인 사업)

18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기후대응기금의 설치)** ① 정부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7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기반 조성・운영
2.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산업・노동・지역경제 전환 및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 지원
3.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경제적・사회적 여건이 악화된 지역이나 피해를 받는 노동자・계층에 대한 일자리 전환・창출 지원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기술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융자・투자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금융지원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홍보
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8.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9.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10.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11. 그 밖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사업재편지원기반구축 사업」의 기후대응기금 이관 전·후 비교]

구 분	기후대응기금 이관 전 (~'21)	기후대응기금 이관 후 ('22~)
회계·기금명	일반회계	기후대응기금
회계·기금 소관부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세부사업명	사업재편지원기반구축	사업재편지원기반구축
사업재편 대상 기업	① 과잉공급 업종 기업 ② 신산업 진출 기업 (특정 탄소중립기술 포함) ③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① 과잉공급 업종 기업 ② 신산업 진출 기업 ③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④ 탄소중립활동('24년 3월부터 추가) ⑤ 디지털전환활동('24년 3월부터 추가) ⑥ 공급망 위협 해소('24년 7월부터 추가)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 재구성

이러한 「사업재편지원기반구축 사업」의 연혁과 사업예산 전액이 기후대응기금으로 편성된 점을 고려할 때, 동 사업이 기후대응기금 사업으로 존속하기 위해서는 현행 사업재편 승인사업에서 탄소중립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186]으로는 충분치 못한 것으로 보이며, 기후대응기금의 목적에 보다 부합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특히, 2024년 법개정[187]으로 기업활력법에 탄소중립활동이 대상 사업의 한 분야로 명

186) 2023년 승인사업 중 승인사유가 탄소중립인 사업 비율은 7.53%이며, 일부 사업내용이 탄소중립과 관련된 사업까지 포함할 경우 탄소중립과 관련된 사업 비율은 63.4%임.

187)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미래 사업재편"이란 다음 각 목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신산업 진출: 기존 산업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사회적·경제적 가치가 있어 시장성, 파급효과, 성장 잠재력과 국민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으로 진출하는 행위
나. 디지털전환활동: 공정 최적화, 상품 판매·서비스 제공 방식의 고도화 등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과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데이터를 활용하는 행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탄소중립활동: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3호를 위하여 공정 최적화, 특정설비나 기술 활용, 연료 및 원료전환 등을 추진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4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른 공급안정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
가. 과잉공급 해소를 위한 사업재편
나. 공급망 위협 해소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생산, 저장 및 대체기술 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망 안정 활동을 하는 사업재편
2. 미래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으로서 제6조제12항에 따른 사업재편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로부터 미래 사업재편 판정을 받은 기업
3.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에 속하여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하여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시되었고, 동법 시행령에 따라 기존에 인정되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탄소중립기술'에 더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188]에 따른 녹색기술'이 추가됨으로써 대상사업으로 인정되는 탄소중립 분야의 범위가 확대되었음.

따라서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는 기후대응기금 목적과 관련없는 분야에 대한 사업재편사업을 산업통상자원부 일반회계로 분리하여 편성하기 어렵다면, 탄소중립분야에 대한 사업재편 승인 비율[189]을 보다 확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임.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활력법의 개정 취지에 맞게 2024년에는 승인사유가 탄소중립 분야인 사업의 사업재편 승인 비율을 확대할 예정이며, 중장기적으로 승인사유에서 탄소중립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을 차지할 수 있도록 업무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답변함.

제3조의5(탄소중립활동의 범위) 법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기술을 활용하여 신제품·서비스를 창출하거나 공정을 전환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 제13호에 따른 탄소중립에 해당하는 기술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녹색기술로서 별표 2에 따른 탄소중립 사업재편 인정 기술

18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녹색기술"이란 기후변화대응 기술(「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기술을 말한다),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신·재생에너지 기술, 자원순환(「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원순환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대체하고 에너지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탄소중립을 이루고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을 말한다.

189) '승인사유가 탄소중립 외 다른 분야에 대한 것이지만 탄소중립과 일부 관련성이 인정되는 사업'을 포함한 비율이 아니라, 승인사유가 탄소중립 분야인 사업 비율

국세청 소관

가. 결산 개요

(1) 세입 결산

2023회계연도 국세청 소관 세입 수납액은 예산(4,285억 3,900만원) 대비 413억 3,300만원(△9.7%) 과소수납된 3,872억 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56억 1,500만원(△21.4%)이 감소하였음.

주요 감소 사유는 국세청 소관 세입 수납액 중 가장 큰 비중(70.7%)을 차지하는 가산금 수입이 세법개정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911억원(△25.0%) 감소하였기 때문임.

2023년도 국세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수납 내역을 살펴보면, 관유물대여료 2,400만원,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794억 4,100만원, 변상금 및 위약금 2,500만원, 가산금 2,737억 6,200만원, 기타경상이전수입 335억 2,900만원, 잡수입 6,500만원, 고정자산매각대 5,300만원, 토지 및 무형자산매각대 3억 700만원임.

[2023회계연도 세입 결산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22년 결산(A)	2023년			증감 (B-A)	증감율 (B-A)/A
		예산액		결산(B)		
		본예산	추경			
○ 일반회계	4,928	4,285	4,285	3,872	△1,056	△21.4
- 경상이전수입 (가산금, 벌금·과태료 등)	4,917	4,283	4,283	3,868	△1,049	△21.3
- 기타 (재산수입, 재화및용역판매수입, 관유물매각대 등)	11	2	2	4	△7	△63.6
합 계	4,928	4,285	4,285	3,872	△1,056	△21.4

자료: 국세청

(2) 세출 결산

2023년 국세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1조 9,240억 7,800만원이고, 예산현액은 1조 9,243억 6,500만원이며, 지출액은 1조 8,935억 7,0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8.4%의 집행률을 보임.

2023년도 이용액(移用額)은 263억원으로 납세고지서 등 발송에 186억원, 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 지원에 22억원, 확정채무 지급에 16억원, 기타 부족분에 39억원을 이용하였고, 전용액(轉用額)은 108억원으로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에 18억원, 중부청 기본경비에 15억원, 복지행정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에 11억원, 조사활동지원에 10억원, 기타 부족분에 54억원을 전용하였음.

2023년도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전년 대비 92억원 증가한 308억원으로 불용사유별 내역은 정원 및 기준호봉 미달 139억원, 예산절감 124억원, 집행 잔액 45억원임.

2023년도 일반회계 지출액의 프로그램별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과세기반확충 141억 200만원, 탈세대응강화 1,323억 6300만원, 체납·징수관리 726억 5,500만원, 성실납세 및 민생지원 193억 4,200만원, 국세행정지원 1조 6,356억 1,600만원, 책임운영기관운영 194억 9,200만원임.

[2023회계연도 세출 결산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22년 결산(A)	2023년			증감 (B-A)	증감율 (B-A)/A
		예산액		결산(B)		
		본예산	추경			
○ 인건비	12,848	13,527	13,527	13,098	250	1.9
○ 기본경비	1,650	1,310	1,310	1,378	△272	△16.5
○ 사업비	4,505	4,404	4,404	4,459	△46	△1.0
합 계	19,003	19,241	19,241	18,936	△67	△0.4

자료: 국세청

(3) 세입·세출 결산 총괄표

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구분	2021결산	2022결산	2023년				2024예산
			예산		결산(B)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A)			
총 계	737,987	492,821	428,539	428,539	387,206	90.4	364,074
11 재산수입	**51**	**14**	**150**	**150**	**24**	**16.0**	**80**
51 관유물대여료	51	14	150	150	24	16.0	80
511 토지대여료	2	7	2	2	7	350.0	10
512 건물대여료	49	7	148	148	17	11.5	70
12 경상이전수입	**736,515**	**491,715**	**428,308**	**428,308**	**386,757**	**90.3**	**363,924**
56 벌금,몰수금및과태료	153,125	93,116	95,945	95,945	79,441	82.8	92,258
561 벌금및과료	68,852	62,376	53,000	53,000	46,463	87.7	57,546
563 과태료	84,677	31,037	42,915	42,915	33,351	77.7	34,692
564 징계부가금	4	2	30	30	6	20.0	20
565 과징금	△408	△299	0	0	△379	-	0
57 변상금및위약금	2	13	3	3	25	833.3	3
571 변상금	1	9	3	3	12	400.0	3
572 위약금	1	4	0	0	13	-	0
58 가산금	554,108	364,862	310,212	310,212	273,762	88.2	243,567
581 가산금	554,108	364,862	310,212	310,212	273,762	88.2	243,567
59 기타경상이전수입	29,280	33,724	22,148	22,148	33,529	151.4	28,096
596 기타경상이전수입	29,280	33,724	22,148	22,148	33,529	151.4	28,096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66**	**47**	**21**	**21**	**65**	**309.5**	**20**
69 잡수입	66	47	21	21	65	309.5	20
691기타잡수입	66	47	21	21	65	309.5	20
14 수입대체경비수입	**1,276**	**997**	**0**	**0**	**0**	**-**	**0**
69 잡수입	1,276	997	0	0	0	-	0
691 기타잡수입	1,276	997	0	0	0	-	0
15 관유물매각대	**79**	**48**	**60**	**60**	**360**	**600.0**	**50**
71 고정자산매각대	79	48	60	60	53	88.3	50
713 기타고정자산매각대	79	48	60	60	53	88.3	50
72 토지및무형자산매각대	0	0	0	0	307	-	0
723 기타토지및무형자산매각대	0	0	0	0	307	-	0

나)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결산	2022결산	2023년				2024예산
			예산		결산(B)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총 계	1,800,663	1,900,294	1,924,078	1,924,078	1,893,570	98.4	1,951,242
1100 과세기반확충 프로그램 계	11,577	13,463	12,570	12,570	14,102	112.2	13,809
1131 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	3,156	4,227	3,156	3,156	5,185	164.3	4,319
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지원 (1131-300)	3,156	4,227	3,156	3,156	5,185	164.3	4,319
1133 부동산납세 지원	7,226	7,666	7,601	7,601	7,557	99.4	7,410
대형집단상가등 기준시가 고시 (1133-301)	2,429	2,842	2,886	2,886	2,843	98.5	2,886
종합부동산세 운영지원 (1133-302)	176	202	191	191	191	100	0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1133-303)	4,622	4,622	4,524	4,524	4,523	99.9	4,524
1134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운영	1,195	1,475	1,404	1,404	1,351	96.2	1,475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 운영 (1134-300)	1,195	1,475	1,404	1,404	1,351	96.2	1,475
1135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지원	0	95	409	409	9	2.2	409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지원 (1135-300)	0	95	409	409	9	2.2	409
1136 디지털세 운영지원	0	0	0	0	0	0	196
디지털세 운영지원 (1136-300)	0	0	0	0	0	0	196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결산	2022결산	2023년				2024예산
			예산		결산(B)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100 탈세대응강화 프로그램 계	**111,018**	**162,930**	**136,991**	**136,991**	**132,363**	**96.6**	**133,007**
2131 국세징수활동지원	88,714	96,943	115,744	115,744	108,959	94.1	110,741
부과·징수지원 (2131-300)	21,939	26,038	47,111	47,111	38,102	80.9	45,355
부과·징수자료수집비 (2131-301)	47,897	48,889	49,031	49,031	48,867	99.7	48,725
조사활동지원 (2131-302)	18,879	22,016	19,602	19,602	21,990	112.2	16,661
2132 역외탈세대응활동	6,039	6,457	6,289	6,289	6,372	101.3	6,376
역외탈세대응활동 (2132-300)	6,039	6,457	6,289	6,289	6,372	101.3	6,376
2133 법무심사지원	11,998	55,774	11,800	11,800	13,895	117.2	12,609
확정채무 지급 (2133-300)	5,115	47,691	3,716	3,716	5,811	156.4	3,716
소송수행비용 (2133-301)	6,883	8,083	8,084	8,084	8,084	100	8,893
2134 FIU정보통합 분석시스템(FOCAS)운영 (정보화)	882	909	815	815	794	97.4	815
FIU정보통합분석시스템 (FOCAS)운영(정보화) (2134-300)	882	909	815	815	794	97.4	815
2136 납세조합법정교부금	3,386	2,847	2,343	2,343	2,343	100	2,466
납세조합법정교부금 (2136-300)	3,386	2,847	2,343	2,343	2,343	100	2,466
2200 체납·징수관리 프로그램 계	**54,075**	**70,063**	**53,219**	**53,219**	**72,655**	**136.5**	**65,282**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결산	2022결산	2023년				2024예산
			예산		결산(B)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232 체납정리지원	5,817	7,542	5,515	5,515	6,360	115.3	5,216
압류재산공매 (2232-301)	4,294	5,973	3,992	3,992	4,838	121.2	3,593
징수위탁수수료 (2232-303)	1,523	1,569	1,523	1,523	1,522	99.9	1,623
2233 납세고지서 등 발송	47,178	61,585	47,704	47,704	66,295	139.0	60,066
납세고지서 등 발송 (2233-300)	47,178	61,585	47,704	47,704	66,295	139.0	60,066
3100 성실납세 및 민생지원 프로그램 계	**18,188**	**22,430**	**24,623**	**24,623**	**19,342**	**78.6**	**20,771**
3132 납세안내 및 세금교육 지원	2,346	2,711	2,873	2,873	2,860	99.5	3,265
납세안내 및 세금교육 지원 (3132-300)	2,346	2,711	2,873	2,873	2,860	99.5	3,265
3133 납세자 권익보호 및 성실납세지원	833	1,225	1,103	1,103	1,131	102.5	1,303
납세자 권익보호 및 성실납세지원 (3133-300)	833	1,225	1,103	1,103	1,131	102.5	1,303
3134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	2,535	2,637	2,798	2,798	2,739	97.9	3,413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 (3134-300)	2,535	2,637	2,798	2,798	2,739	97.9	3,413
3135 근로·자녀장려세제 운영	12,240	10,000	9,402	9,402	8,733	92.9	5,779
근로·자녀장려세제 운영(3135-300)	12,240	10,000	9,402	9,402	8,733	92.9	5,779
3136 취업후학자금 상환제도 운영지원	234	234	234	234	234	100.0	234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결산	2022결산	2023년				2024예산
			예산		결산(B)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취업후학자금 상환제도 운영지원 (3136-300)	234	234	234	234	234	100.0	234
3137 실시간 소득파악제도 운영	0	5,623	8,213	8,213	3,645	44.4	3,390
실시간 소득파악제도 운영 (3137-300)	0	5,623	8,213	8,213	3,645	44.4	3,390
3138 아시아 국세청장회의 개최 사업	0	0	0	0	0	0	1,000
아시아 국세청장회의 개최 사업 (3138-300)	0	0	0	0	0	0	1,000
3140 소득자료관리 시스템 운영(정보화)	0	0	0	0	0	0	2,387
소득자료관리시스템 운영(정보화) (3140-500)	0	0	0	0	0	0	2,387
7100 국세행정지원 프로그램 계	**1,588,826**	**1,613,279**	**1,676,908**	**1,676,908**	**1,635,616**	**97.5**	**1,698,032**
7101 인건비	1,242,025	1,275,622	1,343,111	1,343,111	1,300,464	96.8	1,351,587
인건비 (7101-100)	1,242,025	1,275,622	1,343,111	1,343,111	1,300,464	96.8	1,351,587
7111 본부 기본경비	51,832	42,875	45,793	45,793	47,380	103.5	47,661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 (7111-200)	22,639	22,963	22,994	22,994	24,692	107.4	22,945
전산정보관리관실 기본경비(총액) (7111-201)	236	294	302	302	301	99.7	307
납세자보호관 기본경비(총액) (7111-202)	75	86	86	86	86	100.0	93
국제조세관리관실 기본경비(총액) (7111-203)	142	164	165	165	165	100.0	165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결산	2022결산	2023년				2024예산
			예산		결산(B)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징세법무국 기본경비(총액) (7111-204)	148	173	178	178	150	84.3	151
개인납세국 기본경비(총액) (7111-205)	4,141	2,605	2,127	2,127	2,562	120.5	2,246
법인납세국 기본경비(총액) (7111-206)	123	153	153	153	153	100.0	153
자산과세국 기본경비(총액) (7111-207)	110	119	120	120	120	100.0	120
조사국 기본경비(총액) (7111-208)	195	216	226	226	205	90.7	226
소득지원국 기본경비(총액) (7111-209)	84	99	89	89	133	149.4	143
기관운영 기본경비 (7111-250)	11,413	8,146	11,062	11,062	10,348	93.5	12,408
전산정보관리관실 기본경비 (7111-251)	349	217	261	261	254	97.3	281
납세자보호관 기본경비 (7111-252)	961	974	1,024	1,024	1,026	100.2	1,145
국제조세관리관실 기본경비 (7111-253)	1,499	1,939	2,167	2,167	2,129	98.2	2,142
징세법무국 기본경비 (7111-254)	1,364	848	898	898	885	98.6	956
개인납세국 기본경비 (7111-255)	6,275	1,793	1,813	1,813	1,891	104.3	1,818
법인납세국 기본경비 (7111-256)	1,105	1,046	1,081	1,081	1,111	102.8	1,097
자산과세국 기본경비 (7111-257)	527	499	523	523	543	103.8	732
조사국 기본경비 (7111-258)	389	478	469	469	546	116.4	453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결산	2022결산	2023년				2024예산
			예산		결산(B)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소득지원국 기본경비 (7111-259)	55	63	55	55	80	145.5	80
7118 소속기관 기본경비	6,242	6,148	6,233	6,233	6,241	100.1	6,313
교육원 기본경비(총액) (7118-201)	264	255	295	295	290	98.3	295
주류면허지원센터 기본경비(총액) (7118-202)	42	41	45	45	41	91.1	45
교육원 기본경비 (7118-251)	5,515	5,166	5,347	5,347	5,400	101.0	5,297
주류면허지원센터 기본경비 (7118-252)	423	686	546	546	510	93.4	676
7124 지방국세청 기본경비	105,026	111,444	77,691	77,691	82,876	106.7	82,898
서울청 기본경비(총액) (7124-200)	4,645	4,583	4,686	4,686	4,588	97.9	4,701
중부청 기본경비(총액) (7124-201)	2,255	2,253	2,442	2,442	2,315	94.8	2,456
대전청 기본경비(총액) (7124-202)	1,255	1,266	1,363	1,363	1,295	95.0	1,363
광주청 기본경비(총액) (7124-203)	1,147	1,171	1,275	1,275	1,152	90.4	1,275
대구청 기본경비(총액) (7124-204)	1,219	1,249	1,276	1,276	1,235	96.8	1,282
부산청 기본경비(총액) (7124-205)	1,841	1,920	2,068	2,068	1,905	92.1	2,107
인천청 기본경비(총액) (7124-206)	1,490	1,513	1,592	1,592	1,519	95.4	1,592
서울청 기본경비 (7124-250)	22,360	24,885	15,575	15,575	17,304	111.1	16,972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결산	2022결산	2023년				2024예산
			예산		결산(B)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중부청 기본경비 (7124-251)	17,005	18,257	10,910	10,910	12,589	115.4	11,898
대전청 기본경비 (7124-252)	8,697	8,094	6,836	6,836	7,731	113.1	7,515
광주청 기본경비 (7124-253)	8,019	8,055	6,778	6,778	7,038	103.8	7,229
대구청 기본경비 (7124-254)	7,748	9,032	6,224	6,224	6,743	108.3	6,581
부산청 기본경비 (7124-255)	11,788	12,469	9,911	9,911	10,258	103.5	10,483
인천청 기본경비 (7124-256)	15,558	16,697	6,755	6,755	7,204	106.6	7,444
7132 직장어린이집 운영	3,870	3,298	3,297	3,297	3,297	100	3,297
직장어린이집 운영 (7132-300)	3,870	3,298	3,297	3,297	3,297	100	3,297
7133 국세행정 전산화(정보화)	93,702	116,110	110,305	110,305	104,859	95.1	107,363
국세행정지원시스템 운영(정보화) (7133-500)	93,702	43,877	55,126	55,126	52,593	95.4	48,143
엔티스 전산시스템 운영(정보화) (7133-501)	0	60,999	44,526	44,526	41,665	93.6	47,915
국세정보분석시스템 운영(정보화) (7133-502)	0	11,234	10,653	10,653	10,601	99.5	11,305
7136 취업후학자금 상환 전산시스템 운영(정보화)	8,899	3,203	2,981	2,981	2,937	98.5	3,110
취업후학자금상환 전산시스템 운영(정보화) (7136-500)	8,899	3,203	2,981	2,981	2,937	98.5	3,110
7138 청사확보 및 환경개선	49,813	50,152	83,227	83,227	82,243	98.8	93,645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결산	2022결산	2023년				2024예산
			예산		결산(B)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세무환경개선 (7138-302)	8,212	8,463	8,789	8,789	8,641	98.3	9,789
임시청사 이전비용 (7138-303)	5,897	5,001	36,375	36,375	35,400	97.3	40,315
행정지원인력 운영 (7138-304)	35,704	36,688	38,063	38,063	38,202	100.4	43,541
7139 국세통계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1,413	2,095	2,047	2,047	2,041	99.7	2,058
국세통계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7139-300)	1,413	2,095	2,047	2,047	2,041	99.7	2,058
7140 복지행정시스템 구축 및 운영	26,003	2,332	2,223	2,223	3,278	147.5	0
복지행정시스템 구축 및 운영(7140-500)	26,003	2,332	2,223	2,223	3,278	147.5	0
7143 개도국 조세행정 역량강화(ODA)	0	0	0	0	0	0	100
개도국 조세행정 역량강화(ODA) (7143-300)	0	0	0	0	0	0	100
7200 책임운영기관운영 프로그램 계	**16,979**	**18,129**	**19,767**	**19,767**	**19,492**	**98.6**	**20,341**
7202 국세상담센터 인건비	8,970	9,147	9,636	9,636	9,350	97.0	9,758
국세상담센터 인건비 (7202-100)	8,970	9,147	9,636	9,636	9,350	97.0	9,758
7218 국세상담센터 기본경비	1,145	1,226	1,258	1,258	1,321	105.0	1,478
국세상담센터 기본경비(총액) (7218-200)	759	820	823	823	891	108.3	924
국세상담센터 기본경비 (7218-250)	386	406	435	435	430	98.9	554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결산	2022결산	2023년				2024예산
			예산		결산(B)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7231 홈택스상담 센터운영	6,864	7,756	8,873	8,873	8,821	99.4	9,105
홈택스상담센터 운영 (7231-300)	6,864	7,756	8,873	8,873	8,821	99.4	9,105

나. 검토 의견

(1) 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지원 사업의 연례적인 예산 이용 지양 필요(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지원, 개인납세국)

< 현 황 >

「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지원」은 세원양성화가 미흡한 자영 사업자의 현금거래에 대한 과세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안정적인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할 목적으로 현금영수증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미발급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현금영수증제도 홍보, 현금영수증 카드 제작 등의 사업으로 구성됨.

2023년도 예산액은 31억 5,6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포상금 예산 부족에 따라 부과·징수지원 사업에서 22억 1,600만원을 이용하여 예산현액은 53억 7,200만원이며, 이 중 51억 8,5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8,7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3년 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지원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지원(1131-300)	3,156	3,156	-	2,216	-	5,372	5,185	-	187	4,319

자료: 국세청

< 검토의견 >

국세청은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한도액, 대상업종 등의 적정한 수준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여 연례적인 예산 이·전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국세청은 2007년부터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현금거래에 대한 과세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성실납세문화를 확립하기 위해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포상금 제도'[190]를 운영하고 있음.

동 신고포상금 제도는 신용카드가맹점·현금영수증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제4호 근거, 이하 '발급거부 신고포상금')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서 1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191],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4항[192])가 있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제4호의2 근거, 이하 '미발급 신고포상금')으로 구분됨[193].

---

190) 동 신고포상금에는 신용카드 발급의무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도 포함되어 있음.

191) **「소득세법」**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2) **「법인세법」**

제117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 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3)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목의 행위를 한 신용카드가맹점(「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서 「소득세법」 제162조의2제1항 및 「법인세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가입한 신용카드가맹점을 말한다)을 신고한 자. 다만,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결제 대상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 신용카드로 결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

나.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매출전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목의 행위를 한 현금영수증가맹점(「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말한다)을 신고한 자.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발급 대상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나.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의2.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포상금 제도]

구 분		발급거부	미발급
지급근거		국세기본법 §84의2 국세기본법시행령 §65의4	국세기본법 §84의2 국세기본법시행령 §65의4 국세청고시
지급요건		소비자 상대업종의 건당 5천원 이상 거래에 대해현금영수증 발급요구 거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 미발급
지급요율		발급거부금액 × 20%	미발급금액 × 20%
포상금 지급한도	건당	50만원	
	연간	200만원(동일인 한도)	

자료: 국세청

최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포상금 대상사업자수와 지급건수를 살펴보면, 대상사업자가 2019년 89만명에서 2023년 266만명으로 확대되었고, 신고포상금 지급건수는 2019년 28,126건에서 23023년 40,871건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사업자 및 신고건수]

(단위 : 만명, 건)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자수	89	102	208	242	266
건수	28,126	37,147	38,039	38,287	40,871

자료: 국세청

신고포상금 지급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액수 또한 2019년 14억 7,800만원에서 2023년 48억 7,100만원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23년 신고포상금 예산은 전년 대비 90%(14억 9,200만원)를 증액한 31억 5,6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발급의무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 계	1,478	2,369	2,842	3,913	4,871
발급거부 신고포상금	222	338	263	263	320
미발급신고 포상금	1,256	2,031	2,579	3,650	4,551

자료: 국세청

무를 위반한 자를 신고한 자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포상금 예·결산]

(단위: 백만원)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1,478	1,478	1,533	2,369	1,535	2,842	1,350	3,913	3,156	5,185

자료: 국세청

이처럼 2023년 신고포상금 예산이 전년 대비 2배 이상(13억 5,000만원에서 31억 5,600만원) 증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고포상금 지급 증가추세에 미치지 못해 2023년 22억 1,600만원을 다른 사업으로부터 이용하였음.

[발급의무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부족으로 인한 예산 이용 현황]

(단위 : 백만원)

2020	2021	2022	2023
836	1,307	2,563	2,216

자료: 국세청

이러한 신고포상금 예산의 부족에 따른 예산 이용은 연례적인 현상으로서 2016년 이후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한도액이 그대로 유지되는 가운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업종이 매년 추가된 것도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로 보임[194].

[미발급 신고포상금 지급한도 인하 경과]

구분		'10.4~'14.6	'14.7~'15.12	'16.1~
지급요율		미발급금액×20%	좌 동	좌 동
지급한도	건당	300만원	100만원	50만원
	연간	1,500만원	500만원	200만원

자료: 국세청

194) 다만, 국세청은 포상금 한도 인하 건의안을 지속적으로 기획재정부에 건의하였으며, 그 결과 기획재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24.7.25)에 반영되어 향후 포상금 한도액이 인하될 예정임.
* (현행) 건 당 50만원, 동일인 200만원 → 건 당 25만원, 동일인 100만원

[최근 5년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지정 현황]

발급의무 시작일	구분	업 종
’20. 1. 1.	8개 추가	· 가전제품 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학원, 기타 분류 안 된 교육기관,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묘지 분양 및 관리업, 장의차량 운영업
’21. 1. 1.	10개 추가	· 전자상거래 소매업(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에 한정), 두발 미용업,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소프트웨어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난방용구 소매업
’22. 1. 1.	8개 추가	·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벽지·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중고가구 소매업, 공구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자동차 세차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23. 1. 1.	17개 추가	·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에 한정), 기타 통신 판매업(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에 한정), 가전제품 수리업,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가정용 직물 제품 소매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요업제품 소매업(거울·액자·주방용 유리제품·관상용어항 이외의 제품),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게임용구·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행정사업,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부품 소매에 한정), 여자용 겉옷 제조업, 남자용 겉옷 제조업, 구두류 제조업, 시계·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가죽·가방 및 신발 수리업, 숙박 공유업
’24. 1. 1.	13개 추가	· 백화점, 대형마트, 체인화 편의점,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자동차중개업,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포장이사업 이외), 통신장비 수리업, 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주차장 운영업, 서적·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곡물·곡분 및 가축 사료 소매업, 육류 소매업

자료: 국세청

동 신고포상금은 세법상 의무위반 행위에 대하여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장려하고 이에 따라 성실납세문화를 진작할 수 있는 효과가 있으나,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재정 부담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많은 신고를 유발함으로써 세법을 숙지하지 못한 영세한 사업자에 대하여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국세청은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한도액, 대상업종 등의 적정한 수준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여 지속적인 예산 이·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2) 대형집단상가등 기준시가 고시 업무의 원활한 이관 필요 (대형집단상가등 기준시가 고시, 자산과세국)

< 현 황 >

「대형집단상가등 기준시가 고시」는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의 과세기준가액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전국 소재 오피스텔과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시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상업용 건물에 대해 거래시세를 조사하여 산정한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고시하고, 그 외 주택과 국세청이 고시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을 제외한 일반 건물에 대하여 적용하는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고시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사업임.

2023년도 예산액은 28억 8,600만원으로, 이 중 28억 4,300만원을 집행하고 4,3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3년 대형집단상가등 기준시가 고시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23									2024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대형집단상가등 기준시가 고시(1133-301)	2,886	2,886	-	-	-	2,886	2,843	-	43	2,886

< 검토의견 >

국세청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개정 취지대로 대형집단상가 등 기준시가 고시업무를 국토교통부로 원활하게 이관하여 과세형평성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국세청장은 「소득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근거하여 전국 소재 오피스텔과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시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2005년부터 2024년 8월 현재까지 국토교통부와 별도로 산정·고시해 왔음[195].

---

195)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가.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地價)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 건물

건물(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다.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

라.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 같은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을 때에는 그 가격에 따르고,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

4. 주택

그런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 2016년 1월 19일 전부개정되어(2016. 9. 1. 시행) 국토교통부장관이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을 일괄평가하고 거래시가를 감안한 부동산 적정가격을 공시하도록 함에 따라 대형상가·오피스텔에 대한 적정가격도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공시하도록 일원화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었음. 다만 같은 법 제22조에서는 기존대로 국세청장이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가격을 평가·고시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중복하여 평가·고시하지 않도록 잠정조치에 관한 규정을 두었음[196].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개정법률 시행 이후 2024년에 이르기까지 국토교통부는 평가모델 개발 연구용역을 수행했을 뿐[197] 해당 업무가 국세청에서 국토교통부로 이관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198], 이로 인하여 부동산 가격공시 주체를 일원화하여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려는 개정법률의 입법취지가 달성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국세청은 종전에 외부 전문기관(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공받아 축적한 기준시가 데이터를 국토교통부로 이전하는 등 대형집단상가등 기준시가 고시 업무를 원활히 이관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가. 해당 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나. 고시주택가격 고시 후에 해당 주택을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여 고시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19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2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이라 한다)을 조사·산정하여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결정·공시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가격을 별도로 결정·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결정·공시하지 아니한다.

197) 국토교통부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사전연구 진행상황 (2015~2018)

용역	시기	연구기관	내용
1차	2015.12~2016.9	한국부동산원·조세연구원	17개 시군구 상업·업무용 가격공시모형 설계
2차	2016.11~2017.9	한국부동산원·지방세연구원	추가 50개 시군구 가격공시모형 설계
3차	2017.11~2018.6	한국부동산원·지방세연구원	상업용 건물 가격산정모형 설계

198) 다만, 국세청은 국토교통부에 매년 1~2회 업무 이관 협의 요청을 하고 있다고 밝힘

(3)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강구 필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운영, 개인납세국)

< 현 황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운영」은 신용카드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 도입에 따라 대상사업자 안내 및 홍보, 대리납부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신용카드사의 필요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사업예산은 14억 400만원이며, 이 중 13억 5,100만원이 집행되고 5,3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3년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운영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운영 (1134-300)	1,404	1,404	-	-	-	1,404	1,351	-	53	1,4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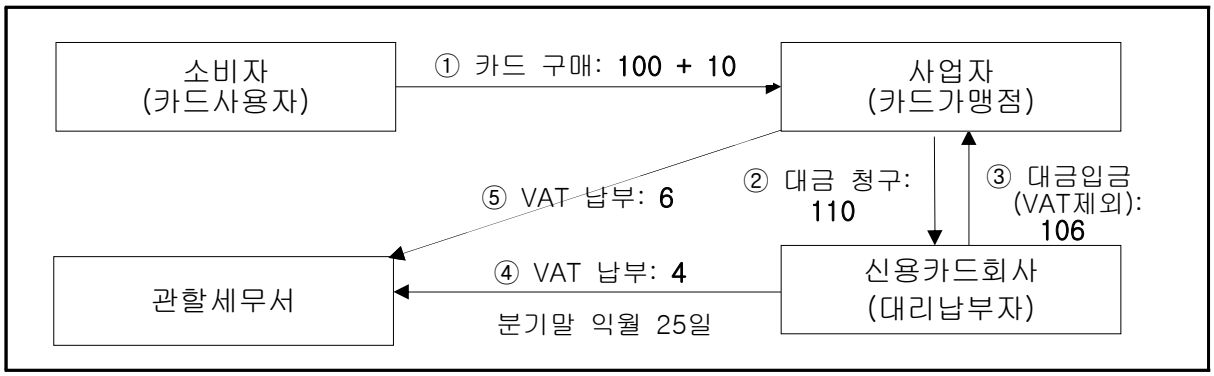
자료: 국세청

< 검토의견 >

국세청은 유흥주점업 외에도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가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업종을 추가로 발굴하여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는 체납이 높은 특정사업자(유흥주점업)의 B2C(business to consumer)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탈루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유흥·단란주점업에서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신용카드사가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4/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 사업자 대신 납부하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사가 납부한 세액을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보아 공제하고 나머지 세액을 정산하여 납부하는 방식임.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흐름도]



자료: 국세청

① 대리납부 대상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소비자가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VAT) 10을 신용카드로 결제
② 대리납부 대상 사업자는 신용카드사에게 110의 대금 청구
③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 결제금액(110)의 4/110*에 해당하는 4를 부가가치세로 징수하고, 나머지 106을 대리납부대상 사업자에게 입금
④ 공급자는 종전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되, 대리납부세액을 신고서상 기납부세액으로 반영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
⑤ 신용카드사는 징수한 부가가치세 4를 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

동 제도는 2017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199]으로 도입되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신용카드사에 대한 경비 지원, 제도 홍보 등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운영 사업」 예산이 2019년부터 편성되어 집행되었음.

한편, 동 제도는 폐업률이 높아 부가가치세 체납·일실의 우려가 있는 (일반·무도)유흥주점업과 단란주점업을 대상으로 하여 기한부로(2021년 일몰) 도입되었는데, 2021년 동

199)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10(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라 한다)는 부가가치세 체납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특례사업자"라 한다)가 2021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를 사용한 거래로 한정한다)하고 그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공급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급대가를 특례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때에 공급대가의 11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징수하여 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달 2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신용카드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특례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신고 시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본다.
⑥ 국세청장은 신용카드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납부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14(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등) ② 법 제106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특례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따른 간이과세자는 제외한다.
1. 일반유흥 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포함한다)
2. 무도유흥 주점업

제도가 효과가 있다고 판단[200]되어 일몰조항을 삭제하고 이를 영구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최근 유흥주점업의 부가가치세 징수율을 살펴보면, 동 제도가 도입된 2019년에는 97%로 전년대비(88%) 크게 높아졌으며, 코로나의 영향이 있었던 2021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높은 징수율을 보여주고 있음.

[유흥주점업의 부가가치세 징수현황]

(단위 : 억원, %)

연도	납부할 세액[1](A)	대리납부 징수액[2]	납부한 세액[3](B)	징수율 (B/A)
2018년	1,212	-	1,067	88.0
2019년	1,853	1,434	1,797	97.0
2020년	905	891	871	96.2
2021년	364	437	319	87.6
2022년	1,100	1,086	1,031	93.7
2023년	1,421	1,272	1,361	95.8

1)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 차가감 납부할세액 + 예정고지세액
2) 신용카드사를 통한 대리납부 징수액
3) 대리납부 기납부 수납 + 차가감 납부할세액 수납 + 예정고지수납 + 예정신고수납
자료: 국세청

이와 같이 동 제도는 부가가치세 체납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는 2023년도의 경우에도 체납액이 11조 173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45.3%에 달하여 다른 세목에 비해 여전히 체납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세목별 체납 발생액·미정리체납액 구성비]

(단위 : 억원, %)

구 분	2022년도 체납		2023년도 체납	
	액수	구성비	액수	구성비
부가가치세	99,912	43.5	110,173	45.3
소득세	82,385	35.8	83,416	34.3
법인세	23,464	10.2	23,965	9.9
상속·증여세	5,952	2.6	11,540	4.7
기타	18,222	7.9	13,995	5.8
합계	229,935	100.0	243,089	100.0

자료: 국세청

200) 실제로 당시 기획재정위원회 예비심사검토보고서(2022년 결산)에 따르면, 동 제도 시행 이전인 2018년 유흥·단란주점업의 체납액 발생액은 501억원이었으나, 시행 이후인 2019년에는 99억원, 2020년에는 75년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납부할 세액 대비 납부한 세액의 비율도 2018년 88.0%에서 2019년 96.9%, 2020년 96.2%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세목별 체납 발생액·미정리체납액 구성비]

(단위 : 억원, %)

구 분	전년도 이월(A)	당해연도 발생(B)	체납총액 (C=A+B)	현금정리[1]		정리보류[2]		기 타[3]
				액수 (D)	비율 (D/C)	액수 (E)	비율 (E/C)	
2016	32,241	90,613	122,854	60,241	49.0	27,543	22.4	5,610
2017	29,460	94,639	124,099	59,857	48.2	25,344	20.4	5,589
2018	33,309	97,011	130,320	59,731	45.8	26,902	20.6	4,939
2019	38,748	95,357	134,105	61,956	46.2	27,036	20.2	3,973
2020	41,140	89,748	130,888	57,920	44.3	24,092	18.4	4,095
2021	44,781	84,001	128,782	53,463	41.5	20,650	16.0	3,304
2022	51,365	99,912	151,277	57,846	38.2	20,540	13.6	5,141
2023	67,750	110,173	177,923	64,237	36.1	31,687	17.8	4,893

1) 세수로 연결되는 체납액
2) 체납을 전산으로 관리
3)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하거나 감액 경정
자료: 국세청

따라서 국세청은 업종별 신용카드 매출비율·체납발생률·자금부담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유흥주점 외의 업종에 대해서도 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등 부가가치세 체납액을 줄이고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4) 국내 출장여비의 적정 규모 편성 필요 (부과·징수지원, 기획조정관실)

< 현 황 >

부과·징수지원 사업은 국세청 직원의 조사, 체납처분, 주소지 확인, 세원발굴업무, 기타 각종 현장확인업무, 교육여비 등 국세 부과·징수업무 수행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현지 출장여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액 국내여비로 구성되어 있음.

2023년도 예산액 471억 1,100만원 중 381억 200만원이 집행되었고 33억 7,1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3년 부과·징수지원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23									2024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부과·징수지원	47,111	47,111	-	△5,638	-	41,473	38,102	-	3,371	45,355

자료: 국세청

< 검토의견 >

국세청은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위해 연례적인 이·전용을 지양하고 적정한 규모의 국내 출장여비를 편성할 필요가 있음.

2023년도 부과·징수지원 사업은 예산액 471억 1,100만원에서 다른 사업으로 56억 3,800만원이 이·전용되어 예산현액은 414억 7,300만원임. 이 중 집행액은 381억 2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1.9%에 해당하지만, 이·전용액을 포함한 예산액과 대비하면 집행률은 80.9%로 떨어지며, 2020년 76억 2,500만원, 2021년 67억 6,400만원, 2022년 189억 8,300만원 등 예산액의 10% 이상이 연례적으로 다른 사업으로 이·전용되고 있음.

[최근 5년간 결산 내역 및 24년 예산]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A)	이·전용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불용액
2019	58,702	-	58,702	58,688	99.9	99.9	14
2020	59,347	△7,625	44,722	30,739	51.8	68.7	13,983
2021	53,412	△6,764	46,648	21,939	41.1	47.0	24,709
2022	52,345	△18,983	27,619	26,038	49.7	94.3	1,581
2023	47,111	△5,638	41,473	38,102	80.9	91.9	3,371
2024	45,355	-	-	-	-	-	-

자료: 국세청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출장 건수의 현저한 감소 등으로 2020년 이후 매년 집행률이 저조한 상황을 감안하여 2023년 동 사업의 예산액을 전년대비 10% 가량(52억 3,400만원) 감액하였으나 2023년에도 국내출장 건수가 1,142천건에 그쳐 집행률이 크게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보임.

[최근 5년간 국내출장 건수]

(단위: 천 건)

구 분		출장 건수				
		2019	2020	2021	2022	2023
내역	합계	2,587	1,394	832	911	1,142
조사·체납	소계	959	588	355	449	538
세원관리	소계	1,064	614	369	344	448
기타	소계	564	192	108	118	156

자료: 국세청

법정 신고포상금 부족이나 집중호우로 인한 일부 관서의 피해복구비 지원 등의 이·전용 사유는 그 필요성이 이해되는 측면은 있으나, 동 사업 예산이 연례적으로 이·전용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은 해당 예산의 편성규모가 실제 소요보다 과다편성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음.

또한, 부과·징수지원 사업의 목적이 국세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지만,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91.9%를 기록한 2023년 징수율은 81%로 코로나19로 인해 집행률이 50%대로 저조했던 시기(징수율 2020년 83%, 2021년 84.4%, 2022년 49.7%)에 비해서도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동 사업을 통해 징수율이 개선되는 효과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최근 5년간 징수율 및 부과·징수지원 사업 예산집행률]

(단위: 백만원. %)

구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징수율	부과·징수지원 사업 집행률	
						예산액 대비	예산현액 대비
2019	285,756,185	238,764,242	4,186,498	42,805,445	83.6	99.9	99.9
2020	291,373,176	241,779,588	4,377,921	45,215,667	83.0	51.8	68.7
2021	340,979,002	287,924,934	4,912,955	48,141,113	84.4	41.1	47.0
2022	377,916,612	319,938,543	2,125,872	55,852,197	84.7	49.7	94.3
2023	349,369,699	282,836,475	2,554,790	63,978,434	81.0	80.9	91.9

자료: 국세청

따라서 국세청은 국내 출장여비 등의 수요를 보다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거나, 조사활동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예산 집행률을 높임으로써 이·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5) 승소장려금 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소송수행비용, 징세법무국)

< 현 황 >

「소송수행비용」은 적법한 과세처분을 유지하여 국세행정의 정당성·일관성을 확보하는 한편, 납세자의 세정신뢰를 제고하고 세수일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요 심판·소송사건에 조세전문 대리인을 선임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사업임.

2023년도 예산액은 80억 8,400만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음.

[2023년 소송수행비용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소송수행비용(2133-301)	8,084	8,084	-	-	-	8,084	8,084	-	-	8,893

자료: 국세청

< 검토의견 >

국세청은 승소장려금 지급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음.

국세청은 소송수행자 등의 동기유발을 통한 승소율 제고를 위하여 「소송사무처리규정」 제52조[201]에 근거하여 소속공무원이 소송을 수행하여 승소한 때에는 포상금의 일종인 승소장려금을 지급하고 있고, 그 기준은 다음과 같음.

---

201) **「소송사무처리규정」**

제52조(승소장려금) ① 국세청 소속공무원이 소송수행자로서 소송을 수행하여 승소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체적인 지급 기준을 정하여 승소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승소장려금은 승소사건마다 승소금액비율과 승소노력도를 반영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하며, 이에 대한 세부내용은 국세청장(법무과장)이 세부지침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승소장려금 지급대상 기간 중 패소사건이 있는 경우, 제55조(승소사건의 소송비용의 회수), 제60조의2(소송사무의 점검) 규정에 따른 의무 미이행 등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전체 지급액에서 일정액을 감액할 수 있다.

④ 승소장려금의 개인별 지급한도액은 연간 1,600만원으로 한다.

[승소장려금 지급기준]

(단위 : 만원)

구분	지급기준		
기본승소장려금	민사	소가 1억원 미만	10
		소가 1억원 이상	20
	행정	소가 3억원 미만	5
		소가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
		소가 10억원 이상	20
특별승소장려금	전원합의체 사건, 전심 패소사건, 동일쟁점 다수사건 등의 승소에 대해 기본승소장려금 외에 추가 지급		
	고액승소 사건		45~2,000
	전원합의체에서 승소한 경우		700
	전심 전부 패소 후 승소한 경우		40~600
	동일쟁점 다수사건 선행사건		300

그런데,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보상금 및 포상금에 대한 지급근거 및 지급한도는 법령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하며, 지급방법 및 절차·금액 등은 하위 규정(행정규칙)으로 구체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소송사무처리규정」은 국세청 훈령으로서 법령이 아닌 행정규칙에 해당되므로 현재 승소장려금 지급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미비한 것으로 보임[202].

따라서 국세청은 이러한 예산 집행의 합법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향후 승소장려금 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02) 국세청은 당초 국무총리 훈령의 위임에 따라 국세청 훈령에 승소장려금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국무총리 훈령이 폐지(1995. 6. 23.)되었고, 이후 법무부가 승소판결에 기여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으나 임기만료폐기(2016. 5. 29.)되어 현재 국세청에서 승소장려금 지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는 입장임.

(6) 은닉재산신고포상금의 적정 예산 반영 및 지급기준 완화 방안 검토 필요(압류재산공매, 징세법무국)

< 현 황 >

「압류재산공매」는 국세 체납액에 대한 국세 체납액에 대한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공매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기 위한 사업임.

2023년도 예산액은 39억 9,200만원이나 전년도 이월액 9,600만원과 은닉재산신고포상금 예산 확보를 위해 이용받은 7억 6,2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48억 5,000만원으로, 이 중 48억 3,800만원을 집행하고 1,200만원을 불용하였음.

「압류재산공매 사업」의 내역사업인 「은닉재산신고포상금」의 2023년도 예산현액은 18억 8,300만원이며 이 중 18억 7,200만원을 집행하고 1,1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3년 압류재산공매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압류재산공매(2232-301)	3,992	3,992	96	762	-	4,850	4,838	-	12	3,593
- 공매행정비	2,408	2,408	-	-	-	2,417	2,417	-	-	2,264
- 대위등기비	463	463	-	-	-	454	453	-	1	463
- 보호장비	-	-	96	-	-	96	96	-	-	-
- 은닉재산신고포상금	**1,121**	**1,121**	**-**	**762**	**-**	**1,883**	**1,872**	**-**	**11**	**754**

자료: 국세청

< 검토의견 >

연례적인 예산 부족으로 이·전용을 통해 지출예산 부족분을 충당하고 있는 포상금 예산을 적정 규모로 편성하고 지급기준을 완화하여 신고제도를 더욱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국세청은 공정한 조세행정 실현을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203]에 따라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할 목적으로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과세관청이 확보하기 어려운 납세자의 내부정보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해 징수된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일정 지급기준에 따라 신고자에게 지급신청 · 절차 안내기한의 말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개요]

구분	내 용
지급목적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체납세금을 징수함으로써 공정한 조세행정 실현
법적근거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
지급대상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해 징수된 금액이 5천만원 이상
지급기준 · 한도 (30억원)	- 5천만원 ~ 5억원 : 20% - 5억원 ~ 20억원 : 1억원 + 5억원 초과액의 15% - 20억원 ~ 30억원 : 3억2천5백만원 + 20억원 초과액의 10% - 30억원 초과 : 4억2천5백만원 + 30억원 초과액의 5%
지급시기	지급신청·절차 안내기한의 말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203)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최근 은닉재산 신고건수는 2020년 526건에서 2021년 885건으로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른 징수금액 또한 2020년 81억 7,900만원에서 2023년 120억 3,000만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그런데 이러한 신고건수와 징수금액의 증가에 따라 신고포상금의 집행액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편성된 예산이 이를 충당하지 못해 매년 이·전용을 통해 보전하는 금액이 2020년 3억 7,700만원에서 2021년 6억 8,400만원, 2023년 7억 6,200만원으로 증가하고 있음. 2024년의 경우는 이러한 추세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비하여 오히려 감소한 7억 5,4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2023년도의 실집행액 18억 7,200만원의 40.3%에 불과함에 따라 예산부족에 따른 이·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예산편성액	835	818	818	1,121	754
이·전용액	377	684	664	762	-
실집행액	1206	1,423	1,477	1,872	-

자료: 국세청

포상금의 경우 제보자의 신고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므로 예산 편성 시 신고건수 등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은 있으나 예산 부족이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예산 편성이 예산의 실소요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므로 적정 규모의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한편, 최근 4년간 신고건수 대비 지급건수가 2.8~7.3% 정도로 높은 신고건수에 비해 지급되는 지급건수는 상당히 적은 편임. 신고내용 자체가 불충분한 경우가 대다수이나 요건을 갖춘 신고임에도 불구하고 5천만원 이상의 체납액이 징수되지 않아 포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일부 발생한 결과로 보임.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실적]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신고건수(A)	526	885	479	1,364
지급건수(B)	31	27	35	38
신고건수 대비 지급건수(B/A)	5.9%	3.1%	7.3%	2.8
징수금액	8,179	9,082	9,624	12,030

은닉재산의 특성에 비추어 체납자의 재산에 관한 신고가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신고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으므로 최소 징수금액 5천만원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 운영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204].

204) 은닉재산신고포상금은 최소 징수금액이 2천만원 이상일 경우 지급되는 것으로 운영되었으나, 2015. 2. 3. 시행령 개정으로 탈세제보포상금과 동일하게 5천만원 이상으로 상향되었음.

(7) 「국고금 관리법」에 따른 자금지출 규정 준수 필요 (납세고지서 등 발송, 정보화관리관실)

< 현 황 >

「납세고지서 등 발송」은 납세의무 이행의 필수적 절차인 납세고지서, 독촉장 등의 송달을 차질 없이 수행함으로써 국가재정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세금신고 및 세법개정 사항 등 세무정보를 적기에 제공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익 증진과 세무행정의 효율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고지서 등 등기우편물 발송, 안내물 등 일반우편물 발송, 모바일 안내문 발송 등의 우편요금 비용과 우편봉투 구입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3년도 예산액은 477억 400만원으로 이용받은 186억 6,5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663억 6,900만원 중 662억 9,500만원을 집행하고 7,4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3년 납세고지서 등 발송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23									2024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납세고지서 등 발송(2233-300)	47,704	47,704	-	18,665	-	66,369	66,295	-	74	60,066

국세청은 납세고지서 및 안내문 등을 발송할 때 등기우편 · 일반우편 · 모바일 발송 방식을 선택하고 있는데, 납부의 고지 · 독촉 · 강제징수 등 세법에서 서류의 송달효력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송달의 효력이 없는 각종 신고 · 신청안내문 등은 일반우편으로 발송하거나 모바일 발송을 하고 있음.

이 중 모바일 안내문 발송 사업은 1차 발송의 경우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2차 발송의 경우는 기간통신사업자(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를 대상으로 각각 공개입찰방식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2023년의 경우 플랫폼 사업자는 네이버, 기간통신사업자는 KT 컨소시엄과 계약하였음.

< 검토의견 >

국세청은 모바일 안내문 발송 비용을 「국고금 관리법」에 따른 일반적 지출절차인 재무관 및 지출관 검토 이후 지출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관서운영경비로 집행하였으므로,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자금지출 관련 업무를 철저하게 수행할 필요가 있음.

「국고금 관리법」은 중앙관서의 장 또는 재무관이 그 소관 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지출하려는 경우에는 지출관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보내도록 하고, 이러한 절차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이하 "관서운영경비")는 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205],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및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는 이러한 관서운영경비의 범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관서운영경비의 범위]

예산과목	용 도
인건비	현역병사봉급, 현역병사 특수지근무수당
운영비	건당 500만원이하의 경비(단, 공과금 및 위원회 참석비, 선거관련 용품제작·인쇄비용·우편요금, 청사임차료, 기업특별회계의 당해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는 금액제한 없음). * 복리후생비, 학교운영비, 일반용역비, 관리용역비는 제외
여비	전체
특수활동비	건당 500만원 이하의 경비(단, 수사·정보·경호활동 및 대통령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는 금액 제한없음)
업무추진비	건당 500만원 이하의 경비(단, 기업특별회계의 당해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는 금액제한 없음)
직무수행경비	직책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
안보비	건당 500만원 이하의 경비(단, 정보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는 금액 제한없음)
정보보안비	건당 500만원 이하의 경비(단, 정보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는 금액 제한없음)

205) **「국고금관리법」**
제22조(지출의 절차)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제21조에 따라 위임받은 공무원(이하 "재무관"이라 한다)이 그 소관 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지출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중앙관서의 장이 임명한 공무원(이하 "지출관"이라 한다)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보내야 한다.
제24조(관서운영경비의 지급)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관서를 운영하는 데 드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제22조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이하 "관서운영경비"라 한다)는 필요한 자금을 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예산과목	용 도
보전금	군인사망보상금,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사망일시금, 병사전역급여금, 예비군여비, 상근 예비역 및 공공봉사제 운영여비, 군입영신체검사 불합격자 귀가여비, 군유가족접대비, 포상금 및 상금 법령에 따른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안에 대한 일비 등 실비변상금
민간이전	구호 및 교정비
유형자산	취득단가 50만원(수수료 등 부대경비 포함)미만인 물품의 취득경비
	외국에 있는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비
	제세공과금·법정납부금(각종부담금, 보험료, 기여금) 및 인건비 지급 시 공제되는 금액 중 지출관이 전자자금이체의 방법으로 직접 지출하기 곤란한 경비

「국고금 관리법」이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는 중앙관서의 장이 자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는 원칙적으로 재무관 및 지출관의 검토 이후 지출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정당한 채권자에게 적정한 금액이 지급되도록 하되, 건당 500만원 이하 또는 공과금 등 오집행 가능성이 적은 경비의 경우 재무관 및 지출관의 검토 없이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이 지급하도록 하여 국고금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

그런데, 국세청은 모바일 안내문 발송사업을 수행하면서 「국고금 관리법」의 이러한 취지에 어긋나는 예산집행을 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임. 모바일 안내문 발송사업은 조달청 입찰공고를 통해 1차·2차 중계사업자를 선정하고 과업 내용 및 단가를 확정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재무관 및 지출관이 계약상대방이 과업을 제대로 수행하였는지, 비용을 적정하게 청구하였는지를 검토하여 비용을 지출하였어야 했음. 그러나 국세청은 이러한 일반적 지출절차에 따른 자금 집행이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 1인이 과업 수행 여부, 적정 비용 청구 여부를 확인하여 비용을 지급하였음.

국세청은 이에 대하여 모바일 안내문 발송은 공과금의 성격이 있어 관서운영경비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여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이 비용을 지급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관서운영경비의 대상이 되는 공과금은 도시가스요금, 전기요금 등과 같이 특정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그 사용량에 비례하여 요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재무관 및 지출관의 검토 절차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비 등을 의미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국세청의 설명은 「국고금 관리법」 상 관련 규정의 취지를 오인한 것으로 보임.

국세청은 향후 모바일 안내문 발송 비용이 일반적 지출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지출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임.

(8) 세금포인트 사용처의 지속적인 발굴·확대 필요 (납세자 권익보호 및 성실납세지원, 납세자보호관실)

< 현 황 >

「납세자권익보호 및 성실납세지원」 사업은 성실납세문화가 확산되도록 다양한 우대 혜택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납세자보호관의 효율적인 조직관리 및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관련 제도 발굴 및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2023년도 예산액 11억 3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억 9,200만원을 더한 예산현액은 12억 9,500만원이며, 이 중 11억 3,100만원이 집행되었고 1억 6,400만원이 불용되었음.

「납세자권익보호 및 성실납세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성실납세 지원」 사업은 국민의 성실신고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세금정보책자를 제작하여 신규사업자에게 교부하고, 세금포인트 제도 및 활용 혜택 홍보를 위한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액은 2억 1,500만원이며, 2억 3,500만원이 집행되었음.

[2023회계연도 납세자권익보호 및 성실납세지원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납세자 권익보호 및 성실납세지원 (3133-300)	1,103	1,103	192	-	-	1,295	1,131	-	164	1,303
- 성실납세 지원	215	215	-	-	-	215	235	-	-	204

< 검토의견 >

도입된지 20년이 경과하였으나 여전히 그 사용률이 저조한 세금포인트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세청은 유용한 세금포인트의 사용처를 발굴·확대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세금포인트 제도는 납세자가 세금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느끼도록 함으로써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인은 2004년 4월, 법인(중소기업)은 2014년

3월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납세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부액 규모에 따라 일정한 포인트를 부여하고 납세자의 필요에 따라 적립한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납부기한 등의 연장 시 납세담보를 면제하거나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할인 구매 등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개인 및 법인에 대한 세금포인트 부여 기준 및 사용처 현황 등]

구 분	개 인	법 인
대상	모든 개인납세자	조특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
세목	종합소득·양도소득세 및 원천징수되는 근로·퇴직·사업·기타소득세	법인세 및 법인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부여기준	신고·자진납부세액 10만원 당 1점	
세금포인트 사용처	1. 납부기한 등의 연장 신청 시 납세담보 면제(개인·법인) - 최대 5억 원까지 납세담보 면제(1p당 10만 원)	
	2. 소액체납자 재산 매각 유예(개인·법인) - 1천만 원 이하 소액체납자 압류재산 매각 유예(1p당 10만 원)	
	3.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에서 중소기업 제품 5% 할인(개인·법인) -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을 온라인 몰에서 5% 할인 구매	
	4. 인천국제공항 방문 시 비즈니스센터 이용(개인) - 사무·휴식 공간 및 납세지원 서비스 제공	
	5. 국립중앙박물관 기획·특별전 관람료 할인(개인)	
	6. 국립세종수목원·국립백두대간수목원·국립생태원·국립해양생물자원관 관람료 1천 원 할인(개인)	
	7. 국세공무원교육원 납세자세법교실 우선 수강(개인)	
	8.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연간 1회 제공(법인)	
	9. 행복한 백화점·판판면세점(개인·법인) -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을 오프라인 몰에서 5% 상당 할인 구매	

자료: 국세청

최근 5년간 세금포인트 부여 및 사용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기준 개인에 대하여는 98억 5,100만점이 부여되었는데 이 중 0.59%인 5,800만점이 사용되었고, 법인에 대하여는 9억 2,000만점이 부여되었는데 이 중 2.07%인 1,900만점이 사용되는 등 그 이용실적이 매우 저조함.

[연도별 개인 및 법인 납세자의 세금포인트 부여 및 사용 현황]

(단위: 백만점,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개인	부여 포인트(A)	5,900	6,663	7,431	8,768	9,851
	사용 포인트(B)	31	36	42	49	58
	사용률(B/A)	0.53	0.54	0.57	0.55	0.59
법인	부여 포인트(A)※	558	626	694	772	920
	사용 포인트(B)	10	13	14	17	19
	사용률(B/A)	1.79	2.08	2.02	2.20	2.07

※ 법인은 부여연도 기준 최근 5개년간 누계 실적(5년 경과시 포인트 소멸)
자료: 국세청

이에 대하여 국세청은 세금포인트 이용실적이 낮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납부기한 등의 연장시 납세담보제공 면제에 국한되어 있던 사용처를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확대[206]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3년간 사용처별 세금포인트 사용 실적 현황을 보면,

2023년 연간 기준으로 납세담보면제 10,605,000점, 쇼핑몰 10,748점, 소액체납자 재산 매각유예 769점, 비즈니스센터 1,230점, 납세자 세법교실 우선수강 4,827점, 국립중앙박물관 7,790점, 국립세종수목원 등 2,535점,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411점, 국립생태원 등 77점 등으로, 2020년부터 확대되기 시작한 사용처에 대한 세금포인트 사용실적이 28,387점이며 그 실적이 전반적으로 매우 저조한 실정임.

206) 국세청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 연혁
(기존) 납세유예 신청시 최대 5억원까지 납세담보 면제 → (2020년 8월) ①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에서 중소기업 제품 5% 할인 구매, ② 1천만원 이하 소액체납자 재산 매각유예, ③ 인천국제공항 방문시 비즈니스센터 이용, ④ 국세공무원교육원 운영 납세자세법교실 우선 수강 → (2022년 3월) ① 국립중앙박물관 기획·특별전시 관람료 10% 할인, ② 국립세종·백두대간수목원 입장료 1천원 할인 → (2023년 5월)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연간 1회 무상 이용 → (2023년 9월) ① 국립생태원·국립해양생물자원관 관람료 1천원 할인, ② 행복한 백화점·판판면세점에서 중소기업 제품 5%상당 할인 구매 → (2024년 5월) 경주 유료 사적지 10곳 입장료 1천원 할인

[최근 3년간 사용처별 세금포인트 사용 실적 현황]

(단위 : 건, 점)

사용처	2021년		2022년		2023년	
	건수	포인트	건수	포인트	건수	포인트
납세담보면제	5,863	7,193천	6,249	9,379천	7,054	10,605천
쇼핑몰	7,412	8,786	6,001	7,149	8,414	10,748
소액체납자 재산 매각유예	6	352	1	37	286	769
비즈니스센터	28	140	148	740	246	1,230
납세자 세법교실 우선수강	1,073	3,219	1,965	5,895	1,609	4,827
국립중앙박물관	-	-	980	2,940	2,896	7,790
국립세종수목원·국립백두대간수목원	-	-	414	1,242	1,001	2,535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	-	-	-	12	411
국립생태원·국립해양생물자원관	-	-	-	-	77	77
합계	14,382	7,206천	15,758	9,397천	21,595	10,633천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이처럼 세금포인트 사용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홍보 부족으로 납세자의 세금포인트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는 점과 실질적으로 세금포인트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가 매우 부족하여 포인트 사용 기회가 많지 않다는 점을 꼽을 수 있음.

국세청은 세금포인트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2022년까지 1,100만원에 불과하던 홍보예산을 2023년 1억원, 2024년 2억원까지 증액하였는데, 2023년에는 지하철역과 버스 배너 등을 중심으로 홍보를 실시하였고, 2024년에는 TV와 유튜브 등을 중심으로 홍보를 실시할 계획임.

그러나 이처럼 홍보매체를 다양화하여 일반 국민들의 매체 접점을 확대하는 것은 홍보 효과를 강화하는 데 일정 정도 기여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현실적으로는 현시된 정책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매체의 다양성을 확대하는 것보다 실효성 있는 홍보수단에 선택적 집중을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국민비서(구삐)[207]와 같은 행정부 통합서비스와 연계하여 세금포인트 제도

207) 행정안전부가 2021년 3월에 개통한 서비스로, 인공지능(AI) 기술 기반으로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네이버

알림 서비스를 개개인에게 제공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한편, 국세청이 세금포인트 제도를 운영한지 20년이 경과하였고 법인에 비하여 개인납세자에게 부여되는 세금포인트가 10배 이상 많지만, 개인납세자가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는 납세담보면제, 소액체납자 재산 매각 유예, 온라인 쇼핑몰, 비즈니스센터, 박물관, 수목원(생태원 포함), 납세자 세법교실 우선수강, 백화점(면세점 포함), 경주 유적지 등 9개 유형(21개소)에 불과함.

따라서 국세청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료를 세금포인트로 대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비롯하여 개인납세자가 실생활에서 세금포인트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사용처를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할 필요가 있음.

결론적으로 건전한 납세 문화의 조성이라는 무형의 사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세금포인트 제도를 계속 유지시킬 필요성은 인정되나, 개인별로 제공되는 누적 세금포인트 안내, 유용한 사용처의 확대 등과 같이 동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음.

등 국민이 익숙한 민간채널을 통해 다양한 생활밀착형 정보를 안내하고, 서비스 신청·수수료 납부 등 후속업무까지 볼 수 있게 한 통합서비스

(9)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 사업의 개선방안 마련 필요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 개인납세국)

< 현 황 >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은 세법지식이 부족하고 세금 신고방법 등을 모르는 납세자가 원활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각 세무서에 위탁인력을 배치하여 납세자에게 전자신고 및 전자세금신고서 관련 상담 및 교육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민간위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액 일반용역비로 편성되어 있음.

2023년도 예산 27억 9,800만원 중 27억 3,900만원을 집행하고 5,9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3년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3134-300)	2,798	2,798	-	-	-	2,798	2,739	-	59	3,413

자료: 국세청

< 검토의견 >

국세청은 세금신고 취약계층이 더 많은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위탁인력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 사업」은 '국민참여예산[208]' 사업으로서 2019년 4월부터 최초로 시행되었으며, 세금 신고방법에 대한 상담·안내 수요가 많은 세무서 60곳을 선별하여 세무서별 각 1~3명의 위탁인력을 배치함으로써 세무서를 방문한 납세자의 세금신고에 관한 '상담·안내'와 개인사업자 등의 세금신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음.

208) 재정의 민주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 심사,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 (「국가재정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근거)

동 사업에 따른 '납세자에 대한 상담·안내'는 2023년 48만 367건(전자신고 32만 1,344건과 전자세금계산서 8만 7,549건, 기타 7만 1,474건)을 기록하는 등 제도 도입 첫 해를 제외하고는 연간 50만건 정도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음.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 사업 중 '상담·안내' 실적]

(단위: 건)

구 분	합 계	전자신고	전자세금계산서	기타*
2019년(4월~)	282,710	182,163	31,921	68,626
2020년	522,823	362,890	52,805	107,128
2021년	533,027	346,297	66,770	119,960
2022년	559,242	366,965	73,577	118,700
2023년	480,367	321,344	87,549	71,474
합 계	2,378,169	1,579,659	312,622	485,888

* 홈택스이용방법, 현금영수증, 원천세 신고 방법 등 분류항목 외 상담 건수
자료: 국세청

'납세자에 대한 교육'은 신청자에 대하여 홈택스 전자신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2023년의 경우 정기교육을 21회, 화상교육을 184회 실시하였음.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정기교육을 전면 중단하고 화상교육을 전환하였다가 2023년부터 다시 정기교육을 실시한 데 따른 것임.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 사업 중 '교육' 실적]

(단위 : 회, 명)

구 분	합 계		정기(집합)교육		화상교육*	
	횟수	참석인원	횟수	참석인원	횟수	참석인원
2019년 (4월~)	588	4,374	588	4,374	-	-
2020년	101	950	33	430	68	520
2021년	280	4,217	-	-	280	4,217
2022년	186	2,180	-	-	186	2,180
2023년	205	5,352	21	393	184	4,959
합 계	1,360	17,073	642	5,197	718	11,876

* 부가세 전자신고방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신규사업자를 위한 세금교실 등을 주제로 '20년 1월 코로나로 집합교육 중단 후 '20년 9월부터 화상교육 병행 실시 중
자료: 국세청

그런데 동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첫째, 국세청은 세금신고 취약계층이 더 많은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사업의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 사업은 납세자에 대한 상담·안내 및 교육을 통해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여력이 부족한 영세·신규 사업자와 고령층 디지털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있으나,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동 사업에 따른 위탁인력이 선별된 일부 세무서에만 배치되므로 납세자 입장에서는 균등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으며, 특히 납세환경이 우수한 수도권 중심으로 운영되어 재정사업 혜택의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209)210)]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2024년도 동 사업의 예산은 6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세청은 2024년부터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소속 세무서 10곳에 추가로 위탁인력을 배치하여 사업을 확대 시행 중임.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센터 조직체계]



그러나 현재 위탁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60개 세무서는 전국 세무서 133곳 중 45.1% 수준에 불과하여 전국 세무서 기준 54.9%에 속한 지역에 거주하는 납세자는 여전히 동 사업에 따른 세금신고 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음.

209) 기획재정위원회 결산 예비심사검토보고 (2021, 20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검토보고 (2023) 등
210) 기획재정위원회는 2023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전국적 사업 시행과 상담·안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52억 5,000만원을 증액의결하였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해당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바 있음.

또한, 2024년 기준 서울청은 79%(28개 중 22개), 중부청은 60%(25개 중 15개), 인천청은 87%(15개 중 13개)에 해당하는 세무서에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반면, 신규 배치지역인 대전청은 12%(17개 중 2개), 광주청은 13%(15개 중 2개), 대구청은 14%(14개 중 2개), 부산청은 21%(19개 중 4개)에 해당하는 세무서에만 서비스가 지원되고 있어 여전히 지역별 불균형이 심한 상황임.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 위탁인력 배치 현황]

연도	구분	합계	사업본부	서울청	중부청	인천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2019년	세무서	54개	-	28개	15개	11개	-	-	-	-
	정원	125명	10명	60명	31명	24명	-	-	-	-
2020년	세무서	49개	-	22개	15개	12개	-	-	-	-
	정원	100명	7명	46명	25명	22명	-	-	-	-
2021년	세무서	49개	-	22개	15개	12개	-	-	-	-
	정원	100명	7명	46명	25명	22명	-	-	-	-
2022년	세무서	50개	-	23개	16개	11개	-	-	-	-
	정원	100명	7명	45명	27명	21명	-	-	-	-
2023년	세무서	49개	-	23개	14개	12개	-	-	-	-
	정원	100명	7명	45명	25명	23명	-	-	-	-
2024년	세무서	60개	-	22개	15개	13개	2개	2개	2개	4개
	정원	120명	7명	42명	27명	24명	4명	4명	4명	8명

자료: 국세청

[2024년 기준 지역별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 현황]

구분	서울청	중부청	인천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관할 세무서 수(A)	28개	25개	15개	17개	15개	14개	19개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 세무서 수(B)	22개	15개	13개	2개	2개	2개	4개
세금신고지원 세무서 비율 (B/A)	79%	60%	87%	12%	13%	14%	21%

납세자 세금신고지원 사업의 목적이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여력이 부족한 영세·신규

사업자와 고령층 디지털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세금신고 취약계층이 더 많고 납세환경이 열악한 비수도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둘째, 국세청은 세금신고지원 사업의 실태점검 및 평가와 함께 위탁인력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민간위탁은 단순한 사실행위와 민간에 맡겨 처리하더라도 객관성이 확보되는 경제적 능률성이 중시되는 사무 및 민간의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사무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하는데, 세금신고지원 사업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로서 지원인력의 세무 관련 전문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해 국세청은 납세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도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절차적인 지원을 하는 상담업무로서 전문적인 세무 관련 지식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세금신고를 지원하는 사업은 본래 국세청이 직접 수행해야 할 업무로서 위탁인력의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아 제대로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세청 직원의 민원업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오히려 사업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또한, 2022년부터 동 사업은 프로그램 성과지표에서 제외되어 민원상담과 교육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국세청은 동 사업의 실태점검 및 평가와 함께 위탁인력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0) 근로·자녀장려세제 관련 홍보예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 필요(근로·자녀장려세제 운영, 복지세정관리단)

< 현 황 >

「근로·자녀장려세제 운영」은 저소득가구(근로소득·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에 대한 근로유인 및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수급대상자가 장려금을 원활하게 수급할 수 있도록 제도홍보·신청안내·결정통지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액은 94억 200만원이며, 87억 3,300만원이 집행되었고 6억 6,9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3회계연도 근로·자녀장려세제 운영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근로·자녀장려세제 운영(3135-300)	9,402	9,402	-	-	-	9,402	8,733	-	669	5,779

< 검토의견 >

국세청은 홍보 매체별 비중 조정 등을 포함한 홍보예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홍보계획을 재수립할 필요가 있음.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근로장려금)과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를 지급하는 자녀장려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근로장려금은 2009년부터, 자녀장려금은 2015년부터 지급되기 시작한 이래 지급요건의 완화 또는 지급대상의 확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국세청은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장려금 지급대상자의 수급을 독려하기 위하여 매년 TV, 라디오, SNS(페이스북·트

위터), 지하철·버스 등 다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한 홍보를 실시하고, 장려금 신청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향후 제도 및 집행업무 개선에 반영하기 위한 만족도 조사[211]를 함께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3년간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장려세제 홍보 경험 여부에 관한 조사에 대하여 '있다'는 답변을 한 비율이 각각 28.7%(2021년), 33.7%(2022년), 34.4%(2023년)에 불과하고, 장려세제 홍보매체를 경험해 본 응답자에게 실시한 인식 홍보매체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국세청 SNS와 유튜브를 통한 인식 비율이 높아지는 반면, TV와 라디오를 통한 인식 비율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임.

[2021~2023년간 실시한 만족도 조사결과 중 인식 홍보매체 현황]

연도	장려세제 홍보 경험 여부		인식 홍보매체	
	있다	없다		
2021	28.7%	71.3%	인터넷	64.3%
			TV	**24.9%**
			홍보 인쇄물	13.1%
			다중이용시설(버스·지하철·대형마트 등)	6.4%
			라디오	**2.6%**
			기타	8.4%
2022	33.7%	66.3%	국세청 SNS(블로그, 페이스북 등)	41.2%
			유튜브	29.9%
			TV	**20.0%**
			배너	10.9%
			홍보 인쇄물	10.4%
			다중이용시설(버스·지하철·대형마트 등)	5.6%
			라디오	**2.3%**
			기타	6.5%
2023	34.4%	65.6%	국세청 SNS(블로그, 페이스북 등)	44.8%
			유튜브	28.5%
			TV	**12.5%**
			홍보 인쇄물	11.8%
			배너	10.1%
			다중이용시설(버스·지하철·대형마트 등)	6.5%
			라디오	**1.3%**
			기타	4.8%
			없다	8.5%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211) 2021~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 종합만족도 조사
- 실시기관: 코리아리서치센터

이러한 조사결과에도 불구하고 2023년 기준 근로·자녀장려세제 관련 홍보비 집행현황을 보면, 만족도 조사결과 해당 매체를 통한 인지도가 낮아지는 추세로 조사된 TV, 라디오를 이용한 홍보비용이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국세청은 홍보 매체별 비중 조정 등을 포함한 홍보예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검토하여 홍보효과를 제고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2023회계연도 근로·자녀장려세제 관련 홍보비 집행현황]

(단위: 천원)

홍보매체	집행액
TV	417,400
라디오	71,257
페이스북	107,000
트위터	12,000
유튜브	166,600
다중이용시설(지하철, 버스 등)	351,360
배너	57,500
기타(콘텐츠, 홍보영상 제작 등)	256,660
합 계	1,439,777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11)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의 연례적 불용 개선 필요 (국제조세관리관실 기본경비, 국제조세관리실)

< 현 황 >

「국제조세관리관실 기본경비」는 외국·외투법인 세원관리 등 국제조세분야 업무를 위한 기본활동 수행, 국제회의 및 OECD 등 국제기구 참가와 외국기관과의 세무협력, 국제조세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등 조직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액은 21억 6,700만원이며, 이 중 21억 2,900만원이 집행되었고 3,800만원이 불용되었음.

이 중 2023년도 포상금 예산액은 2,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900만원 전액 불용되었음.

[2023회계연도 국제조세관리관실 기본경비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 세목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국제조세관리관실 기본경비(7111-253)	2,167	2,167	-	-	-	2,167	2,129	-	38	2,142
- 포상금(310-03)	29	29	-	-	-	29	-	-	29	29

< 검토의견 >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은 최근 5년간 연례적으로 전액 불용되고 있으므로, 국세청은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국세청은 국내자본의 불법적인 해외유출과 역외탈루 세원을 사전에 억제함으로써 역외탈세 방지와 과세형평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212]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음.

21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①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 잔액(해외금융계좌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이하 "계좌신고의무자"라 한다)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거주자(「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른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잔액(현금·주식·채권·펀드·보험·가상자산 등 모든 자산)의 합이 해당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계좌의 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임.

동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성실신고를 장려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제6호[213]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이하 “신고포상금”이라 함) 제도’가 도입되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보한 경우 최고 20억원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 또는 벌금액에 5~15%의 지급률을 곱한 금액[214]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제보자에게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국제조세관리관실 기본경비에 편성한 신고포상금 예산의 연도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2018년 2,700만원을 집행한 이후에는 집행실적이 전무하여 전액 불용되고 있음.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이하 이 장에서 “해외금융계좌 관련자”라 한다)는 해당 해외금융계좌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본다.

1. 해외금융계좌 중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계좌 등 그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2. 해외금융계좌가 공동명의계좌인 경우: 각 공동명의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좌신고의무자 판정기준, 해외금융계좌 잔액 산출방법, 신고방법 및 실질적 소유자의 판단기준 등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3)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⑦ 법 제8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2.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태료금액”이라 한다): 2천만원

214)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지급률

과태료 또는 벌금액	포상금 지급률
2천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	100분의 15
2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3천만 원 + 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5억 원 초과	6천만 원 +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연도별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의무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신고건수	지급건수	예산액	지급액
2018	54	1	43	27
2019	53	-	29	-
2020	64	-	29	-
2021	75	-	29	-
2022	39	-	29	-
2023	25	-	29	-

자료: 국세청

이에 대하여 국세청은 타인의 고액 해외금융계좌 정보에 접근하는 데 한계가 있고 계좌번호·잔액 및 계좌주 성명 등의 중요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외금융계좌의 사본 또는 해외금융기관이 발행한 잔액증명서 제출 등과 같은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제보 건수가 많지 않아 신고포상금이 지속적으로 불용되고 있다는 입장임.

그러나 신고포상금은 해외금융계좌의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기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에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관련 제도를 홍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현재 국세청 뉴스레터,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에 한하여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홍보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집행이 부진한 신고포상금은 제도개선을 통해 집행실적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시행령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 또한 검토할 필요가 있음.

(12) 국외위탁사업에 필요한 국외교육여비의 집행관리 철저 필요 (조사활동지원, 조사국/국제조세관리관실 기본경비, 국제조세관리관실)

< 현 황 >

「조사활동지원」은 엄정한 세무조사를 위해 본청, 지방청 및 세무서에 분야별 전문 조사반을 편성·운영하고 이에 소요되는 활동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 예산현액은 220억 1,200만원이며, 219억 9,900만원이 집행되었고, 2,200만원이 불용되었음.

이 중 2023년도 국외위탁교육 예산은 일반수용비(210-01) 1억 900만원, 국외교육여비(220-03) 1억 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수용비는 전액 집행되었고, 국외교육여비는 1억 700만원 집행되었음.

「국제조세관리관실 기본경비」는 외국·외투법인 세원관리, 해외진출 국내기업 지원, 국제조세기구 참석 등을 위한 기본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액은 21억 6,700만원이며, 이 중 21억 2,900만원이 집행되었고 3,800만원이 불용되었음.

이 중 2023년도 국외위탁교육 예산은 일반수용비(210-01) 1억 3,000만원, 국외교육여비(220-03) 1억 1,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액 집행되었음.

[2023회계연도 조사활동지원 및 국제조세관리관실 기본경비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 세목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조사활동지원 (2131-300)	19,602	19,602	-	2,410	-	22,012	21,990	-	22	16,661
- 일반수용비(210-01) 중 국외위탁교육비	109	109	-	-	-	109	109	-	-	109
- 국외교육여비 (220-03)	108	108	-	-	-	108	107	-	1	108
국제조세관리관실 기본경비(7111-253)	2,167	2,167	-	-	-	2,167	2,129	-	38	2,142
- 일반수용비(210-01) 중 국외위탁교육비	103	103	-	-	-	103	131	-	-	103
- 국외교육여비 (220-03)	110	110	-	-	-	110	110	-	110	110

< 검토의견 >

국세청은 별도의 프로그램인 조사활동지원(2131-302)과 국제조세관리관실 기본경비(7111-253)에서 동일 목적의 국외위탁교육 관련 국외교육여비를 함께 집행하였는데, 향후 이와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국세청은 국제조세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조사활동지원(2131-302) 사업에서는 외국 선진 조사기법 및 조사사례의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국외위탁교육을, 국제조세관리관실 기본경비(7111-253) 사업에서는 국제조세 이론과 제도의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국외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국제조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외위탁교육 사업별 비교]

세부사업	조사활동지원 (2131-302)	국제조세관리관실 기본경비 (7111-253)
구분	국제조사	국제협력
교육목적	- 선진 조사기법과 조사사례 이해를 통한 국제조사 대응 역량강화 및 외국 과세당국과의 조사 협력 증진 - 국제조사 전문가 양성	- 최신 국제조세 이론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세원관리 역량 배양 - 국가 간 조세문제 대응 역량을 갖춘 전문가 양성 - 국제조세 전문가 양성
교육내용	- 최신 국제조세 이론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세원관리 역량 배양 - 국가 간 조세문제 대응 역량을 갖춘 전문가 양성 - 국제조세 전문가 양성	- 국제조세 최신 동향 - OECD 모델조세조약 · 조세조약, 이전가격, 원천징수, 고정사업장 등 - OECD 이전가격지침 · 무형자산, 금융분야 이전가격 사례연구 - BEPS 프로젝트 논의 내용 - 해외 세제개혁 동향
차이점	국제조세 과세 전 과정에 초점	국제조세 과세 후 과정에 초점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조사활동지원 사업과 국제관리관실 기본경비 사업에서 실시한 2023년도 국외위탁교육 현황을 살펴 보면 각 사업별로 3건씩 실시하였는데, 그 중 영국 회계법인에 대한 국외위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조사활동지원(2131-300) 사업에서 국외위탁교육비 3,400만원, 국외업무여비 4,700만원과 국제조세관리관실 기본경비 사업(7111-253)에서 국외업무여비 2,000만원 등 총 1억 100만원을 집행하였음.

[2023년도 조사활동지원 및 국제조세관리관실 기본경비의 국외위탁교육 실시 현황]

(단위: 명, 백만원)

구분	교육기관	교육기간	인원	교육내용	국외위탁교육비 집행액	국외업무여비 집행액
조사활동 지원 (2131-300)	**영국 Andersen**	**9.11~9.15**	**15**	**EU 중심 조세정책 및 조세조약 남용 대응 전략**	**34**	**47**
	LA KPMG	9.18~9.22	15	미국의 이전가격, 디지털세 등 글로벌 국제조세 이슈	37	58
	베트남 CTAC	11.27~11.30	12	베트남 진출 기업관련 기본세제 개관 및 다양한 국제조세 이슈	38	2
국제조세 관리관실 기본경비 (7111-253)	미국 E&Y	9. 4~9. 8	15	이전가격 최신동향 및 미국의 조세제도	44	65
	영국 Andersen	**9.11~9.15**	**15**	**EU 중심 조세정책 및 조세조약 남용 대응 전략**	-	**20**
	싱가포르 PWC	12.4~12.8	8	이전가격 세제연구 및 국제조세 최신사례	44	25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이에 대하여 국세청은 조사활동지원 사업에서 추진된 조사국 주관의 국외위탁교육 수요가 배정된 예산보다 많아 국제조세관리관실 예산의 일부가 지원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적절한 이·전용 절차 없이 동일한 목적의 국외위탁교육을 다른 세부사업에서 각각 집행하는 것은 예산을 사업별로 분리하여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 예외적으로 이·전용할 수 있도록 한 「국가재정법」 제45조[215]의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것임.

또한, 행정부가 사업의 성과와 책임을 확인하기 용이하록 '프로그램 예산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세출예산을 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으로 구분하여 편성·집행하고 있다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에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215)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국외위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이·전용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 동일한 세부사업에서 실시하거나, 예산의 규모에 맞게 해당 사업을 축소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므로, 국세청은 국외위탁교육에 필요한 국외업무여비 등 관련 예산의 집행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추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관세청 소관

가. 결산 개요

(1) 세입 결산

2023회계연도 관세청 소관 세입 수납액은 예산(946억 2,400만원) 대비 196억 900만원(△20.8%) 과소수납된 750억 1,500만원으로, 전년대비 167억 9,800만원(28.8%)이 증가하였음.

주요 증가 사유는 벌금 및 과태료 수납액이 18억 1,400만원, 면허료 및 수수료 수납액이 146억 1,300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임.[216]

2023년도 관세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수납 내역을 살펴보면, 관유물대여료 3억 4,200만원, 벌금 및 몰수금 202억 9,300만원, 변상금 및 위약금 2,000만원, 가산금 16억 7,500만원, 기타경상이전수입 6억원, 면허료 및 수수료 515억 3,900만원, 잡수입 5억 3,400만원, 고정자산 매각대 1,100만원 등임.

[2023회계연도 관세청 세입결산 개요]

(단위: 억원, %)

구 분	2022년 결산(A)	2023년			증감 (B-A)	증감율 (B-A)/A
		예산액		결산(B)		
		본예산	추경예산			
○ 재산수입 (관유물대여료 등)	3.6	3.4	3.4	3.4	△0.2	△5.6
○ 경상이전수입 (가산금, 벌금·과태료 등)	203	186	186	226	23	11.3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면허료및수수료 등)	375	757	757	521	146	38.9
○ 관유물매각대 (고정자산매각대)	0.3	0.06	0.06	0.1	△0.2	△66.7
합 계	582	946	946	750	168	28.9

216) 관세청이 징수하는 금액 중 관세와 수입 관련 내국세는 기획재정부의 일반회계 세입으로 계상되고, 벌금·몰수금·가산금 등 그 밖의 세외수입이 관세청의 세입이 됨.

(2) 세출 결산

2023년 관세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6,402억 4,900만원이고,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8억 5,900만원이 포함된 6,441억 800만원이며, 지출액은 6,221억 7,3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6.6%의 집행률을 보임.

2023년도 이용액은 4억 3,200만원으로 주된 사유는 민간인 밀수신고 포상금 부족분 충당이며, 전용액은 27억 3,800만원으로 주된 전용사유는 전국세관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분 충당 13억 2,300만원, 청년인턴 일용임금 및 고용부담금 부족액 충당 8억 7,000만원, 소송 패소 배상금 부족분 충당 4억 4,500만원, 예산성과금 지급을 위한 포상금 충당 4,400만원 등임.

불용액은 전년도 불용액 198억 4,400만원 대비 △25.6% 감소한 147억 5,900만원으로, 이는 인건비 및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138억 8,000만원, 국내여비 등 예산절감 8억 7,900백만원에 기인함.

[2023회계연도 관세청 세출결산 개요]

(단위: 억원, %)

구 분	2022년 결산(A)	2023년			증감 (B-A)	증감율 (B-A)/A
		예산액		결산(B)		
		본예산	추경예산			
○ 인건비	3,220	3,405	3,405	3,331	111	3.4
○ 기본경비	309	330	330	345	36	11.7
○ 사업비	2,364	2,667	2,667	2,546	182	7.7
합 계	5,893	6,402	6,402	6,222	329	5.6

(3) 세입·세출 결산 총괄표

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결산	2022 결산	2023년				2024 예산
			예산		결산(B)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A)			
총 계	38,602	58,217	94,624	94,624	75,015	79.3	120,072
51항 관유물 대여료	340	343	334	334	342	102.4	393
토지대여료(51-511)	34	37	40	40	81	202.5	43
건물대여료(51-512)	306	306	294	294	261	88.8	350
54항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7	11	5	5	2	40.0	8
기타재산이자수입(54-546)	7	7	5	5	2	40.0	8
기타재산이자외수입(54-547)	-	4	-	-	-	-	-
56항 벌금 및 몰수금	10,942	17,434	16,779	16,779	20,293	120.9	15,984
벌금및과료(56-561)	1,720	2,166	3,790	3,790	3,980	105.0	2,432
몰수금 및 추징금(56-562)	1,223	1,412	2,485	2,485	1,539	61.9	1,793
과태료(56-563)	5,279	10,421	7,426	7,426	10,780	145.2	8,892
징계부과금(56-564)	-1	4	10	10	1	10.0	10
과징금(56-565)	2,720	3,431	3,068	3,068	3,993	130.1	2,857
57항 변상금 및 위약금	5	201	39	39	20	51.3	39
위약금(57-572)	5	201	39	39	20	51.3	39
58항 가산금	1,473	1,972	1,356	1,356	1,675	123.5	1,319
가산금(58-581)	1,473	1,972	1,356	1,356	1,675	123.5	1,319
59항 기타 경상이전수입	574	717	430	430	600	139.5	700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	574	717	430	430	600	139.5	700
65항 면허료 및 수수료	24,633	36,926	74,913	74,913	51,539	68.8	101,020
면허및수수료(65-651)	24,633	36,926	74,913	74,913	51,539	68.8	101,020
69항 잡수입	510	584	762	762	534	70.1	603
기타잡수입(69-691)	510	584	762	762	534	70.1	603
71항 고정자산 매각대	117	28	6	6	11	183.3	6
기계기구매각대(71-712)	117	26	6	6	4	66.7	6
기타고정자산매각대(71-713)	-	2	-	-	7	-	-

나)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결산	2022 결산	2023년				2024 예산
			예산		결산(B)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총 계	563,073	589,269	640,249	640,249	622,173	97.2	662,375
1100 수출입통관	29,426	41,641	54,091	54,091	52,765	97.5	31,499
1131 수출입통관 및 물류촉진지원	22,887	41,641	54,091	54,091	52,765	97.5	31,499
수출입통관 촉진 및 안전관리 (1131-301)	8,114	8,916	9,939	9,939	9,563	96.2	2,735
특송화물 통관지원 (1131-302)	5,225	6,007	6,315	6,315	6,756	107.0	5,439
인천항 세관 통합검사장 장비 도입 (1131-303)	1,636	14,351	25,175	25,175	24,252	96.3	-
수출입화물 검사지원 (1131-304)	7,912	7,321	6,741	6,741	6,678	99.1	6,693
공항만 운영지원 (1131-305)	-	5,045	5,921	5,921	5,515	93.1	16,632
1132 FTA 이행	6,539	-	-	-	-	-	-
FTA 이행지원 (1132-303)	6,539	-	-	-	-	-	-
1200 관세심사	5,997	5,756	6,808	6,808	6,284	92.3	6,331
1231 관세탈루심사지원	5,997	5,756	6,808	6,808	5,756	92.3	6,331
관세탈루심사 (1231-300)	3,138	2,093	2,098	2,098	2,050	97.7	2,246
불법위해물품안전관리 (1231-301)	2,360	3,146	4,147	4,147	3,675	88.6	3,623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활동지원 (1231-302)	499	517	563	563	559	99.4	462
1300 밀수조사단속	43,616	9,799	7,621	7,621	7,994	104.2	6,148
1331 밀수단속지원	4,033	9,207	6,880	6,880	7,243	105.3	5,407
밀수단속 (1331-300)	4,033	9,207	6,880	6,880	7,243	105.3	5,407
1332 조사감시선진화	34,766	-	-	-	-	-	-
감시장비 운영관리 (1332-301)	20,253	-	-	-	-	-	-
조사감시장비현대화 (1332-302)	18,404	-	-	-	-	-	-
1333 관세국경위험관리운영	556	592	741	741	701	94.6	741
관세국경위험관리운영지원 (1333-304)	556	592	741	741	701	94.6	741

구 분	2021 결산	2022 결산	2023년				2024 예산
			예산		결산(B)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1400 관세행정 지능정보화	60,649	86,828	87,408	87,408	85,601	97.9	122,273
1441 정보관리 및 정보시스템 수출	60,030	53,656	62,377	62,377	60,086	96.3	79,435
관세행정 정보관리(정보화) (1441-500)	60,030	53,426	61,190	61,190	58,914	96.3	79,148
전자통관시스템 수출지원 (1441-501)	-	230	1,187	1,187	1,172	98.7	287
1442 관세행정연구개발(R&D)	-	4,417	4,584	4,584	4,584	100.0	4,379
관세행정현장맞춤형 기술개발(R&D)(1442-530)	-	4,417	4,584	4,584	4,584	-	3,600
불법 마약류 대응을 위한 현장 기술개발(R&D)(1442-532)	-	-	-	-	-	-	500
스마트 세관 기술지원 (R&D)(1442-533)	-	-	-	-	-	-	279
1443 최첨단장비 도입운영	-	28,755	20,447	20,447	20,931	102.4	38,459
통관감시장비현대화 (1143-300)	-	18,818	10,360	10,360	11,325	109.3	27,039
통관감시장비운영관리 (1443-301)	-	9,937	10,087	10,087	9,606	95.2	11,420
1431 국제교역협력	619	-	-	-	-	-	-
국제협력(1431-350)	619	-	-	-	-	-	-
1500 국제관세협력	7,725	15,452	19,657	19,657	19,246	97.9	21,920
1531 FTA 및 국제협력 지원	-	15,452	19,657	19,657	19,246	97.9	21,920
FTA 및 국제협력 (1531-300)	-	7,771	7,764	7,764	7,643	98.4	2,946
FTA 원산지 위험관리 (1531-300)	-	847	847	847	846	99.9	847
개도국관세행정현대화지원(ODA) (1531-300)	4,725	3,834	8,046	8,046	7,757	96.4	10,890
세관협력기금 출연(ODA) (1531-300)	3,000	3,000	3,000	3,000	3,000	100.0	3,000
한국원산지정보원 지원(출연) (1531-304)	-	-	-	-	-	-	4,237
7100 관세행정지원	405,493	420,310	454,530	454,530	440,269	96.9	462,595
7101 인건비	309,639	318,234	336,360	336,360	329,089	97.8	341,954
인건비(총액인건비대상) (7101-100)	309,639	318,234	336,360	336,360	329,089	97.8	341,954
7111 본청기본경비	11,093	11,656	12,375	12,375	11,893	96.1	12,276
본청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 (7111-200)	5,150	5,081	5,126	5,126	5,022	98.0	5,167
본부기본경비 (7111-250)	4,091	4,751	5,173	5,173	4,912	95.0	5,226

구 분	2021 결산	2022 결산	2023년				2024 예산
			예산		결산(B)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통관국기본경비 (7111-251)	438	338	359	359	356	99.1	339
심사국기본경비 (7111-252)	512	484	527	527	526	99.7	507
조사국기본경비 (7111-253)	380	327	339	339	338	99.8	342
정보데이터정책관기본경비 (7111-254)	308	296	333	333	333	100.0	318
FTA집행기획국 기본경비 (7111-255)	214	-	-	-	-	-	-
국제관세협력국기본경비 (7111-255)	-	379	518	518	406	78.5	377
7118 소속기관기본경비	18,263	18,332	19,725	19,725	21,505	109.0	21,177
소속기관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 (7118-200)	3,169	3,485	3,507	3,507	4,210	120.1	3,374
서울본부기본경비 (7118-251)	2,838	2,835	3,766	3,766	3,998	106.2	3,980
인천공항기본경비 (7118-252)	-	-	-	-	-	-	2,949
부산본부기본경비 (7118-253)	3,792	3,710	3,947	3,947	4,150	105.1	4,003
인천본부 기본경비 (7118-254)	3,875	3,773	4,135	4,135	4,776	115.5	2,077
대구본부기본경비 (7118-255)	1,626	1,553	1,192	1,192	1,157	97.0	1,294
광주본부기본경비 (7118-256)	1,802	1,821	1,914	1,914	1,914	100.0	2,034
중앙관세분석소기본경비 (7118-257)	254	266	294	294	300	102.2	308
관세평가분류원기본경비 (7118-258)	284	253	271	271	278	102.5	350
평택직할 기본경비 (7118-260)	623	636	699	699	721	103.2	808
7131 관세정책지원	29,925	34,445	39,706	39,706	37,184	93.6	42,587
관세행정활동지원 (7131-301)	15,098	16,470	19,266	19,266	18,770	97.4	19,089
관세행정운영지원 (7131-351)	6,454	5,326	5,362	5,362	5,289	98.6	5,362
관세행정인력지원 (7131-352)	8,373	12,649	15,078	15,078	13,126	87.1	18,136

구 분	2021 결산	2022 결산	2023년				2024 예산
			예산		결산(B)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7132 청사확보 및 시설개선	33,573	36,335	45,091	45,091	38,926	86.3	43,368
국제공항만운영지원 (7132-300)	21,334	22,318	22,561	22,561	22,445	99.5	24,783
청사시설관리 (7132-440)	11,866	14,017	10,294	10,294	10,886	105.8	10,294
부산세관 청사개선 (7132-441)	-	-	10,794	10,794	4,154	38.5	6,697
관세행정 안전관리지원 (7132-442)	-	-	1,442	1,442	1,441	99.9	1,594
7140 납세자권익보호	373	378	373	373	372	99.8	333
납세자권익보호 (7140-300)	373	378	373	373	372	99.8	333
7150 송무수행	-	930	900	900	1,299	144.3	900
송무수행 비용지원 (7150-400)	-	930	900	900	1,299	144.3	900
7200 관세인재개발원	10,167	8,849	9,469	9,469	9,392	99.4	10,727
7201 관세인재개발원인건비	3,688	3,706	4,155	4,155	4,000	96.3	4,215
인재개발원인건비 (7201-100)	3,688	3,706	4,155	4,155	4,000	96.3	4,215
7211 관세인재개발원기본경비	858	931	927	927	1,058	114.1	1,061
인재개발원기본경비 (총액인건비) (7211-200)	108	101	117	117	95	81.1	118
인재개발원기본경비 (7211-250)	750	830	810	810	963	118.9	943
7241 관세인재개발원운영	5,621	4,212	4,370	4,370	4,335	99.2	5,451
인재개발원 운영지원 (7241-351)	5,621	4,212	4,370	4,370	4,335	99.2	5,451

나. 검토 의견

(1) 일반사업에 편성된 정보화 사업 예산의 체계적 관리 필요 (총괄)

< 검토의견 >

일반사업에 편성된 정보화 사업 일부가 관세청의 “지능정보화 실행계획”에 누락되었고, 범정부 EA 포털에도 미등록된 시스템이 있는 등 사업관리가 철저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므로, 관세청은 이를 시정하고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정보화 사업”이란 정보를 생산·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효율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해당기관의 정보시스템을 기획·구축·운영·유지관리하기 위한 사업, 공공·민간 정보화 지원 및 정보화 역기능 방지 사업, 기타 정보화 관련 법령[217]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에 포함된 사업 등[218]이 포함됨. 관세청 역시 “정보화 사업”을 관세행정 관련 정보시스템을 기획・구축・운영・유지관리하거나 정보시스템 감리, 전자정부 사업관리의 위탁 등의 사업(관세청 소속・산하기관 및 다른 기관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도 포함)으로 규정[219]하여 관리하고 있음.

정보화 사업은 그 특성상 일반적으로 일반사업에 비해 예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정보시스템의 고도화 및 유지·보수 등을 감안할 때 단년도가 아닌 다년도에 걸쳐 예산이 투입되며, 관련 예산이 한 번 집행되기 시작한 이후에는 이를 조정하거나 예산투입을 갑자기 중단 또는 변경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어 관련 예산의 편성·집행 과정에서 다른 사업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측면이 있음. 이에 정부의 예산안 편성과정에서도 정보화 사업은 별도의 사업유형으로 분류되어 일반사업과 구분되어 심사가 이루어짐[220]. 다만, 실질적으로는 정보화 사업임에도 일반 사업과의 관련성 및 사업 자체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정보화 사업 예산이 아닌 일반 사업으로 편성되는 경우도 있는데,

---

217) 「지능정보화 기본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전자정부법」 등

218)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42

219) **「관세행정 정보화 추진에 관한 훈령」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정보화사업"이라 함은 관세행정 관련 정보시스템을 기획・구축・운영・유지관리하거나 정보시스템 감리,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 등의 사업(관세청 소속・산하기관 및 다른 기관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도 포함한다)을 말한다.

220)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도 「2023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정보화 사업 예산의 편성·집행 관련 사항에 대해 차년도 예산뿐만 아니라 연차별·항목별 상세 투자소요를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포함하여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는 등 정보화 사업의 특성을 감안한 사항을 별도 규정하고 있음.

「2023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이하 “예산안 편성지침)”」은 일반사업에 정보화 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도 예산안 편성지침의 정보화 사업 관련 지침을 따르도록 규정[221]하고 있음.

관세청의 경우도 정보화 사업으로 분류된 「관세행정 정보관리(정보화)」 사업이 아닌, 일반사업에 해당하는 「통관감시장비 현대화」, 「통관감시장비 운영관리」, 「밀수단속」 사업 등에서도 통합항만관리(IN-POSS) 시스템, 디지털포렌식시스템 등 관세행정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운용 및 유지관리 하고 있는데, 2023년 기준으로 관련 예산은 52억 6,300만원, 계약금액 기준으로는 50억 5,800만원에 달하는 등 그 사업의 수 및 관련예산이 적지 않은 수준임.

[관세청 일반사업에 편성된 정보화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시스템	2023년 예산	발주 금액	계약 금액	범정부 EA포털 등록여부
수출입통관 촉진 및 안전관리	여행자 휴대품 모바일 납세 시스템	86	64	64	×
특송화물 통관지원	특송물류센터 자동분류시스템	1,754	1,854	1,632	×
밀수단속	디지털포렌식시스템	1,512	1,511	1,489	×
통관감시장비 현대화	통합항만관리(IN-POSS) 시스템	458	458	428	○
통관감시장비 운영관리	포렌식장비 등 유지보수	102	103	103	-
FTA 및 국제협력	원산지관리시스템	1,011	1,011	1,008	○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활동지원	세계 HS 및 국제 동향 정보제공	340	340	334	○
합 계		5,263	5,341	5,058	-

자료: 관세청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221) 「2023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이하 “예산안 편성지침)”」, p.42

그런데 이와 같이 일반사업으로 편성된 정보화 사업의 예산 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예산안 편성지침 및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하 “예산 집행지침”)」과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첫째, 상기 일반사업에 편성된 정보화 사업들은 관세청의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아 해당 사업들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및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의 점검·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정보화 사업의 특성을 감안한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예산안 편성지침에서는 각 부처별 정보화 사업을 과기부에 제출하는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매년 해당 부처의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차년도 실행계획을 과기부 장관에게 제출하며, 과기부 장관은 제출된 실행계획을 점검·분석하여 의견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시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안을 편성할 때 해당 의견을 참작하도록 규정[222]하고 있음.

그러나 관세청의 「2023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보면 일반사업에 편성된 정보화 사업과 관련된 사항이 누락되어 있어 동 사업에 대한 과기부 장관의 점검 및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고 집행되고 있음.

또한, 여행자 휴대품 모바일 납세 시스템은 유지보수 예산조차 별도로 편성되지 않았고, “통합항만관리(IN-POSS) 시스템 고도화 사업” 은 정보화 사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공사비 비목(420-03)[223]으로 편성·집행되는 등 일반 사업에 편성된 정보화 사업들에

---

22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생략)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다음 해의 실행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동으로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 실적 및 실행계획과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실행계획을 점검·분석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점검·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그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실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223) 통상적으로 정보화 사업의 예산은 SW 개발 등은 일반연구비(260-01), HW 및 SW 구입은 자산취득비(430-01) 또는 임차료(210-07)로 구성됨.

대한 관리가 면밀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음.

둘째, 예산집행지침의 규정과 달리 “범정부 정보기술 아키텍처(EA) 포털”에 등록되지 않은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정보기술 아키텍처(EA: Enterprise Architecture)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와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 등을 통하여 구성요소들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을 의미함[224]. 예산안 편성지침에서는 불필요한 예산의 중복집행 및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중앙관서는 구축·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을 범정부 EA포털에 등록”하여야 하고 이를 활용하여 사업간 중복을 검토한 후 중복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산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청 일반사업에 편성된 정보화 사업 중 “특송물류센터 자동분류 시스템” 등은 범정부 EA 포털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채 운용되고 있음. 이와 같은 시스템 운용은 예산안 편성지침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추후 예산의 불필요한 중복편성 및 집행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를 시정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관세청은 이와 같은 문제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세청 소관 일반사업에 편성된 정보화 사업들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에 포함하도록 하여 정보화 사업 예산의 특성을 감안한 예산 편성·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정보화 사업을 범정부 EA 포털에 등록하도록 하는 등 정보화 사업의 관리 및 예산 편성·집행을 보다 면밀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절차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24) **「전자정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정보기술아키텍처”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 등을 통하여 구성요소들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

(2) 과태료 및 과징금 수납률 제고 필요(과태료·과징금, 심사국)

< 현 황 >

과태료는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 위반 시 부과되며, 2023회계연도에는 징수결정액 644억 3,300만원 중 107억 8,000만원이 수납되었고, 535억 1,500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불납결손액은 1억 3,800만원 발생하였음.

[2023년 과태료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목명	2023년								
	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예산 현액(B)	징수 결정액(C)	수납액 (D)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D/C)
	본예산	추경(A)							
과태료	7,426	7,426	-	7,426	64,433	10,780	53,515	138	16.7

과징금은 「관세법」 제178조에 따라 특허보세구역 반입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및 「대외무역법」 제33조의2에 따라 원산지표시 위반 시 부과되며, 2023회계연도에는 징수결정액 73억 1,800만원 중 39억 9,300만원이 수납되었고, 33억 1,900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불납결손액은 600만원임.

[2023년 과징금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목명	2023년								
	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예산 현액(B)	징수 결정액(C)	수납액 (D)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D/C)
	본예산	추경(A)							
과징금	3,068	3,068	-	3,068	7,318	3,993	3,319	6	54.6

< 검토의견 >

관세청의 과태료 및 과징금 징수결정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납실적은 이에 미치지 못하여, 미수납액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관세청은 법집행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수납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최근 5년간 관세청의 과태료 및 과징금의 징수결정액은 대체로 증가하고 있으나 수납실적은 징수결정액에 미치지 못하여 미수납액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과태료의 미수납액은 2019년 88억 9,700만원에서, 2021년 349억 9,200만원, 2023년 535억 1,500만원까지 증가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2019년도 48.9%에서 2021년 12.7%까지 떨어졌다가, 2023년에는 16.7%에 달하였음. 이는 2021년 단일 고액 과태료 부과 건(「외국환거래법」 위반 205억원)이 체납되어 이후의 징수결정액이 대폭 증가하였기 때문임.

[최근 5년간 과태료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19	10,322	10,322	17,532	8,573	83.1	48.9	8,897	62
’20	8,978	8,978	16,061	5,280	58.8	32.9	10,644	137
’21	9,247	9,247	41,469	5,279	57.1	12.7	34,992	1,198
’22	4,813	4,813	54,887	10,421	216.5	19.0	44,273	194
’23	7,426	7,426	64,433	10,780	145.2	16.7	53,515	138

과징금의 미수납액은 2019년 12억 2,800만원에서 2021년 29억 3,900만원, 2023년 33억 1,900만원까지 증가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2019년도 73.2%에서 2021년 45.8%까지 떨어졌다가, 2023년에는 54.6%에 달하였음.

[최근 5년간 과징금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19	2,541	2,541	4,598	3,364	132.4	73.2	1,228	5
‘20	2,541	2,541	3,198	1,641	64.6	51.3	1,542	15
‘21	2,541	2,541	5,933	2,720	107.0	45.8	2,939	274
‘22	2,617	2,617	6,711	3,431	131.1	51.1	3,078	203
‘23	3,068	3,068	7,318	3,993	130.1	54.6	3,319	6

미수납액의 체납 발생 경과기간별 현황을 살펴보면, 2년 이상 3년 미만의 체납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① 과태료의 경우 미수납액 535억 1,500만원 중 2년 이상 3년 미만 체납액이 221억 8,200만원으로 41.5%를, ② 과징금의 경우 미수납액 33억 1,900만원 중 2년 이상 3년 미만 체납액이 14억 7,200만원으로 44%를 차지하고 있음. 이는 2021년 이후 수납률이 저하된 것이 주요요인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임.

한편, 5년 이상의 장기체납의 경우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체납 발생 기간이 장기가 될수록 체납자의 자산은닉, 거소불명 등으로 징수가 어려워지는 점이 있기 때문임.

[체납 발생 경과기간별 미수납액 현황]

('23.12.31.기준, 단위: 건, 백만원)

경과기간	과태료		과징금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1,706	53,515	216	3,319
1년 미만	745	11,895	109	784
1년 이상~2년 미만	314	11,070	28	360
2년 이상~3년 미만	108	22,182	29	1,472
3년 이상~4년 미만	106	2,660	12	127
4년 이상~5년 미만	103	828	9	5
5년 이상	330	4,880	29	571

한편, 미수납액을 미수납 사유별로 살펴보면, 징수유예 결정이 있었거나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이미 납기가 지났음에도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비롯한 징수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체납정리중'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2023년 과태료 및 과징금 미수납 사유별 금액]

('23.12.31.기준, 단위: 백만원)

미수납 사유	계	과태료	과징금
합계	56,834	53,515	3,319
징수유예	652	628	24
납기미도래	6,315	6,305	10
정리유예	444	362	82
체납자무재산 등	24,885	24,592	293
체납정리중	24,537	21,627	2,910

관세청은 2021년 불법 외환거래 집중 단속 및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강화에 따라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액이 증가하였고, 당시 발생한 체납이 현재까지 누적되어 수납률이 저조하다는 설명과 함께, 2021년 및 2022년「과태료 및 과징금 수납률 제고방안」을 시행한 바 있고, 추후에도 체납관리 강화를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임.

그러나 과태료와 과징금은 법률 위반 및 영업자의 의무 미이행 등에 따라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로서, 정부의 세입 재원으로서의 의미 외에도 법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관세청은 수납 관리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음.

특히, 체납 발생 기간이 경과할수록 자산은닉, 거소불명 등으로 징수가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관세청은 납부독려, 체납자 재산조사 및 현장조사, 압류 조치 등 적시성 있는 체납관리를 통해 체납이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3)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과태료 감경제도 폐지 검토 필요(과태료, 심사국)

< 현 황 >

과태료는 「관세법」,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법률 위반 시 부과되는 것으로서, 2023년 징수결정액은 644억 3,300만원이고 수납액은 107억 8,0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16.7%임.

[2023회계연도 과태료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목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예산 현액(B)	징수 결정액(C)	수납액 (D)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A)							
과태료	7,426	7,426	-	7,426	64,433	10,780	53,515	138	8,892

< 검토의견 >

관세청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공인제도의 도입취지 등을 고려하여 AEO업체에 대한 과태료 감경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관세청은 「관세법 시행령」 및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에 따라 현재 AEO업체에 대하여 「관세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최대 50%까지 감경하고 있음[225].

---

225) **「관세법 시행령」[별표5],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라. 부과권자는 제2호 및 제3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과태료를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법 제255조의2제1항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받은 경우: 해당 업체의 등급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 ② 「관세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라목1)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에 적용하는 감경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277조의2제5항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A등급: 100분의 20
2. AA등급: 100분의 30
3. AAA등급: 100분의 50

AEO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감경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기준 222개의 AEO업체[226]에 대하여 2,116건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는데 법위반에 따른 4억 5,996만원의 과태료 중에서 1억 66만원의 과태료가 AEO 등급에 따라 감경되었음.

[2023년 AEO업체 과태료 부과·감경 현황]

(단위: 개, 건, 만원)

구분	업체수	과태료 부과건수	위반에 따른 과태료금액	AEO 등급에 따른 감경액*
AEO AAA등급 업체	9	34	595	298
AEO AA등급 업체	23	350	6,885	2,065
AEO A등급 업체	190	1,732	38,516	7,703
합계	**222**	**2,116**	**45,996**	**10,066**

* AAA등급은 50%, AA등급은 30%, A등급은 20% 감경
자료: 관세청

AEO제도는 전세계 교역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국제무역환경하에서 통관의 안전성과 신속성을 조화롭게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9년 도입된 제도로서, 법규준수·내부통제시스템·재무건전성·안전관리 분야에서 관세청이 정하는 공인기준을 충족하는 등 관세행정에 대한 자발적 협력의지가 있는 업체들에 대하여 검사절차 및 통관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민·관 협력 촉진제도임.

그런데 이와 같은 혜택 중 AEO업체에 대한 과태료 감경 혜택은 AEO제도의 도입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므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첫째, AEO제도의 도입취지를 고려할 때 현행법령이 AEO업체에 대하여 「관세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최대 50%까지 일반적으로 감경하고 있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AEO제도는 준법성이 우수한 업체를 우대함으로써 자율적으로 업체의 법령준수 동기를 제고하려는 제도이고, 지원대상의 준법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경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제도의 본질적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226) 참고로, 2023년 기준 전체 AEO업체 수는 917개임(AAA등급: 37, AA등급: 134, A등급: 746)

특히, 법규준수도 평가점수(100점 만점)에 따라 업체별로 A(80점 이상), AA(90점 이상), AAA(95점 이상)의 등급이 부여되는데, 법규준수도 평가점수가 높은 구간에 포함되는 업체에게 오히려 과태료 감경률을 높게 설정(A등급 : 20%, AA등급 : 30%, AAA등급 : 50%)하는 것은 모순되는 측면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관세청은 2009년 AEO제도 도입 시 제도 활성화를 위해 「WCO SAFE FoS」[227](2007버전)의 내용[228]을 참고하여 AEO업체에 대한 과태료 감경 규정을 도입·적용해오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2018년 「WCO SAFE FoS」이 개정된 이후 동 내용은 삭제된 것으로 알려짐[229].

둘째, AEO업체에 대한 과태료 감면 혜택의 법적 근거 역시 미흡한 측면이 있음.

현행 「관세법」은 AEO업체에 대하여 '통관절차 및 관세행정상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은 AEO업체에 대한 과태료의 일반적 감경규정을 두고 있음[230].

그런데 관세행정 절차 간소화와 같은 혜택을 넘어 법률상 의무 위반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태료를 일반적으로 감경하는 것까지 '관세행정상의 혜택'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다소 의문의 여지가 있음.

---

227) 「WCO SAFE FoS(Framework of Standard)」는 2005년 세계관세기구(WCO) 총회에서 승인한 국제무역의 표준규범으로 국제무역의 안전 및 원활화를 위한 통합표준의 정립, 세관 간 협력, 세관과 민간기업 간 협력, AEO 제도(AEO 조건, 의무사항 및 혜택 등) 등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228) **Benefits to the Authorized Economic Operator(AEO 혜택)**

D. First consideration for participation in any new cargo processing programmes(화물처리 신규제도에 우선참여대상으로 고려)

5. Favourable mitigation relief from Customs assessments of liquidated damages or non-criminal administrative penalties, except for fraud; (관세담보위반 피해액에 대한 우호적 경감 또는 비형사적 행정처벌 경감, 사기행위 제외)

229) 관세청에 따르면 구체적인 삭제 사유에 대해서는 현재 파악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

230) **「관세법」 제255조의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혜택 등)** ① 관세청장은 제255조의2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된 업체(이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라 한다)에 통관절차 및 관세행정상의 혜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

「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4(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대한 혜택 등) ① 법 제25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수출입물품에 대한 검사 완화나 수출입신고 및 관세납부 절차 간소화 등의 사항을 말한다.

[별표5],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라. 부과권자는 제2호 및 제3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과태료를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법 제255조의2제1항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받은 경우: 해당 업체의 등급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

과태료는 행정법규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질서벌에 해당하나,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과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과태료의 징벌성을 일반적으로 완화하는 것을 '관세행정상의 혜택'으로 보기에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관세청은 AEO 공인제도의 도입취지 등을 고려하여 AEO업체에 대한 과태료 감경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해외직구 증가에 따른 통관 전담인력 확보 필요 등 (특송화물 통관지원, 통관국)

< 현 황 >

「특송화물 통관지원」 사업은 급증하는 특송화물의 원활한 통관과 효율적인 위험관리를 위해 운영 중인 특송화물 전용 물류센터의 임차료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특송화물처리 총괄 시스템인 자동분류시스템 등 특송화물 통관 설비를 도입·운영하는 사업임.

2023년 예산현액은 69억 8,100만원으로, 이 중 67억 5,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 2,5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3회계연도 특송화물 통관지원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3									2024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특송화물 통관지원	6,315	6,315	666	-	-	6,981	6,756	-	225	5,439
-특송장 임차료	1,193	1,193	-	-	-	1,193	1,254	-	-	2,060
-특송장 운영비	2,880	2,880	-	-	-	2,880	2,666	-	215	2,989
-특송통관 인프라 구축	2,242	2,242	666	-	-	2,908	2,837	-	10	390

동 사업은 국내 소비자의 이른바 해외직접구매(이하 '해외직구')로 인한 특송화물의 통관과 관련된 사업임. 해외직구는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의 사이버몰에서 전자거래 방법으로 행하는 거래행위로서, 온라인 전자상거래의 발달에 따른 소비트렌드의 변화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그 규모가 매년 급증하고 있음.

해외직구의 주요 통관수단인 특송화물로 반입된 전자상거래 물품현황을 살펴보면, 건수 기준으로 2019년 4,299만건 수준에서 2023년 1억 3,144만건으로 5년사이 3배가량 증가하였으며, 거래금액도 2019년 31억불 규모에서 2023년 53억불 규모로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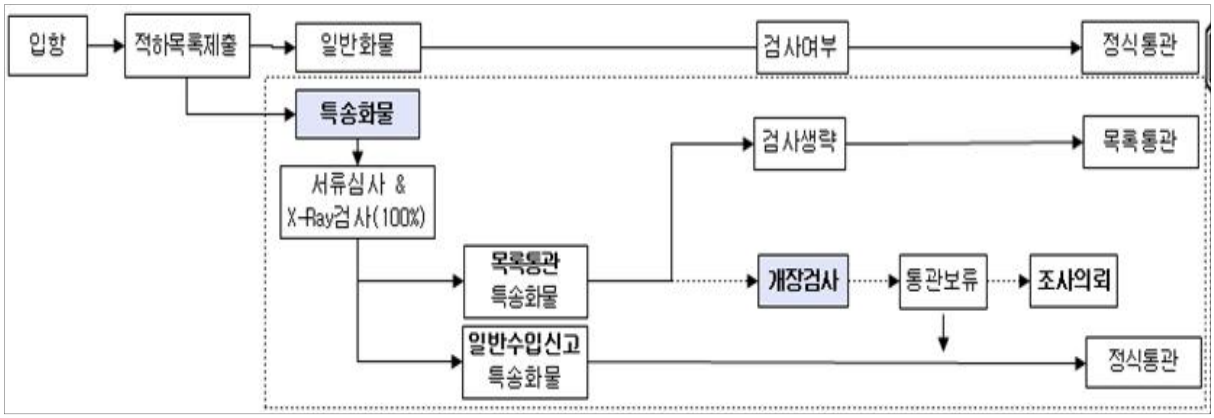
[최근 5년간 해외직구 현황]

(단위 : 천건, 백만불)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건 수	42,988	63,575	88,380	96,120	131,443
금 액	3,143	3,754	4,658	4,725	5,278

관세청은 해외직구의 주요 운송수단인 특송화물에 대하여 X-ray 검색을 통해 ① 위·변조 물품, 위해물품 등으로 의심되는 화물에 대하여는 개장검사를 실시하여 우범물품으로 확인되는 경우 통관을 보류하고, ② 약품 한약재 등 목록통관 배제대상이거나 면세한도를 초과한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통해 정식통관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③ 그외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으로서, 의약품, 한약재 등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을 제외한 물품은 수입신고를 생략한 목록통관 절차를 거치게 되고 관세가 면세됨.

[특송통관 과정 개요]



그런데 해외직구가 증가함에 따라 특송물품의 검사 적발 건수 또한 대폭 증가하는 추세로서 2019년도 125,755건이던 특송물품 검사 적발 건수는 2023년 260,051건으로 증가하였음.

특히, 위해식품·의약품 등 품질과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 물품의 반입과 지재권 침해 물품 및 마약·총포·도검류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의 적발건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위해물품의 반입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통관단계에서 사전에 위험을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급증하고 있는 특송화물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통관행정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최근 5년간 특송통관 주요 적발 현황]

(단위: 건)

구분	세관장[1] 확인대상	지재권 침해	사회안전[2] 위해물품	기 타[3]	합 계
2019년	34,564	13,742	2,365	75,084	125,755
2020년	61,768	44,742	3,416	115,761	225,687
2021년	56,408	34,624	4,483	144,658	240,173
2022년	80,989	62,326	8,011	142,213	293,539
2023년	90,563	67,749	7,557	94,182	260,051

1) 검역, 위해 식·의약품, 수입요건 미비 등, 2) 모의총포·도검류 등, 3) 품명·수하인상이, 저가신고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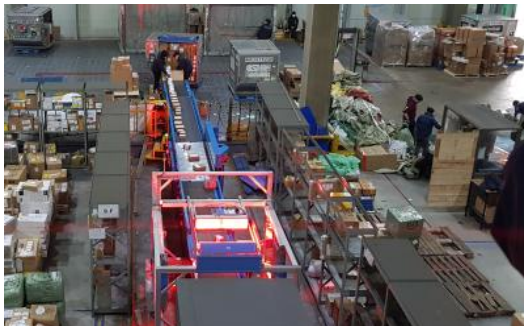
< 검토의견 >

첫째, 급증하고 있는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정확하고 면밀한 모니터링을 위해 충분한 통관 전담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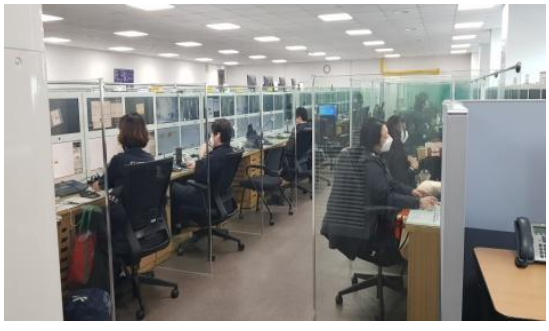
특송화물에 대한 X-ray 검색 및 현품 개장 검사는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해 통관단계에서 사전에 검사하는 유일한 과정으로서, 해당 물품의 마약, 총포,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등 우범물품 여부, 의약품, 한약재 등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여부 등을 판별하는 통관의 핵심적인 과정임.

구체적인 과정을 살펴보면, 특송화물 물류 현장에서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미개봉된 물품이 X-ray를 통과하면서 촬영되면, X-ray로 투과된 영상사진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실에 전달되고, 모니터링실 전문판독요원은 이를 판독하여 의심물품으로 확인되는 경우 물류현장에 연락하고, 현장 직원이 해당 물품에 대해 개장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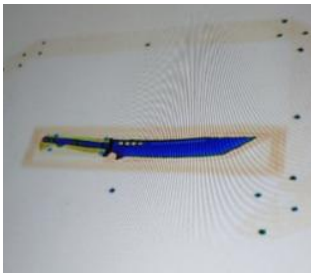
< 특송화물 검색 및 X-ray 영상 예시 사진 >



X-ray 컨베이어 벨트



모니터링 실

<table>
<tr><td> 
X-ray 영상 (조준경)</td><td> 
실제 물품</td></tr>
<tr><td> 
X-ray 영상 (도검)</td><td> 
실제 물품</td></tr>
</table>

그런데 최근 해외직구 통관물량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인력의 충원은 이에 미치지 못하여 1인당 처리물량이 급증하고, 이에 따라 직원들의 업무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관세청도 인력 부족으로 현장 직원들의 업무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검색에 대한 민원은 증가하고 있어 검사가 소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점이 우려된다는 입장임.

실제로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특송화물 통관 건수는 2019년 4,299만 건 수준에서 2023년 1억 3,144만 건으로 3배 증가하였으나, 전담인력은 2019년 184명에서 2023년 315명으로 1.7배 증가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 전담인력 1인당 처리물량은 2019년 23만 4천 건에서 2023년 41만 7천 건으로 대폭 증가하였음.

[특송통관 건수 및 전담인력 현황]

(단위 : 천건, 명)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통관건수	42,988	63,575	88,380	96,120	131,443
특송 전담인력(현원)	184	275	288	304	315
1인당 처리물량	233.6	231.2	306.9	316.2	417.3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검색이 통관 전담인력의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는 현재의 통관 체계 하에서, 폭증하는 통관물량에 대응하여 위해물품의 반입을 차단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또한, 일선 현장 직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검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포상 등 적정한 성과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둘째, 해외직구의 활성화 등에 따른 특송화물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통관검색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통관수수료 형태로 징수하여 수익자 또는 원인자 부담 원칙을 강화하고 통관물량 증가에 따른 통관행정예산의 원활한 재원확보를 도모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최근 특송화물의 증가는 해외전자상거래 유통업체의 영업활동 증가와 국내 소비자의 해외물품 소비 증가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이에 따른 통관행정비용의 증가분은 일반재정이 아닌 판매자 및 소비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의 징수를 통하여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재정의 형평성과 효율성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특히, 해외전자상거래 유통업체의 영업량 증가로 인한 통관행정비용을 일반재정으로 보전하는 것은 이들의 영업활동에 간접적인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물론 이러한 통관수수료 제도의 도입이 관세행정에 심대한 변화를 주는 것이므로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이나, 특송화물 증가에 따른 사회적 위험을 완화하고 재정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셋째, 불법적인 제품의 밀수에 이용되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도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고, 「관세법」상 관련 처벌규정을 정비하여 법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겠음.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 과정에서 물품 통관 시 납세의무자를 특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1년에 도입되었으며 2014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배송업체 등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어렵게 되면서 활성화되었음.

현재 해외직구를 하려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반드시 필요한데, 구매대행업자 등이 기존에 구매이력이 있는 소비자들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보유하고 있어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유출 또는 도용 우려가 있는 실정임.

실제로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이 해외직구의 증가와 함께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관세청에서 2022년 실제 적발한 사례를 살펴보면 단지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상용용품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하는 용도 외에도,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함유한 불법 의약품,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물품 등 불법제품의 밀수에 도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무고한 일반 국민의 피해가 우려되는 측면이 있음.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적발 사례]

판매용 물품을 정식 수입신고 · 관계법령 요건 승인 등 없이, 국내 반입한 '밀수·부정수입' - (불법 수집·도용) 열린장터(오픈마켓) 입점 판매업체 A회사는 세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장기간 수집한 개인통관고유부호(570여 개)를 무단으로 이용, 진공청소기 등 판매용 가전제품 1,900여점(시가 3.6억 원 규모)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하여 반입 후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
관계법령 요건 승인 등이 없는 불법 의약품을 국내 반입한 '밀수' 행위 - (지인 명의 도용) 국내 판매업체 C회사 등 5개 업체는, 정상 물품 수입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60여명의 지인들을 속여서 넘겨받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하여, 중추신경계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을 함유한 문신용 마취크림 5만여 점(시가 2.7억원 상당)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하여 반입
지재권 침해 상품을 국내 반입한 '밀수' 행위 - 국내 업체 B회사는, 가짜 향수 등 3,000점(시가 3억원 규모)을 국내로 밀수하기 위해, 해외의 위조상품 공급업체가 불법 보관하고 있는 국내 소비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300여개)를 도용하여 국내 배송하게하는 방법으로 자가사용물품으로 위장하여 반입

개인통관고유부호 신고 창구를 개설한 2022년 10월 이후 신고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한해 16,355건의 도용 의심 신고가 있었는데, 2022년 월 평균 501건 규모에서 2024년에는 1,607건 규모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현황]

(단위 : 건)

연도	계	월평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22	1,502	501	-	-	-	-	-	-	-	-	-	398	412	692
2023	16,355	1,363	471	911	1,116	1,424	1,865	1,905	1,650	1,193	1,154	1,619	1773	1274
2024	8,037	1,607	1,355	800	1,609	2,040	2,233	-	-	-	-	-	-	-

이에 대한 대책으로 관세청에서는 2022년 10월부터 행정안전부 국민비서 서비스[231]와 연동하여 직구물품 통관내역을 제공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자가 부호도용 여부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설명임.

그러나 이와 같은 대책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자가 국민비서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효성이 없고, 이미 명의 도용이 발생한 후 명의자가 알 수 있게 하는 사후적인 조치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따라서, 관세청은 사전적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 관세법[232]은 '납세신고'에 대해서만 명의대여행위죄를 규정하고 있어, 납세신고를 동반하는 일반적인 수입통관의 경우가 아니라, 납세신고가 생략되는 면세 해외직구물품의 경우에 대해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불법적으로 도용하는 행위가 있더라도 처벌이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관련 법규를 보완·정비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제21대 국회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5329, 조해진의원 대표발의)이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음.

231) 모바일 앱을 통해 각종 행정정보나 전자고지서를 안내하는 행정안전부 제공 서비스

232) **「관세법」 제275조의3(명의대여행위죄 등)**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를 하도록 허락한 자
2.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를 한 자

(5) 수출입화물 검사 적극적 실시 필요(수출입화물 검사지원, 통관국)

< 현 황 >

「수출입화물 검사지원」 사업은 수출입통관을 위해 소요되는 일반적인 비용은 화주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233]이나, 위해물품 반입차단 등 공익 목적상 실시되는 정밀검사 등으로 인해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운송료, 상·하차료, 적·출입료)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국가차원에서 화주에게 보전해 주는 사업임.

2023년 예산액은 67억 4,100만원으로, 이 중 66억 7,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6,3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3회계연도 수출입화물 검사지원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2023									2024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수출입화물 검사지원 (1131-304)	6,741	6,741	-	-	-	6,741	6,678	-	63	6,693
- 수출입화물 세관 검사비용	**6,200**	**6,200**	**-**	**-**	**-**	**6,200**	**6,199**	**-**	**1**	**6,200**
- 검사비용지원 업무용역비	453	453	-	-	-	453	448	-	5	453
- 검사비용지원 사업운영비	58	58	-	-	-	58	11	-	47	10
- 물품검사에 따른 손실보상금	30	30	-	-	-	30	20	-	10	30

233) **「관세법」 제173조(세관검사장)** ① 세관검사장은 통관하려는 물품을 검사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②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을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세관검사장에 반입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세관검사장에 반입되는 물품의 채취·운반 등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 항에서 "검사비용"이라 한다)은 화주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로서 해당 화물에 대한 검사 결과 이 법 또는 「대외무역법」 등 물품의 수출입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검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검토의견 >

관세청은 화주의 세관검사에 대한 순응도를 높여 수출입검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수출입화물 세관 검사비용 지원예산의 적정 편성을 통해 일관성 있게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수출입화물 검사지원」 사업은 2020년 신규사업으로서 수출입통관 과정에서 세관검사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화주(貨主)가 부담하는 비용을 화주가 신청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임. 이는 2019년 정기회에서 「관세법」 개정을 통해 제173조제3항단서[234]를 신설함에 따른 것으로서, 관세청은 2020년 1월부터 지원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2020년 7월부터 중소기업 화주를 대상[235]으로 지원하고 있음.

동 사업은 컨테이너 화물 중 정밀검사 등을 위해 관세청장이 정하는 별도 장소로 이동하여 검사를 수행하는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컨테이너 운송료, 컨테이너 상하차료, 내장물품 적출·입료를 지원함으로써 화주의 세관검사에 대한 순응도를 높여 수출입검사를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음.

「수출입화물 검사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수출입화물 세관 검사비용」의 집행률을 살펴보면 최초 사업을 시작한 2020년에는 예산의 29.3%를 집행하였으나, 2021년에는 지원대상 기업을 중소기업에서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하였고, 검사비용 신청기간을 확대하여 집행률이 85.9%로 크게 상승하였으며,

2022년 4월 코로나 회복 추세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는, 마약 등 불법·위해 물품 등 위주의 적극적인 검사를 통해 검사율이 상향되어[236] 100%를 집행하였음.

---

234) **「관세법」 제173조(세관검사장)** ②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을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세관검사장에 반입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세관검사장에 반입되는 물품의 채취·운반 등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 항에서 "검사비용"이라 한다)은 화주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로서 해당 화물에 대한 검사 결과 이 법 또는 「대외무역법」 등 물품의 수출입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검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35) 2020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중소기업만 지원하기로 결정

236) '20년 1.37% → '21년 1.36% → '22년 1.71%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실적]

(단위: 건, 백만원, %)

연 도	검사건수	지원건수	예산액	집행액	집행율
2020(7월~)	65,081	17,187	7,134	2,090	29.3
2021	131,009	42,472	8,625	7,411	85.9
2022(~12.15.)	156,095	35,854	6,800	6,800	100.0
2023(~10.16.)	124,083	34,152	6,200	6,199	99.9

그런데, 관련 예산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① 2022년에는 12월 15일자로 예산이 전액 소진되어 이후 신청 건에 대하여 2023년도 예산으로 집행하여 이에 대한 지적[237]이 제기된 바 있고, ② 2023년에도 예산 부족이 우려되어 검사비용 전액을 지급하던 것을 9월부터 검사비용의 60%만 지급하도록 조정하였으나, 같은 해 10월 16일자로 예산이 소진됨에 따라, 이후 검사한 건에 대하여 2024년도 예산 편성 이후 지원한 바 있음. ③ 2024년 3월부터는 지원대상 기업을 중소·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다시 축소하였음.

[수출입화물 검사비용을 차년도 예산으로 지원한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분		지원건수	지원액
2022년도 검사 건에 대한 지원 현황		35,854	7,300
	2022년도 지원	31,999	6,800
	2023년도 지원	3,855	500
2023년도 검사 건에 대한 지원 현황		34,152	6,199
	2023년도 지원	34,152	6,199
	2024년도 지원	5,877	583

이처럼 당해연도에 발생한 수입검사 비용을 차년도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은 부득이한 측면이 있으나, 「국가재정법」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238]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237) 관세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검토의견 및 예비심사보고서

238) **「국가재정법」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또한, 예산사정에 따라 신청대상 기업규모를 변경[239]하거나, 검사비용 지급율[240]을 달리하거나, 검사비용 지급을 지연[241]하게 되면 정책의 일관성이 담보되지 않아 화주의 세관검사에 대한 순응도를 높여 수출입검사를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정책도입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음.

동 지원사업은 컨테이너 정밀검사 등을 실시함에 따라 화주에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는 손실보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검사비용 지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화주의 민원으로 이어져 세관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음. 이는 수출입 물량 확대와 마약 등 불법·위해 물품의 반입위험 증가로 수출입 검사를 확대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입검사를 오히려 위축시킬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음. 따라서 관세청은 이에 따른 사회적 위험의 증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정한 수준의 수출입검사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239) (20.7월) 중소기업 → (21.1월) 중소·중견기업 → (24.3월) 중소기업
240) (20.7월) 검사비용의 100% → (23.9월) 검사비용의 60%
241) 22년 12월 15일 이후 건: 23년도 지급, 23년 10월 16일 이후 건: 24년도 지급

(6) 납세심사 기간 단축 및 납세신고오류 보완 방안 마련 필요 (관세탈루심사, 심사국)

< 현 황 >

「관세탈루심사」는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을 위해 심사 직원의 조세탈루심사 활동을 지원하고 AEO 공인심사 중 서류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민간기관에 공인심사를 위탁하는 사업임. 2023년 예산액은 20억 9,800만원으로, 이 중 20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고 4,800만원을 불용하였음.

「관세탈루심사」의 내역사업인 「탈루심사 활동 지원」은 다국적기업, 고세율 농산물 등 관행적 탈세 고위험 분야에 대하여 중점 조사를 실시하고, 성실한 납세환경을 통한 기업부담 경감 등 경제활성화 지원책을 병행 추진하기 위하여 심사 직원의 조세탈루심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임. 2023년 예산액은 11억 800만원으로, 이 중 10억 9,500만원을 집행하였고 1,3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3회계연도 관세탈루심사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2023									2024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관세탈루심사 (1231-300)	2,098	2,098	-	-	-	2,098	2,050	-	48	2,246
- 탈루심사 활동 지원	**1,108**	**1,108**	**-**	**-**	**-**	**1,108**	**1,095**	**-**	**13**	**1,056**
- AEO 공인심사 민간위탁	990	990	-	-	-	990	955	-	35	1,190

< 검토의견 >

관세청은 납세자의 납세신고오류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납세심사기간을 단축하고,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활성화하여 품목신고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첫째, 관세청은 납세자의 납세신고오류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납세심사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은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확인사항 등에 대해서만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 등 납세신고 내용에 관하여는 수입신고 수리 이후에 심사하는 사후 납세심사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음.[242]

사후 납세심사 결과에 따라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보정신청(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을 할 수 있도록 통지하거나 세액을 경정(6개월 이후)함.

세관장의 보정신청 통지에 따라 보정이 이루어질 경우 납세의무자는 부족세액에 대하여 가산세보다 경미한 보정이자(연 1천분의 35)를 납부하는 데 그치게 되나,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세액경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부족세액의 10%(과소신고에 대한 제재)와 부족세액에 대하여 1일 10만분의 22[243](기간이자)를 합산한 가산세를 함께 납부하여야 함.

납세자가 고의적으로 관세를 적게 부담하기 위하여 세액을 과소신고하는 경우도 있으나, 최근 기술의 발전으로 신제품 개발 주기가 단축되고 물품의 기능이 다양화되는 등 품목분류의 난이도가 상승함에 따라 잘못된 품목분류에 따른 신고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세청은 이와 같은 납세자의 단순 과실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보정기간 내의 세액보정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242) **「관세법」 제38조(신고납부)**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 등 납세신고 내용에 대한 심사(이하 "세액심사"라 한다)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243) 연 환산시 약 1천분의 80

이를 위해서는 납세의무자의 납세신고오류를 조기에 발견하여 세액보정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납세심사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최근 소요기간별 납세심사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의 전체 평균 납세심사 소요기간은 777일로 나타나 2019년 평균 소요기간 373일에 비하여 평균적으로 납세심사에 두 배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었음.

그리고 납세심사 소요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의 보정신청 기한이 경과하여 세액경정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함. 그런데 전체 납세심사 건수 중 소요기간이 6개월 이내였던 납세심사의 비중이 2023년 26%에 불과하여 2019년 55% 대비 절반 이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남.

[소요기간별 납세심사 현황]

(단위: 건, 일)

연도	납세 신고 건수	전체 납세 심사 건수 및 평균 소요기간		소요기간별 납세심사 건수(비중) 및 평균 소요기간			
				~ 6개월 (보정기간 內)		6개월 ~ 5년	
		납세심사 건수	평균 소요기간	납세심사 건수 (비율)	평균 소요기간	납세심사 건수 (비율)	평균 소요기간
2019	40,287,848	11,496 (100%)	**373**	**6,289 (55%)**	40	5,207 (45%)	774
2020	47,117,287	11,152 (100%)	381	6,229 (56%)	35	4,923 (44%)	819
2021	58,550,513	13,450 (100%)	609	4,619 (34%)	35	8,831 (66%)	910
2022	61,642,031	27,258 (100%)	799	5,438 (20%)	48	21,820 (80%)	986
2023	68,297,544	16,578 (100%)	**777**	**4,336 (26%)**	37	12,242 (74%)	1,038

※ 평균소요기간 산출 기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심사 조치결과 등록일까지의 평균 소요일수
자료: 관세청

이와 같이 연도별 납세심사 소요기간이 길어지고 6개월 내 납세심사가 완료되는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납세신고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충분한 심사인력이 확보되지 못한 것에 기인하고 있음. 납세신고 건수는 2019년 4,028만건에서 2023년 6,829만건으로 증가하였는데, 납세심사 인력은 2023년 기준 45명으로 2019년과 동일한 수준임.

[연도별 납세심사 인력 현황]

(단위: 건, 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납세신고 건수	40,287,848	47,117,287	58,550,513	61,642,031	68,297,544
납세심사 인력	45	45	44	44	45

자료: 관세청

따라서 관세청은 납세심사 업무를 위한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는 등 납세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납세심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둘째, 관세청은 납세자의 품목분류 신고오류를 줄이기 위하여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최근 납세심사에 따른 추징세액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기준 품목분류 신고오류로 인한 추징건수는 11,015건으로 전체 추징건수 13,437건 중 대부분인 8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납세심사에 따른 추징세액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과세가격에 의한 신고오류	건수 (비율)	960 (13%)	495 (7%)	524 (5%)	4,405 (18%)	2,405 (18%)
	금액 (비율)	6,911 (37%)	1,962 (0.1%)	522(3%)	6,092 (17%)	5,502 (24%)
품목분류 신고오류	건수 (비율)	5,955 (81%)	6,740 (92%)	10,088 (94%)	19,373 (81%)	**11,015 (82%)**
	금액 (비율)	11,522 (61%)	13,550 (87%)	18,420 (96%)	29,791 (83%)	17,673 (76%)
기타*	건수 (비율)	428 (6%)	62(1%)	176(2%)	70 (0.3%)	17 (0.1%)
	금액 (비율)	632 (3%)	120(1%)	187(1%)	115 (0.3%)	16 (0.1%)
계	건수	7,343	7,297	10,788	23,848	**13,437**
	금액	18,795	15,632	19,129	35,998	23,192

* 기타 사유로는 FTA세율적용오류 등이 있음

* 가산세 및 보정이자 포함

자료: 관세청

관세청은 납세자의 품목분류 신고오류에 따른 사후추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관세법령정보포털에 ‘디스플레이 HS해석지침’(2022년), ‘이차전지 HS해석지침’(2023년 1월), ‘반도체 HS해석지침’(2023년 4월), ‘자동차 부품 HS해석지침’(2024년) 등을 발간·등재해 오고 있으나, 이와 같은 노력에 더하여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서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가 수입업체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란,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수출입업자가 스스로 품목을 분류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품목분류를 신청하고 법적인 효력이 있는 품목번호를 회신받을 수 있도록 하는 민원회신 제도로서, 물품 수입 이전에 품목번호를 확정함으로써 관세 부담액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그런데 최근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품목분류 사전심사 이용건수가 2019년에 6,331건에서 2023년 4,786건으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연도별 품목분류 사전심사 처리 현황]

(단위: 건)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6,331	6,167	5,097	4,637	**4,786**

자료: 관세청

따라서 관세청은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품목분류 사전심사 기간 단축 등의 개선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법령에 따른 품목분류 사전심사 평균 처리기간을 살펴보면, 2023년 기준 사전심사 처리기간은 13.6일로 2019년 평균 처리기간인 22.1일에 비하여 지속적으로 단축되었음.

[연도별 법령상 품목분류 사전심사 평균 처리기간]

(단위: 일)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2.1	19.1	13.1	13.8	13.6

자료: 관세청

그러나 위와 같은 법령상 사전심사 처리기간에는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의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 ‘중앙관세분석소에서의 물리적·화학적 분석에 소요되는 기간’ 등이 제외되어 있어, 실제로 민원인에 입장에서 품목분류 사전심사신청에 따른 회신을 받기까지는 더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법령상 사전심사 처리기간 미산입 사유]

①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품목분류 적용을 심의하는 경우 해당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
②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
③ 구성재료의 물리적·화학적 분석이 필요한 경우로서 중앙관세분석소에서 분석에 소요되는 기간
④ 관세협력이사회에 질의하는 경우 해당 질의에 소요되는 기간
⑤ 전문기관에 기술 자문을 받는 경우 해당 자문에 걸리는 기간
⑥ 다른 기관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의견을 듣는 데 걸리는 기간
⑦ 신청인의 의견 진술 절차를 거치는데 걸리는 시간

* 「관세법 시행령」 제106조

실제로 위의 법령상 사전심사 처리기간 미산입 사유를 포함할 경우, 2023년 기준 실제 품목분류 사전심사 평균 처리기간은 42.4일로 법령상 사전심사 평균 처리기간인 13.6일에 비하여 두 배 이상 긴 기간이 소요되었으며, 특히 2019년 실제 평균 처리기간인 42.1일에 비하여 2023년 실제 평균 처리기간이 42.4일로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연도별 실제 품목분류 사전심사 평균 처리기간]

(단위: 일)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42.1	45.1	52.2	59	**42.4**

자료: 관세청

법령상 사전심사 처리기간 미산입 사유 중 ‘세계관세기구(WCO) 관세협력이사회에 대한 질의 회신에 소요되는 기간’, ‘전문기관의 기술자문에 소요되는 기간’, ‘다른 기관의 의견을 듣는 데 걸리는 기간’ 등의 경우에는 관세청이 직접 통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관세청 소속 기관인 관세품목분류위원회, 중앙관세분석소에서 소요되는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의 심의 소요기간’, ‘중앙관세분석소에서의 물리적·화학적 분석 소요기간’의 경우에는 관세청의 자체 노력에 따라 단축이 가능한 측면이 있으므로, 인원 및 시설 확충 등을 통하여 회신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7) 체납자 은닉재산 포상금 제도 활성화 방안 모색 필요 (관세탈루심사, 심사국)

< 현 황 >

「관세탈루심사」의 내역사업인 「탈루심사 활동 지원」은 다국적기업, 고세율 농산물 등 관행적 탈세 고위험 분야에 대하여 중점 조사를 실시하고, 성실한 납세환경을 통한 기업부담 경감 등 경제활성화 지원책을 병행 추진하기 위하여 심사 직원의 조세탈루 심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임. 2023년 예산액은 11억 800만원으로, 이 중 10억 9,500만원을 집행하였고 1,3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3회계연도 관세탈루심사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2023									2024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관세탈루심사 (1231-300)	2,098	2,098	-	-	-	2,098	2,050	-	48	2,246
- 탈루심사 활동 지원	1,108	1,108	-	-	-	1,108	1,095	-	13	1,056
- AEO 공인심사 민간위탁	990	990	-	-	-	990	955	-	35	1,190

< 검토의견 >

관세청은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포상금 지급기준 금액을 하향하고 지급률을 확대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최근 5년 관세체납액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새롭게 발생하는 체납액(당년신규)에 비하여 징수되고 있는 체납액(정리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리대상 관세체납액은 2019년 1조 1,312억원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3년 2조 1,235억원에 달하는 상황임.

[연도별 관세체납액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정리대상체납액 (A=B+C-D)	**11,312**	12,101	16,700	20,254	**21,235**
전년이월(B)	10,267	10,344	11,302	15,780	19,003
당년신규(C)	1,464	1,884	5,560	5,173	2,334
결정취소 경정감(D)	419	127	162	699	102
정리실적 (E)	**968**	799	920	1,251	**1,335**

자료: 관세청

관세청은 위와 같은 체납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체적인 체납 정리활동 외에도 2007년부터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민간인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244].

그런데 2023회계연도 기준 탈루제보 및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명목으로 편성된

244) **「관세법」 제324조(포상)** ①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 제275조의2 및 제275조의3에 해당되는 관세범을 세관이나 그 밖의 수사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로서 공로가 있는 사람
2. 제269조부터 제27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범죄물품을 압수한 사람으로서 공로가 있는 사람
3.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 및 내국세 등을 추가 징수하는 데에 공로가 있는 사람
4. 관세행정의 개선이나 발전에 특별히 공로가 있는 사람
② 관세청장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000만원 중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의 집행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남.

[2023년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집행현황]

(단위: 만원, 건)

구분	예산액	실적	
		지원건수	집행액
탈루제보 및 체납자 은닉포상금	2,000	1	1,129
- 탈루제보 포상금		1	1,129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0**	**0**

자료: 관세청

또한, 최근 5년(2019년~2023) 간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현황을 살펴보더라도,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건수는 총 5건에 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실제 체납액이 징수된 건수도 0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최근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현황]

(단위: 건)

연도	신고건수	징수건수	징수금액	포상금	
				지급건수	지급액
2019	-	-	-	-	-
2020	2	-	-	-	-
2021	-	-	-	-	-
2022	2	-	-	-	-
2023	1	-	-	-	-

자료: 관세청

이와 같이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및 징수 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나는 주된 이유는 민간인이 은닉재산 신고 대상 체납자를 알기 어려워 신고 자체가 충분히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하여 관세청은 ①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국세청·행안부와의 협업을 통해 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관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고(2021년), ② 체납자와 거래 연관성이 높은 무역업 종사자가 활용하는 유관기관 홈

페이지(한국관세물류협회, 농식품수출정보 등)에 홍보자료를 공지(2022년)하는 한편, ③ 서울 및 부산세관 홈페이지에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접근성을 제고(2022년)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다는 입장임.

그러나 위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자체는 여전히 매우 저조한 상황으로서, 관세청은 다음과 같은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우선, 체납자 은닉재산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고 자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금액을 낮추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2007년 동 제도가 도입된 이후,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최소 징수금액 기준은 2천만원으로서 현재까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음. 이러한 신고포상금 기준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과도한 제보를 막기 위한 측면도 있지만 오히려 민간인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이 외에도,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률[245]을 확대하는 방안이나, 관세청의 체납정리 활동 시 주변인에게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제도 홍보자료를 함께 배포하여 은닉재산 신고를 유도하는 등의 홍보방안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음.

245) 참고로, 2022년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제도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지급률을 상향(ex. 징수금액 2천만원~2억원: 100분의 15 → 2천만원~5억원: 100분의 20)한 바 있음.

(8) 압수물품 보관창고 관리위탁 개선 필요(밀수단속, 조사국)

< 현 황 >

「밀수단속 사업」은 마약류 밀반입, 불법 먹을거리·의약품 등 국민건강 위해물품, 위조상품, 불법 외환거래 및 관세포탈사범 등을 단속하기 위한 관세청 조사직원들의 수사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임. 2023년 예산현액은 73억 1,200만원으로, 이 중 72억 4,300만원을 집행하였고 6,900만원을 불용하였음.

「밀수단속 사업」의 내역사업인 「밀수단속업무지원 사업」은 밀수단속 업무 지원 경상경비, 압수품 보관료, 수사차량 임차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예산액 12억 6,100만원 중 12억 4,000만원을 집행하였고 2,1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3회계연도 밀수단속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2023									2024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밀수단속 (1300-300)	6,880	6,880	-	432	-	7,312	7,243	-	69	5,407
- 밀수신고 포상금	506	506	-	432	-	938	938	-	-	506
- 사건 수사비	1,921	1,921	-	-	-	1,921	1,921	-	-	1,795
- 국외업무 여비	165	165	-	-	-	165	165	-	-	165
- 밀수단속업무지원	**1,261**	**1,261**	**-**	**-**	**-**	**1,261**	**1,240**	**-**	**21**	**1,659**
- 지재권 보호활동	99	99	-	-	-	99	99	-	-	99
- 수사장비 도입	214	214	-	-	-	214	214	-	-	214
- 온라인부정수입물품유통모니터링	990	990	-	-	-	990	958	-	32	100
- 디지털무역범죄 수사지원	1,512	1,512	-	-	-	1,512	1,499	-	13	750
- WCO RILO AP 운영	212	212	-	-	-	212	209	-	3	-

< 검토의견 >

관세청은 세관 소유의 압수물품 보관창고에 대한 관리위탁 예산을 임차료가 아닌 관리용역비 목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유의하고, 보관창고 관리용역에 대한 위탁계약 시 수의계약이 아니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첫째, 관세청은 세관 소유의 압수물품 보관창고에 대한 관리위탁 예산을 임차료가 아닌 관리용역비 목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세관공무원은 관세범 조사에 의하여 발견한 물품이 범죄의 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이를 압수할 수 있으며[246], 압수물품관리공무원은 그 물품을 인수받아 세관 압수창고에 보관함[247].

다만, ① 세관자체 보관시설이 부족한 경우, ② 물품의 특성에 따라 특수설비를 갖춘 보관시설에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압수물품이 거대중량 또는 운송시 가치손상 등의 사유로 운송이 곤란한 경우, ④ 보석·귀금속 등 고가의 귀중품으로 위탁보관이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압수물품을 위탁보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압수물품보관에 드는 실비를 수탁보관자에게 지급하게 됨[248].

이에 따른 압수물품 위탁보관 보관료 지급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최근 5년(2019년~2023년) 동안 매년 4억 2,181만원~5억 7,950만원이 압수물품 위탁보관 보관료로 지급되고 있음.

---

246) **「관세법」 303조(압수와 보관)** ① 세관공무원은 관세범 조사에 의하여 발견한 물품이 범죄의 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거나 몰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압수할 수 있다.

247) **「압수물품의 보관관리에 관한 훈령」제10조(압수물품의 보관)** ① 압수물품관리공무원이 압수물품을 인수받은 경우에는 그 물품을 세관 압수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248) **「압수물품의 보관관리에 관한 훈령」제11조(압수물품의 위탁보관)** ① 압수물품관리공무원은 제1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수물품의 소지자·보관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에게 해당 물품을 위탁보관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한국은행 또는 국고수납업무 취급은행에 위탁보관(대여금고에 보관하는 것을 포함한다) 한다.
1. 세관자체 보관시설이 부족한 경우
2. 물품의 특성에 따라 특수설비를 갖춘 보관시설에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압수물품이 거대중량 또는 운송시 가치손상 등의 사유로 운송이 곤란한 경우
4. 보석·귀금속 등 고가의 귀중품으로 위탁보관이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보관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별지 제6호서식의 수·위탁보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압수물품보관에 드는 실비를 보관료로 지급할 수 있다. 이때 압수물품관리공무원은 수탁보관자로 하여금 제4조에서 정한 압수물품관리공무원의 임무와 책임을 주지시키고 압수물품 관리에 최선의 주의를 다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압수물품 위탁보관 보관료 지급 현황]

세관명	계약상대	지급액(만원)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인천공항세관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인천공항 사무소**	-	-	-	-	1,628
	기타 위탁창고	-	-	-	-	-
서울세관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서울 제1사업소**	3,881	4,600	3,447	3,119	3,844
	기타 위탁창고	667	5,306	2,154	1,875	574
부산세관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부산신항지부**	9,517	9,385	5,832	4,321	4,804
	기타 위탁창고	7,707	1,499	5,195	1,983	5,222
인천세관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인천사무소**	18,801	19,509	7,260	6,045	6,422
	기타 위탁창고	1,263	1,441	2,291	4,499	12,243
대구세관	한국관세무역개발원	-	-	-	-	-
	기타 위탁창고	85	3,295	8,979	11,420	6,576
광주세관	한국관세무역개발원	-	-	-	-	-
	기타 위탁창고	3,928	14	302	-	1,207
평택세관	**한국관세무역개발원**	1,758	127	44	44	36
	기타 위탁창고	10,343	10,059	8,261	8,875	8,485
계		57,950	55,235	43,765	42,181	51,041

자료: 관세청

그런데 이 중 인천공항세관·서울세관·부산세관·인천세관·평택세관과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사이에 이루어진 압수물품 보관 위탁계약의 경우, 각 세관에서 압수물품을 보관하는 창고가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의 소유가 아닌 세관소유임. 따라서 해당 계약은 '세관자체의 보관시설이 부족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 압수물품 보관 자체를 한국관세무역개발원에 위탁하는 경우가 아니고, 세관 소유의 압수물품 보관창고에 대한 관리용역을 위탁하는 경우에 해당함.

[압수물품보관창고 소유주 현황]

수탁자	사용 부지	소유주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인천공항 사무소	인천공항세관 지정장치장 내 압수창고	인천공항세관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서울 제1사업소	서울세관 지정장치장 내 압수창고	서울세관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부산신항지부	부산세관 신항지정장치장 내 압수창고	부산세관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인천 사무소	인천세관 지정자치장 내 압수창고	인천세관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평택세관 지정자치장 내 압수창고	평택세관

자료: 관세청

따라서 이와 관련된 예산은 임차료가 아니라 청사의 시설관리 또는 장비의 유지관리, 전산 운영 등 기관의 운영 과정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업무를 용역 계약을 통해 외부에 대행시키는 비용인 관리용역비로 편성할 필요가 있음.

둘째, 관세청은 추후 압수물품 보관창고 관리용역 민간위탁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개경쟁입찰에 따라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관세청은 한국관세무역개발원과의 압수물품 보관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일 10일 전까지 별도의 통보가 없을 경우 계약을 자동연장하는 규정을 두고 초기 수의계약 이후 현재까지 한국관세무역개발원과 자동적으로 계약을 연장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인천공항세관·서울세관·인천세관의 경우 2016년 초기계약 이후, 부산세관의 경우 2022년 초기계약 이후, 평택세관의 경우 2018년·2020년 초기계약 이후 계약기간 만료 10일 전까지 별도의 통보가 없을 경우 계약을 자동으로 연장하는 방식의 계약이 체결되어 현재까지 계약이 연장되고 있음.

[압수물품보관창고 계약 현황]

세관명	계약상대	계약일자	초기계약 방식	초기 계약 자동 연장 여부*
인천공항 세관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인천공항 사무소	2016.7.1	수의계약	O
서울세관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서울 제1사업소	2016.1.29.	수의계약	O
부산세관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부산신항지부	2022.8.23.	수의계약	O
인천세관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인천 사무소	2016.7.1.	수의계약	O
평택세관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18.1.11. 2020.5.25.	수의계약	O

* 초기계약 이후 계약기간(1년) 만료 10일 전까지 별도의 통보가 없을 경우 계약이 자동적으로 연장
자료: 관세청

관세청은 이러한 계약행태와 관련하여 압수물품의 보관은 압수한 시점부터 몰수·폐기·반환 등의 처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49]에 따라 수의계약 및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입장임.

그런데 실제로 해당 위탁관리 계약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① 압수창고 최적의 상태 유지를 위한 주기적 청소, ② 압수물품의 안전한 보관과 이를 위한 설비 및 기계관리, ③ 압수창고 출입자관리 등 압수물품 반출입과 관련된 업무, ④ 기타 압수창고 유지관리와 관련된 사항 등에 대한 업무위탁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는 '보관계약' 또는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이 필요한 계약'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관세청은 추후 압수물품 보관창고 관리용역에 대한 민간위탁 시 관련 규정[250]에 따라 매년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계약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24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1조(계속비 및 장기계속계약)**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임차, 운송, 보관, 전기·가스·수도의 공급,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이 필요한 계약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25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9) K-customs week 사업 성과 제고 필요(전자통관시스템 수출지원, 정보데이터정책관·국제관세협력국)

< 현 황 >

「전자통관시스템 수출지원 사업」은 국내기업·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의 해외 보급 확대를 지원하고, ODA 사업대상국 발굴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 등을 실시하기 위한 사업임. 2023년 예산액은 11억 8,700만원으로, 이 중 11억 7,200만원을 집행하고 1,500만원을 불용하였음.

「전자통관시스템 수출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K-customs week 개최」사업은 한국 관세행정의 글로벌 확산 등을 위한 국제회의 겸 기술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 9억원 중 8억 8,600만원을 집행하고 1,4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3회계연도 전자통관시스템 수출지원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 세목명)	2023									2024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전자통관시스템 수출지원	1,187	1,187	-	-	-	1,187	1,172	-	15	287
- 전자통관시스템 수출지원	287	287	-	-	-	287	286	-	1	287
- K-customs week 개최	900	900	-	-	-	900	886	-	14	-

< 검토의견 >

관세청은 K-customs week 행사와 관련하여 기술박람회로서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관세청은 2023년 9억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여 한국 관세행정(K-customs)의 글로벌 확산 및 전자통관 시스템(UNI-PASS)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관세 관련 국제회의 및 기술박람회 성격의 행사(“K-customs week”)를 신규로 개최하였음.

동 행사는 78개국 관세당국 대표단, 세계관세기구(WCO) 등 국제기구 관계자, 학계 전문가 및 국내외 기업인 등 약 650명이 참석한 대규모 행사로서, 2023년 4월 중 3일간에 걸쳐 관세청장 회의(전체·양자·다자회의), 정책세미나 및 관세기술전시회 등으로 구성되었음.

관세청은 동 행사를 통해 ① 무역원활화 및 파트너십 강화와 관련한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한국판 다보스 포럼을 신설하고, ② 국내기업의 해외수출 활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③ 마약 등 불법거래 차단 국제공조를 확대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음.

[2023년 K-customs week 개요]

○ 성격: 관세청이 2023년 신규기획·개최한 세계 관세청장 회의 겸 기술박람회 ○ 목적: 한국 관세행정의 글로벌 확산 및 전자통관 시스템(UNI-PASS) 수출 증진 ○ 주제: 글로벌 관세협력과 디지털 세관 ○ 예산: 900백만원(집행액 879백만원) ○ 시기: 23. 4. 25.(화)~28.(금) ○ 장소: 서울 ○○호텔 ○ 규모: 78개국 관세당국 대표단, WCO 국제기구 관계자, 학계 전문가, 기업인 등 ○ 주요행사: 관세청장 회의(전체·양자·다자), 정책 세미나(8개 세션), B2G 비즈니스 미팅, 관세기술 전시회 등

자료: 관세청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다만, 동 행사의 성과와 관련하여 “기술박람회”로서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관세청은 동 행사의 개최로 한국 선진 관세행정 홍보, 관세 신기술 전시·설명회 개최 등으로 관세행정 시스템·장비의 수출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동 행사 전후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수출사업” 관련 사전 타당성 조사·BPR 사업 및 전자통관시스템 수출 등 ODA 사업 수요조사 국가의 수가 증가하지도 않았고, 동 행사를 통해 국내 관세기술 관련 업체가 해외국가 등과 계약을 체결한 실적도 없는 등 기술박람회로서 동 행사를 통한 성과가 아직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음.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수출사업” ODA 사업 관련 수요 국가 수]

수요조사 시기	2021년 10월	2022년 9월	2023년 9월
사업 수행 시기	2023년	2024년	2025년
수요 국가 수	5개국	5개국	5개국

* K-customs week 행사는 2023년 4월 개최

자료: 관세청 제출자료 편집

관세청은 동 사업을 통해 해외 관세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나, 관세행정시스템·장비의 수출 촉진에도 일정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의 내실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10) 불필요한 예산의 관례적 편성 및 불용 지양 필요 (국제관세협력국 기본경비, 국제관세협력국)

< 현 황 >

「국제관세협력국 기본경비 사업」은 국제관세협력국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기관운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 예산액은 5억 1,800만원이고 이 중 4억 6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1,200만원을 불용하였음.

「국제관세협력국 기본경비 사업」의 2023년 임차료 예산현액은 1억 6,200만원으로, 이 중 6,500만원을 집행하고 9,7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3회계연도 국제관세협력국 기본경비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 세목명)	2023									2024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용·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국제관세협력국 기본경비	518	518	-	-	-	518	406	-	112	377
- 임차료	162	162	-	-	-	162	65	-	97	41

< 검토의견 >

관세청은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어 불용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례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예산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관세청은 2023년 「국제관세협력국 기본경비」 사업에 해외 주재관 등의 관사 임차료를 위한 예산 1억 5,100만원[251] 등 총 1억 6,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251) 그 외 1100만원은 차량 등 공통소요 명목

동 임차료 예산은 유럽 벨기에에 위치한 세계관세기구(WCO) 파견관 임차료 3,000만원, 중국 청도 직무파견을 위한 임차료 3,500만원, 중국 대련 직무파견을 위한 임차료 4,000만원, 인도 첸나이 직무파견을 위한 임차료 예산 4,600만원 및 차량 등 임차료 일반 예산 1,1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관세청은 이 중 인도 관사 임차료 2,700만원만을 집행하고, 차량 등 기타 임차료로 3,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9,700만원을 불용하였음.

동 예산의 불용은 당초 필요성이 원천적으로 없는 예산이 편성된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서 예산 편성 당시부터 불용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음.

벨기에 파견관의 경우 2020년 2월부터 세계관세기구(WCO)에서 파견관 임차료를 부담하기로 협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례적으로 동 예산이 편성되어 불용되었고, 중국 청도의 경우 직무파견으로 운용되던 청도 관세관의 직위가 2021년 8월 정식 직제로 전환됨에 따라 파견기관인 관세청이 비용을 부담하던 관사 임차료를 외교부가 부담하게 되어 불필요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및 2023년 동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불용된 것임.

또한, 중국 대련 관세관의 경우 직무파견 관세관 직위로 운용되다가 인사혁신처와의 협의 결과 2022년 7월 직무파견이 취소됨에 따라 2022년 예산 집행잔액 및 2023년 예산이 불용되었음.[252]

[국제관세협력국 기본경비 중 임차료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임차료		2022년			2023년			2024년
구분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예산액
관사	벨기에	39	-	39	30	-	30	-
	청도	33	-	33	35	-	35	-
	대련	37	22	15	40	-	40	-
	인도	43	43	-	46	27	19	-
	기타	-	-	-	-	-	-	35
차량 등		10	5	5	11	38	△27	6
합 계		162	70	92	151	27	97	35

자료: 관세청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252) 참고로, 인도의 경우 관세관의 직위가 2023년 8월 정식 직제로 전환되어 관련 임차료 예산의 일부가 불용되었음.

이에 대해 관세청은 관련 예산 불용의 문제를 2023년 사후적으로 인식하여 2024년 예산 편성 시에는 ① 국제기구 부담(벨기에), ② 정식 직제화(중국 청도 및 인도 첸나이) 및 ③ 직무파견 취소(중국 대련) 등으로 지원이 불필요한 주재관 임차료는 전액 감액 편성하며, 예상치 못한 임차료 소요만을 위해 2023년 대비 75% 수준으로, 필요한 범위로만 예산을 감액 편성하여 관련 조치를 완료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이 불필요한 예산을 관례적으로 편성하여 불용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예산 운용의 비효율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향후 이와 같은 예산 편성 및 집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조달청 소관

가. 결산 개요

(1) 세입 결산

2023년도 조달청 소관 조달특별회계 세입예산 수납액은 6,366억 900만원으로 예산액 5,172억 2,700만원 대비 23.1%인 1,193억 8,200만원 증가하였음.

손익계정은 내자구매사업수입이 54억 2,400만원, 외자구매사업수입이 13억 4,300만원 과소 수납된 반면, 시설공사 사업 60억 4,900만원 및 비축물자 판매차익 증가에 따른 비축물자사업수입이 72억 4,900만원, 관유물 대여료가 11억 1,100만원, 잡수익 등이 726억 9,800만원, 전년도 세계잉여금이 407억 1,900만원 초과 수납되었음.

자본계정은 관유물 매각대가 59억 3,800만원 과소 수납된 반면, 전년도 세계잉여금이 42억 6,100만원 초과 수납되었음.

[2023회계연도 조달청 소관 세입 결산 개요]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차 이 (C-A)	비 율 (C-A)/A	미수납액 (B-C)
사업수입	284,593	355,883	291,124	6,531	2.3	64,759
▪ 내자구매사업	232,181	283,072	226,757	△5,424	△2.3	56,315
▪ 외자구매사업	5,782	5,381	4,439	△1,343	△23.2	942
▪ 시설공사사업	39,306	49,752	45,355	6,049	15.4	4,397
▪ 비축물자사업	7,324	17,678	14,573	7,249	99.0	3,105
관유물대여료	1,859	3,063	2,970	1,111	59.8	93
잡수입 등	27,815	102,575	100,513	72,698	261.4	2,062
전년도세계잉여금	37,519	78,238	78,238	40,719	108.5	-
손익계정 계	**351,786**	**539,759**	**472,845**	**121,059**	**34.4**	**66,914**
관유물매각대	5,961	23	23	△5,938	△99.6	-
전년도세계잉여금	13,297	17,558	17,558	4,261	32.0	-
타계정전입금	146,014	146,014	146,014	-	-	-
기금전입금	169	169	169	-	-	-
자본계정 계	**165,441**	**163,764**	**163,764**	**△1,677**	**△1.0**	-
총 계	**517,227**	**703,523**	**636,609**	**119,382**	**23.1**	**66,914**
순 계	**371,213**	**557,509**	**490,595**	**119,382**	**32.2**	**66,914**

주: 순계는 총계금액에서 손익계정(세출) 타계정전출금에서 자본계정(세입) 타계정전입금으로 전입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임.

자료: 조달청

(2) 세출 결산

2023년도 조달청 소관 조달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5,247억 1,000만원으로 예산액 5,172억 2,700만원 대비 1.4%인 74억 8,300만원이 증가하였고, 2023년도 지출액은 4,940억 9,5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95.5%, 예산현액 대비 94.2% 집행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51억 8,200만원이고, 불용액은 154억 3,300만원임.

[2023회계연도 조달청 소관 세출 결산 개요]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A)	예산 현액 (B)	지출액 (C)	예산액 대비 (C/A)	예산현액 대비 (C/B)	다음연도 이월액 (D)	불용액 (B-C-D)
인 건 비	83,727	83,172	78,582	93.9	94.6	-	4,590
기본경비	11,573	12,081	11,746	101.5	98.3	-	335
주요사업비	96,778	101,817	91,405	94.4	90.8	6,648	3,764
건강보험부담금	2,912	2,952	2,949	101.3	99.6	-	3
연금부담금	10,782	10,782	10,279	95.3	63.5	-	503
타계정전출금	146,014	146,014	146,014	100.0	100.0	-	-
손익계정 계	**351,786**	**356,818**	**340,975**	**96.9**	**94.8**	**6,648**	**9,195**
자산취득 및 시설비	68,084	70,535	55,763	81.9	79.1	8,534	6,238
전 출 금 등	97,357	97,357	97,357	100.0	100.0	-	-
자본계정 계	**165,441**	**167,892**	**153,120**	**92.6**	**91.2**	**8,534**	**6,238**
총 계	**517,227**	**524,710**	**494,095**	**95.5**	**94.2**	**15,182**	**15,433**
순 계	**371,213**	**378,696**	**348,081**	**93.8**	**91.9**	**15,182**	**15,433**

주 : 순계는 총계금액에서 손익계정(세출) 타계정전출금에서 자본계정(세입) 타계정전입금으로 전입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임.

자료: 조달청

손익계정에서는 긴급현안 대응을 위한 전용 등에 따라 세출예산 전용액 13억 4,700만원이 발생하였고, 자본계정에서 전출금 등은 예산현액 973억 5,700만원 대비 100% 집행되었음.

한편, 조달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1,425억 1,400만원이며 이는 「국가재정법」 제90조 규정에 따라 2024회계연도 세입예산에 이입되었음.

(3) 세입·세출 결산 총괄표

가) 세입 결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결산	2022결산	2023년			2024예산
			예산(A)	결산(B)	집행률 (B/A)	
총 계	511,956	573,070	517,227	636,609	123.1	802,688
손익계정	345,515	395,730	351,786	472,845	134.4	446,953
45 조달사업수입	281,447	278,245	284,593	291,124	102.3	288,500
내자구매사업수입 (45-451)	192,216	213,038	232,181	226,757	97.7	232,181
외자구매사업수입 (45-452)	5,788	4,658	5,782	4,439	76.8	5,782
시설계약사업수입 (45-454)	43,449	43,023	39,306	45,355	115.4	40,686
비축물자사업수입 (45-456)	39,994	17,526	7,324	14,573	199.0	9,851
51 관유물대여료	3,525	2,682	1,859	2,970	159.8	2,865
토지대여료 (51-511)	880	766	630	581	92.2	652
건물대여료 (51-512)	2,631	1,903	1,226	2,374	193.7	2,210
기타관유물대여료 (51-513)	14	13	3	15	507.6	3
54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1	2	-	21	-	-
기타재산수입 (54-545)	1	2	-	21	-	-
56 과징금	418	522	296	2,696	910.8	300
과징금 (56-565)	418	522	296	2,696	910.8	300
57 변상금및위약금	1,383	2,543	1,872	1,589	84.9	2,000
변상금 (57-571)	-	-	-	-	-	-
위약금 (57-572)	1,383	2,543	1,872	1,589	84.9	2,000
59 기타경상이전수입	-	6	-	90	-	-
기타경상이전수입 (59-596)	-	6	-	90	-	-
69 잡수입	28,357	55,162	25,647	96,117	377.4	60,374
기타잡수입(수입대체경비)(69-691)	483	650	595	717	120.5	595
기타잡수입	5,991	6,169	6,533	6,810	104.2	6,533

구 분	2021결산	2022결산	2023년			2024예산
			예산(A)	결산(B)	집행률 (B/A)	
(69-691)						
기타영업외잡수익 (69-697)	21,883	48,343	18,519	88,590	478.4	53,246
89 세계잉여금 이입액	**30,384**	**56,568**	**37,519**	**78,238**	**195.1**	**92,914**
전년도세계잉여금 (88-893)	30,384	56,568	37,519	78,238	195.1	92,914
91 일반회계전입금	-	-	-	-	-	-
일반회계전입금 (91-911)	-	-	-	-	-	-
자본계정	**166,441**	**177,340**	**165,441**	**163,764**	**99.0**	**355,735**
54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220	-	-	-	-	-
기타재산수입 (54-545)	220	-	-	-	-	-
59 기타경상이전수입	**30**	-	-	-	-	-
기타경상이전수입 (59-596)	30	-	-	-	-	-
71 고정자산매각대	**1,187**	**3**	-	**23**	-	-
건물매각대 (71-711)	996	-	-	-	-	-
기타고정자산매각대(71-713)	191	3	-	23	-	-
72 토지 및 무형자산 매각대	**45,888**	-	**5,961**	-	-	-
토지매각대 (72-721)	45,888	-	5,961	-	-	-
89 전년도세계잉여금	**907**	**48,268**	**13,297**	**17,558**	**132.0**	**7,918**
전년도세계잉여금 (89-893)	907	48,268	13,297	17,558	132.0	7,918
91 전입금	**118,209**	**129,069**	**146,183**	**146,183**	**100.0**	**347,817**
기금전입금(91-913)	209	475	169	169	100.0	92
계정간전입금(91-915)	118,000	128,594	146,014	146,014	100.0	260,425
기타전입금(91-916)	-	-	-	-	-	87,300

나) 세출 결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결산	2022 결산	2023년			2024 예산
			예산(A)	결산(B)	집행률 (B/A)	
총 계	407,120	477,274	517,227	494,095	95.5	802,688
손익계정	288,947	317,492	351,786	340,975	96.9	446,953
1100 전자조달 및 국유재산 관리	51,652	67,482	67,569	65,244	96.6	44,434
1131 전자조달 운영 및 개발	49,914	65,894	65,833	63,565	96.6	42,733
조달정보화(정보화) (1131-501)	29,090	27,237	26,608	26,492	99.6	22,249
전자조달 운영지원 (1131-504)	4,000	3,952	4,137	4,035	97.5	4,641
차세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구축 (정보화) (1131-505)	16,824	34,705	35,088	33,038	94.2	15,843
1132 국유재산 조사 및 관리	1,738	1,588	1,736	1,679	96.7	1,701
국유재산 조사 및 관리 (1132-331)	1,738	1,588	1,736	1,679	96.7	1,701
1200 조달사업 운영	14,485	16,396	19,326	18,009	93.2	21,096
1233 정부조달 국제협력체제 구축	2,816	2,882	2,798	2,678	95.7	4,129
정부조달 국제협력체제 구축 (1233-331)	2,632	2,698	2,614	2,494	95.4	3,585
아태 지역 전자조달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1233-332)	184	184	184	184	100.0	544
1235 조달물자 구매 및 관리지원	8,486	9,980	12,952	11,786	91.0	13,263
조달물자 계약 및 관리 (1235-334)	7,624	9,025	9,833	8,885	90.4	10,097
조달물자 품질검사 및 관리 (1235-335)	862	955	1,403	1,369	97.6	1,350
공공혁신수요 기반 혁신제품 기술개발(R&D) (1235-338)	-	-	1,716	1,532	89.3	1,816
1236 공사발주 및 사업관리 지원	3,183	3,534	3,576	3,545	99.1	3,704
공사 발주 및 사업관리 지원(1236-345)	3,183	3,534	3,576	3,545	99.1	3,704

구 분	2021 결산	2022 결산	2023년			2024 예산
			예산(A)	결산(B)	집행률 (B/A)	
7100 조달행정지원	94,820	98,573	108,095	101,429	93.8	110,712
7101 인건비	73,588	76,194	83,727	78,582	93.9	85,575
기관운영 인건비 (7101-101)	73,588	76,194	83,727	78,582	93.9	85,575
7111 기본경비	10,512	11,563	11,573	11,746	101.5	12,688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 (7111-201)	3,715	4,262	3,944	4,070	103.2	4,047
기관운영 기본경비 (7111-251)	6,797	7,301	7,629	7,676	100.6	8,641
7131 공공조달 정책개발 및 효율화	1,164	1,101	1,039	1,022	98.4	1,082
정책개발 및 조달업무 홍보 (7131-352)	1,164	1,101	1,039	1,022	98.4	1,082
7132 조달행정 역량강화	5,548	5,513	6,044	5,669	93.8	6,833
조달행정 역량강화 (7132-366)	5,548	5,513	6,044	5,669	93.8	6,833
7134 조달전문교육 운영	1,348	1,405	1,493	1,461	97.9	1,522
조달전문교육 운영 (7134-371)	1,125	1,156	1,236	1,210	97.9	1,265
조달전문교육 수입대체경비 (7134-650)	223	249	257	251	97.7	257
7135 법정부담금	2,660	2,796	2,912	2,949	101.3	3,012
건강보험부담금 (7135-381)	2,660	2,796	2,912	2,949	101.3	3,012
7138 청사확보 및 시설개선(손익)	-	-	1,307	-	-	-
청사 이전 지원(손익) (7138-5081)	-	-	1,307	-	-	-
8200 계정간거래	118,000	128,594	146,014	146,014	100.0	260,425
8201 타계정 전출금	118,000	128,594	146,014	146,014	100.0	260,425
손익계정에서 자본계정으로의 전출금(8201-821)	118,000	128,594	146,014	146,014	100.0	260,425

구 분	2021 결산	2022 결산	2023년			2024 예산
			예산(A)	결산(B)	집행률 (B/A)	
8400 회계기금간 거래	9,989	6,447	10,782	10,279	95.3	10,286
8411 공무원 연금부담금	9,989	6,447	10,782	10,279	95.3	10,286
공무원 연금부담금 (8411-881)	9,989	6,447	10,782	10,279	95.3	10,286
자본계정 소계	118,173	159,782	165,441	153,120	92.6	355,735
1200 조달사업 운영	43,522	93,688	48,428	48,886	100.9	53,000
1237 조달물자 구매 및 관리지원(자본)	43,522	93,688	48,428	48,886	100.9	53,000
조달물자 구매 및 관리지원(자본) (1237-433)	43,522	45,622	48,428	48,886	100.9	53,000
마스크 비축 및 관리지원 (1237-434)	-	-	-	-	-	-
긴급수급조절물자 구매 및 구매지원(1237-435)	-	48,066	-	-	-	-
7100 조달행정지원	4,651	4,497	19,656	6,877	35.0	13,244
7116 기본경비(자본)	738	755	1,016	1,071	105.4	990
자본계정 기본경비 (7116-291)	738	755	1,016	1,071	105.4	990
7161 전산장비 운영	1,154	1,153	1,150	1,150	100.0	1,150
전산운영경비 (7161-431)	1,154	1,153	1,150	1,150	100.0	1,150
7162 청사확보 및 시설개선	2,759	2,589	17,490	4,656	26.6	11,104
청관사개보수 및 임차 (7162-441)	2,759	1,968	2,570	2,102	81.8	2,485
청사이전 지원 (7162-506)	-	-	2,216	-	-	-
서울지방조달청 청사 신축 (7162-507)	-	-	3,483	-	-	-
원자재 및 긴급수급조절물자 비축창고 신축 (7162-509)	-	621	9,221	2,554	27.7	8,619
8000 회계간거래	70,000	61,597	47,357	47,357	100.0	219,491
8001 일반회계 전출금	70,000	61,597	47,357	47,357	100.0	219,491
조달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의 전출금 (8001-801)	70,000	61,597	47,357	47,357	100.0	219,491

구 분	2021 결산	2022 결산	2023년			2024 예산
			예산(A)	결산(B)	집행률 (B/A)	
9700 여유자금운용	-	-	50,000	50,000	100.0	70,000
9701 기타여유자금운용	-	-	50,000	50,000	100.0	70,000
회전자금전출금 (9701-971)	-	-	50,000	50,000	100.0	70,000

나. 검토의견

(1)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희소금속 이관 및 비축공간 활용에 대한 구체적·중장기적인 계획 수립 필요 (총괄, 공공물자국)

< 현 황 >

희소금속은 산업적으로 대량 생산되는 일반금속과 달리 지각 내 부존량이 적거나 추출이 어려운 금속으로, 합금강(크롬, 몰리브덴, 니오븀, 망간, 바나듐 등), 반도체(텅스텐, 희토류, 갈륨, 인듐 등), 2차전지(망간, 코발트, 바나듐, 리튬 등)와 같은 핵심 산업의 재료로 활용되고 있음.

희소금속은 조달청(9종 비축)과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광업공단”이라 함. 10종 비축)이 나누어 비축하였으나, 2019년 6월 비축기관 일원화를 위하여 조달청이 담당해 오던 희소금속 9종의 비축을 광업공단으로 이관하기로 결정하였음.

이후 조달청과 광업공단은 「희소금속 이관 및 이관 전 관리 공동기준」(2020.6.)을 마련·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조달청과 광업공단은 단계적으로 희소금속 이관을 추진 중에 있음.

[조달청과 광업공단 간 희소금속 이전 추진 현황]

일 시	협의 진행 내용
2019년 6월	- 조달청 보유 희소금속 9종을 광업공단으로 이전 결정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조달청, 광업공단 간 협의)
2020년 6월	-「희소금속 이관 및 이관 전 관리 공동기준」 마련 ※ 개정(‘22. 12.)
2021년 ~ 2023년	- 희소금속 이관을 위한 세부조건 협의 ※ 희소금속 이관 세부 조건(‘23. 9. 20.)
2023년 11월	- 코발트 126톤 이관 완료(이관금액 약 58억원)
2024년 7월 현재	- 바나듐 88톤 이관 준비 중(광업공단 이관 예산 25억원 편성) ※ 희소금속(오산화바나듐) 이관 전 합동 현장 실사 실시(’24.3월)

자료: 조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검토의견 >

조달청은 희소금속 이관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광업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정부 차원의 통일된 이관계획 및 중기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광업공단의 자체 비축기지 신설 추진상황과 희소금속 이관에 따른 공간 확보를 고려하여 구체적·중장기적인 비축공간 활용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첫째, 희소금속 이관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광업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정부 차원의 통일된 이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중장기적인 예산확보계획을 함께 수립할 필요가 있음.

현재 조달청은 2023년 광업공단으로 이관완료된 코발트를 제외한 총 8종의 희소금속을 보유하고 있음[253].

조달청과 광업공단은 희소금속 이관을 위한 세부조건(이관가격 등)에 대한 합의를 완료하였으며[254], 2023년부터 희소금속 이관을 진행 중에 있음. 희소금속 이관을 위해서는 광업공단이 조달청에게 지급해야 하는 유상이관 예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며, 광업공단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관금액의 단기간 확보는 예산 운영상 어려우므로 연도별로 단계적인 예산확보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임.

산업통상자원부의 2024～2028년 중기사업계획(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한국광해광업공단출자사업)에 따르면 2028년까지 희소금속 이관금액 751억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며,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중기사업계획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2029년 약 300억원을 추가로 확보함으로써 2029년까지 전체 이관금액을 확보하여 이관을 완료한다는 계획임.

---

253) 「공급망안정화법」('24.6.27. 시행) 및 「조달청 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훈령)」('24.4.16.) 별표1에 따라 품목별 비축량 자료 대외 비공개

254) 이관 금액 등은 금속자원 비축기관 협의회에서 결정한 희소금속 이관 세부 조건('23. 9. 20.)에 따라 책정되며, 이관 금액은 국제가격 및 환율 등을 고려하여 산정함.

* (국제가격 및 환율) 국제가격은 국제가격 분석기업별 계약일 전월 3개월 평균 고시가격 산술 평균 적용, 환율은 계약일 전월 3개월 간의 매일 환율(하나은행 최초 고시 매매기준율)의 평균 적용

[산업통상자원부의 2024 ~ 2028년 중기사업계획(희소금액 이관금액 관련)]

(단위 : 억원)

일 시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이관금액	25억원 (예산 편성 완료)	71억원	121억원	72억원	462억원
이관대상 품목(수량)	바나듐(88톤)	바나듐(295톤)	미정	미정	미정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조달청 희소금속 단계적 이관 일정]

일정	'23(완료)	'24~'27	'27~'29(광업공단 전용 비축기지 확보 후)					
이관광종	코발트	바나듐	스트론튬	실리콘	망간	비스무스	인듐	탄탈럼	리튬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조달청 역시 비축목표량에 미달하는 비철금속[255]의 비축자금 확보를 위하여 연도별 회전자금 확보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광업공단이 조달청에게 지급하는 유상이관금액은 조달청 회전자금[256]으로 귀속되므로 조달청은 비철금속 확보를 위한 비축자금으로 희소금속 이관금액을 활용하고 있음. 따라서 광업공단이 확보하는 유상이관금액만큼 조달청이 필요로 하는 비축자금의 규모는 줄어들게 됨.

그러나, 조달청은 희소금속 이관금액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광업공단과의 협의 없이 자체적인 중장기 회전자금 확보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2024년 비축사업 계획 등에는 산업통상자원부·광업공단의 중장기 희소금속 이관계획을 반영하지 않고 있음[257].

조달청의 2024년 비축사업 계획에 따르면 비축목표량 확보를 위해 향후 약 1,929억원의 회전자금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산정하였으며, 해당 금액은 2023년말 기준 부족금액(2,654억원)에서 2024년 예산으로 회전자금에 추가된 금액(700억원) 및 2024년 희소금

255) 조달청은 비철금속 6종(알루미늄, 구리, 납, 아연, 니켈, 주석)을 비축하고 있으며, 「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조달청 훈령)」에 따라 매년 적정 비축규모인 비축목표량을 설정하고 있으나 회전자금 부족으로 일부 품목이 비축목표량에 미달하고 있음.

256) 정부기업예산법*에 따라 조달청이 조달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세입세출예산과는 별도로 보유하는 자금으로, 조달청은 해당 자금으로 비철금속 비축 등 비축사업을 수행함.

*정부기업예산법 제13조(회전자금의 보유 및 운용) ①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외에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하 이 조에서 "회전자금"이라 한다)을 보유할 수 있다.

257) 다만, 조달청은 2024년 예산에 확정되어 편성된 광업공단 희속금속 이관 예산(25억원)에 대한 부분만을 반영하고 있음.

속 이관 금액(25억원)을 제외한 금액임. 조달청은 2024년 예산으로 확정된 이관금액만을 고려하여 필요자금을 산정하였으며, 이러한 산정기준을 바탕으로 2028년까지 필요 회전자금을 확보[258]하겠다는 계획임.

[비철금속 비축목표량 대비 부족량 및 필요자금 현황(2024년 비축사업계획)]

'24년 비철금속 비축목표량 (A)	'23년말 재고량 (B)	부족분		'24년 회전자금 추가금액(D)	'24년 희소금속 이관금액(E)	추가 필요자금 (C-D-E)
		부족량 (A-B)	금액 (C)			
281,528톤	240,490톤	41,038톤	2,654억원	700억원	25억원	1,929억원

자료: 조달청 2024년 비축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재작성

[연도별 회전자금(비축) 조성계획(2024~2008년 중기사업계획)]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연도별 회전자금 추가금액	700억원 *2024년 예산 기반영	1,400억원	400억원	300억원	308억원

자료: 조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조달청은 2023년 비축사업계획에서는 희소금속 완전이관을 전제로 전체 이관금액을 제외하고 필요한 비축자금 규모를 산정하였음.

[비철금속 비축목표량 대비 부족량 및 필요자금 현황(2023년 비축사업계획)]

비철금속 비축목표량 (A)	'22년말 재고량 (B)	부족분		'23년 회전자금 추가금액(D)	전체 희소금속 이관금액(E)	추가 필요자금 (C-D-E)
		부족량 (A-B)	금액 (C)			
281,563톤	232,613톤	48,950톤	3,790억원	500억원	723억원	2,574억원

자료: 조달청 2023년 비축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재작성

조달청은 올해 들어 필요자금 산정방식을 변경한 이유에 대하여 "희소금속 이관이 장기적으로 이루어 짐에 따라 이관시기 및 이관금액의 변동 가능성이 커서 조달청의 중기사업계획 및 비축사업계획 수립시 정확한 추가필요자금 산출에 어려움이 발생하였고, 2024년 예산처럼 예산으로 편성된 이관금액만을 고려하여 추가필요자금을 산

258) 다만, 연도별 회전자금 확보계획은 2024년 1월 수립된 중기 사업계획에 따른 것으로, 2024년 2월에 작성된 비축사업 계획과의 수립 시기 차이(중장기 사업계획은 '23년 비축목표량 대비 부족량으로 필요자금 산정)에 따른 금액차(중기 사업계획상 필요자금: 2,408억원, 2024년 비축사업 계획상 필요자금: 1,929억원, *2024년 편성금액 제외)가 발생함.

정하는 것이 정확성 확보에 유리하다고 판단"하였다는 입장임.

그러나, 조달청의 비축사업계획은 조달청의 핵심사업이자 국가산업에 필수적인 원자재를 비축하기 위한 국가계획으로서 비축 목표와 비축업무 내용을 수립하는 계획으로, 비축사업계획에 있어서 비축자금 확보 규모는 조달청의 중장기적인 비축규모와 비축방향을 결정지으며, 희소금속 이관금액은 이러한 비축자금 확보 규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

이렇듯 비축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희소금속 이관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는 조달청과 산업통상자원부·광업공단 등이 별도의 협의 없이 각각의 입장에 따른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따라서 희소금속 이관과 관련하여 관계 국가기관 간 협의를 통하여 정부 차원의 통일된 연도별 이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이며 구체적·중장기적인 예산확보계획을 함께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임.

희소금속 이관 관련 구체적인 이관 요건(이관 가격, 방법 등)에 대하여는 '금속자원 비축기관 협의회'에서 합의되었으나, 연도별 희소금속 이관계획에 대하여는 별도로 협의하지 않고 있는데, 해당 협의회에는 예산안 편성 권한을 가진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조달청·광업공단 등 관계기관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정부차원의 희소금속 이관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연도별 이관 광종·물량 및 자금 확보 등)에 대하여도 해당 협의체를 활용하여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금속자원 비축기관 협의회 개요]

□ (참여 부처)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조달청, 광업공단의 과장급

□ (담당 업무) 조달청과 광업공단 간 비축 대상물자 협의 및 희소금속 이관 등 협의
- 「희소금속 이관 세부조건」 확정('23.9월)
- 「희소금속 이관 및 이관 전 관리공동기준」 개정('22.12월)
- 「희소금속 이관 및 이관 전 관리공동기준」 제정('20.6월)
- 「금속자원 비축제도 개선방안」 마련('19.6월)

□ 구성 연혁
- 「금속자원 비축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서('13.12월)」*에 따라 협의회 구성해 '14.4월 발족
  * 이 협약서에서 규정한 협력사항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세부 추진방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금속자원 비축기관 협의회를 구성·운영

자료: 조달청

참고로 희소금속 이관금액은 매년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을 것이나, 정부 차원의 통일되고 구체적인 이관계획을 우선 수립하는 것이 국회의 예산안 심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둘째, 조달청은 광업공단의 자체 비축기지 신설 추진상황과 희소금속 이관에 따른 공간 확보를 고려하여 구체적·중장기적인 비축공간 활용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비축목표량에 미달하는 비철금속의 추가 확보를 위해서는 비축공간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현재 비철금속 추가 비축에 필요한 비축공간 면적에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야적장에 보관하고 있는 알루미늄의 창고 이전도 함께 추진하여야 하는 상황임[259].

조달청의 비축창고 면적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6월말 기준 비축가능면적(8,552㎡)과 군산창고 신축 예정면적(2025년 5월말 완공 예정, 비축가능면적 10,809㎡)[260]을 고려할 때 비철금속 추가확보를 위해 필요한 공간(22,222㎡)에도 못 미쳐, 야적 알루미늄 이전(필요공간 47,667㎡)을 동시에 추진하려면 총 50,528㎡의 비축면적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

[2024년 6월말 기준 조달청 비축창고 면적 현황]

(단위: ㎡)

총 면적* (A)	비철금속 보관 (B)	희소금속 보관		비축가능 면적 (E=A-B-C-D)	군산 창고 신축 면적** (F)	비철금속 추가비축 필요공간 (G)	야적 알루미늄 보관 (H)	부족분*** (I=E+F-G-H)
		광업공단 임대(C)	이관 대상 보관(D)					
71,803	24,240	24,944	14,067	8,552	10,809	22,222	47,667	△50,528

*비축공간 전체면적(90,526㎡)-사무실 등 비축불가면적(18,723㎡)
**군산 비축창고 신축 연면적(14,636㎡)-특수창고(1,486㎡, 활성탄 비축 예정)-통로 등 비축불가면적(2,341㎡)
*** 광업공단이 임대 사용 중인 비축공간 반환 및 희소금속 이관 완료 시 △11,517㎡(50,528㎡-임대면적 24,944㎡-희소금속 보관면적 14,067㎡) 부족
자료 : 조달청

259) 2020회계연도 결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적사항(야적장에 보관 중인 알루미늄을 창고에 보관할 필요)에 대한 후속조치로 추진 중이며, 야적장에 보관 중인 알루미늄의 창고 이전을 위해서 40,662㎡의 비축면적이 필요함.

260) 군산비축기지 비축창고 신축 현황

○ 사업기간 : 2022년~2025년 5월말 예정
○ 신축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군산비축기지 내
○ 사용용도 : 비철금속 등 비축예정
○ 창고규모 : 연면적 14,636㎡

이 중 조달청이 보유한 희소금속은 광업공단으로 이관되더라도 조달청에서 임대한 창고(광업공단이 조달청으로부터 임대사용 중인 군산 비축창고 공간)에서 보관해야 되므로, 비축공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조달청 비축창고에 보관중인 희소금속을 광업공단 자체 비축창고(신축 필요)로 이관하는 것임.

한편, 광업공단은 희소금속 비축을 위하여 자체 비축기지를 건립 중에 있으며, 건립이 완료될 경우 조달청 비축창고에 보관 중인 희소금속을 전량 이관할 계획(산자부·광업공단은 2029년까지 이관 완료 계획)인데, 조달청은 광업공단 비축기지 신설이 현재 설계 진행 단계이므로 신축 완료를 앞 둔 적정시점에 희소금속의 광업공단 자체 비축기지 이관으로 발생하는 비축공간의 활용방안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임.

[광업공단 전용 비축기지 건립 사업 내용]

□ (위치) 전북 군산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

□ (규모) 일반창고 8개동(대형 6, 소형 2), 특수창고* 4개동, 관리동, 전기·기계실, 자재창고
*화재예방을 위해 별도 보관이 필요한 마그네슘, 항온항습이 필요한 희토류 등 보관용도

□ (면적) 부지 179,004㎡, 건물 111,697㎡(지상1층)

□ (사업기간) 2024년 ~ 2026년(3년)
- ('24년) 부지매입 및 건축설계, ('25~'26년) 창고 건축공사

□ (총사업비) 2,417억원
- '24년 예산 187억원(부지매입비 128억원, 설계비 59억원)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그러나, 광업공단 비축기지 신설 사업은 총사업비가 확정되어 2024년 예산에 부지매입비 및 설계비가 반영되어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므로, 해당 비축기지 신설(2026년 완공 예정)에 대비한 비축공간 활용 방안을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조달청은 비축공간 확보 방안으로 신축 군산 비축창고 활용방안[261] 외에는 기존 비축창고 활용률 제고(재건축, 공간 재배치를 통한 활용률 극대화)에 대한 기본적인 방침만을 정하고 있으나, 현재 군산창고 신축사업은 계획대비 계속 지연(당초: '24년 9월말 → 1차

261) 조달청에 따르면 비철금속 목표재고량 확보 및 긴급수급조절물자(활성탄) 비축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임.

변경: ’25년 3월말 → 2차 변경: ’25년 5월말 완공)[262]되고 있으며, 기존 비축창고 활용률 제고 계획에 대해서도 조달청은 대상 및 시기 등 구체화된 계획은 수립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조달청은 산업통상자원부·광업공단와의 협의 및 정보공유를 통해 광업공단 비축기지 신설에 대비한 비축공간의 활용방안을 마련함과 함께, 기존 비축창고 활용률 제고방안에 대한 구체화된 계획을 포함한 중장기적인 비축공간 활용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임.

262) 1차 변경은 2022년말 완료예정이었던 설계용역이 설계적정성 검토 및 총사업비 협의 지연을 이유로 지연됨에 따라 전체 일정이 변경된 것이며, 2차 변경은 설계용역이 추가로 지연되고 시설공사 등 계약체결 역시 지연됨에 따라 발생한 것임.

(2)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지원 사업의 개선 필요 (정부조달 국제협력체제 구축, 기획조정관)

< 현 황 >

「정부조달 국제협력체제 구축」 사업은 해외조달기관·국제기구와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며 한국형 전자조달 시스템을 해외에 확산 보급하는 사업임. 2023년 예산액은 26억 1,400만원으로, 24억 9,400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 2,000만원을 불용하였음.

내역사업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사업은 내내역사업 해외조달시장 조사·설명회 및 민관협력 시장개척단 파견, 해외바이어 발굴 및 매칭, 해외조달시장 수출전략기업 육성 사업 등으로 구성되었음. 동 내역사업의 2023년 일반용역비 예산현액은 13억 7,100만원으로, 12억 9,100만원을 집행하였고 8,000만원을 불용하였음.

내역사업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개최」는 나라장터 엑스포를 개최하여 국내 우수조달제품 및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제품을 국·내외에 홍보하고 수요를 창출하는 사업임. 동 내역사업의 일반용역비 예산현액은 1억 7,500만원으로, 1억 7,3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3회계연도 정부조달 국제협력체제 구축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2023								2024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정부조달 국제협력체제 구축 (1233-331)	2,614	-	-	-	2,614	2,494	-	120	3,585
- 정부조달분야 국제협력 및 나라장터 해외확산	199	-	-	-	199	195	-	4	287
- 우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지원	1,899	-	△10	-	1,889	1,776	-	113	2,759
· 일반용역비 (210-14)	**1,331**	**-**	**40**	**-**	**1,371**	**1,291**		**80**	**1,311**
-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개최	516	-	-	-	526	523		3	539
· 일반용역비 (210-14)	**165**		**10**		**175**	**173**		**2**	**188**

가) 일반용역비 사업의 계약 상대방 다양화 필요

< 검토의견 >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일반용역비 사업에 다양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조달청은 내역사업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의 일반용역비로 혁신조달기업 미국 시장개척단 파견, K-바이오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 해외조달시장 직접입찰 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였음.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사업 일반용역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내용	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계약자
해외조달시장 조사, 설명회 및 민관협력 시장개척단 파견	혁신조달기업 미국 시장개척단 파견	-	40	39	OOO 코리아
해외바이어 발굴 및 매칭	말레이시아 Smart Nation Expo 한국조달관 운영	23.5	23.5	21.5	□□□□포탈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한국조달관 운영	23.5	23.5	21.5	□□□□포탈
	K-바이오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사업 운영	119	119	115	△△△△ 주식회사
해외조달벤더 등록 및 해외 조달시장 직접입찰 참가지원	해외조달 벤더등록 지원 사업	14	14	12	◇◇◇◇◇◇ 컨설팅
	해외조달시장 직접입찰 지원사업	126	126	119	**사단법인 한국지패스 기업수출진흥 협회**
글로벌 공공조달 수출상담회 개최	공공조달 수출상담회 (GPPM) 운영	156	156	148	주식회사 ◎◎◎◎
글로벌 마케팅 전문인력 인턴채용 상담회 개최	**해외조달시장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213	213	196	**사단법인 한국지패스 기업수출진흥 협회**
해외조달시장 수출전략기업 육성	**해외조달시장 진출 수출전략기업 육성사업 운영**	590	590	553	**사단법인 한국지패스 기업수출진흥 협회**

구분	사업내용	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계약자
G-PASS기업 지정·관리제도 운영용역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 지정관리 위탁 용역**	66	66	66	**사단법인 한국지패스 기업수출진흥 협회**
계		1,331	1,371	1,291	

자료: 조달청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이 중 사단법인 한국지패스기업수출진흥협회(이하 “지패스협회”)가 수행한 사업은 해외조달시장 직접입찰 지원사업 등 4개 사업 9억 3,400만원으로, 내역사업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의 일반용역비 예산 13억 3,100만원의 70.2%(예산현액 13억 7,100만원의 68.1%)에 해당함.

또한, 지패스협회는 2021년도부터 내내역사업 G-PASS기업 지정·관리제도 운영용역 사업 및 해외조달시장 수출전략기업 육성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2023년도에 지패스협회에서 수행한 용역사업의 비중이 높고 2개 용역사업은 2021년도부터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할 것임.

[해외조달시장 수출전략기업 육성 및 G-PASS기업 지정·제도 운영용역 계약 현황]

(단위: 백만원, 개)

구분		2020	2021	2022	2023
해외조달시장 수출전략기업 육성 사업	계약자	법무법인 ○○	(사)한국지패스기업수출진흥협회	(사)한국지패스기업수출진흥협회	(사)한국지패스기업수출진흥협회
	입찰참여 기업수	2	1	2	5
	계약방법	경쟁	경쟁→수의	경쟁	경쟁
	예산	570	570	570	590
G-PASS 기업 지정·관리 제도 운영용역	계약자	-	(사)한국지패스기업수출진흥협회	(사)한국지패스기업수출진흥협회	(사)한국지패스기업수출진흥협회
	입찰참여 기업수	-	1	1	1
	계약방법	-	경쟁→수의	경쟁→수의	경쟁→수의
	예산	-	66	66	66

자료: 조달청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G-PASS기업 지정·관리제도 운영용역 사업은 국내 수출유망 중소기업의 해외 네트워크 형성 및 수출기반 강화를 위한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G-PASS기업)’ 지정제도를 운영·관리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 1,263개 기업을 지정하였음.

[연도별 G-PASS기업 수 및 수출실적]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유 효 지정업체	663개	832개	1,022개	1,114개	1,263개
수출실적	7.4억달러	7.4억달러	12.45억달러	15.07억달러	16.33억달러

자료: 조달청 제출 자료

해외조달시장 수출전략기업 육성 사업은 수출전략기업과 해외 현지 유망기업을 매칭시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해외 협업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2개년 사업으로 수출전략기업 10개사를 1차년도 사업에서 선정하여 전체 사업 종료 시까지 지원하는 사업임.

[해외조달시장 수출전략기업 육성 사업 성과]

(단위: 천달러, 개)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사업	'19~'20사업		'20~'21사업		'21~'22사업		'22~'23사업		'23~'24사업	
계약기업	3	3	-	2	2	4	1	3	2	20
계약건수	3	7	-	2	4	9	1	10	7	43
계약금액	2,701	3,814	-	5,025	52	1,386	233	4,278	2,297	19,786

자료: 조달청 제출 자료

조달청은 지패스협회의 2023년도 용역사업 수행에 관하여 다양한 계약상대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모두 경쟁입찰을 통해 집행하였으며, 비교적 소액계약건인 G-PASS기업 지정·관리 용역(6,6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건은 계약상대자가 모두 경쟁을 통해 선정되었는데 앞으로도 다양한 계약상대자와 계약체결할 수 있도록 경쟁입찰을 계속 실시할 예정이라는 입장임.

[수출전략기업 육성사업 등 계약자 선정 사유]

사업명	입찰 참여기업 수	계약자 선정 사유
수출전략기업 육성사업	5개사	제안서 평가 결과 우선 협상대상자와 계약
G-PASS기업 지정·관리 용역	1개사	재공고 유찰 후 단독응찰자와 수의계약
글로벌 마케팅 전문인력 인턴 양성·채용 상담회	2개사	제안서 평가 결과 우선 협상대상자와 계약
해외조달시장 직접입찰참가지원	2개사	제안서 평가 결과 우선 협상대상자와 계약

자료: 조달청 제출 자료

한 기업에서 용역사업을 계속 수행함으로써 확보될 수 있는 효율성이 있을 것이나, 조달청 사업에 있어서 특정 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우려가 있고 다른 기업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다양성과 변화도 있을 것이므로 조달청은 다양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나) 시장개척단 사업 예산비목의 적정 편성 필요

< 검토의견 >

시장개척단 일반용역비 사업은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시장개척단 사업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적정 예산비목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음.

내역사업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의 내내역사업 해외조달시장 조사, 설명회 및 민관협력 시장개척단 파견(이하 “시장개척단”) 사업은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설명회, 바이어 매칭 및 수출 상담, 시장개척단 파견 등을 통해 조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임.

조달청은 2023년도 시장개척단 사업 예산 중 일반수용비 4,000만원을 일반용역비로 세목조정하여 사업을 수행하였음.

[시장개척단 사업 세목조정 내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금액	내용	사유
정부조달 국제 협력체제 구축 (1233-331)	40	일반수용비(210-01) → 일반용역비(210-14)	시장개척단 사업 운영을 위한 용역 발주를 위하여 세목조정

자료: 조달청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2023년 일반용역비로 수행한 시장개척단 사업을 통하여 태양광 교통안전 제품 및 시스템(Solar Road stud, Solar GIWICS), 시각장애인용 닷 패드(Dot Pad), 자동 현미경 등에 관한 협의 및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음.[263]

263) 2024년 하반기 수주 진행 예정임.

[2023년도 시장개척단 사업 용역 수행 현황]

구분	내용
사업명	2023년 조달기업 해외조달시장 개척단 운영 용역
예산	4,000만원
집행액	3,900만원
대상	조달기업 25개사
절차	타깃국가 선정 → 참가기업 모집 → 참가기업 확정 → 시장개척단 파견
주요내용	- 혁신공공조달 개척단 참여 기업 1:1 바이어 매칭, 시장개척단 파견 등 실시, 미국 조달시장 진출 관련 법률 자문 등을 통해 미국 조달시장 진출 판로 개척 · 경제개발청 주관 수출 설명회(미국 펜타곤, 워싱턴 DC 교통정보국 등), 미국 조달협회 간담회, 메릴랜드 주정부 및 기술개발공사 주관 수출설명회 개최, 현지 바이어, 에이전시 면담, 법률 자문 등 실시
결과	태양광 교통안전 제품 및 시스템, 시각장애인용 패드, 자동 현미경 등 업무 협약

자료: 조달청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조달청은 시장개척단 사업의 경우 조달기업들과 해외바이어 매칭이 매우 중요함에 따라 해외바이어 모집을 위해서는 외부용역 위탁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임.

조달청은 2022년도에도 일반수용비 3,990만원을 일반용역비로 세목조정하여 사업을 수행한 바 있는데, 2022년도의 경우 시장개척단 일반용역비 사업을 통하여 인공지능 스마트 청진기 수출 계약 405만 달러 및 탄소중립형 ICT 스마트 잠금장치 수출계약 300만 달러를 체결하였음.

[2022년 시장개척단 사업 세목조정 내용]

(단위: 백만원)

연도	사업명	예산	결산	비고
2022년	혁신제품 온라인 조달시장 개척단	39.9	39.5	일반수용비→일반용역비로 세목조정

자료: 조달청 제출 자료

[2022년 및 2023년 시장개척단 사업 추진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사업명	예산	결산	계약자	목표시장	사업 성과
2022	혁신제품 온라인 조달시장 개척단	39.9	39.5	○○○ 코리아(유)	미주, 유럽, 동남아 시장	(S사) 인공지능 스마트 청진기 수출계약 405만 달러 체결 (P사) 탄소중립형 ICT 스마트 잠금장치 수출계약 300만 달러 체결
2023	조달기업 해외조달시장 개척단 운영 용역	40	39	○○○ 코리아(유)	미국 시장	(G사) 미 국방부 펜타곤 주차장에 태양광 교통안전 시스템 추진 검토 (N사) 미국 바이어와 말라리아 장비 등에 대해 연구 협업 등을 논의 (D사) 미국 시각장애인협회와 거래 조건 협의

자료: 조달청 제출 자료

해외조달시장의 자국기업 우대 등 진입장벽으로 인해 직접 진출은 어려움이 있어 현지 바이어와의 매칭이 필요하고 해외바이어 모집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업체에 용역의뢰를 할 필요가 있다는 조달청의 입장은 일응 이해되는 측면이 있음.

그러나 일반수용비로 편성된 예산을 2년 연속 일반용역비로 세목조정하여 사업을 수행한 것은 부적정하므로,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시장개척단 사업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적정 예산비목으로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3) 조달청 사용 전산소모품에 대한 경쟁입찰 실시 및 수요기관 편의 증진을 위한 전산소모품 다수공급자계약 등 방안 마련 필요 (기관운영 기본경비, 운영지원과·구매사업국)

< 현 황 >

「기관운영 기본경비 사업」은 조달청 기관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서 소모성물품 구입, 여비, 업무추진비 등을 편성한 사업임. 2023년 예산액은 76억 2,900만원으로, 이 중 1억 6,800만원을 전용하였고, 76억 7,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2,000만원을 불용하였음.

「기관운영 기본경비 사업」의 2023년 일반수용비 예산현액은 25억 1,800만원으로, 25억 1,500만원을 집행하였고, 3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3회계연도 기관운영 기본경비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 세목명)	2023								2024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기관운영 기본경비 (7111-251)	7,629	-	168	-	7,797	7,677	-	120	8,641
- 일반수용비(210-01)	**2,559**	**-**	**△41**	**-**	**2,518**	**2,515**	**-**	**3**	**2,997**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1,468	-	143	-	1,611	1,563	-	48	1,667
- 피복비(210-03)	51	-	△1	-	50	49	-	1	50
- 급식비(210-04)	28	-	△6	-	22	21	-	1	23
- 임차료(210-07)	538	-	11	-	549	541	-	8	476
- 유류비(210-08)	86	-	△27	-	59	57	-	2	67
- 시설장비유지비(210-09)	648	-	42	-	690	689	-	1	774
- 재료비(210-11)	34	-	-	-	34	34	-	0	34
- 일반용역비(210-14)	253	-	3	-	256	232	-	24	270
- 관리용역비(210-15)	127	-	△1	-	126	123	-	3	128
- 국내여비(220-01)	889	-	90	-	979	969	-	10	978
- 국외업무여비(220-02)	247	-	△89	-	158	157	-	0	247
- 관서업무추진비(240-02)	401	-	-	-	401	401	-	0	505
- 일반연구비(260-01)	124	-	-	-	124	113	-	11	199
- 배상금(310-02)	50	-	51	-	101	101	-	0	100
- 포상금(310-03)	126	-	△7	-	119	112	-	7	126

< 검토의견 >

조달청은 각 부서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전산소모품을 별도 경쟁입찰 없이 단일 업체에서 구매하고 있으므로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경쟁입찰을 거치도록 하고, 조달사업 담당 국가기관으로서 각 수요기관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전산소모품에 대하여 다수공급자계약 등 수요기관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첫째, 조달청은 각 부서에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산소모품을 별도의 경쟁입찰 없이 단일 업체에서 구매하고 있으므로, 가격 검증 및 공정한 업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령에서 정하는 경쟁입찰을 거칠 필요가 있음.

조달청은 「기관운영 기본경비 사업」에서 조달청 내 각 부서에서 사용하는 전산소모품(토너, 드럼 등)을 부서 자체적으로 구입·집행하고 있으며, 2023년 전산소모품 구입 비용은 총 2억 9,028만원임.

조달청은 재제조토너[264]의 경우 다수공급자계약[265]으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266]에 등재된 물품을 구매하였으나, 정품 토너 등의 경우에는 특정 업체(A대 산학협력단)로부터만 납품을 받고 있음.

[2023년 조달청 전산소모품 구입 세부내역]

(단위: 천원)

구매 품목	구매처	실 집행액		지출형태[267]
정품 토너 및 드럼 등	A대학교 산학협력단	268,220	254,452	관서운영경비 지출
			13,768	일반지출
재제조토너	나라장터쇼핑몰 (총 8개 등록업체)	22,062		일반지출
합 계		**290,282**		

자료: 조달청

264) 폐카트리지를 회수하여 분해, 청소, 일부부품 교체 등의 작업 후 토너를 재충전한 제품. 폐카트리지에 토너충전하는 재생토너도 포함함.

265) 각 수요기관이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물품 중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계약 대상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조달청이 2인 이상을 계약업체로 하여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제도(조달사업법 제13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①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하기 위하여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제12조에 따른 계약(이하 "다수공급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266) 조달청이 다수공급자계약 등 단가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전자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개설한 온라인 쇼핑몰

A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구매하는 정품 토너 등의 구입내역을 살펴보면, 별도의 경쟁입찰 없이 일정금액으로 분할[268]하여 관서운영경비 등으로 집행하고 있음.

[2023년 조달청이 A대 산학협력단에서 구입한 전산소모품 내역]

건명	지급액(원)	지급처리일자	지출형태
프린트 토너 등 소모품 구매비용 지출(운영지원과)	1,067,000	2023-02-23	일반지출
프린트 토너 등 소모품 구매비용 지출(운영지원과)	1,023,000	2023-02-23	
프린트 토너 등 소모품 구매비용 지출(운영지원과)	1,519,320	2023-04-27	
프린트 토너 등 소모품 구매비용 지출(운영지원과)	308,000	2023-05-26	
프린트 토너 등 소모품 구매비용 지출(운영지원과)	636,900	2023-06-23	
프린트 토너 등 소모품 구매비용 지출(운영지원과)	627,000	2023-06-23	
프린트 토너 등 소모품 구매비용 지출(운영지원과)	242,000	2023-07-28	
프린트 토너 등 소모품 구매비용 지출(운영지원과)	1,331,000	2023-09-22	
프린트 토너 등 소모품 구매비용 지출(운영지원과)	220,000	2023-09-22	
프린트 토너 등 소모품 구매비용 지출(운영지원과)	1,458,820	2023-10-30	
프린트 토너 등 소모품 구매비용 지출(운영지원과)	979,000	2023-11-24	
프린트 토너 등 소모품 구매비용 지출(운영지원과)	1,452,000	2023-12-22	
프린트 토너 등 소모품 구매비용 지출(운영지원과)	2,904,000	2023-12-22	
토너대금 지급	739,200	2023-01-19	관서운영경비 지출
전산기기 소모품 구입 대금(12월)	2,436,500	2023-01-19	
공공물자국 전산소모품 구입 대금 지급	665,500	2023-01-25	
프린터 토너외 3건	1,416,800	2023-01-25	
전산소포품 구입비(KVM스위치)	132,000	2023-01-26	
프린터 토너 구입 대금 지급	594,000	2023-01-30	
전산기기 소모품 구입 대금(2월)	2,509,100	2023-02-23	
공공물자국 전산소모품 구입 대금 지급	1,985,500	2023-02-24	
일반수용비 지급(프린터 토너 구입)	297,000	2023-02-27	
프린터 토너외 7건	1,111,000	2023-03-02	
프린터 토너 등 소모성 물품 구입	4,955,500	2023-03-03	
전산소모품 구입비	970,600	2023-03-07	
토너대금 지급	3,822,900	2023-03-09	
토너 구입	1,925,000	2023-03-27	
프린터 토너 1건	858,000	2023-03-28	
공공물자국 전산소모품 구입 대금 지급	1,628,000	2023-03-28	
전산기기 소모품 구입 대금(3월)	2,553,100	2023-03-28	
프린터 토너외 3건	1,298,000	2023-03-29	
일반수용비 지급(기본경비, 프린터 토너 구매)	220,000	2023-03-29	
프린터 토너 등 소모성 물품 구입	4,818,000	2023-03-31	
전산소모품 구입 대금	4,393,400	2023-04-03	

267) '관서운영경비'는 일반적인 지출원칙의 예외로, 500만원 이하 소규모 금액 등에 대하여「국고금 관리법」에서 정한 재무관과 지출관을 통한 집행이 아닌, 부서 자체적으로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을 통한 간소화 절차로 집행이 가능함. 반대로 일반지출은 「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재무관과 지출관을 통한 일반적인 집행 형태를 의미함.

268) 조달청의 개별 집행건들은 단순한 행정상 편의를 위하여 일정 기간(월 단위 등) 동안의 납품내역을 모아서 집행하거나, 관서운영경비로의 집행을 위하여 일정 금액(5백만원 이하)으로 나누어 집행하고 있음.

건명	지급액(원)	지급처리일자	지출형태
컬러프린터 토너 3건	979,000	2023-04-26	
공공물자국 전산소모품 구입 대금 지급	3,069,000	2023-04-26	
프린터 토너외 대금 지급	1,974,500	2023-04-26	
토너 구입	1,108,800	2023-04-27	
프린터 토너 등 소모성 물품 대금	2,563,000	2023-04-28	
프린터 토너외 5건(4월)	2,230,800	2023-05-04	
전산기기 소모품 구입 대금(4월)	4,565,000	2023-05-08	
전산소모품 구입비	4,180,000	2023-05-10	
일반수용비 지급(프린터 토너 4건)	1,331,000	2023-05-12	
공공물자국 전산소모품 구입 대금 지급	1,302,400	2023-05-26	
프린터 토너 등 소모성 물품 대금 지급	1,782,000	2023-05-26	
토너 구입	2,340,800	2023-05-26	
프린터 토너 지급	1,760,000	2023-05-26	
전산기기 소모품 구입 대금(5월)	1,809,500	2023-05-26	
전산소모품 구입 대금	1,059,300	2023-06-01	
프린터 토너 1건	275,000	2023-06-16	
공공물자국 전산소모품 구입 대금 지급	840,400	2023-06-23	
프린터 토너외 대금 지급	1,270,500	2023-06-23	
전산소모품 구입비	356,400	2023-06-26	
프린터 토너 구입 대금 지급	1,903,000	2023-06-26	
토너 구입	1,493,800	2023-06-26	
전산기기 소모품 구입 대금(6월)	3,446,300	2023-06-28	
프린터 토너외 7건	2,596,000	2023-06-29	
일반수용비(프린터 토너 4건)	1,331,000	2023-07-05	
일반수용비(프린터 토너 5건)	1,628,000	2023-07-05	
서울청 부서 신설공사 관련 필요 물품 납품	2,020,700	2023-07-13	
전산소모품 구입 대금 지급	4,851,000	2023-07-26	
토너 구입	4,803,700	2023-07-26	
프린터 토너 등 구입 대금 지급	2,717,000	2023-07-28	
전산기기 소모품 구입 대금(7월)	3,316,500	2023-07-28	
전산소모품 구입비	2,901,800	2023-08-09	
전산소모품 구입 대금 지급	990,000	2023-08-23	
프린터 토너외 10건	1,584,000	2023-08-23	
일반수용비 지급(프린터 토너)	1,864,500	2023-08-23	
전산소모품 구입	1,779,800	2023-08-24	
프린터 토너 등 소모성 물품 대금 지급	4,237,200	2023-08-24	
프린터 토너외 지급	2,057,000	2023-08-24	
토너 구매 대금 지급	2,698,300	2023-08-30	
전산기기 소모품 구입 대금(8월)	1,247,400	2023-08-30	
프린터 토너 5건	1,397,000	2023-09-11	
컬러프린터 토너 3건	979,000	2023-09-21	
프린터 토너 등 소모성 물품 구입 대금 지급	4,741,000	2023-09-21	
사무용품 구입(프린터 토너) 지급결의	726,000	2023-09-21	
토너 구매 대금 지급	1,306,800	2023-09-21	
프린터 토너등 지급	1,496,000	2023-09-21	
전산소모품 구입	3,273,600	2023-09-22	
전산기기 소모품 구입 대금(9월)	1,789,700	2023-09-22	

건명	지급액(원)	지급처리일자	지출형태
전산소모품 구입 대금 지급	1,903,000	2023-09-25	
프린터 토너외 12건	4,779,500	2023-10-06	
일반수용비(프린터 토너)	1,347,500	2023-10-11	
전산소모품 구입 대금 지급	1,694,000	2023-10-25	
토너 구매	1,133,000	2023-10-26	
프린터 토너등 대금 지출	2,559,700	2023-10-26	
프린터 토너 2건	627,000	2023-10-27	
프린터 토너 구입 대금 지급	4,994,000	2023-10-30	
프린터 토너 6건	4,158,000	2023-10-31	
전산기기 소모품 구입 대금(10월)	2,437,600	2023-10-31	
전산소모품 구입비	4,041,400	2023-11-02	
관서운영경비(일반수용비, 토너) 지급	704,000	2023-11-10	
프린터 토너외 8건	2,262,700	2023-11-13	
토너 구매	4,911,500	2023-11-22	
전산소모품 구입비	306,900	2023-11-24	
프린터 토너외 3건	1,313,400	2023-11-24	
사무용품 구입(HBU 등) 지급결의	137,500	2023-11-24	
프린터 토너등 지급	2,552,000	2023-11-24	
프린터 토너 등 소모성 물품 구입 대금 지급	4,901,600	2023-11-28	
일반수용비(토너)	677,600	2023-12-04	
프린터 토너 구입 대금 지급	4,862,000	2023-12-05	
토너 구입	3,091,000	2023-12-06	
프린터 토너 5건	3,256,000	2023-12-14	
전산소모품 구입 대금 지급	1,320,000	2023-12-18	
전산기기 소모품 구입 대금(11월)	2,425,500	2023-12-18	
프린터 토너외 8건	3,776,300	2023-12-20	
프린터 토너 4건	1,584,000	2023-12-21	
전산소모품 구입비	4,653,000	2023-12-21	
프린터 토너등 지급	3,613,500	2023-12-21	
전산소모품 구입 대금 지급	4,042,500	2023-12-22	
토너 구매 대금 지급	770,000	2023-12-22	
전산기기 소모품 구입 대금(12월)	957,000	2023-12-22	
프린터 토너 등 소모성 물품 구입 대금 지급	4,130,500	2023-12-26	
국유재산관리과 전산소모품 구입 대금 지급	4,290,000	2023-12-27	
전산소모품 구입 대금 지급	4,719,000	2023-12-27	
프린터 토너 2건	517,000	2023-12-27	
관서운영경비(일반수용비-토너) 지급	4,961,000	2023-12-27	
사무용품 구입(프린터 토너) 지급결의	858,000	2023-12-27	
전산소모품 구입비	4,790,500	2023-12-28	
프린터 토너 구입비(콜센터)	4,290,000	2023-12-28	
프린터 토너 구입 대금 지급	4,191,000	2023-12-28	

자료: 조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에서는 국가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하고(제7조), 국고의 부담이 되

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계약이행능력이 인정된 자로서 최저가격을 입찰한 자 등을 낙찰자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제10조)[269].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에서는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 제조·구매, 용역 계약' 등으로서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이 비효율적인 경우 등에 한정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조달청의 전산소모품 구입과 같이 개별적인 조달요구가 복수로 이루어지거나 분할되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기준금액(추정가격)은 같은 회계연도에 계약할 금액의 총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270].

2023년 조달청의 전산소모품(정품토너 및 드럼 등) 구입액은 총 2억 6,822만원으로 금액 기준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단일한 업체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특정된 물품을 납품 받는 조달청의 전산소모품 납품 형태를 고려할 때, 경쟁입찰에 의하는 것이 국가계약법령의 규정 및 취지에 부합할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해 조달청은 특정 업체(A대 산학협력단)에게서만 정품토너 등을 구매하는 이유

---

26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제10조(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②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1. 충분한 계약이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2 입찰공고나 입찰설명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27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추정가격의 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산에 계상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추정가격을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
2.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추정단가에 조달예정수량을 곱한 금액
3. 개별적인 조달요구가 복수로 이루어지거나 분할되어 이루어지는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중에서 선택한 금액
   가. 해당 계약의 직전 회계연도 또는 직전 12개월 동안 체결된 유사한 계약의 총액을 대상으로 직후 12개월 동안의 수량 및 금액의 예상변동분을 고려하여 조정한 금액
   나. 동일 회계연도 또는 직후 12월동안에 계약할 금액의 총액
4. 물품 또는 용역의 리스·임차·할부구매계약 및 총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의한 금액
   가. 계약기간이 정하여진 계약의 경우에는 총계약기간에 대하여 추정한 금액
   나. 계약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계약의 경우에는 1월분의 추정지급액에 48을 곱한 금액
5. 조달하고자 하는 대상에 선택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최대한 조달가능한 금액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에 대하여 'A대 산학협력단이 조달청 사무용 전산장비(PC, 프린터 등) 운영 용역을 수행하고 있어 연락이 용이하고 대응이 빠른 장점 때문'이며, 경쟁입찰 등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도 '규격이 다양하고 새로운 전산장비가 도입되면 소모품 규격도 함께 변경되어야 하는 등 수요예측이 어렵기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토너 등 전산소모품 납품은 전산장비 운영 위탁 용역 수행과는 별개로 특정 기술을 요하거나 특정 자격이 필요한 성질로 볼 수 없고, 정품토너로서 규격화된 제품이므로 다른 납품 업체를 통해 구매하더라도 성능 및 설치 등에 지장이 없으며[271],

경쟁입찰 등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유로 제시한 '필요수량 및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사유에 대해서도 국가계약법령에서는 필요수량·시기 등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위해서 단가계약 등 별도의 계약유형을 마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려움.

[총액계약 및 단가계약 비교]

구분	계약목적물	계약기간	납품수량	활용 범위
총액계약	계약 대상물품의 총납품 수량 및 총 계약금액	계약일 ~ 납품일	계약을 체결한 수량	공사, 행사 등 계약건별로 대상물품이 상이하거나, 대상물품에 대한 조달의뢰가 일회적인 경우
단가계약	**계약 대상물품의 단가**	**계약일로부터 통상 1년**	**정해진 납품수량 없이 수요기간의 사정에 따라 수시 조정[272]**	**소모품 등 동일 계약 대상물품에 대한 조달의뢰가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자료 : 조달청

또한, 각 부서별로 제각기 다른 전산소모품을 다수의 업체로부터 납품받을 경우 기관 전체적인 계약체결 없이 관서운영경비로 부서 자체적으로 구매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겠지만, 조달청은 단일한 업체로부터 납품받고 있고 여러 부서에 걸쳐 소수 기종의 프린터 등을 사용(프린터 기준 18종)하고 있으므로, 경쟁입찰 등 단일한 계약절차를 거칠 경우 가격 검증, 공정하고 적정한 업체 선정 등으로 보다 효율적인 사업 집행이 될 것으로 보임.

271) A대 산학협력단은 해당 토너의 제조업체가 아니며, 제조업체나 다른 도매업체로부터 구매한 제품을 납품하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임.
272) 다만, 배정예산 등 납품 가능한 상한선은 정함.

참고로 다수의 국가기관들도 대량의 토너 구입 및 연간 납품을 위하여 총액계약 및 단가계약을 활용하고 있고 그 중 상당수의 기관이 조달계약을 의뢰하여 조달청을 통한 계약 체결을 하고 있으며[273], 같은 기획재정부 산하 국가기관인 통계청의 경우에도 각 부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전산소모품(토너 등)에 대하여 총액계약 또는 단가계약의 형태로 납품받고 있음[274].

둘째, 조달청은 조달사업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으로서 각 수요기관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전산소모품(정품토너 등)에 대하여 다수공급자계약 등 수요기관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조달청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275] 등에 따라 조달물자의 구매·공급 등을 포함한 전체 조달사업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의 지위에 있음.

다수공급자계약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276]에 따라 각 수요기관이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물품 중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계약 대상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조달청이 2인 이상을 계약업체로 하여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제도임.

따라서 정품토너 등 품질·성능이 같고 규격화되어 각 수요기관이 공통적으로 사용되

---

27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계약체결의 요청)** ①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요청 금액 및 계약의 성격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 본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조달청장에게 수요물자의 구매 및 공사의 계약체결을 요청할 수 있다.

274)

연도	계약일자	계약업체	계약 유형	계약품목	총 계약금액(원)
2023년	2023.7.4	***	제한경쟁(총액)	정품토너 12종 정품드럼 1종	59,197,000
2024년	계약진행 중 (6월 현재)		제한경쟁(단가)	정품토너 16종 정품드럼 1종	73,059,380 (배정예산)

27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조달사업의 범위) 조달청장이 하는 조달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달물자의 구매, 물류관리, 공급 및 그에 따른 사업
2. 수요기관의 공사 계약 및 그에 따른 사업
3. 수요기관의 시설물 관리·운영 및 그에 따른 사업
4. 조달물자 및 안전관리물자의 품질관리
5. 국제조달 협력 및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조달청장이 할 수 있거나 하도록 규정한 사업

27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①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하기 위하여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제12조에 따른 계약(이하 "다수공급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는 전산소모품의 특성을 고려할 때, 조달청이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할 경우 수요기관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하여 필요한 수량만큼 검증된 가격으로 손쉽게 구매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제조토너의 경우에는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되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한 구매가 가능하나, 오히려 품질·성능 등이 보다 동일하고 규격화된 정품토너에 대하여는 다수공급자계약 체결이 되어 있지 않음.

이에 대해 조달청은 정품토너 다수공급자계약을 위해 공고[277]를 실시하였으나, 제조·공급업체들의 계약 요청이 없어서 현재까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되지 않고 있으며, 업체들의 계약 요청이 없는 사유에 대하여는 우대가격 유지의무[278]를 지키기 어렵기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음.

따라서 조달청은 업체들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다수공급자계약을 포함하여 정품토너 등에 대한 조달수요가 있는 수요기관들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수요기관의 편의 및 조달사업의 효율성을 증진할 필요가 있음.

277) 공고번호: 20160602769-00

278)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다수공급자계약의 계약가격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동안 계약가격을 시장거래가격과 같거나 낮게 유지하도록 하는 우대가격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4) 포상금 예산 관련 집행지침 준수 필요 (기관운영 기본경비·조달행정 역량강화·조달전문교육 운영, 기획조정관·운영지원과·공공조달역량개발원)

< 현 황 >

2023년도에 조달청은 4개의 세부사업에서 2억 1,640만원의 포상금을 편성하였으며, 그 중 2억 940만원을 집행하였음.

[2023회계연도 포상금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세부사업코드)	2023								2024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기관운영 기본경비 (7111-251)	126	-	△7	-	119	112	-	7	126
조달행정 역량강화 (7132-366)	62		-		62	62		0	62
조달물자 계약 및 관리 (1235-334)	20		7		27	27		-	50
조달전문교육운영 (7134-371)	8.4	-	-	-	8.4	8.4	-	0	8.4
계	216.4				216.4	209.4		7	246.4

< 검토의견 >

조달청은 포상금을 적정 비목으로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9. 보전금(310목)에 따르면 보전금은 위법행위 방지,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국민의 신고에 대해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신고포상금, 「국가재정법」 제49조 등에 따라 지출을 절약하거나 수입 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하는 예산성과금,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정부업무평가 우수기관 포상금 등으로 지급근거 및 지급한도가 법령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고, 조직 및 기관을 대표하여 행하는 우수 부서 및 직원 등에 대한 격려금은 기타운영비로 집행하도록 하고 있음.[279]

조달청은 2023년도에 기관운영 기본경비, 조달행정 역량강화 등 4개의 세부사업에서 개청기념 포상, 성과관리 자체평가 우수과제 포상 등의 내역으로 2억 940만원의 포상금을 집행하였음.

[2023년도 조달청 포상금(310-03)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포상금명	포상대상	집행액	근거
기관운영 기본경비 (7111-251)	개청기념 포상	조달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부서 및 직원	10.4	- 정부 표창 규정 (대통령령) - 조달청 포상에 관한 규정(훈령) - 2023년도 조달청 포상 기본계획
	성과관리 자체평가 우수과제 포상	정부업무평가 자체평가 대상 과제를 우수하게 수행한 부서 및 직원	3	
	성과 우수부서 및 우수직원 포상	조달사업 추진 우수부서 및 우수직원	69.4	
	정부조달콜센터 상담 경진대회 포상	상담서비스 품질향상,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경진대회 포상	4	
	민원처리 우수부서 및 직원 포상	민원행정 관련 처리 우수부서 및 우수직원	2	
	지식관리 우수부서 및 개인 포상	지식관리 업무를 우수하게 수행한 부서 및 직원	3	
	정부물품관리 유공	정부물품관리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부서 및 직원	9.4	
	을지연습 및 보안업무 포상	을지연습 및 충무계획 등 보안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부서 및 직원	4	

279)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023. 1, pp.166, 196-197.

세부사업	포상금명	포상대상	집행액	근거
	친절·청렴, 감사 우수직원 포상	대민지원 조달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부서 및 직원	5	
	조달 전문교육 우수강사 포상	효과적인 교육 진행과 강사 역량 강화를 위한 우수강사 포상	0.5	
	우수 소셜기자 포상	조달청 관련 유익한 콘텐츠 전달에 기여한 직원	1.5	
	소계		112	
조달행정 역량강화 (7132-366)	**조달이용 우수고객**	조달사업 발전에 기여가 큰 우수고객	10.5	
	조달의 날 포상	공공조달의 확산 및 투명성 확대를 위한 업무유공자	15.3	
	우수조달물품 공급확대 유공직원	우수제품 구매실적이 우수한 기관	3.9	
	이음장터 이용 활성화 유공	서비스 상품 개발에 기여하고, 이용실적이 우수한 수요기관 유공직원	1.2	
	설계적정성 검토 업무 유공자	설계적정성 검토 유공 포상	0.9	
	공사원가 사전 검토요청 우수기관	시설공사 적정공사비 산정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직원	0.3	
	국방물자 조달우수업체	군수품의 안정적 조달과 품질향상에 기여한 업체	0.3	
	우수제안 포상	조달행정 발전을 위한 우수제안 공모 포상	7	
	공공조달 빅데이터 아이디어 공모	공공조달서비스 향상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자	1	
	규제혁신 공모전	조달현장 규제혁신 과제 발굴 공모전 포상	4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적극행정 사례에 대한 포상	5.6	
	혁신조달 우수사례 경진대회	신기술을 발굴하여 공공서비스 수준을 개선하는데 기여한 기업	12	
	소계		62	
조달물자 계약 및 관리 (1235-334)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포상금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	27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1~23조 -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조달청고시) 등
조달전문 교육운영 (7134-371)	**조달교육 우수자**	조달전문교육 과정을 우수하게 이수한 교육생	8.4	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 (조달청훈령)
총계			209.4	

포상금 지급내역 중 ‘성과 우수부서 및 우수직원 포상’, ‘조달이용 우수고객’, ‘우수제안 포상’ 등 우수 부서 및 직원 등에 대한 격려금 성격의 경비 집행의 근거로 조달청은 「정부 표창 규정」(대통령령) 제3조제1호에 따른 기관장표창 및 포상금(표창부상금)을 들고 있음.[280]

그러나 같은 「정부 표창 규정」 제2조에서 “표창은 대한민국에 공적(功績)을 세우거나 각종 교육·경기 및 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에게 수여”하도록 표창의 원칙을 정하고 있으므로, 조직 및 기관을 대표하여 행하는 우수 부서 및 직원 등에 대한 격려금이 “포상금”이라는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여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포상금(표창부상금)과 동일하다고 할 수 없을 것임.

결국 조달청은 조달청 훈령인 「조달청 포상에 관한 규정」 및 「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에 따라 우수 부서 및 직원에 대한 격려금을 포상금으로 집행하였는데 이는 포상금의 지급근거를 법령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한 집행지침을 따르지 않은 것임.

또한, 기획재정부는 2023년도에 기존에 편성된 포상금(310-03) 중 직원격려금을 감사원 검토 의견에 따라 기타운영비(210-16)로 전용 처리하여 집행하였는바,[281] 조달청이 직원에 대한 격려금의 예산비목을 기획재정부와 달리하여 집행할 이유는 없을 것임.

---

280) **「정부 표창 규정」(대통령령)**
제2조(표창의 원칙) ① 표창은 대한민국에 공적(功績)을 세우거나 각종 교육·경기 및 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에게 수여한다.
제3조(표창의 종류) 표창은 공적에 대한 표창[이하 “포상”(褒賞)이라 한다]과 성적에 대한 표창[이하 “시상”(施賞)이라 한다]으로 나누며, 각각의 훈격(공훈에 따른 훈장, 포장 등의 등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포상: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기관장표창
2. 시상: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기관장상
제11조(표창의 방법) ③ 표창을 할 때에는 패(牌) 또는 물건·금전 등 부상(副賞)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281)

2)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23.06.29.	기획재정행정효율성 증진및능력개발 (7131-301)	310-03	46	기획재정행정효율성 증진및능력개발 (7131-301)	210-16	직원격려금 등 기타운영비로 집행

마.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 감사원 검토 의견 및 후속 처리
- 기존 편성된 310-03(포상금) 목을 210-16(기타운영비) 목으로 전용하여 집행하라는 감사원 검토 의견에 따라 전용 처리

자료: 『2023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사업설명자료(Ⅱ-1)(총괄·일반회계·특별회계)』, 2024. 3, pp.848-849.

조달청은 법령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아니한 포상금에 대해서는 보전금(310)이 아니라 기타운영비(210-16목) 비목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고 부적정한 비목으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통계청 소관

가. 결산 개요

(1) 세입 결산

2023회계연도 통계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수납액은 34억 5,700만원으로 예산액 44억 대비 21.4%인 9억 4,300만원 감소하였음.

통계상품 판매수입(재화 및 용역 판매수입)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2023년 적극적인 예산편성을 하였으나 편성액 대비 수납실적 7억 5,600만원 감소하였음.

[2023회계연도 통계청 소관 세입결산 개요]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차 이 (C-A)	비 율 (C-A)/A	미수납액 (B-C)
합 계	4,400	3,472	3,457	△943	△21.4	14
· 재산수입	2	1	1	△1	△47.0	-
· 경상이전수입	157	118	104	△53	△34.0	14
·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2,703	1,947	1,947	△756	△28.0	-
· 수입대체경비수입	1,469	1,380	1,380	△89	△6.1	-
· 관유물매각대	69	26	26	△43	△62.5	-

자료: 통계청

(2) 세출 결산

2023회계연도 통계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3,937억 7,500만원으로 예산액 3,937억 400만원 대비 7,1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출액은 3,839억 9,0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97.5%, 예산현액 대비 97.5% 집행되었으며, 불용액은 97억 8,500만원임.

[2023회계연도 통계청 소관 세출결산 개요]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A)	예산현액 (B)	지출액 (C)	예산액 대비 (C/A)	예산현액 대비 (C/B)	불용액 (B-C)
합 계	393,704	393,775	383,990	97.5	97.5	9,785
인 건 비	151,842	151,357	146,377	96.4	96.7	4,979
기본경비	16,332	16,817	16,493	101.0	98.1	324
사 업 비	225,530	225,601	221,120	98.0	98.0	4,481

자료: 통계청

인건비는 예산현액 1,513억 5,700만원 대비 96.7%인 1,463억 7,700만원이 집행되었고,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168억 1,700만원 대비 98.1%인 164억 9,3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사업비는 예산현액 2,256억 100만원 대비 98.0%인 2,211억 2,000만원이 집행되었음.

(3) 세입·세출 결산 총괄표

가) 2023회계연도 세입결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구분	2021결산	2022결산	2023년				2024예산
			예산		결산(B)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A)			
총 계	4,908	6,261	4,400	4,400	3,457	78.6	3,610
11 재산수입	1	1	2	2	1	53.0	2
51 관유물대여료	-	-	-	-	-	-	-
511 토지대여료	-	-	-	-	-	-	-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1	1	2	2	1	48.9	2
545 기타재산수입	1	-	-	-	-	-	-
546 기타재산이자수입	-	1	2	2	1	48.9	2
12 경상이전수입	219	121	157	157	104	66.0	162
56 벌금,몰수금및과태료	17	21	15	15	19	129.0	20
562 몰수금 및 추징금	-	-	-	-	-	-	-
563 과태료	17	21	15	15	19	129.0	20
57 변상금및위약금	-	-	15	15	6	41.6	15
572 위약금	-	-	15	15	6	41.6	15
58 가산금	-	-	-	-	-	-	-
581 가산금	-	-	-	-	-	-	-
59 기타경상이전수입	202	99	127	127	78	61.4	127
596 기타경상이전수입	202	99	127	127	78	61.4	127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1,700	1,825	2,703	2,703	1,947	72.0	2,104
69 잡수입	1,700	1,825	2,703	2,703	1,947	72.0	2,104
691 기타잡수입	1,700	1,825	2,703	2,703	1,947	72.0	2,104
14 수입대체경비수입	2,983	4,275	1,469	1,469	1,380	93.9	1,260
69 잡수입	2,983	4,275	1,469	1,469	1,380	93.9	1,260
691 기타잡수입	2,983	4,275	1,469	1,469	1,380	93.9	1,260
15 관유물매각대	5	39	69	69	26	37.5	82
71 고정자산매각대	5	39	69	69	26	37.5	82
713 기타고정자산매각대	5	39	69	69	26	37.5	82

나)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결산	2022결산	2023년				2024예산
			예산		결산(B)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총 계	394,358	367,469	393,704	393,704	383,990	97.5	425,267
1000 통계제도정비 및 통계전문교육	12,488	13,947	18,556	18,556	17,933	96.6	19,060
1031 국가통계정책추진	6,353	7,824	10,243	10,243	9,957	97.2	8,989
국가통계정책추진 (1031-301)	4,706	6,192	8,532	8,532	8,341	97.8	7,498
지역통계인프라강화 (1031-302)	1,647	1,632	1,711	1,711	1,616	94.4	1,491
1032 통계전문교육	7,781	7,755	8,313	8,313	7,977	96.0	10,071
통계교육지원 (1032-304)	1,632	2,009	2,484	2,484	2,209	88.9	2,017
통계센터 및 교육시설 운영 (1032-305)	5,546	5,322	5,475	5,475	5,418	99.0	7,718
통계교육원 수입대체경비 (1032-651)	603	424	354	354	350	98.9	336
2000 통계정보확충 및 서비스체계 개선	47,371	48,309	57,255	57,255	56,523	98.7	46,207
2031 통계서비스	34,335	34,188	41,244	41,244	40,888	99.2	34,374
통계자료 DB수록 및 제공 (2031-301)	1,121	620	776	776	765	98.6	792
통계DB통합 및 포털서비스 (정보화) (2031-302)	4,458	4,302	5,522	5,522	5,456	98.8	5,719
S-GIS DB구축(정보화) (2031-304)	4,432	4,274	4,039	4,039	4,000	99.0	4,495
나라통계시스템 구축 (정보화) (2031-305)	13,970	12,431	12,746	12,746	12655	99.3	6,524
정보시스템관리(정보화) (2031-306)	7,076	6,735	6,691	6,691	6,609	98.8	6,656
총조사시스템 구축운영 (정보화) (2031-310)	3,278	5,826	11,450	11,450	11,403	99.6	10,188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결산	2022결산	2023년				2024예산
			예산		결산(B)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32 통계데이터허브	13,036	14,121	16,031	16,031	15,635	97.5	11,833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2032-307)	555	596	695	695	684	98.4	608
통계데이터 분석 및 활용 지원(정보화) (2032-308)	9,295	10,343	11,920	11,920	11,558	97.0	7,740
마이크로데이터 통합 서비스(정보화) (2032-311)	3,186	3,182	3,416	3,416	3,393	99.3	3,485
3000 국가기본통계 생산 및 지원	**160,069**	**127,494**	**136,436**	**136,436**	**133,649**	**98.0**	**169,837**
3031 경제통계작성	8,846	28,174	29,084	29,084	28,153	96.8	27,021
경제구조통계작성 (3031-301)	8,099	27,440	28,274	28,274	27,376	96.8	26,240
경제동향작성 (3031-302)	747	734	810	810	777	95.9	781
3032 사회농어업통계작성	19,288	20,007	21,902	21,902	21,139	96.5	26,892
사회통계작성 (3032-304)	17,579	18,082	19,525	19,525	18,941	97.0	23,462
농어업통계작성 (3032-305)	1,709	1,925	2,377	2,377	2,197	92.4	3,430
3033 경제총조사	52,624	1,067	387	387	363	93.7	764
경제총조사 (3033-306)	52,624	1,067	387	387	363	93.7	764
3034 인구주택총조사	5,724	1,899	1,997	1,997	1,919	96.1	26,326
인구주택총조사 (3034-307)	5,724	1,899	1,997	1,997	1,919	96.1	26,326
3035 농림어업총조사	2,364	1,114	1,229	1,229	1,163	94.6	2,096
농림어업총조사 (3035-308)	2,364	1,114	1,229	1,229	1,163	94.6	2,096
3036 통계생산대행 수입대체경비	2,478	3,758	1,115	1,115	990	88.8	924
통계생산대행 수입대체경비 (3036-652)	1,755	3,073	781	781	593	75.9	700
경인 수입대체경비 (3036-662)	102	90	20	20	20	98.8	20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결산	2022결산	2023년				2024예산
			예산		결산(B)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동북 수입대체경비 (3036-663)	147	64	20	20	16	80.0	20
호남 수입대체경비 (3036-664)	127	210	85	85	155	182.5	85
동남 수입대체경비 (3036-665)	115	83	78	78	76	97.8	78
충청 수입대체경비 (3036-666)	232	238	131	131	131	99.9	21
3037 통계조사지원	72,510	75,133	80,722	80,722	79,923	99.0	85,814
통계조사지원 (3037-309)	23,447	21,339	25,998	25,998	25,437	97.8	30,792
국가통계 표본설계 및 지원 (3037-310)	742	4,566	1,726	1,726	1,669	96.7	814
통계행정지원 인력운영 (3037-311)	43,632	44,622	47,519	47,519	47,461	99.9	48,872
경인 통계조사지원 (3037-312)	1,151	1,118	1,292	1,292	1,268	98.2	1,277
동북 통계조사지원 (3037-313)	911	879	1,052	1,052	1,025	97.4	1,041
호남 통계조사지원 (3037-314)	1,089	1,051	1,252	1,252	1,223	97.7	1,239
동남 통계조사지원 (3037-315)	749	766	937	937	910	97.1	842
충청 통계조사지원 (3037-316)	789	792	946	946	930	98.0	937
4000 성과중심 책임운영기관운영	**106,588**	**107,603**	**5,557**	**5,557**	**5,446**	**98.0**	**6,055**
4031 통계개발원	5,118	5,238	5,557	5,557	5,446	98.0	6,055
통계개발원 인건비 (4031-111)	3,598	3,666	3,912	3,912	3,867	98.8	4,292
통계개발원 기본경비-총액인건비 (4031-211)	185	182	206	206	193	93.8	259
통계개발원 기본경비 (4031-261)	14	14	14	14	14	98.0	14
통계연구개발지원 (4031-311)	1,322	1,377	1,425	1,425	1,373	96.3	1,490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결산	2022결산	2023년				2024예산
			예산		결산(B)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7000 통계행정지원	68,466	70,114	175,900	175,900	170,438	96.9	184,108
7001 본부 인건비	140,705	141,502	147,930	147,930	142,511	96.3	150,666
인건비-총액인건비 (7001-100)	53,168	54,014	56,801	56,801	54,933	96.7	58,973
경인 인건비 (7001-112)	20,694	20,424	21,617	21,617	20,537	95.0	21,564
동북 인건비 (7001-113)	18,152	18,075	18,788	18,788	18,051	96.1	19,087
호남 인건비 (7001-114)	20,576	20,435	21,103	21,103	20,625	97.7	21,443
동남 인건비 (7001-115)	13,782	13,972	14,469	14,469	13,871	95.9	14,600
충청 인건비 (7001-116)	14,333	14,582	15,152	15,152	14,494	95.7	14,999
7011 본부 기본경비	13,585	15,055	16,112	16,112	16,286	101.1	17,038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인건비 (7011-201)	1,540	1,539	1,767	1,767	1,850	104.7	1,791
통계교육원 기본경비-총액인건비 (7011-208)	58	51	47	47	43	91.8	48
경인 기본경비-총액인건비 (7011-212)	1,634	1,817	702	702	749	106.7	703
동북 기본경비-총액인건비 (7011-213)	1,672	1,814	623	623	664	106.6	608
호남 기본경비-총액인건비 (7011-214)	1,847	2,057	675	675	688	102.0	653
동남 기본경비-총액인건비 (7011-215)	1,288	1,432	469	469	496	105.8	476
충청 기본경비-총액인건비 (7011-216)	1,258	1,427	496	496	557	112.3	514
기관운영 기본경비 (7011-251)	1,602	1,921	2,014	2,014	1,972	97.9	2,132
기획조정관실 기본경비 (7011-252)	500	692	670	670	704	105.0	749
통계정책국 기본경비 (7011-253)	247	258	318	318	315	98.9	311
조사관리국 기본경비 (7011-254)	67	71	92	92	85	92.4	114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결산	2022결산	2023년				2024예산
			예산		결산(B)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경제통계국 기본경비 (7011-255)	48	45	58	58	45	77.3	70
사회통계국 기본경비 (7011-256)	34	40	59	59	57	95.9	70
통계데이터허브국 기본경비 (7011-257)	79	88	102	102	98	96.4	175
통계교육원 기본경비 (7011-258)	797	679	714	714	691	96.8	761
통계서비스정책관 기본경비 (7011-259)	69	74	91	91	89	97.4	105
경제동향통계심의관 기본경비(7011-260)	31	56	65	65	58	90.4	105
경인 기본경비 (7011-262)	138	145	1,426	1,426	1,421	99.6	1,535
동북 기본경비 (7011-263)	232	324	1,585	1,585	1,581	99.7	1,708
호남 기본경비 (7011-264)	184	269	1,727	1,727	1,727	100.0	1,840
동남 기본경비 (7011-265)	125	121	1,261	1,261	1,253	99.4	1,385
충청 기본경비 (7011-266)	135	135	1,151	1,151	1,143	99.3	1,221
7031 대내외협력강화	5,338	6,180	7,421	7,421	7,241	97.6	10,760
국가통계인식제고 (7031-301)	538	526	547	547	514	94.0	547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 (7031-302)	281	291	437	437	420	96.1	1,693
국제통계협력강화 (7031-303)	1,645	1,936	2,210	2,210	2,156	97.6	2,252
개도국 통계지원(ODA) (7031-304)	2,874	3,427	4,227	4,227	4,151	98.2	3,804
7032 청사시설 환경개선	4,819	4,413	4,437	4,437	4,400	99.2	5,644
청사시설관리 (7032-305)	4,819	4,413	4,437	4,437	4,400	99.2	5,644

※ '23회계연도부터 일부 세부사업의 프로그램이 변경되어, '21, '22년도 프로그램별 총계가 다를 수 있음.

※ 프로그램 변경현황: 지역통계인프라강화(3000→1000), 지방청 수입대체경비·통계조사지원(4000→3000), 지방청 인건비·기본경비-총액인건비·기본경비(4000→7000)

나. 검토의견

(1) 통계품질 제고를 위한 통계품질개선 컨설팅 운영 개선 필요 (국가통계정책추진, 통계정책국)

< 현 황 >

「국가통계정책추진 사업」은 국가통계의 신뢰도와 일관성 제고를 위한 표준분류 등 통계작성 기준을 설정·제공하고 통계의 전반적 과정에 대한 품질진단 및 컨설팅을 수행하는 한편, 통계작성 인프라가 부족한 기관의 통계작성을 지원하는 사업임. 2023년 예산액은 85억 3,200만원으로, 이 중 83억 4,100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 9,100만원을 불용하였음.

「국가통계정책추진 사업」의 내역사업인 「품질관리 사업」은 예산현액 23억 7,900만원 중 22억 9,000만원을 집행하였고, 8,9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3회계연도 국가통계정책추진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2023								2024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국가통계정책추진 (1031-301)	8,532	-	-	-	8,532	8,341	-	191	7,498
- 통계기준	4,301	-	-	-	4,301	4,238	-	63	3,835
- 품질관리	**2,379**	**-**	**-**	**-**	**2,379**	**2,290**	**-**	**89**	**2,201**
- 국가통계 확대	766	-	-	-	766	752	-	14	734
- 국가통계 발전	1,086	-	-	-	1,086	1,060	-	26	729

< 검토의견 >

통계품질 제고를 위하여 통계품질개선 컨설팅 대상을 확대하고, 조속한 품질개선이 필요한 주요통계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통계품질개선 컨설팅 운영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국가통계정책추진 사업」의 내역사업인 「품질관리 사업」은 국가통계 전반의 신뢰도 및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통계작성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품질진단[282]을 통해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개선과제 이행점검[283] 및 통계품질개선 컨설팅 등을 수행하는 사업임.

이 중 통계품질개선 컨설팅은 통계 품질진단의 사후관리조치 중의 하나로 전문성 부족 및 통계작성 인프라 취약으로 인하여 품질개선이 지연되는 통계에 대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통계품질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통계청은 상·하반기 매년 2회 통계작성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한 후 수요를 제출한 통계 중 품질진단 개선과제와 연계성, 개선과제의 전문성, 개선 가능성, 시급성, 선행연구 이력 등을 고려하여 통계품질개선 컨설팅 대상 통계를 선정하고 있음.

그런데 통계품질개선 컨설팅 수요는 매년 10종 이상 발생하는데 비하여 컨설팅 대상으로 선정되는 통계는 3~4종에 불과하여 선정률이 저조한 상황임.

---

282) 통계청은 「통계법」에 근거하여 정부의 각종 정책 수립·평가 또는 다른 통계의 작성 등에 널리 활용되는 주요통계에 대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계획에 따라 매년 정기통계품질진단(5년 주기, 연 70여종)을,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이 낮아졌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통계에 대하여 수시통계품질진단(연 1~2종)을 실시하고 있음.
「통계법」 제9조(정기통계품질진단) ①통계청장은 정부의 각종 정책 수립·평가 또는 다른 통계의 작성 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통계의 작성 및 보급의 제반과정에 대하여 10년의 범위 안에서 주기적으로 통계품질진단(이하 "정기통계품질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수시통계품질진단) ①통계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이 낮아졌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통계에 대하여는 수시로 통계품질진단(이하 "수시통계품질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283) 품질진단 결과 도출된 개선과제는 통계작성기관의 자체계획에 따라 개선하도록 하고, 통계청은 개선과제의 실효성 있는 이행을 위하여 이행실태를 매년 반기별(3월말, 9월말)로 점검·확인하고 있음.
「통계법」 제12조(통계의 작성·보급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개선요구 등) ① 통계청장은 정기통계품질진단·수시통계품질진단 또는 자체통계품질진단 결과의 반영 또는 유사하거나 중복된 통계의 조정 등 통계의 신뢰성 및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계 작성의 중지·변경이나 그 밖에 통계의 작성·보급에 관한 사무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최근 5년간 통계품질개선 컨설팅 수요 및 실적]

(단위: 개)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컨설팅 희망 통계(A)	14	8	11	22	13
컨설팅 선정 통계(B)	3	3	3	4	4
선정률(B/A)	21.4%	37.5%	27.3%	18.2%	30.8%

자료: 통계청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컨설팅 수요를 제출하는 기관은 자체적으로 통계품질을 개선할 수 있는 전문성과 인프라가 취약한 기관일 가능성이 크므로, 통계청은 국가통계 품질향상을 위하여 통계품질개선 컨설팅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정책적 중요성 및 활용성이 크고 높은 신뢰도가 요구되는 통계로서 장기간 품질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나 조속한 품질개선이 필요한 통계의 경우 선제적으로 통계품질개선 컨설팅 대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음.

통계청의 정기품질진단 개선과제 이행점검 실적을 살펴보면, 개선과제 도출 후 이행기간이 2년 이상이 경과하였는데도 이행을 완료하지 못한 통계가 상당수 있으며, 이러한 통계는 개선과제 이행이 완료되지 못한 채로 다시 통계 작성·보급이 이루어지고 있어 국가통계의 정확성 및 신뢰도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음.

[2018년 ~ 2021년 정기품질진단 대상 통계 중 개선과제 이행 미완료 통계 현황]

(2024. 5. 31.기준, 단위: 개)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정기품질진단 대상 통계(A)	93	119	73	64
개선과제 이행 미완료 통계(B)	11	17	14	24
중앙행정기관 작성 통계	5	12	9	15
기타 기관 작성 통계	6	5	5	9
(B/A)	11.8%	14.3%	19.1%	37.5%

자료: 통계청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특히, 개선과제 이행 미완료 통계 중 과반수를 중앙행정기관 작성 통계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통계는 정부의 각종 정책 수립·평가에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것으로 그 정확성과 신뢰도가 더욱 중요한 측면이 있으므로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따라서 국가통계 품질 제고를 위하여 통계청은 장기간 품질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나 조속한 품질개선이 필요한 주요통계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통계품질개선 컨설팅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컨설팅 운영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통계데이터센터 이용실적 제고 필요 (통계데이터 분석 및 활용 지원(정보화), 통계데이터허브국)

< 현 황 >

「통계데이터 분석 및 활용 지원(정보화) 사업」은 공공·민간데이터의 연계 및 분석을 위한 통계데이터센터 구축·운영, 통계데이터를 통합·관리하는 데이터 융복합 관리체계 운영과 행정자료 통합관리 등을 추진하는 사업임. 2023년 예산액은 119억 2,000만원으로, 이 중 115억 5,800만원을 집행하였고, 3억 6,200만원을 불용하였음.

「통계데이터 분석 및 활용 지원(정보화) 사업」의 내역사업인 「통계데이터센터 운영」은 2023년 예산현액 33억 2,600만원 중 32억 4,500만원을 집행하였고, 8,1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3회계연도 통계데이터 분석 및 활용 지원(정보화)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2023								2024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통계데이터 분석 및 활용 지원(정보화) 사업(2032-308)	11,920	-	-	-	11,920	11,558	-	362	7,740
- 통계데이터센터 운영	**3,326**	**-**	**85 △85**	**-**	**3,326**	**3,245**	**-**	**81**	**3,750**
- 데이터융복합 체계 구축	5,998	-	-	-	5,998	5,915	-	83	2,797
- 행정자료 통합관리	1,950	-	-	-	1,950	1,811	-	139	547
- 빅데이터시스템 운영	646	-	-	-	646	586	-	60	646

< 검토의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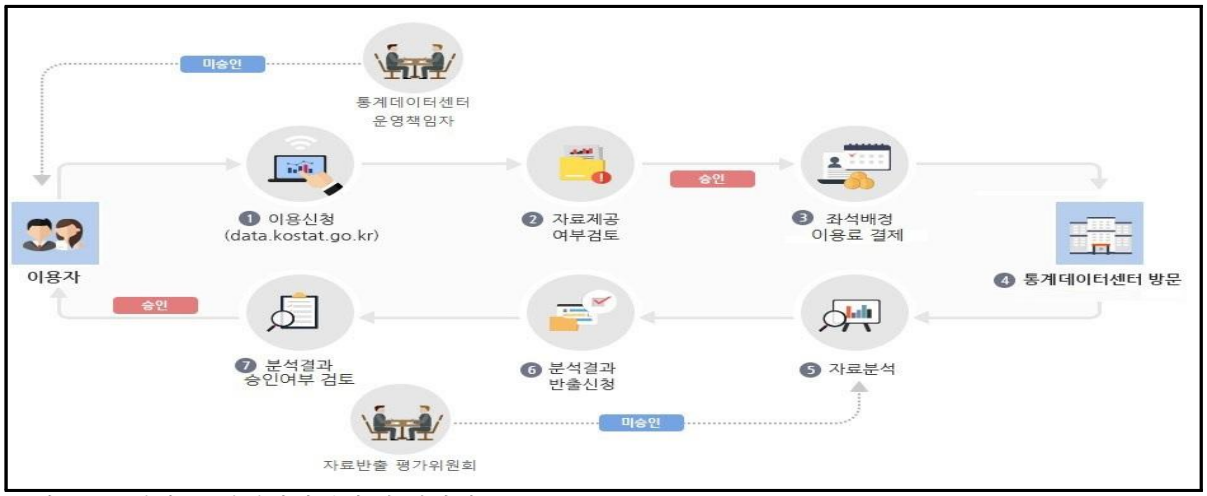
통계데이터센터의 평균 이용실적이 저조하고, 특히 일부 지역센터는 이용실적 하락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각 지역센터별 특성에 적합한 이용실적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이용수요를 고려하여 신규 지역센터 개설을 신중히 할 필요가 있음.

통계데이터센터는 정보보호를 위한 보안이 확보된 환경에서 일반이용자가 통계청이 제공하는 공공·민간데이터와 이용자가 보유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자유롭게 자료 연계 및 융합 등 분석을 할 수 있는 데이터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로, 국민들이 다양한 통계데이터를 연계·활용할 수 있는 통계데이터 허브 플랫폼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임.

통계데이터센터는 2016년 10월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18년 11월부터 대전, 서울 중구, 부산 3개소가 본격적으로 운영되었고, 이후 점차 지역센터를 확충하여 현재는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세종·경기·전북·제주 9개 지역에 총 13개소[284]가 운영되고 있음.

현재 통계데이터센터에서는 행정자료 20종과 민간데이터 46종이 제공되고 있으며, 데이터분석 전문가가 배치되어 자료분석 경험이 부족한 이용자를 위한 자료이용 상담 및 자료 연계·분석 자문 등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통계데이터센터 이용 절차]



자료: 통계청 통계데이터센터 홈페이지

284) 2023년까지는 12개소가 운영되었으며, 2024년 1월 서울대센터를 추가 개소하였음.

[통계데이터센터에서 제공하는 행정통계DB 및 민간데이터 현황]

(2024. 7. 31.기준)

<table>
<tr><th>구분</th><th colspan="4">제공 데이터 목록</th></tr>
<tr><td>행정통계 DB (20종)</td><td colspan="2">경제·사회
· 기업통계등록부(6종)
· 사업장 기초DB(2종)
· 취업활동통계등록부(2종)</td><td colspan="1">인구·가구
· 인구통계등록부(2종) · 청년통계등록부
· 가구통계등록부(2종) · 주택통계등록부
· 인구동태 코호트DB</td><td>농림·어업
· 농업 DB
· 임업 DB
· 어업 DB</td></tr>
<tr><td rowspan="4">민간 데이터 (46종)</td><td colspan="4">경제·사회
· 성·연령별 카드매출(3종) · 배달앱 카드매출(2종) · 인구이동정보(3종)
· 내국인 카드소비(4종) · 신용통계정보(3종) · 모바일상품권
· 외국인 카드소비(2종) · 영업 중 업소(부산) · 온라인가격정보
· 아파트단지별 카드소비(2종) · 업종별 카드매출 · 구매상품정보
· 온라인서비스 소비(2종) · 지역별 카드매출 · 1000대 상권정보</td></tr>
<tr><td colspan="4">인구·가구
· 성·연령별 주거인구 · 성·연령별 유입인구(부산) · 가구소득(서울, 부산)
· 성·연령별 직장인구 · 시간대별 유동인구 · 코로나19 방문인구정보(2종)
· 성·연령별 유동인구 · 요일별 유동인구</td></tr>
<tr><td colspan="2">차량
· 도로별 차량통행량(서울, 부산)
· 시군구별 차량등록대수</td><td>건물·지가
· 표준 공시지가(서울, 부산)
· 주택정보(서울, 부산)(2종)
· 건축물정보
· 인구집중유발시설(서울, 부산)</td><td>기초정보
· 소지역코드 정보
기타
· SNS데이터</td></tr>
</table>

자료: 통계청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그동안 통계청은 통계데이터센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와의 통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제공하는 통계데이터를 확충하며, 통계데이터 활용대회 등을 통해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고, 센터 홍보를 강화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음.

그런데 통계데이터센터의 전체 이용자 수는 지역센터의 추가 구축에 따라 2019년 1,352명에서 2023년 4,528명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나, 센터당 평균 이용자 수를 보면 2023년 377명으로, 1업무일 기준 이용자 수가 평균 2명에도 미치지 못하여 저조한 상황임.

특히, 서울 상암 및 대구 지역센터는 2023년 이용자 수가 전년도에 비하여 각각 75%, 56.1% 대폭 감소하였고, 서울 국회 및 광주 지역센터는 2023년 이용자 수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이용실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또한, 2023년 신규 개소한 제주, 전북, 국립암센터 3개 지역센터 역시 평균 대비 이용실적이 저조한 상황임.

[통계데이터센터 현황 및 연도별 이용자 수]

센터명	지역	설치시기	좌석 수(석)	이용자 수(명)				
				2019	2020	2021	2022	2023
전체				1,352	1,456	2,066	2,782	4,528
센터당 평균				451	364	344	309	377
중구	서울	2018. 11	10	955	848	1,200	928	1,514
상암	서울	2021. 9	5	-	-	72	80	21
강남	서울	2022. 6	11	-	-	-	204	516
국회	서울	2022. 9	3	-	-	-	53	154
부산	부산	2018. 7	12	36	135	67	269	376
대구	대구	2021. 3	13	-	-	66	314	138
광주	광주	2020. 3	12	-	94	129	238	245
대전	대전	2018. 11	16	361	379	532	525	672
세종	세종	2022. 3	5	-	-	-	171	584
제주	제주	2023. 3	7	-	-	-	-	134
전북	전북 전주	2023. 5	8	-	-	-	-	148
국립암센터	경기 고양	2023. 6	3	-	-	-	-	26

자료: 통계청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또한, 통계청은 센터 방문이 어렵거나 직접 자료 분석이 어려운 이용자를 위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아 분석결과를 통계표 형태로 제공하는 이용자 주문형 분석서비스[285]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온라인 서비스의 이용실적은 저조한 상황임.

[이용자 주문형 분석 서비스 제공 실적]

(단위: 건)

2019	2020	2021	2022	2023
30	26	61	16	42

자료: 통계청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285) 서비스이용료는 집계표 1개당 150,000원임.

따라서 통계청은 통계데이터센터의 주요 수요층인 공공기관, 연구기관, 대학 및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수요자 중심의 홍보 강화를 비롯하여 전반적인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와 함께 지역별 이용저조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각 지자체 등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센터별 이용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는 등 이용실적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또한, 통계청은 향후 지역센터 신설 시 공공기관, 연구기관, 대학 및 기업체 등 해당 지역의 잠재적인 이용수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신설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면서, 통계데이터센터로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수요자를 위하여 온라인 서비스인 이용자 주문형 분석 서비스 홍보 강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사회통계의 응답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사회통계작성, 사회통계국)

< 현 황 >

「사회통계작성 사업」은 사회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역별고용조사, 가계동향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 초중고사교육비조사 등 사회분야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사업임. 2023년 예산액은 195억 2,500만원으로, 이 중 189억 4,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5억 8,4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3회계연도 사회통계작성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23								2024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사회통계작성 (3032-304)	19,525	-	-	-	19,525	18,941	-	584	23,462
- 사회조사	1,106	-	-	-	1,106	1,079	-	27	1,131
- 사망원인 보완조사	254	-	-	-	254	247	-	7	256
- 경제활동 인구조사	259	-	-	-	259	247	-	12	259
- 지역별고용조사	11,843	-	-	-	11,843	11,491	-	352	12,115
-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1,689	-	-	-	1,689	1,648	-	41	1,726
- 가계동향조사	1,219	-	-	-	1,219	1,182	-	37	1,220
- 가계금융복지조사	2,100	-	-	-	2,100	2,037	-	63	2,140
- 초중고사교육비 조사	556	-	-	-	556	522	-	34	561
- 생활시간조사	213	-	-	-	213	204	-	9	3,458
- 인구동태통계	252	-	-	-	252	250	-	2	252
- 사회통계개선	34	-	-	-	34	34	-	0	344

< 검토의견 >

통계청은 조사의 특성상 불응률이 높은 사회통계의 응답률을 제고할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통계청에서 제출한 주요통계별 불응률 추이를 살펴보면, 타 통계보다 '사회통계작성' 세부사업 내 통계의 불응률이 지속적으로 높은 편임. 타 조사의 불응률이 보통 4% 미만임에 반해, 2023년도 기준으로 생활시간조사(23.8% / 2019년 기준임), 사회조사(14.5%), 가계금융복지조사(9.8%), 지역별고용조사(7.0%), 가계동향조사(42.1%), 경제활동인구조사(12.7%) 등으로 사회통계조사의 불응률이 높은 편임.

[최근 5년간 주요통계별 불응률 추이]

(단위: %)

작성주기	통계명/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5년	**생활시간조사**	**23.8**	**-**	**-**	**-**	**-**
매년	농축산물생산비조사(농산물)	0.2	0.2	0.2	0.1	1.1
	농축산물생산비조사(축산물)	0.7	0.6	0.4	0.3	1.2
	농림어업조사 1)	0.0	-	0.1	0.3	0.4
	농가경제조사	0.8	0.5	0.2	0.2	1.0
	어가경제조사	0.5	0.3	0.3	0.1	1.4
	초중고사교육비조사	0.8	1.3	1.4	2.3	2.8
	서비스업조사 2)	0.3	0.7	-	0.4	0.5
	사회조사	**12.8**	**14.1**	**13.4**	**16.1**	**14.5**
	가계금융복지조사	**7.8**	**7.8**	**8.5**	**10.1**	**9.8**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1.8	3.0	2.7	3.7	3.8
	운수업조사	2.0	4.1	4.1	4.2	3.8
	소상공인실태조사	0.3	2.0	2.7	1.9	2.0
	프랜차이즈조사	0.5	1.5	0.8	0.5	0.5
반기	**지역별고용조사**	**8.9**	**6.6**	**7.0**	**10.8**	**7.0**
분기	가축동향조사	0.1	0.0	0.2	0.1	0.1
	가계동향조사	**36.2**	**32.2**	**30.6**	**34.8**	**42.1**
매월	소비자물가조사	0.0	0.0	0.0	0.0	0.0
	경제활동인구조사	**10.1**	**10.8**	**10.9**	**12.1**	**12.7**
	어업생산동향조사	0.2	0.2	0.2	0.1	0.5
	온라인쇼핑동향조사	0.2	1.2	0.9	1.3	1.4
	서비스업동향조사	0.1	0.1	0.2	0.2	0.6
	건설경기동향조사	0.1	1.5	1.5	1.7	1.5
	기계수주동향조사	0.0	0.0	0.0	0.0	0.0
	광업제조업동향조사	0.0	0.2	0.3	0.4	0.2

1) '20년 농림어업조사는 농림어업총조사로 대체
2) '21년 서비스업조사는 경제총조사로 대체
자료: 통계청 제출자료 재구성

이와 같이 사회통계의 불응률이 높은 것은 통계조사의 내용 및 대상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바가 있음. 사회통계의 경우 주로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데 최근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일과시간 내 부재중인 경우가 많아 응답자를 접촉할 기회 자체가 축소되는 등 방문 조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반대로 일과시간 종료 후인 저녁·야간시간에는 가구 방문 시 구성원들에게 불편을 끼칠 우려가 있으며 현장조사원들의 안전 우려도 커진다는 문제가 있음.

또한, 사회통계의 조사내용도 소득과 지출 및 개인의 생활양식, 취업·실업 고용 형태 등 민감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가 많고, 일부 조사의 경우 가구의 실제 가계부를 입수해서 분석해야 하는 등 조사방식 자체의 난해함 등으로 인해 응답을 이끌어내는 데에 어려움이 많아 보임.

[불용률 높은 사회조사 개요]

○ 생활시간조사: 12,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주어진 하루를 어떤 형태로 보내고 있는지 조사하여 생활방식(life style) 및 삶의 질 파악(5년 단위)
○ 사회조사: 19,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삶의 질과 관련된 국민의 사회적 관심사 및 주관적 의식 파악(연 단위)
○ 가계금융복지조사: 20,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가계의 재무건전성(자산·부채·소득) 파악(연 단위)
○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단위의 세분화된 지역별 취업자·실업자 등 고용현황 작성(반기 단위)
○ 가계동향조사: 7,2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수입(소득)과 지출 전 비목을 가계부를 통해 조사(분기 단위)
○ 경제활동인구조사: 36,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경제활동(취업·실업·비경제활동인구 등) 규모 및 특성 파악(월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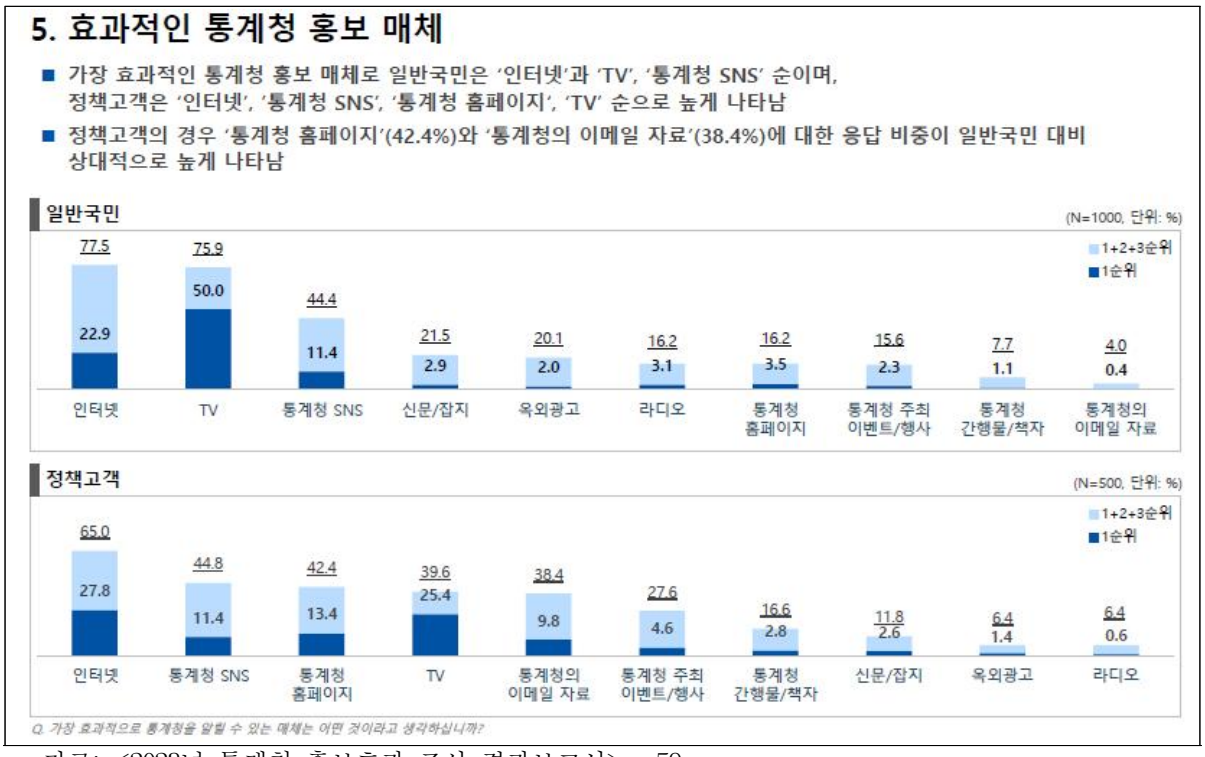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제출자료 토대로 작성

하지만, 조사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필수적인 조사항목을 제외하거나 조사가 용이한 지역·계층·가구형태만 대상으로 통계를 작성하는 것은 각 통계의 목적 달성 및 정확한 결과도출에 부합하지 않을 우려가 있음. 사회통계조사의 결과는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결과의 대표성 및 정확성이 중요하며, 통계조사에 있어 높은 불응률은 조사결과가 전체 모집단의 특성을 대표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통계의 정확성을 감소시키고 조사결과의 신뢰도를 저하하는 요인이며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에는

조사의 의미 자체를 퇴색시킨다는 점에서, 통계청은 동 조사들의 응답률 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은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

첫째로, 통계청 및 통계청이 수행하는 조사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강화가 필요함.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조사의 목록 및 동 조사가 어떤 사회정책으로 환류되는지, 그러한 조사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어떠한 협조가 필요한지 등에 대한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홍보가 필요함.

특히, <2023년 통계청 홍보효과 조사 결과보고서(2023.12.)>에 따르면 인터넷, TV, SNS 등이 효과적인 홍보 매체로 보임. 따라서 통계청은 라디오 광고 송출, 옥외 전광판 홍보 콘텐츠 송출 등 기존의 전통적인 홍보 채널과 더불어, 인터넷 포털사이트, SNS(유튜브·인스타그램·트위터) 등 다양한 채널의 홍보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음.



자료: <2023년 통계청 홍보효과 조사 결과보고서> p.59

두 번째로, 동일한 조사내용에 대해서도 다양한 조사방법 도입을 고민해 보아야 함. 우선, 직접 조사대상자를 대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CASI(컴퓨터를 이용한 자기기입식 조사), SASI(스마트폰을 이용한 자기기입식 조사), CATI(컴퓨터를 이용한 전화조사), E-mail, Fax 등 다양한 '비대면조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응답자가 본인이 원하는 시간과 방식으로 응답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응답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 줄 필요가 있

음. 이러한 비대면조사는 응답률 제고 이외에도 대면조사 대체에 따른 각종 조사비용 절감, 조사원의 자료입력 단계 생략에 따른 조사 수행 시간 단축 등 여러 가지 추가적인 장점이 있을 것임.

또한, 오늘날 개인정보 보호 의식의 강화에 따라 대상자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 노출에 대한 우려가 큼. 따라서 조사대상자가 부담을 느끼지 않을 방식으로 새로운 조사방법을 개발해나갈 필요가 있으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도 동 개인정보가 언제까지, 어떤 목적으로 보관될 예정인지, 무엇을 위해 수집되는지 등을 정확히 안내하여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기존에 수집된 행정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직접조사의 비중 자체를 줄여나가야 함.

세 번째로, 현장조사원에 대한 교육 및 역량 강화도 선행되어야 할 것임. 통계청에 따르면 현장에서 조사를 수행하는 조사원에게 수행할 조사에 대한 교육, 안전교육 및 법정의무교육 등은 실시하고 있음. 이에 더하여 가구 방문 시 친절교육, 응답자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교육, 대인 소통능력 강화 등의 내용도 추가하여 대면조사 시 응답자의 저항감을 줄여나가고 응답을 이끌어내는 역량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음.

교육 시에도 매뉴얼 전달 위주의 주입식 교육은 조사현장에서의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는 역량을 강화하기에는 부족하므로 해당 내용에 대한 (선배)조사원들의 사례 공유, 역할 분담 모의연습 등 다양한 교육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네 번째로, 조사 응답에 대한 적절한 답례품 지급도 이루어져야 함. 기업이나 사업체에 대해서는 「통계법」[286] 및 「통계법 시행령」에 따라 불응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처분을 통해서 응답을 강제할 수단이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가구(개인)의 경우에는 응답을 강제할 수단이 사실상 없다는 점에서 적절한 답례품 지급이 효과적으로 응

286) **「통계법」 제25조(자료제출요구 등)** ② 제24조에 따라 제공받는 행정자료에 의하여 지정통계의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통계청장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요청하는 경우로서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요구를 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통계법」 제26조(실지조사 등) ③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 또는 확인을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질문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통계법」 제41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2.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의 제출을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 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응답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 또는 응답을 한 자
4~5. (생략)

답률을 제고할 수단이라고 보임.

[(참고) 최근 3년간 불응 기업(사업체) 대상 과태료 부과사례]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기업활동조사	건수(건)	-	-	1
	처분금액(만원)	-	-	50
광업제조업조사	건수(건)	3	3	-
	처분금액(만원)	180	240	-
서비스업동향조사	건수(건)	12	10	16
	처분금액(만원)	1,200	1,000	1,220
서비스업동향조사	건수(건)	8	8	14
	처분금액(만원)	555	710	1,060

자료 : 통계청 제출자료 재구성

2023년도 통계청 답례품 구입에는 총 217억 2,7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구입액 대부분이 상품권 구입에 사용되었음. 답례품의 구입 및 배분 등 답례품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수반되어야 하고, 「통계조사답례품 지급·관리 규정」[287]제5조에 따라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답례품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연간 지급계획 수립 시 반영함으로써 비용 대비 효과성이 좋은 답례품을 구입하려는 노력도 필요할 것임.

287) **「통계조사답례품 지급·관리 규정」 제5조(선호도 조사)** 조사기획과장은 지방통계(지)청을 통하여 응답자가 원하는 맞춤형 통계조사답례품을 지급하기 위하여 연간 지급계획 수립 이전에 통계조사답례품 선호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연간 지급계획 수립) ② 조사기획과장은 통계조사답례품 지급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본청 통계조사답례품 지급대상 통계조사 소관부서의 지급 개선 의견
2. 지방통계(지)청장의 지급 개선 의견
3. 통계조사답례품 선호도 조사 결과
4. 통계조사답례품 관련 각종 제안

[2023년 답례품 예산편성 및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담당부서명	답례품예산액	답례품구매현황
통계조사지원	조사기획과	21,929	* 상품권 - 농촌사랑: 10,693 - 온누리: 4,792 - 할인마트: 1,579 - 문화: 958 - 모바일: 350 * 현금: 2,599 * 수첩 및 달력 등: 688
합계		21,929	21,659
통계생산대행 수입대체경비	조사기획과	123	* 상품권 - 농촌사랑: 5 - 온누리: 5 - 모바일: 58
합계		123	68

자료: 통계청

마지막으로, 응답률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과 별개로, 사회통계의 특성상 일정한 불응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 이를 보완할 다양한 통계기법을 연구·개발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조사의 무응답 구조를 분석하고 단일대체(single imputation) 또는 다중대체(multiple imputation) 기법을 적용하여 무응답 부분을 보완하는 방법과 같이 자료의 결측치 처리에 관한 다양한 연구·개발을 실시하고, 이를 실제 통계청 조사 사례에도 적용해보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임.

(4) 통계생산대행 수입대체경비 예산의 적정한 편성 필요 (통계생산대행 수입대체경비, 조사관리국)

< 현 황 >

「통계생산대행 수입대체경비」 사업은 중앙행정기관 등 통계작성기관 소관 통계를 통계청에서 대행생산(조사기획, 현장조사, 자료처리 등)하고 관련 수입대체경비를 운용하는 사업임. 2023년 예산액은 7억 8,100만원이고, 이 중 5억 9,300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 8,8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3회계연도 통계생산대행 수입대체경비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2023								2024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통계생산대행 수입대체경비 (3036-652)	781	-	-	-	781	593	-	188	700
- 대행조사	781	-	-	-	781	593	-	188	700

< 검토의견 >

통계생산대행 사업에서 매년 초과수입·초과지출 및 불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를 통한 대상 선정 및 예산반영이 필요할 것임.

통계청은 매년 자체 통계조직이 없거나 취약한 기관의 통계작성 대행의뢰를 받아 통계를 대행생산하고 있음. 이와 같은 통계생산대행은 사업 전년도에 수요조사 및 대상 통계 선정 절차를 거쳐 추진되며, 통계청이 비용을 징수하고 위탁기관에서 통계청에 납입하는 방식(수입대체경비 예산)으로 운영됨.

[최근 5년간 통계생산대행 수입대체경비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B)	집행액(C)	집행률(C/A)	집행률(C/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2019	900	900	532	1,432	1,404	156.0	98.1	-	28
2020	2,248	2,248	-	2,248	1,572	69.9	69.9	-	676
2021	808	808	1,052	1,860	1,755	217.2	94.4	-	105
2022	805	805	2,507	3,312	3,073	381.7	92.8	-	239
2023	781	781	-	781	593	75.9	75.9	-	188

* 초과지출 승인액
자료 : 통계청

최근 동 사업의 집행현황을 보면 매년 초과수입·초과지출 또는 불용이 발생하고 있음. 2019, 2021, 2022년도의 경우 관련 예산을 과소계상하여 대규모의 초과수입·초과지출을 야기하였으며, 반대로 2020, 2023년도의 경우에는 계획 대비 집행이 저조해 불용이 발생하였음.

특히, 2023년도의 경우 당초 예정된 통계대행 건인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보호에 대한 의식조사>가 위탁기관(농림축산식품부)의 요청으로 철회되면서 새로운 통계대행 건(국립국어원의 <한국수어활용조사>)을 재선정하는 과정에서의 금액 차이로 인하여 불용액이 크게 발생하였음.

[2023년 통계대행 수요조사 및 선정 결과]

제출기관	통계명	수요 제출일	선정결과	비고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조사	'22.2.25.	선정 ('22.12.21.)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에 대한 의식조사	'22.8.5.	선정 ('22.12.21.)	통계대행 철회 ('23.3.8.)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한국수어 활용 조사	'23.3.8.	선정 ('23.3.27.)	「동물보호에 대한 의식조사」 통계대행 철회로 재선정
국가보훈처	보훈문화의식 실태조사	'22.2.15.	미선정	예산 미확보
국립재난 안전연구원	재난피해 회복 수준 실태조사	'22.2.16.	미선정	모집단 불명확
해양수산부	어업법인조사	'22.2.28.	미선정	예산 미확보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소상공인매출 동향조사	'22.7.27.	미선정	신용카드 수집자료로 대행요건 미부합
보건복지부	치매실태조사	'22.8.4.	미선정	보건복지부에서 중간 철회

자료 : 통계청 제출자료 재구성

이러한 통계생산대행 사업의 초과지출 또는 불용은 근본적으로 수요조사 및 통계생산 대상 선정의 문제에 기인함. 그동안 연례적으로 대규모의 초과수입·초과지출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기존에 통계대행 수요조사를 '2월, 5월, 7월'에 실시하고 통계대행지원협의회[288]를 개최하여 이를 선정하는 대상 선정이 12월에 이루어지면서 시기적으로 차년도 예산편성 시 선정결과를 반영할 수 없게 되면서 예산이 과소계상 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대응하여 통계청은 2023년도부터 통계대행 수요조사를 '1월, 4월, 5월'로 시기를 조정하고 통계대행지원협의회 개최도 매년 8월로 앞당겨서 예산편성 시 반영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는 입장임.

288) **「통계대행 지침」 제9조(통계대행지원협의회)** ① 통계청은 통계대행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계대행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③ (생략)
④ 협의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3조에 따른 대행통계의 선정
2. 통계대행 및 통계작성 컨설팅 업무 추진방향
3. 그 밖에 통계대행 업무에 관한 사항

하지만 이 경우에도 2023년도의 경우와 같이 대상 선정 및 예산반영 후 해당 기관에서 철회하는 등의 경우 새로운 통계대행 대상을 재선정하는 과정에서 예산의 불용 또는 초과지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통계청은 수요조사 결과 대행 요청이 접수된 통계별로 조사의 필요성,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대상을 선정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5) 적정한 예산편성을 통한 연례적 세목조정 최소화 필요 (청사시설관리, 운영지원과)

< 현 황 >

「청사시설관리 사업」은 청사시설 개선 및 유지·보수 관리, 노후 사무집기 및 물품 교체, 임차청사 및 임차관사의 임차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2023년 예산액은 44억 3,700만원으로, 이 중 44억원을 집행하였고, 3,700만원을 불용하였음.

「청사시설관리 사업」의 2023년 시설장비유지비 예산현액은 5억 9,300만원으로, 5억 9,200만원을 집행하였고 1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3회계연도 청사시설관리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 세목명)	2023								2024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청사시설관리 사업(7032-305)	4,437	-	208 △208	-	4,437	4,400	-	37	5,644
- 일반수용비(210-01)	2,086	-	△208	-	1,878	1,877	-	1	2,546
- 임차료(210-07)	1,087	-	34	-	1,121	1,121	-	-	1,157
- 시설장비유지비 (210-09)	**419**	-	174	-	**593**	**592**	-	**1**	**419**
- 관리용역비(210-15)	8	-	-	-	8	8	-	-	8
- 기본조사설계비 (420-01)	-	-	-	-	-	-	-	-	21
- 실시설계비(420-02)	13	-	-	-	13	13	-	-	16
- 공사비(420-03)	220	-	-	-	220	194	-	26	870
- 감리비(420-04)	8	-	-	-	8	-	-	8	6
- 시설부대비(420-05)	-	-	-	-	-	-	-	-	5
- 자산취득비(430-01)	283	-	-	-	283	283	-	-	283
- 무형자산(440-00)	313	-	-	-	313	313	-	-	313

< 검토의견 >

청사시설관리 사업은 연례적으로 다른 비목에서 시설장비유지비로의 세목조정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예산편성 시 비목별 예산 소요를 적절히 반영하여 집행과정에서의 예산변경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통계청은 노후 청사시설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당초 시설장비유지비(210-09)로 4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 집행과정에서 예산 부족이 발생하여 일반수용비로부터 1억 7,400만원을 세목조정하여 집행하였음.

이러한 시설장비유지비로의 세목조정은 2019년부터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세목조정 금액도 매년 당초 예산액의 40% 이상을 차지함.

[2019년 ~ 2023년 시설장비유지비 세목조정 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A)	세목조정 (B)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예산액 대비 세목조정 비율 (B/A)
2019	613	**383**	996	994	1	62.5
2020	519	**266**	785	784	1	51.3
2021	519	**255**	774	772	2	49.1
2022	519	**209**	728	722	6	40.3
2023	419	**174**	593	592	1	41.5

자료: 통계청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이에 대해 통계청은 노후청사 누수 보수, 노후 냉난방기 수리·교체, 자연재해 피해 보수 등 예측하기 어려운 시설유지보수를 위한 지출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시설장비유지비 예산의 부족분을 세목조정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시설장비유지비의 부족이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2019년부터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측하기 어려운 지출이라고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부족액 또한 예산액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당초 예산편성 단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를 면밀히 산정하여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세목조정은 국회가 심의·확정한 예산의 세목 간 금액변경을 초래하나, 예산을 신축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는 필요한 제도임. 그러나 예산의 이·전용과 달리 특별한 절차가 요구되지 않아 집행기관의 자의적인 집행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불가피하게 예산편성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에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따라서 해당 사례와 같이 유사한 사유로 연례적으로 세목조정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향후 통계청은 비목별로 소요경비를 면밀히 추계하여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예산집행과정에서의 세목조정 등 예산변경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